

신흥국의 세정연구

홍콩



2021. 12.

· 연구진:

한국조세재정연구원 세정연구센터	김정명
한국조세재정연구원 세정연구센터	김치울
한국조세재정연구원 세정연구센터	박하얀
국세청 국제협력담당관실	이경헌

· 책임의 면제(Disclaimer):

각 국가의 세정은 그 국가의 사회·경제상황의 변화에 대응하기 위하여 잦은 개정이 이루어지므로 가장 최신의 내용을 담기에는 한계가 있어, 이 보고서는 각국의 세정을 이해하는 최소한의 길라잡이 역할을 수행합니다. 따라서 각 국가의 최신 세정을 포함한 보다 구체적이며 정확한 내용은 각 국가의 법령·과세관청의 홈페이지 등을 참고하거나 관련 전문가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보고서의 내용은 저자들의 개인적인 의견이며, 한국조세재정연구원 및 국세청의 공식적인 견해와 무관합니다.

목 차

제1편 총론	1
제1장 경제·사회 환경 및 진출 규모	3
I. 경제·사회 환경	3
II. 한국인 진출 규모	6
제2장 조세제도	8
I. 역사적 배경	8
1. 조세제도의 변화	8
2. 세무국 역할 및 조직 변화	10
II. 조세체계	12
III. 과세권자	14
1. 세무국의 권한과 의무	14
2. 세무국의 관할 구역	15
IV. 조세법의 규범체계	16
1. 법령 체계의 성격	16
2. 법원성	17
V. 홍콩 세법의 구성	19
1. 소득의 원천	19
2. 과세방식	19
3. 과세연도	19
4. 세무행정	20
VI. 조세불복제도	25

1. 불복청구.....	25
2. 심판청구.....	27
3. 항소.....	29
제2편 주요 세법.....	33
제1장 법인소득세.....	35
I. 개관.....	35
II. 납세의무자.....	38
III. 과세대상 소득.....	40
1. 과세소득.....	40
2. 비과세소득.....	47
IV. 공제 항목.....	53
1. 각종 공제.....	53
2. 감가상각 공제.....	67
V. 기타 주제.....	81
1. 특정 주제별 세무취급.....	81
2. 특정 산업별 세무취급.....	85
3. 특정 형태별 세무취급.....	90
VI. 납부세액의 산출.....	93
1. 손실 공제.....	93
2. 세율.....	94
3. 세액 공제.....	95
4. 납부세액 산출 흐름.....	96

목 차

VII. 신고와 납부	97
1. 소득신고서 제출	97
2. 세금 납부	97
3. 사전답변제도(advance ruling)	98
VIII. 원천징수제도	100
제2장 급여소득세	105
I. 개관	105
II. 납세의무자	107
III. 과세대상소득	108
1. 과세대상 소득기준	108
2. 세무조례에 근거한 과세대상 소득	109
3. 기타소득	110
4. 비과세소득	112
IV. 각종 공제제도	116
1. 소득공제	116
2. 특별공제	118
3. 인적공제	123
4. 세액공제	128
V. 과세방식	129
1. 부부합산과세	129
2. 종합과세	131

VI. 납부세액의 산출	133
1. 과세표준 및 적용세율	133
2. 세액 산출과정과 계산과정	133
VII. 신고·납부 및 징수체계	136
1. 신고·납부	136
제3장 재산세제	144
I. 부동산세(Government Rent/Rates)	144
1. 정부 토지 임대료(Government Rent)	144
2. 건물 재산세(Rates)	144
3. 납부	145
II. 재산세(Property tax)	146
1. 과세대상	146
2. 세액의 계산	148
3. 신고 및 납부	149
III. 인지세(Stamp duty)	151
1. 과세대상	151
2. 세율	152
3. 신고 및 납부	155
제4장 국제조세	158
I. 개요	158
II. 포괄적 이중과세 방지 조약	159

목 차

III. 국제 선박 및 항공 운영 소득 관련 조세 조약.....	164
제5장 기타 조세.....	166
I. 개별소비세.....	166
1. 주류.....	166
2. 담배.....	166
3. 유류.....	167
II. 사업등록세.....	168
1. 사업자 등록 개요.....	168
2. 수수료 및 세금.....	168
III. 도박세.....	170
IV. 항공 여객 출국세.....	171
V. 자동차 최초 등록세.....	171
제3편 한국인 투자자를 위한 제도.....	173
제1장 투자환경.....	175
I. 입지.....	175
1. 입지여건 및 비용.....	175
2. 지역별 토지 및 건물 임차료.....	176
II. 노무.....	177
1. 임금수준.....	177
2. 노동력.....	177
3. 사회보험제도.....	178

4. 직원채용 및 근로조건	179
5. 노사분규	180
III. 지적재산권	181
IV. 물류	182
1. 해상운송	182
2. 항공운송	182
3. 육상운송	183
V. 공공서비스	183
VI. 법인 설립	184
1. 회사설립제도	184
2. 외국인의 부동산 취득	184
제2장 외국인 투자정책 및 투자이슈	185
I. 투자정책	185
1. 외국인투자촉진법	185
2. 외국인투자 제외 및 제한업종	185
3. 홍콩의 투자유치기관	185
II. 투자이슈: 웨강아오대만구 발전계획	186
III. 유관기관	187
참고문헌	189

목 차

표 목차

제1편 총론

〈표 1-1-1〉 홍콩의 저소득층 대상 주택 정책.....	5
〈표 1-1-2〉 홍콩 진출 한국 금융기관.....	6
〈표 1-1-3〉 한국의 대 홍콩 수출입 실적.....	7
〈표 1-1-4〉 한국의 대 홍콩 투자 실적.....	7
〈표 1-2-1〉 조세제도 및 세무국 역할·조직 변화.....	11
〈표 1-2-2〉 홍콩의 조세체계.....	12
〈표 1-2-3〉 홍콩법의 근간이 되는 법률연원.....	16
〈표 1-2-4〉 홍콩입법기관이 제정한 조례.....	17
〈표 1-2-5〉 벌금 수준(Penalty Levels).....	22

제2편 주요 세법

〈표 2-1-1〉 과세 여부 판정 거래지표(badges of trade).....	36
〈표 2-1-2〉 소득 종류별 소득원천지 기준.....	43
〈표 2-1-3〉 간주 소득.....	44
〈표 2-1-4〉 비과세소득.....	47
〈표 2-1-5〉 관련비용 공제가 허용되는 차입금 요건.....	56
〈표 2-1-6〉 기타 공제항목.....	62
〈표 2-1-7〉 비용 항목별 공제가능 여부.....	66
〈표 2-1-8〉 감가상각 자산별 공제대상 및 공제한도.....	68
〈표 2-1-9〉 미사용 건물 및 구축물의 취득 시 간주 자본적 지출금액.....	72
〈표 2-1-10〉 공장설비 및 기계장치로서 적격 품목.....	76
〈표 2-1-11〉 기계·설비에서 배제되는 부적격 품목.....	77
〈표 2-1-12〉 기계·설비 연간공제 적용 감가상각률.....	79
〈표 2-1-13〉 금융기관 수취이자의 과세소득 산입비율.....	85
〈표 2-1-14〉 이윤세 납부세액 산출 흐름.....	96
〈표 2-2-1〉 소득의 발생과 수취 사례.....	112
〈표 2-2-2〉 인가직업퇴직계획의 비과세 내역.....	114
〈표 2-2-3〉 강제적공적기금계획의 비과세 내역.....	114
〈표 2-2-4〉 본인 교육비공제 한도.....	117
〈표 2-2-5〉 노인주거지원비용 특별공제 한도.....	120
〈표 2-2-6〉 주택대출이자.....	122
〈표 2-2-7〉 인적공제의 분류별 공제금액 한도.....	123
〈표 2-2-8〉 부부합산과세 세액계산 방법 예시 ①.....	130
〈표 2-2-9〉 부부합산과세 세액계산 방법 예시 ②.....	131
〈표 2-2-10〉 종합과세, 부부합산과세 시 적용 누진세율.....	133
〈표 2-2-11〉 급여소득세액 산출과정.....	134
〈표 2-2-12〉 급여소득세액 산출과정 예시.....	135

목 차

〈표 2-2-13〉 과세 기간 및 신고 기한.....	136
〈표 2-2-14〉 홍콩의 세금 납부 및 결제 수단.....	137
〈표 2-3-1〉 홍콩의 재산세 세율.....	149
〈표 2-3-2〉 재산세 신고 유형 및 신고 기한.....	150
〈표 2-3-3〉 홍콩의 부동산 임대차 문서 인지세 세율.....	152
〈표 2-3-4〉 홍콩의 부동산 매매 및 양도 문서의 종가인지세 세율.....	153
〈표 2-3-5〉 홍콩의 부동산 매매 및 양도 문서의 특별인지세 세율.....	154
〈표 2-3-6〉 홍콩의 주식 매매 및 양도 문서의 인지세 세율.....	154
〈표 2-3-7〉 홍콩의 과세 대상 문서에 따른 인지세 납부 기한.....	156
〈표 2-4-1〉 홍콩의 포괄적 이중과세 방지 조약 체결 국가.....	159
〈표 2-4-2〉 홍콩과 중국 본토 간 체결한 이중과세 방지 조약.....	161
〈표 2-4-3〉 홍콩과 중국 본토 간 이중과세 방지 조약의 대상 소득 및 내용.....	162
〈표 2-5-1〉 홍콩의 담배 개별소비세 세율.....	166
〈표 2-5-2〉 홍콩의 유류 개별소비세 세율.....	167
〈표 2-5-3〉 홍콩의 사업자등록세(본사 등록).....	169
〈표 2-5-4〉 홍콩의 사업자등록세(지점 등록).....	169
〈표 2-5-5〉 홍콩의 도박세 세율.....	170
〈표 2-5-6〉 홍콩의 최초 자동차 등록세 세율.....	172

그림 목차

제1편 총론

[그림 1-2-1] 홍콩 세무국의 조직도.....	14
[그림 1-2-2] 향소단계.....	30

목 차

별첨 사례

제2편 주요 세법

[별첨] 법인이윤세 주요 신고서식 - BIR51	101
[별첨] 개인소득세 신고양식 - BIR60	140

• 신흥국의 세정연구 홍콩 •

제1편 총론

제1장 경제·사회 환경 및 진출 규모

제2장 조세제도

제1장 | 경제·사회 환경 및 진출 규모

I 경제·사회 환경¹⁾

홍콩은 1997년 중국으로 반환된 이후 현재 중국 본토와의 경제 통합이 가속화되고 있다. 중국이 개혁개방을 시작한 1970년대 말부터 주요 제조 기반은 이미 중국 본토로 상당 부분 이전하였으며, 2003년 6월에는 중국-홍콩 경제협력동반자협정(Closer Economic Partnership Arrangement, CEPA)을 체결하여 투자 증진과 경제 및 산업 협력을 꾀하는 등 경제 자유화의 범위를 점차 확대하고 있다. 그리고 2017년부터는 홍콩의 자유개방경쟁체제에 광동성의 개혁개방 경험을 융합하여 세계적인 만구(灣區) 경제권을 육성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대만구 발전계획’에 참여하고 있으며, 여기에서 홍콩은 역외 위안화 관련 업무의 허브 및 자산관리센터 기능과 함께 국제법 및 분쟁해결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현재 홍콩의 대외 교역에서 중국이 차지하는 비중은 2019년 기준 55.5%이며, 2013년 이후부터 꾸준히 50% 이상의 비중을 유지하고 있다.

홍콩은 주요 제조 기반을 중국 본토에 두고 있어 서비스 산업이 전체 산업의 93.1%의 비중을 차지하는 3차 산업 위주의 산업 구조를 지니고 있다. 또한 1994년부터 2019년까지 26년 연속으로 미국 헤리티지 재단의 경제자유도 지표(Index of Economic Freedom)에서 1위를 차지하는 등 자유로운 경제활동과 외환 이동이 보장되어 무역과 금융 관련 산업이 고도로 발달할 수 있는 환경이 마련되어 있다. 이를 바탕으로 홍콩은 2019년 기준으로 전체 GDP의 절반 이상이 금융 및 보험·부동산·전문서비스업(30.2%)과 수출입 및 도소매유통업(21.4%)에서 발생하고 있다.

또한 뉴욕, 런던과 함께 세계 3대 국제 금융의 중심지로, 2019년 4월 기준 일평균 거래량은 6,321억달러로 세계 4위였으며, 2019년 4월 기준 주식시장 시가 총액은 4조 8,900억달러로 세계 6위를 기록하고 있다. 이밖에도 2004년부터는 중국 정부의 계획하에 역외 위안화

1) 주 홍콩 대한민국 총영사관 홈페이지, 「홍콩 소개 - 홍콩의 경제」, https://overseas.mofa.go.kr/hk-ko/brd/m_20237/view.do?seq=951908, 검색일자: 2021. 12. 10.
주 홍콩 대한민국 총영사관 홈페이지, 「홍콩 소개 - 홍콩의 복지, 언론, 문화, 교육」, https://overseas.mofa.go.kr/hk-ko/brd/m_20237/view.do?seq=1133162, 검색일자: 2021. 12. 10.

대출 및 자산관리 센터 기능이 강화됨으로써, 2019년 말 기준으로 6,322억위안화의 예금을 보유하는 등 세계 최대 수준의 대중국 투자 국제자금조달센터 역할을 하고 있다.

홍콩은 1997년 중국 반환 직후 해외 이민과 자본 유출이 급증하고 외환위기까지 겹침에 따라 1998년 경제성장률이 -5.3%까지 하락하는 등 경기침체 시기를 겪었으나 2003년 중국과의 CEPA 협정 체결 이후 경기가 회복세에 진입하기 시작하였으며, 2004~2007년에는 활발한 교역과 중국과의 협력 강화를 통해 6~8%의 경제성장률을 보여주기도 하였다. 이후 2010년과 2011년에도 7.0%와 5.0% 수준의 일시적인 급진적 경제성장이 있었으나,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및 2012년 유로존 위기와 함께 2010년대 이후 미국과 중국의 경제성장률이 하락함에 따라 저성장 국면에 접어들었으며, 2018년 미국과 중국의 무역 분쟁과 2020년 코로나19 등의 영향으로 2020년 1사분기 성장률은 -8.9%를 기록하는 등 2019년 3사분기 이후 연속으로 마이너스 성장률을 보여주고 있다.

홍콩의 인구는 2020년 기준 약 748만명²⁾으로 지난 40년간 2배 가까이 증가하였으나 주택 공급 수준이 인구증가율에 못 미치고 있는 상황이다. 거주민들 간의 소득 격차 또한 매우 커서 고급 맨션부터 공공 임대주택까지 다양한 주거지 수요가 존재한다. 홍콩의 일반적인 주거 유형은 크게 공공 임대주택, 보조금 판매 주택, 민간 주택으로 구분되는데, 2016년 기준으로 총 주택 수 275만호 중 공공 임대주택과 보조금 판매 주택은 각각 79만호와 40만호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거주자 기준으로는 전체 인구인 29%가 공공 임대주택에, 보조금 판매 주택에 16.0%에 거주하는 수준이며, 2011년에는 MHPP(My Home Purchase Plan)를 도입하고 2014년부터는 기존에 중단되었던 공공 매매주택(Home Ownership Scheme, HOS) 정책을 재개하여 저소득층의 주거 안정에 힘쓰고 있다. 이밖에도 2017년에는 공공 임대주택에서 시작한 홍콩 주민들이 민간 시장에서 내 집 마련을 할 수 있게 단계별로 지원하는 ‘자산 사다리(Housing ladder)’ 정책을 발표하기도 하였다.

2) Census and Statistics Department of Hong Kong Special Administrative Region, *Hong Kong in Figures 2021 Edition*, April, 2021.

〈표 1-1-1〉 홍콩의 저소득층 대상 주택 정책

주택 정책	대상	내용
공공 임대주택	주택구매가 어려운 사회적 약자	- 월 임차료: 260~3,530홍콩달러
HOS	월 소득 3만홍콩달러 이하 가정	- 400~500평방피트의 주택 150~200만홍콩달러에 공급 - 사틴, 성완, 윤롱 지역 등
MHPP	월 수입 4만홍콩달러 이하 가정	- 선임대-후구매 방식에서 구매 또는 임대 옵션 추가 - 칭이 지역 등

자료: 주 홍콩 대한민국 총영사관 홈페이지, 「홍콩 소개 - 홍콩의 복지, 언론, 문화, 교육」, https://overseas.mofa.go.kr/hk-ko/brd/m_20237/view.do?seq=1133162 발췌 재인용, 검색일자: 2021. 12. 10.

홍콩의 의료기관은 공공과 민간으로 나뉘며, 홍콩 ID를 소지한 자는 누구나 공공 의료기관을 이용할 수 있다. 홍콩 내 공공 병원은 42개로 2만 8,126개의 병상을 갖추고 있으며, 매우 저렴한 비용으로 이용할 수 있으나 장시간 대기가 필요하다. 민간의 경우 2015년 기준으로 11개(4,226개 병상)의 사립종합병원이 있으며, 상대적으로 종합 서비스가 좋은 민간 의료기관은 공공 의료기관의 약 5배에서 20배 가량의 의료비를 지불해야 한다. 이 외에도 요양시설 63개(병상 5,858개), 교도시설 내 병원 21개(병상 880개)로, 병상률은 인구 1천명당 5.2개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2016년 말 기준으로 등록된 의사 수는 1만 4,013명으로 인구 1천명당 1.9명 수준이며, 다른 선진국에 비해 병상률과 의사 수 등의 지표가 낮음에도 불구하고 1천명당 1명 수준의 낮은 유아사망률과 80세 이상의 높은 평균 수명을 보여주고 있다.

한편 홍콩 정부가 장기 사회간접자본 중 투자의 최우선 순위를 두는 분야는 교육으로, 6~17세까지의 초중등 교육을 의무교육으로 무상 실시하고 있다. 초등학교와 중등학교는 각각 6년제로, 초등학교는 만 6~11세, 중등학교는 만 12~17세까지 수학한다. 또한 초등학교 입학 전 만 3~5세의 유아를 대상으로 유치원 교육 바우처 제도를 통해 2017/2018 학년도 기준으로 연간 2만 3,810홍콩달러(HKD)를 지원해 주고 있으며, 연평균 약 85%의 유치원생이 해당 제도의 혜택을 받고 있다. 이 밖에도 70여 개의 국제학교가 있는데, 이 중 영국계 국제학교는 13학년제로 운영하고 23개 학교는 중등 과정만 운영하고 있다. 한국국제학교는 1988년 홍콩에 거주하는 한국 교포들에 의해 설립되었으며, 한국 교육부의 정식 인가를 받아 한국어 과정과 영어 과정을 모두 운영하고 있다. 특히 한국어 과정의 경우 한국 교육부의 학제와 교육과정을 따르고 교장 또한 한국에서 파견된다. 또한 한국어 과정과 영어 과정에 재학한 학생 모두에게 재학 기간에 상응하는 한국 대학의 특례 입학 자격이 주어진다.

II 한국인 진출 규모³⁾

홍콩 내에 거주하는 한국 동포는 2018년 기준으로 1만 8,654명으로 이 중 7년 이상 거주한 영주권자가 7,186명, 6개월 이상 거주자 9,744명, 유학생 1,724명, 일시체류자가 7천명인 것으로 추정된다. 현지에 거주하고 있는 동포들 중 다수가 상사 혹은 지사에 근무하거나 무역업, 요식업, 관광업 등에 종사하고 있으며, 7년 이상 거주 시 무기한 체류자격을 부여받고 별도로 신청할 경우 홍콩 영주권 취득이 가능하다.

홍콩 내 한국의 진출업체는 교포 기업을 포함하여 총 1,500개이며, 금융기관은 2020년 기준으로 총 21개 상주하고 있다. 금융기관은 은행 9개, 증권사 6개, 자산운용사 3개 등으로, 금융감독원과 한국은행은 주재원의 형태로 진출하여 있다. 1997년 말에는 82개의 한국 진출 금융기관이 존재하였으나 1998년 외환 위기 이후 급감하였으며, 자본시장법 시행 이후 2009~2011년 증가하였다가 최근 금융 위기 지속으로 다시 감소한 상황이다.

〈표 1-1-2〉 홍콩 진출 한국 금융기관

	금융기관명
은행(9개)	산업, 기업, 수출입, 신한, 우리, 우리글로벌, 국민, KEB, 하나(하나 글로벌)
증권사(6개)	미래에셋, NH투자, KB, 한국투자, 삼성, 신한금융투자
자산운용사(3개)	미래에셋자산운용, 삼성자산운용, 신한BNP자산운용
기타(3개)	코리안리, 한국예탁결제원, 한국자금증개

자료: 주 홍콩 대한민국 총영사관 홈페이지, 「홍콩 소개 - 한,홍콩 관계」, https://overseas.mofa.go.kr/hk-ko/brd/m_20237/view.do?seq=1235398 발췌 재인용, 검색일자: 2021. 12. 10.

홍콩은 중국, 미국, 베트남을 잇는 한국의 4대 수출 국가로 2019년에는 흑자 시장 1위를 차지한 바 있으며, 전체 수출 금액의 80%가 메모리 반도체와 휴대폰 등 전자기기와 기계류에서 발생하고 있다.

3) 주 홍콩 대한민국 총영사관 홈페이지, 「홍콩 소개 - 홍콩의 경제」, https://overseas.mofa.go.kr/hk-ko/brd/m_20237/view.do?seq=951908, 검색일자: 2021. 12. 13.

〈표 1-1-3〉 한국의 대 홍콩 수출입 실적

(단위: 억달러, %)

구분		2015	2016	2017	2018	2019	2020	2021
수출	금액	304.2	327.8	391.1	459.9	319.1	306.5	308.0
	증감률	11.6	7.8	19.3	17.6	-30.6	-3.9	23.6
수입	금액	14.9	16.1	18.8	19.9	17.8	15.4	18.5
	증감률	-14.7	8.2	16.4	6.3	-10.9	-13.4	44.4
수지		289.3	311.7	372.4	440.0	301.3	291.1	289.5

자료: 한국무역협회 글로벌 무역통계서비스, <https://stat.kita.net/newMain.screen>, 검색일자: 2021. 12. 10.

한편 한국의 대 홍콩 투자 규모는 미국과 중국을 잇는 3위이며, 주로 전문서비스업과 금융 및 보험업, 부동산업 등에 투자가 이루어지고 있다. 투자 규모는 2018년 36억 3천달러까지 증가하는 추세를 보였으나, 2019년부터 점차 감소하기 시작하였으며 2020년부터는 코로나 19의 여파로 투자 규모가 급격히 줄어든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표 1-1-4〉 한국의 대 홍콩 투자 실적

(단위: 백만달러, 개)

구분	2015	2016	2017	2018	2019	2020	2021
투자금액	1,930	1,589	3,360	3,628	2,758	1,448	207
신규법인 수	109	156	162	111	117	59	21

자료: 수출입은행 해외직접투자통계, 「비교통계자료 - 국가간 통계」, <https://stats.koreaexim.go.kr/sub/interstateStatistics.do>, 검색일자: 2021. 12. 10.

제2장 | 조세제도

I 역사적 배경

1. 조세제도의 변화⁴⁾

제1차(1840년), 제2차(1857년) 아편전쟁에서 패한 청나라는 영국과 홍콩 할양을 내용으로 하는 불평등조약을 체결하였고, 이후 영국의 식민통치하에서 홍콩의 법제는 근본적인 변화의 시기를 맞아 전통적인 중국의 봉건적 법률제도가 서구의 자본주의 법률제도로 변하는 과정을 겪게 되었고 영국의 보통법이 적용되는 지역이 되었다.

홍콩식민지정부는 1939년(제2차 세계 대전이 발발한 지 몇 주 지나지 않은 시기)에 영국을 재정적으로 지원하는 것을 목적으로 소득세를 처음 도입하였다. 이를 분류 소득세라 칭했는데, 1940년 전시상황 세무 조례(The War Revenue Ordinance 1940)에 기초하여 이윤세(Profits tax), 급여소득세(Salary tax), 재산세(Property tax) 등의 일부 세목만을 각각 사업소득, 급여소득, 부동산으로부터 발생한 소득으로 분류하여 과세했기 때문이다. 하지만 거주 여부에 관계없이 홍콩 내 원천소득에 국한되어 역외소득(Offshore Income)은 과세대상에서 제외되었으며, 세금을 납부하는 인구는 1%도 채 되지 않았다.

전쟁이 끝난 후 영국정부는 홍콩식민지정부에 역외소득 과세대상 포함, 종합과세도입, 세율 인상 등의 개편으로 조세제도를 개혁하라는 압력을 계속 가했다. 이에 홍콩식민지정부는 1952년에 영국정부의 요구를 수용하기 위해 당시 홍콩재무장관을 주축으로 세계개편위원회를 설립하고, 홍콩에 선진화된 조세제도 수용을 위한 심의를 실시한다. 하지만 정재계의 반대로 영국정부의 요구를 반영하지 못하고, 전쟁 당시 일시적인 조치로 여겨진 전시상황 세무 조례를 기반으로 1947년에 홍콩 조세제도의 근간이 되는 '세무조례(Inland Revenue Ordinance

4) 세계법제정보센터, 「홍콩의 법률체계」, https://world.moleg.go.kr/web/wli/rsrchReprtReadPage.do?CTS_SEQ=38483&AST_SEQ=120, 검색일자: 2021. 8. 23.; Michael Littlewood, "The Hong Kong Tax System: its History, its Future and the Lessons it Holds for the Rest of the World," Michael Littlewood, *Taxation Without Representation: The History of Hong Kong's Troublingly Successful Tax System* (Hong Kong: HKU Press, 2010).

1947)를 제정했다.

1947년에 제정된 세무조례에는 수입품에 대한 관세, 일반적인 부가가치세에 대한 규정이 없었기에 기타 세목에 관한 조례·규칙 등을 제정했는데, 주류·담배·유류 등의 소비품목에 과세하기 위해 주세(Duty on Liquor), 담배세(Duty on Tobacco), 유류세(Duty on Hydrocarbon Oil) 등이 포함된 과세물품 조례(Dutiable Commodities Ordinance)를 1963년에 제정하고 수입 여부와 상관없이 제조 또는 공급하는 자에게 부과하고 있다.

그리고 1966년에는 호텔숙박 조례(Hotel Accommodation Tax Ordinance)를 제정하고 홍콩 내 모든 호텔 소유주로부터 호텔숙박세를 과세했고, 1981년에는 인지세 조례(Stamp Duty Ordinance)를 제정하고 홍콩에 소재하는 부동산, 주식 등에 대한 권리 등의 생성, 이전 등 변경에 관한 계약서나 이를 증명하는 그 밖의 문서를 작성하는 자가 해당 문서를 작성할 때 인지세를 과세했다.

1986년에서 1994년 사이에는 조세회피 방지 조항(Anti-tax Avoidance Provisions), 부부 합산과세, 종합과세 등을 도입하였고, 이자세(Interest tax), 영화관 및 경마장 입장료에 대한 오락세(Entertainments tax) 등을 폐지하였다.

1997년 7월 홍콩 반환 시 중국과 영국은 1984년에 덩샤오핑이 제시한 ‘1국 2체제(One Country, Two System)’ 방식에 기초하여 홍콩사회의 안정을 위해 홍콩의 역사와 현실에 입각하여 홍콩이 반환된 후에도 홍콩에 적용되어 왔던 사회제도, 법률제도를 50년간 불변하하겠다는 ‘홍콩반환협정(Sino-British Joint Declaration)’을 체결하였다.

이때 제정된 「홍콩기본법(the Basic Law)」 제108조⁵⁾에 홍콩특별행정구는 독립적인 과세제도를 실시할 수 있음을 명시하였고, 1947년 제정된 세무 조례와 시행령, 세무규칙 등을 명확화했다.

홍콩 반환 이후 국제조세, 납세자 권리와 관련하여 조세제도의 변화를 보였는데, 1998년 2월에는 최초로 이중과세방지 규정을 도입했으며, 이후 홍콩 정부는 해외의 다양한 나라들과 협약체결을 위한 노력을 기울여서 최초 벨기에(2003년) 이후 많은 해외 주요국과 이중과세방지 협약을 체결하였다.

그리고 같은 해 4월, 납세의무자가 과세에 대한 이의가 있는 경우, 세무국장에게 서면으로 질의할 수 있는 사전답변제도(advance ruling)를 도입했고, 2000년에는 납세자 권리헌장

5) 「홍콩기본법」 제108조에는 “홍콩특별행정구는 독립적인 과세제도를 실시한다. 홍콩특별행정구는 원래 홍콩에서 시행하던 감세정책을 참조하여 자체적으로 법을 제정하여 세금의 종류, 세율, 세수의 면제와 그 밖의 세무사항을 규정한다.”라고 규정함(세계법제정보센터, 「홍콩특별행정구 기본법」, https://world.moleg.go.kr/web/wli/lgslInfoReadPage.do?CTS_SEQ=38145&AST_SEQ=1291&, 검색일자: 2021. 8. 24.).

(Taxpayer's Charter)을 발효했다.

이 외에도 2006년에 도박·복권위원회(Betting and Lotteroes Commission)를 설립하고, 도박세 조례(Betting Duty Ordinance)를 개정하면서 지금에 이르고 있다.

2. 세무국 역할 및 조직 변화⁶⁾

홍콩식민지정부는 1947년 세무조례(Inland Revenue Ordinance, IRO)를 제정하기 이전
에 홍콩 세무국(Inland Revenue Department, IRD)을 설립하였지만, 소득세 외 대부분 세목
의 관리권한이 홍콩 재무부(Treasury)에 있었기 때문에 세무국의 역할이 크지는 않았다. 이에
홍콩식민지정부 주도 아래 해당 부서 및 세목들의 관리 업무 이전을 진행했다.

1949년 4월에는 재무부에 소속되어 있는 재산세과를 세무국으로 이관하고, 재산세 관리 업
무를 이전했다. 그리고 1956년 2월에는 재무부에 소속되어 있는 인지세과를 세무국으로 이관
하고, 인지세 관리 업무를 이전했다. 같은 해 4월 재무부가 관리하던 오락세(Entertainments
tax), 현금성 도박을 포함한 도박 관련 세제(Bets and Sweeps tax), 공공 공연장 이용세
(Public Dance-Halls tax) 등의 관리 업무도 세무국으로 이전했다. 1957년 4월에는 홍콩 산
업통상부(Commerce and Industry Department)에 소속되어 사업등록세 관리 업무 등을 하
던 사업등록사무소(Business Registration Office)를 세무국으로 이관했다. 1960년에는 세무
행정 데이터 저장 및 분석에 전산기반의 시스템을 사용하기 시작했으며, 1978년에는 전산기
반의 시스템을 사업자등록 세무처리에 도입했다. 1996년에는 세무국 홈페이지를 개설하고,
2001년 1월 19일에 세금신고, 사업자등록 신청 및 관련 문의가 가능한 온라인 서비스를 시작
했다. 2003년부터 2007년까지 온라인 서비스 기능의 개선으로 2008년에 납세자의 전자신고
를 위한 포털(etax)을 출시했다.

이처럼 업무가 지속적으로 확장되고 납세자 수 역시 급격하게 증가됨에 따라 조직 개편의
필요성이 대두되면서, 1958년 탈세 등을 방지하기 위한 세무조사과, 1978년 납세자의 불만
등을 관리하기 위한 납세자불만접수과, 1981년 세무행정 전산처리과 등을 신설하고 1997년
세수의 종합적인 검토를 위해 실무진으로 구성된 평가단 선임과 함께 지금에 이르고 있다.

⁶⁾ 홍콩 세무국, "Annual Report 2007~2008," "IRD 60th Anniversary," <https://www.ird.gov.hk/dar/2007-08/eng/chapter12/content.htm#b1>, 검색일자: 2021. 8. 25.

〈표 1-2-1〉 조세제도 및 세무국 역할·조직 변화

연도	도입 및 변경 내용
1947년	· 세무국(Inland Revenue Development) 설립 · 세무조례(Inland Revenue Ordinance) 제정
1949년	· 재산세 관리 업무 이전
1956년	· 인지세, 오락세(Entertainments tax), 도박세, 공공 공연장 이용세(Public Dance-Halls tax) 관리 업무 이전
1957년	· 사업등록세 관리 업무 이전
1958년	· 탈세 등을 방지하기 위한 세무조사과 신설
1966년	· 호텔 숙박세(Hotel Accommodation Tax) 도입
1970년	· 공공 공연장 이용세 폐지
1978년	· 납세자의 불만 등을 관리하기 위한 납세자불만접수과 신설
1981년	· 인지세 조례(Stamp Duty Ordinance) 제정 · 전산기반 세무행정 처리를 위한 전산처리과 신설
1986년	· 조세회피 방지 조항(Anti-tax Avoidance Provisions) 도입
1989년	· 이자세(Interest tax) 폐지
1990년	· 급여소득세 신고·평가·납부에 부부합산과세 도입
1992년	· 영화관 및 경마장 입장료에 대한 오락세를 폐지
1994년	· 급여소득세, 재산세, 이윤세를 신고·납부하는 개인에 종합과세 도입
1997년	· 세수의 종합적인 검토를 위한 평가단 선임 · 부동산세(Government Rent/Rates) 도입
1998년	· 이중과세방지 규정 도입 · 사전답변제도(Advance Ruling) 도입
2000년	· 납세자 권리헌장(Taxpayer's Charter) 발효
2006년	· 도박세 조례(Betting Duty Ordinance) 개정 · 상속증여세 폐지
2008년	· 알코올 함량 30% 미만의 주류와 와인에 대해서는 주세를 폐지 · 호텔숙박세(Hotel Accommodation Tax) 면제 실시

자료: 홍콩 세무국, 「Annual Report 2007~2008」, “IRD 60th Anniversary,” <https://www.ird.gov.hk/dar/2007-08/eng/chapter12/content.htm#b1>, 검색일자: 2021. 8. 25.

II 조세체계

홍콩은 1840년 아편전쟁 이후 영국의 식민통치를 받았으며, 이후 1984년 중국과 영국의 연합성명에 따라 1997년 7월 1일 주권을 회복하고 중국의 특별행정구로 지정되었다. 홍콩의 조세제도는 기본적으로 영국식민 통치하의 조세제도와 크게 다르지 않다.

중국의 홍콩에 대한 주권회복 이후의 조세제도는 「중화인민공화국홍콩특별행정기본법」에 의하여 제도적으로 뒷받침되고 있다. 홍콩의 조세제도를 개관하면 다음과 같다.

홍콩은 원천지국 과세방식(territorial basis of assessment)을 적용하여 과세하고 있다. 거주자와 비거주자의 과세에 있어 차이가 없으며, 홍콩원천소득에 대해서만 소득세가 과세되며, 동일한 세율과 과세방법, 과세특례가 적용되고 있다. 홍콩 밖에서 발생하였거나 얻은 소득에 대해서는 소득세를 과세하지 않는 것이 원칙이다. 그러나 일부 소득은 이러한 조건에 부합되지 않더라도 홍콩원천소득으로 간주하여 홍콩에서 이윤세를 과세하고 있다. 예를 들어, 홍콩에 원천징수제도는 없으나 특정 사용료나 비거주자인 연예인 또는 운동선수에게 지급하는 공연료에 대해서는 예외적으로 원천징수제도가 존재한다.

홍콩의 조세는 금융·투자를 유인하는 데 초점을 두어 구성되어 있다. 이자·배당·양도에 대한 세금이 없어서 은행 예금이나 주식매매와 보유에 대해 과세하지 않음으로써 금융투자가 활발하다. 역외에서 실현된 소득에 대해서는 세금을 부과하지 않는다. 즉 홍콩에 있는 투자자가 한국의 주식에 투자해서 돈을 벌었더라도 세금을 부과하지 않는 것이다.

홍콩은 지방세 없이 국세로 일원화된 조세체계를 가지며, 부과되는 세목은 <표 1-2-2>와 같다.

<표 1-2-2> 홍콩의 조세체계

구분	분류	세목	내용
1	소득세제	이윤세(Profits tax)	· 개인 및 법인의 소득에 부과됨
2		급여소득세(Salary tax)	
3	재산세제	재산세(Property tax)	· 홍콩에 소재하는 부동산 소유주의 임대소득에 부과됨
4		부동산세(Government Rent/Rate)	· 홍콩에 소재하는 건물 소유주에게 토지사용에 대한 대가로 부과하는 토지재산세와 동 소유주에게 건물의 임대가치에 대해서 부과하는 건물 재산세로 나뉨
5		인지세(Stamp Duty)	· 홍콩에 소재하는 부동산과 주식 등에 대한 권리 생성 및 이전 등에 관한 법적 문서에 부과함

〈표 1-2-2〉의 계속

구분	분류	세목	내용
6	소비세제	주세(Duty on Liquor)	· 기준 알코올 도수 이상인 주류, 메틸알코올, 메틸알코올 혼합물 등에 부과함
7		담배세(Duty on Tobacco)	· 담배, 시가 등에 개비 수, 중량 등의 일정 기준에 따라 부과함
8		유류세(Duty on Hydrocarbon Oil)	· 자동차용 휘발유, 경유, 항공유 등에 리터(l) 기준으로 부과함
9	기타조세	도박세(Betting Duty)	· 승인받은 경마, 복권, 현금성 도박 등의 수익(상금)에 부과함
10		사업등록세 (Business Registration Tax)	· 홍콩 내의 회사가 사업등록소에 최초 및 갱신 등록할 때 부과함
11		공항출국세 (Air Passenger Departure Tax)	· 홍콩의 국제공항에서 출국하는 기준나이 이상의 모든 승객에게 부과함
12		호텔숙박세 (Hotel Accommodation Tax)	· 홍콩 내의 모든 호텔, 게스트 하우스 등의 소유주에게 부과함
13		자동차 최초등록세 (Motor Vehicle First Registration Tax)	· 홍콩 내 도로를 사용하는 모든 자동차류의 소유자에게 부과함

자료: 홍콩 법제정보센터, 「Inland Revenue Ordinance」, <https://www.elegislation.gov.hk/hk/cap112>, 검색 일자: 2021. 9. 2.

III 과세권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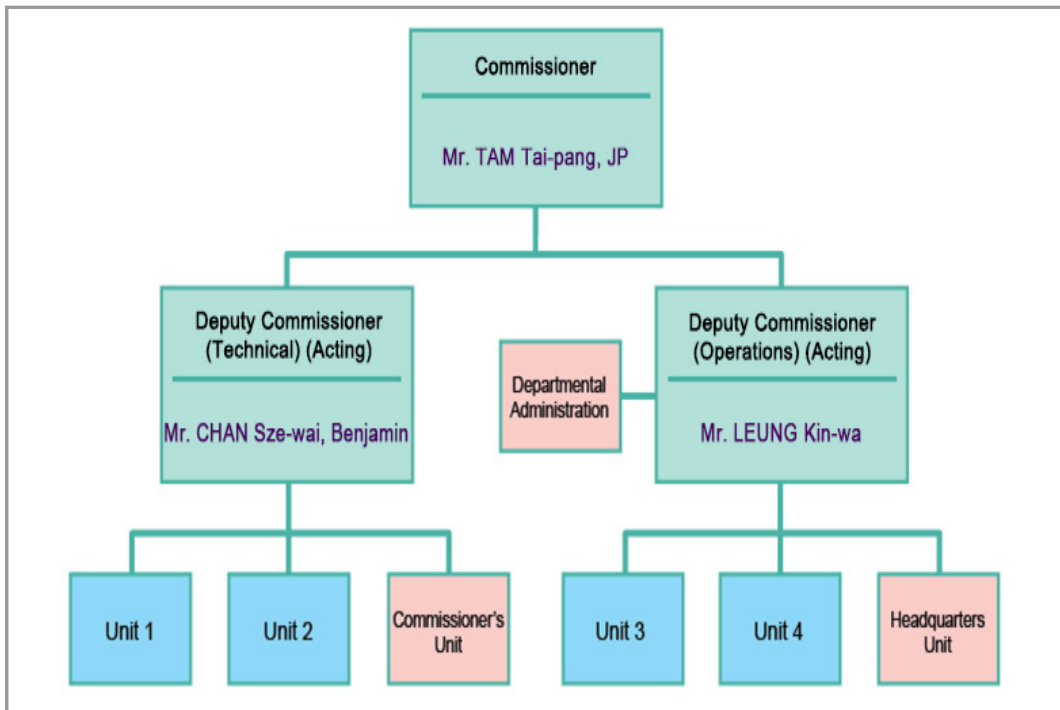
1. 세무국의 권한과 의무

홍콩에서는 세무국이 우리나라의 국세청 역할을 담당하며, 소득세, 재산세, 부동산세, 인지세, 소비세, 기타조세 등을 징수하고 관리한다.

가. 세무국의 구성

홍콩 세무국은 행정장관이 위임하는 국장, 부국장, 보조국장, 세무주임, 세무감찰 등과 국장이 위임하거나 고용하는 직원으로 구성된다.⁷⁾ 세무국의 조직도는 [그림 1-2-1]과 같다.

[그림 1-2-1] 홍콩 세무국의 조직도¹⁾



주: 1) 세무국의 조직도는 2021년 8월 2일 기준임

자료: 홍콩 세무국, "Organisation Chart," <https://www.ird.gov.hk/eng/abo/org.htm>, 검색일자: 2021. 9. 2.

7) IRO §3(2)

세무국은 큰 분류로 기술지원과(Technical)와 운영지원과(Operations)로 나뉘는데, 이들은 본부 단위로 국제조세협력·내부감사·납세자 민원·정보시스템 구축·인사 관리 등의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본부 단위 아래에는 각 과(Unit)가 있는데, 1과는 이윤세, 2과는 급여소득세·재산세, 3과는 인지세·소비세·기타조세, 4과는 현장감사 및 조사 등의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2021년 8월 2일 기준 세무국 소속 직원은 총 2,933명이다.

나. 세무국의 권한 및 기능⁸⁾

홍콩 세무국은 세무조례를 시행하기 위해 행정장관의 위임을 받은 정부기관으로 국세의 징수 및 관리 권한을 가지고 있으며, 조세 문제와 관련하여 관계 부처 및 법정 기관에 연락하고 조언하는 기능을 한다. 또한 국제적인 조세 문제에 있어 홍콩정부를 대변한다. 법률에 따라 재산세 담당자나 상속세 위원이 법률에 따라 면허 또는 허가를 발급하고, 부동산의 가치 평가와 관련하여 정부 및 법정 기관에 서비스 및 조언을 제공한다. 세무조례에 규정된 권한 외에도 타 법에 규정된 권한 및 기능을 이행할 수도 있으며, 행정장관이 부여하는 기타 기능 역시 수행한다.

이에 따라 세무국은 상기한 기능들을 수행하기 위해 요구되는 모든 일을 수행할 권한을 가진다. 이와 관련하여 세무국은 계약을 체결하고 회사 설립에 직·간접적으로 참여할 수 있고, 세무국이 제공하는 서비스에 대해 비용을 청구할 수 있다. 또한 과세에 대한 이해를 증진시키기 위해 단독 혹은 타 기관과의 협업으로 국제기구 활동에 참여할 수 있으며, 다른 국가의 과세관청에 교육 훈련이나 기술적 지원을 제공할 수 있다.

2. 세무국의 관할 구역

세무국의 관할 구역은 홍콩특별행정구 전체로 별도의 하위 조직 없이 국가 조세 업무 전반을 관할하고 있다.

8) 홍콩 세무국, "About us," <https://www.ird.gov.hk/eng/abo/mis.htm>, 검색일자: 2021. 11. 25.

IV 조세법의 규범체계

1. 법령 체계의 성격⁹⁾

홍콩 반환시점을 기준으로 홍콩법률체계는 반환 전의 홍콩의 법률체계와 반환 후의 법률 체계로 나눌 수 있다. 홍콩 반환 전 홍콩입법기관은 중국 전통법률, 관습, 영국법 등의 법률연원을 기반으로 홍콩지역 법률체계의 통일성을 구현하고자 노력했지만, 「식민지법률유효법」 등과 같은 역사적인 요소로 인해 홍콩은 영국법의 특색을 갖는 법률체계가 점차적으로 형성되게 되었다.

1983년 홍콩입법기관이 제정한 ‘최고법원조례’는 홍콩의 법률체계에 있어 영국법을 홍콩에 확장 적용함을 규정하고 있다. 이후 대량의 영국판례법, 성문법이 직접 홍콩에 연용되었고, 홍콩 현지의 제정법과 판례법에 영향을 미쳐 장기적으로 홍콩법률체계에서 영국법과 식민지법의 특색이 동시에 출현하게 하는 요소가 되었다. 홍콩법의 근간이 되는 연원에는 <표 1-2-3>과 같은 법률이 포함된다.

<표 1-2-3> 홍콩법의 근간이 되는 법률연원

구분	해당 법률
1 헌법성 법률 ¹⁾ (憲法性法律)	· 영황제고(英皇制誥) · 황실훈령(皇室訓令) · 황실헌장(皇室憲章)
2 성문법 ²⁾ (成文法)	· 영국법률 · 조례(條例) · 부속법령(附屬立法)
3 영국의 판례법	· 보통법(普通法) · 형평법(衡平法)

주: 1) 영국은 직접 통치하게 된 홍콩지역에 대해 황실의 칙령을 제정하였는데, 이를 헌법성 법률이라 칭하였고, 헌법성 법률 제정을 계기로 홍콩의 정치제도를 전면적으로 확립하는 계기가 됨

2) 성문법은 홍콩에 적용하는 영국법률과 홍콩의 입법기관이 제정한 조례, 부속법령으로 구성되는데, 1865년 「식민지법률유효법」에 따라 영국의회의 제한을 받아 제정됨

자료: 세계법제정보센터, 「홍콩의 법률체계」, <https://world.moleg.go.kr/web/wli/rsrchReprtListPage.do?searchNtnlCls=1&searchNtnl=HK>, 검색일자: 2021. 9. 8.

9) 세계법제정보센터, 「홍콩의 법률체계」, 2014, pp. 2~7.

홍콩 반환 후 짙은 식민지적 색채를 띤 영국의 헌법성 법률 등은 폐기하고 이를 대체할 것으로 「홍콩특별행정구기본법」을 제정하여 홍콩의 반환 전 법률(보통법 및 형평법, 조례, 부속법령, 관습법) 중 「홍콩특별행정구기본법」과 상호 저촉되지 않는 법률을 유지하면서 중국 법령체계와는 다른 홍콩만의 특색 있는 법령체계의 성격을 띠면서 현재에 이르고 있다.

2. 법원성¹⁰⁾

홍콩의 법은 「홍콩특별행정구기본법」, ‘조례(Ordinance)’, ‘부속법령’ 그리고 ‘판례’ 등 4개의 기둥을 기초로 한다. 「홍콩특별행정구기본법」은 중화인민공화국 전국인민회의에서 제정 및 감독권한이 있지만 「홍콩특별행정구기본법」 제108조¹¹⁾에 의거하여, 홍콩입법기관이 제정하는 조례·부속법령 등은 성문법원에 포함된다. 세법과 관련하여 홍콩입법기관이 제정한 조례는 <표 1-2-4>와 같다.

<표 1-2-4> 홍콩입법기관이 제정한 조례

구분			해당 법률
1	이윤세, 급여소득세, 재산세, 부동산세	Cap.112	세무조례(Inland Revenue Ordinance)
2	인지세	Cap.117	인지세 조례(Stamp Duty Ordinance)
3	도박세	Cap.108	도박세 조례(Betting Duty Ordinance)
4	사업등록세	Cap.310	사업등록세 조례(Business Registration Ordinance)
5	호텔숙박세	Cap.348	숙박업 조례(Hotel and Guesthouse Accommodation Tax Ordinance)
6	주세, 담배세, 유류세	Cap.109	과세물품 조례(Dutiable Commodities Ordinance)
7	공항출국세	Cap.140	공항출국조례(Air Passenger Departure Tax Ordinance)
8	자동차 최초등록세	Cap.330	최초등록조례(First Registration Ordinance)
9	상속·증여세 ¹⁾	Cap.111	재산세 조례(Estate Duty Ordinance)

주: 1) 상속세는 2006년 2월 11일 전에 사망한 고인에 대해서만 적용됨

자료: 홍콩 세무국, “Ordinances Administered,” <https://www.ird.gov.hk/eng/abo/ord.htm>, 검색일자: 2021. 9. 2.

10) 홍콩 세무국, “Ordinances Administered,” <https://www.ird.gov.hk/eng/abo/ord.htm>, 검색일자: 2021. 9. 8.

11) 홍콩특별행정구는 원래 홍콩에서 시행하던 조세정책을 참조하여 자체적으로 법을 제정하여 세금의 종류, 세율, 세수의 면제와 그 밖의 세무사항을 규정함

각 조례는 영연방국가에서 일반적으로 채용하던 원칙들을 수용하여 제정되었으며, 현재에도 제정 당시의 골격을 그대로 유지하고 있으며, 각 조례를 근거로 세금의 부과와 징수가 이루어지고 있다.

조례 외에도 세무규칙과 세무해석(Departmental Interpretation & Practice Notes, DIPN) 등이 있는데, 세무규칙은 각 조례를 보완하기 위함이고, 세무해석은 각 조례 및 규칙에 대한 견해를 설명한 해석이다. 세무해석은 법률상 구속력은 없지만 우리나라와 마찬가지로 과세상 관례로 정착된 경우에는 구속력을 갖기도 한다.

V 홍콩 세법의 구성

1. 소득의 원천

과세소득의 범위를 결정하는 방식에는 전 세계소득 과세방식(worldwide tax system)과 원천지국 과세방식이 있다. 전 세계소득 과세방식에 의하면 소득의 원천이 국내인지 국외인지를 불문하고 거주자의 전 세계소득에 대해 과세한다. 반면 원천지국 과세방식에 의하면 국내원천소득만 과세대상으로 삼는다. 이에 대해 홍콩은 원천지국 과세방식을 채택하고 있다. 즉 원천지국 과세방식에 따라 국내원천소득에 대해서 과세하며, 홍콩 이외의 지역에 원천을 둔 소득은 과세하지 않는다.

2. 과세방식

홍콩은 분류과세 시스템(schedular system)을 가지고 있다. 즉 급여소득에 대해서는 급여소득세, 사업소득에 대해서는 이윤세, 부동산소득에 대해서는 재산세가 부과된다. 개인의 경우에는 소득종류별 분류과세와 종합과세 중 하나를 선택할 수 있다. 일반적인 종합과세는 개인의 소득을 모두 합하여 보다 높은 누진세율을 적용하고자 하는 것이 목적이지만, 홍콩은 이와 반대로 개인의 급여소득과 사업소득 그리고 부동산소득을 합하여 다양한 혜택을 주고자 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 소득종류별 분류과세를 선택한 경우 세무조례에 명시된 단일세율이 적용되나, 종합과세를 선택한 경우 과세구간별 누진세율이 적용된다.

3. 과세연도¹²⁾

과세연도는 매년 4월 1일부터 개시하여 익년 3월 31일에 종료하는 12개월의 기간을 말한다. 예를 들면 2021년 3월 31일로 종료되는 회계연도에 대해서는 2020/2021과세연도(the year of assessment 2020/2021)라고 부른다.

12) IBFD, "Hong Kong - Individual Taxation sec. 1.11.1. Tax returns," https://research.ibfd.org/#/doc?url=/linkresolver/static/ita_hk_s_1.&refresh=1647303655062%23ita_hk_s_1.10. 검색일자: 2021. 11. 25.

4. 세무행정

가. 소득의 신고¹³⁾

세무공무원은 합리적인 기한 이내에 특정한 소득에 관한 신고서를 제출하도록 납세의무자에게 서면 또는 과세통지서 등의 방법으로 통보한다. 과세통지서는 통상 4월 또는 5월에 납세자에게 발송되며, 납세자는 발급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서면 또는 전자로 작성하여 세무국에 제출하여야 한다. 신고기한은 질병, 사망, 기타 이유 등 합리적인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연장할 수 있다.

나. 납세고지

세무공무원은 세금의 부과, 예납세액의 부과 등의 권한을 가지고 있다.¹⁴⁾ 세무공무원은 일반적으로 제출한 신고에 대하여 이의가 없는 경우 신고서를 수리하고 이에 따라 납부세액 또는 예납세액을 고지하나, 적법한 신고가 없거나 신고서를 수리할 수 없는 경우에는 추계에 의하여 고지한다.¹⁵⁾ 다음의 경우에는 각각의 소득에 대하여 추계에 의하여 세금을 부과한다.

- i) 지정된 신고서 제출기한이 경과한 경우
- ii) 납세의무자가 홍콩을 떠난다고 세무공무원이 판단하는 경우
- iii) 과세기간 종료 후 6년 이내에 세무공무원이 추가로 특정소득에 대하여 과세하여야 한다고 판단하는 경우(고의 또는 사기의 경우에는 10년 이내)

다. 예납세액

이윤세,¹⁶⁾ 급여소득세,¹⁷⁾ 재산세¹⁸⁾의 납세의무가 있는 납세자는 예납세액을 납부할 의무가 있다. 과세절차는 세 가지 세목이 모두 동일하며 납부할 예납세액은 직전년 또는 익년의 과세표준을 기준으로 부과한다.

최종과세표준이 확정되면 확정고지를 하게 되며, 이때 기납부한 예납세액을 차감한다. 최종 납부세액 대비 예납세액의 과부족액은 다음 과세연도의 예납세액에 가산 또는 상계한다.

13) IRO §2

14) IRO §59

15) IRO §60

16) IRO §63G

17) IRO §63B

18) IRO §63L

라. 납부

납부유예를 제외하고 납세자는 고지서 내에 지정된 일자 또는 세무국장이 지정한 날 이전에 세액을 납부해야 한다.¹⁹⁾ 납부기한(time limit)은 세무국장의 재량에 의하여 고지서상에 지정되거나, 필요한 경우에 따라 세무국장이 직접 결정한다.²⁰⁾ 이윤세, 급여소득세 종합과세, 재산세 등은 보편적으로 두 번의 세금납부가 이뤄지는데, 공지된 과세예납 만기일에 75%를 납부하고 대략 3개월 후에 나머지 25%를 납부하게 된다. 이 외에는 과세통지를 받고 지정된 날 이전에 신고와 납부를 해야 한다.

다만 공지된 과세예납 만기일 28일 전 또는 예납에 관한 통지서 발급일로부터 14일 이내 중 늦은 시점을 기준으로 관련세액에 대한 납부유예를 신청할 수 있다.²¹⁾ 또한 과세표준 등에 대한 분쟁이 있는 경우 등에도 이의가 종결될 때까지 관련세액에 대한 납부유예를 신청할 수 있다. 다음의 경우에는 예납세액의 일부 또는 전부에 대하여 납부유예를 신청할 수 있다.²²⁾

- i) 예상되는 과세표준이 예납과세표준금액(직전연도 과세표준)의 90%를 하회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
- ii) 이용 가능한 이월결손금을 고려하지 아니한 경우
- iii) 사업연도 종료 이전에 사업 중단으로 인하여 과세표준이 직전연도 과세표준보다 낮을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
- iv) 종합과세로 납부세액을 감소할 수 있는 경우
- v) 예납과세표준이 되는 전년도의 과세처분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하고 있는 경우

마. 벌금 등 처벌규정

홍콩은 저세율의 간단한 조세체계 운영으로 납세자의 높은 납세순응도(degree of compliance)가 필요하다. 모든 납세자는 납부기한에 따라 신고서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만약 납세자가 납세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에는 세무국장의 처벌규정(punitive provision)에 따라 처벌을 받을 수 있다. 처벌규정의 주요 범주는 다음과 같다.

- i) 정확한 세무정보의 제공 및 신고서 제공의무 불이행
- ii) 비밀유지 위반행위

19) IRO §71(1)

20) IRO §62(1)

21) IRO §63E(1), §63J(1), §63O(1)

22) IRO §63E(2), §63J(2), §63O(2)

iii) 사기 및 고의적인 탈세행위

이러한 처벌규정에 해당되는 행위를 납세자가 한 경우 처벌규정에 따라 벌금이 부과되거나 징벌에 처하게 된다. 벌금 수준은 <표 1-2-5>와 같으며, 모든 조례에 적용된다.

<표 1-2-5> 벌금 수준(Penalty Levels)

(단위: 홍콩달러)

수준	가산세
Level 1	2,000
Level 2	5,000
Level 3	10,000
Level 4	25,000
Level 5	50,000
Level 6	100,000

자료: IBFD, "Hong Kong - Corporate Taxation sec. 1.11.5.2 Penalties," https://research.ibfd.org/#/doc?url=/linkresolver/static/cta_hk_s_1.11.5.&refresh=1647305155852%23cta_hk_s_1.11.5. 검색일자: 2021. 11. 23.

1) 정확한 세무정보의 제공 및 신고서 제공의무 불이행 관련 벌금

납세의무자가 합리적인 이유 없이 세무국에 정확한 세무정보를 제공하지 않거나, 신고서 제공의무 등을 위반하였을 때에는 벌금이 부과된다. 이러한 납세의무자는 세무조례에 따라 특정 기간 안에 세무정보, 신고서 등을 세무국에 제공하여야 한다. 하지만 벌금이 부과된 후에도 여전히 합리적인 이유 없이 준수하지 않은 경우 최대 level 6에 해당하는 벌금이 추가로 부과된다.²³⁾

가) 지연신고 및 납부

합리적인 이유²⁴⁾ 없이 납세자 또는 대리인이 신고서를 지연신고 및 납부하는 경우에는 납부할 세금을 포함하여 최대 10%의 과태료가 부과된다.²⁵⁾ 또한 항소 등으로 법원의 최종판결이 난 후에도 체납된 세금이 있을 시 level 3에 해당하는 벌금이 추가로 부과된다.²⁶⁾

23) IRO §80(2B), §80(2C)

24) 합리적인 이유에 대해서 세무조례에는 정의되어 있지 않지만 일반적으로 납세자가 선의에 따라 행동했다고 간주되면 합리적인 이유가 성립된다고 본다. 세무대리인에게 받은 전문적인 서비스에 따른 정보제공 및 신고, 진정한 실수, 질병 등은 합리적인 이유에 포함된다(한국조세재정연구원, 『주요국의 조세제도-홍콩편』, 2011, p. 236).

25) IRO §71(5), §71(5A)

나) 무기장

홍콩에서 산업, 전업, 업무를 경영하는 납세자가 기장의무를 합리적인 이유 없이 이행하지 않은 경우 납세자는 level 6에 해당하는 벌금이 부과된다.²⁷⁾

다) 부정확한 자료

납세자가 합리적인 이유 없이 신고서상 부정확한 자료를 세무국에 제공한 경우에는 level 3에 해당하는 벌금이 부과된다. 또한 자료의 누락, 과소신고, 위법행위를 선동하거나 부추기거나 도와준 사람도 납세의무자와 동일하게 벌금이 부과된다.²⁸⁾

2) 비밀유지 위반행위

홍콩의 세무공무원이 납세자의 과세정보 등을 타인에게 제공하거나 누설하여 비밀유지를 이행하지 못했을 경우에는 level 5에 해당하는 벌금이 부과된다.²⁹⁾ 다만 감정원, 인지세징수관, 법원(세무상소위원회 불복, 항소 등의 이유), 사업등록법 등에 따라 세무국장이나 세무국에 의해 허락된 공무원 등이 과세정보를 요구하는 경우에는 납세자의 과세정보를 제공할 수 있다.

3) 사기 및 고의적인 탈세행위

탈세를 목적으로 고의적으로 사기나 그 밖의 부정행위를 범한 자는 level 3에 해당하는 벌금이 부과되거나, 죄행으로 인해 과소징수된 세금의 3배에 상당한 벌금을 내야 하거나, 6개월의 징역에 처해진다.³⁰⁾

사기 및 고의적인 탈세행위란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³¹⁾

- i) 신고서 작성 시 소득 등을 누락 또는 은폐
- ii) 공제 신청 시 거짓 증빙

26) IRO §80(1)

27) IRO §80(1A)

28) IRO §80(2), §80(4)

29) IRO §4(1), §4(2), §81(1)

30) IRO §82(1A)(a)

31) IRO §82(1)

iii) 이중장부의 작성 등 장부의 거짓 기장 및 장부의 허위기록 등 잘못된 정보

만약 납세자가 기소판결을 받았을 경우에는 가중형량으로 level 5에 해당하는 벌금이 부과되거나, 죄행으로 인해 과소징수된 세금의 3배에 상당한 벌금을 내야 하거나, 3년의 징역에 처해진다.³²⁾

32) IRO §82(1A)(b)

VI 조세불복제도

1. 불복청구

세무국은 보통 불복청구 이전에 과세결정 논쟁에 대한 상호합의를 시도한다. 협상에서 합의에 실패한 경우에 납세자는 세무국장에게 세법에 따른 과세결정에 불복하는 불복청구를 할 수 있다. 불복청구를 하고자 하는 납세자는 불복청구서에 불복사유를 상세히 기술하여 유관한 과세통지서 발급일로부터 1달 이내에 세무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추계과세에 대한 불복을 신청했을 때에는 신고서를 반드시 불복청구 기한 내에 제출하여야만 불복청구가 가능하다.³³⁾

불복청구의 내용이나 절차 등이 적합하지 아니하여 유효한 불복청구가 되지 못하는 경우에 세무국은 납세자에게 보정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 보정요구를 받은 이의 신청인은 보정사항을 처리하여 다시 불복신청을 하여야 한다. 불복청구의 결정에 불복할 경우에 납세자는 세무상소위원회에 심판청구나 법원에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가. 불복청구인

이의신청의 결정에 불복하는 납세자는 과세결정의 직접적인 상대방인 본래의 납세의무자에 한하지 않고, 제3자적 지위에 있는 자도 포함한다. 따라서 사망한 납세자의 유언집행자, 사망한 납세자의 재산관리자, 파트너십의 파트너, 공동기업(joint venture)의 참여대상자, 비거주자의 대리인, 부부합산과세(Joint Assessment of Spouses)상의 배우자도 본래의 납세의무자 대신 이의신청 불복청구를 제기할 수 있다.³⁴⁾

나. 불복청구요건

1) 불복청구기한

불복신청서는 과세통지서 발급일로부터 1달 이내에 제출하여야 한다.³⁵⁾ 그러나 불복청구인이 질병, 홍콩 내 부재, 기타 다른 합리적인 이유로 불복청구할 수 없을 때에는 세무국장의 재량에 의하여 불복청구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³⁶⁾

33) IRO §64(1)(b)

34) IRO §22A, §64(7)(c), §64(8)

35) IRO §64(1)

2) 불복청구형식

불복신청서는 불복사유를 상세히 작성하여 서면으로 제출하여야 한다.³⁷⁾ 불복사유는 법적 형식을 따를 필요는 없지만, 세무국장이 이해하기에 명확하게 작성하여야 한다. 단순히 불복 청구인이 과세결정에 동의하지 못한다는 사유는 충분한 불복사유가 되지 못한다. 불복신청서에는 ‘불복한다(Object)’라는 단어가 기재되어 있어야 하며, ‘과세결정에 만족하지 못한다’, ‘과세결정을 받아들일 수 없다’라는 단순 표시로는 불복청구형식을 준수한다고 볼 수 없다.³⁸⁾

다. 불복청구 심리절차

불복청구서를 받은 세무국은 불복청구의 제기에 있어 청구인이 적격 청구대상인지 여부, 청구기간의 준수 등 형식적인 요건을 심리한다. 적격한 이의신청이 아닌 경우에는 청구인에게 보정요구를 할 수 있다.

불복청구서의 형식적인 요건 심리 이후 불복청구에 대한 상호합의절차가 개시된다.³⁹⁾ 세무국장이 납세자의 과세결정에 대한 조사를 실시하는데, 조사 시 청구인 또는 해당 과세에 유관한 자를 소환하거나, 추가 자료를 요청할 수 있다. 조사 후 불복청구에 이유가 있다고 판단되면, 상호합의절차에서 협의를 통한 필요한 조정을 한다.⁴⁰⁾

상호합의절차에서 협의를 달성하지 못한 경우, 세무국장은 불복청구건에 대한 확정, 취소·경정결정, 필요한 처분 등을 결정한다. 불복청구에 대한 결정기간은 불복청구를 받은 날로부터 1달 이내로, 세무국장은 서면으로 결정의 종류에 대한 설명을 기재하여 청구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⁴¹⁾

불복청구인이 세무국장의 결정에 동의하는 경우에는 그 결정은 최종 확정된다.⁴²⁾ 하지만 불복청구인이 세무국장의 결정에 대하여 불복하는 경우에는 세무상소위원회에 심판청구를 요청할 수 있다.

36) IRO §64(1)(a)

37) IRO §64(1)

38) 한국조세재정연구원(2011), p. 243.

39) IRO §64(2)

40) IRO §64(3)

41) IRO §64(4)

42) IRO §70

2. 심판청구

세무상소위원회(Board of Review)는 우리나라의 조세심판원과 비슷한 기구로 납세자가 세무국장의 결정에 불복하는 경우에 세무상소위원회에 심판청구(Appeal to the Board of Review)를 할 수 있다.⁴³⁾ 세무상소위원회의 결정에 불복하는 납세자는 다시 항소법원에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세무상소위원회는 심판청구된 사항의 심리와 결정을 위해 구성된 독립된 심판기관이다. 세무상소위원회는 1명의 의장과 10명의 심판원(deputy chairman), 최대 150명의 위원으로 구성되어 있다. 세무상소위원회의 구성원은 법률적 훈련을 거친, 법률적 경험이 있는 자이어야 하며, 임기는 3년이다.⁴⁴⁾ 세무상소위원회 의장과 의장에 의해 지명된 최소 2인의 심판원으로 구성된 3인 이상의 소위원회는 세무상소위원회에 의제된 모든 사항을 결정하기 위한 심판관회의를 개최할 권한을 가진다.⁴⁵⁾ 심판관회의에 출석한 위원의 과반수 의결로 세무상소위원회에 의제된 사항들이 결정되며, 동수 때는 청문회를 주최한 의장 및 심판관 등 소위원회가 원래의 투표권 외에 결정투표를 행사할 수 있다.⁴⁶⁾

가. 심판청구요건

1) 심판청구 기한

세무국장의 결정에 불복하는 납세자는 세무국장에게 결정통지서를 받은 날로부터 1달 이내에 세무상소위원회에 심판청구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⁴⁷⁾ 그러나 심판청구인이 질병, 홍콩 내 부재, 기타 다른 합리적인 이유로 심판청구할 수 없을 때에는 세무상소위원회의 재량에 의하여 심판청구신청서 제출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⁴⁸⁾

2) 심판청구 신청

심판청구신청 시 납세자 직접 또는 대리인이 서면으로 세무국장의 결정통지서(복사본) 1

43) IRO §66

44) IRO §65(1)

45) IRO §65(4)(a), §65(4)(b)

46) IRO §65(4)(e)

47) IRO §66(1)(a)

48) IRO §66(1A)

부, 심판청구이유를 상세히 기술한 심판청구신청서 1부 등을 세무상소위원회 서기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⁴⁹⁾

나. 심판청구절차

세무상소위원회에 의한 심판청구는 심판청구신청서를 받은 날로부터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바로 심리가 시작된다. 심판청구한 납세자와 세무국장은 세무상소위원회의 심리일 통지 당일로부터 14일간 조정기간(clear day)을 갖는다.⁵⁰⁾ 이 기간에 세무국장과 청구인 간에 원활한 과세조정 등의 협의로 심판청구를 철회할 수도 있고,⁵¹⁾ 또는 청구인의 심리변화 등의 요인으로 심판청구를 철회할 수도 있다.⁵²⁾ 하지만 세무국장과 청구인 간에 협의에 의해 심판청구를 철회한 경우에는 세무상소위원회의 심리를 거쳐야 철회가 가능하다.⁵³⁾

청구인 및 세무국장(또는 세무국장의 대리인)은 심판관회의에 참석해야 하며,⁵⁴⁾ 심판청구의 심리는 비공개로 진행된다. 다만 청구인의 신분이 노출하지 않는 방식으로 승인받은 간행물 등에 공유될 수 있다.⁵⁵⁾ 심판청구에 청구인이 불참석할 경우에 세무상소위원회의 재량에 따라 해당 심판청구를 기각, 연기, 인용 등의 결정을 내릴 수 있다. 다만 심리일 7일 이전에 세무상소위원회 서기에게 질병, 홍콩 내 부재 등 합리적인 이유를 작성하여 제출하는 경우에는 청구인 부재에도 심판관회의는 진행될 수 있다.⁵⁶⁾

청구인은 과세결정에 대한 입증책임(onus of proof)이 있으며,⁵⁷⁾ 세무상소위원회에서 요구하는 과세자료 등을 제출해야 하나, 세무상소위원회의 심판청구 과정에서 청구인 외 증거를 제공할 수 있는 자가 있다면 심리를 위해 심판관회의 증인출석을 요구할 수도 있다.⁵⁸⁾ 세무상소위원회는 심리 후에 심판청구에 대한 확인, 감경, 증가, 취소 등을 결정하여야 하며, 결정 후 세무상소위원회의 의견을 별첨하여 세무국장에게 반려하여 처리하도록 한다.⁵⁹⁾ 심판청구의 내용 등에 보정할 사항이 경미한 경우에는 세무상소위원회 직권으로 보정할 수 있다.

49) IRO §66(1)
 50) IRO §68(1)
 51) IRO §68(1B)
 52) IRO §68(1A)
 53) IRO §68(1E)
 54) IRO §68(2), §68(3)
 55) IRO §68(5)
 56) IRO §68(2D)
 57) IRO §68(4)
 58) IRO §68(6)
 59) IRO §68(8)

세무상소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심판청구한 과세내용을 감경하거나 취소하지 않는 경우, 청구인에게 최대 5천홍콩달러까지 위원회의 소송비용으로 쓰도록 납부명령을 할 수 있다.⁶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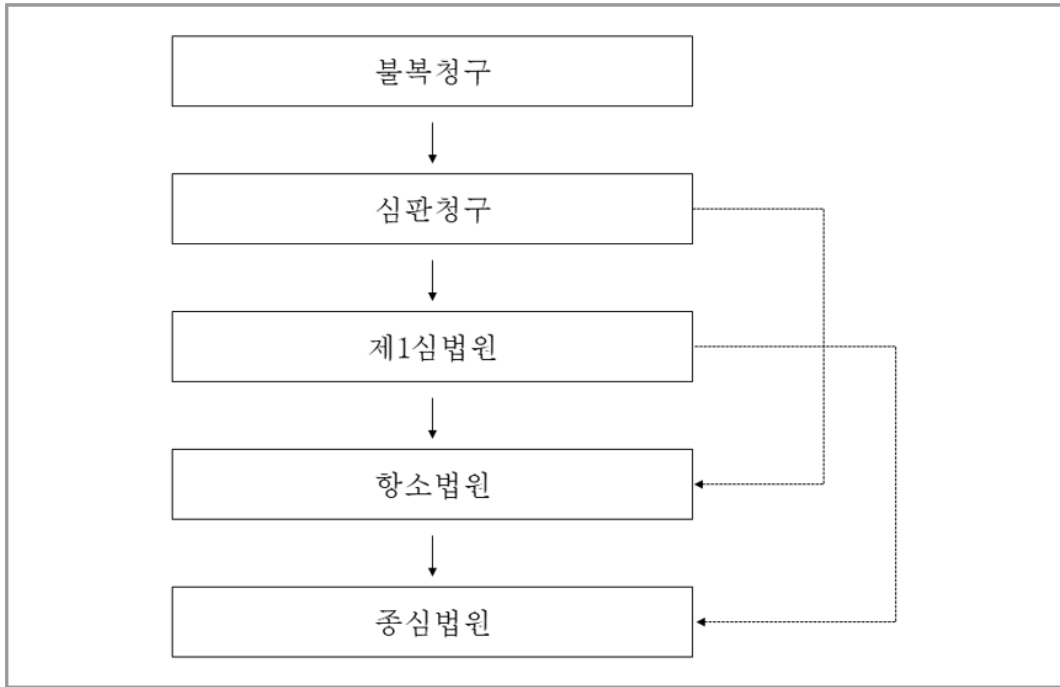
3. 항소

세무상소위원회의 심판청구 결정에 불복하는 경우 납세자 또는 세무국장은 제1심법원(Court of First Instance) 또는 항소법원(Court of Appeal)에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납세자와 세무국장이 동의하는 경우에는 불복청구 이후 세무상소위원회의 심판청구 없이 직접 제1심법원에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⁶¹⁾ 또한 제1심법원의 판결에 불복하는 경우 항소법원 또는 종심법원(Court of Final Appeal)에 직접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납세자가 불복청구, 심판청구에도 과세결정에 불복하는 경우 항소단계를 살펴보면 [그림 1-2-2]와 같다.

60) IRO §68(9)

61) IRO §67(1)

[그림 1-2-2] 항소단계



자료: 한국조세재정연구원, 『주요국의 조세제도-홍콩편』, 2011, p. 248의 자료를 저자 정리함

가. 제1심법원

세무상소위원회의 심판청구 결정에 불복하는 경우 청구인 또는 세무국장은 제1심법원에 세무상소위원회의 심판청구 결정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21일 이내에 소송을 제기하여야 한다.⁶²⁾ 다만 청구인과 세무국장의 서면 신청에 따라 청구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제1심법원에 소송을 제기한 경우에는 그 소송신청서를 세무상소위원회에도 송부하여야 한다.⁶³⁾ 제1심법원에 소송을 제기한 청구인 또는 세무국장은 소송철회를 할 수 없으며, 소송비나 기타 사항에 대한 명령을 이행한 후 법원의 동의하에 소송철회가 가능하다.⁶⁴⁾

제1심법원의 심리는 세무상소위원회의 심판청구보다 공식적이며, 비용이 많이 소요된다. 제1심법원은 심리를 수행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통지하여야 한다.⁶⁵⁾ 세무국장은 심리에

62) IRO §67(2)(a)

63) IRO §67(2)(b)

64) IRO §67(6)

65) IRO §67(5)(a)

참석할 수도 있으며,⁶⁶⁾ 청구인은 필요한 처분 결정을 받지 못하여 세부담이 과대하다거나 부정확한 처분을 받았다는 입증책임이 있다.⁶⁷⁾

나. 항소법원 또는 종심법원

청구인과 세무국장은 세무상소위원회의 심판청구 결정에 불복하는 경우 제1심법원이 아닌 항소법원에 1차로 소송을 제기할 수 있으며, 제1심법원의 결정 등 통지를 받은 후 항소법원이나 종심법원에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또는 세무상소위원회의 심판청구 결정 후 제1심법원, 항소법원에 소송을 제기한 후에 종심법원에 소송을 제기할 수도 있다.

소송의 중요도와 사회적 관심이 높거나, 매우 복잡한 문제인 경우에 항소법원 및 종심법원 등에 항소가 인정되며,⁶⁸⁾ 항소법원에서 종심법원으로의 소송 제기 건은 가장 마지막의 조세 불복소송이 된다.

66) IRO §67(5)(b)

67) IRO §67(5)(d)

68) IRO §69A(2)

제2편 주요 세법

제1장 법인소득세

제2장 급여소득세

제3장 재산세제

제4장 국제조세

제5장 기타 조세

제1장 | 법인소득세

I 개관

홍콩의 법인소득세는 법인에 대한 이윤세(profits tax)라고 불리며, 홍콩에서 발생한 소득(자본성 자산(capital assets) 관련 제외)과 관련하여 거래(trade)·영업(business) 또는 전문직(profession)을 영위하는 모든 인격체(person)에 부과된다.⁶⁹⁾ 이윤세가 부과되는 인격체에는 회사, 파트너십, 수탁자(trustee)를 포함하며, 법인 여부 또는 대리인 관여 여부에 불문하고 적용된다.⁷⁰⁾ 홍콩에서 사업을 수행하는 외국법인에도 내국법인과 동일한 기준으로 이윤세가 부과된다. 각 납세의무자는 소득의 원천이 홍콩인 경우에 한하여 납세의무를 지며, 주식의 배당금(dividend)이나 자본이득(capital gains), 역외소득(offshore income)에 대하여는 이윤세가 면제된다. 홍콩에서 거래·영업 또는 전문직을 영위하지 않는 납세자에게도 세무조례(IRO) 제15조의 간주규정에 따른 이윤세가 발생할 수 있다.⁷¹⁾

‘이윤(profits)’이라는 용어는 세무조례에 정의되어 있지 않다. 이윤은 일반적으로 소득에서 비용을 차감한 금액인 순이익을 일컫는다. 실무상 이윤 산정에는 세무조례와 상충되지 않는 한 일반 상업적인 원칙들이 적용되며, 과세가능이윤(assessable profits)은 회계상의 이윤을 기초로 세무조정 과정을 거쳐 산출된다.

자본성 자산의 처분에서 발생한 이윤에는 이윤세가 부과되지 않기 때문에, 납세자의 자산 특성을 정확하게 파악하는 것이 중요하다. 투자목적 주식을 보유 중에 단순히 팔았다고 해서 이를 거래목적 주식으로 취급하지 않으며, 해당 자산과 관련한 납세자의 보유 의도와 행위들이 영향을 미친다.

이윤세가 부과되는 첫 번째 조건은 납세자가 홍콩에서 거래·영업 또는 전문직을 영위하는지 여부이다. ‘거래(trade)’는 거래의 고유 성격상, 거래, 제조 및 이와 관련한 위험부담 등을 포함하는 의미를 가지며,⁷²⁾ 일반적으로 넓게 해석된다. 과세대상 거래가 존재하는지 여부를

69) IRO §14

70) IRO §2

71) BPP Learning Media Ltd, *Module D Taxation*, 2013, p. 95.

식별하기 위해 여섯 가지 거래지표(badges of trade)를 주로 검토하게 되며, 이는 다른 고려 사항을 배제하지 않는다. 다른 고려사항에는 취득 방법 및 이유,⁷³⁾ 취득 시 자금조달 방법,⁷⁴⁾ 매각자금의 활용 방법⁷⁵⁾ 등이 있다.⁷⁶⁾

〈표 2-1-1〉 과세 여부 판정 거래지표(badges of trade)

거래지표	내 용
매각되는 목적물(subject matter of the realisation)	매각되는 목적물이 개인적 향유 또는 소득 생산 목적이 아닌 경우, 해당 목적물은 거래 목적으로 취득되었을 가능성이 높다.
동기(motive)	이윤을 창출하려는 의도의 존재 여부가 관련 자산 취득을 거래목적으로 규정할 지에 영향을 미치지만, 결정적인 증거로 사용되지는 않는다.
소유기간(length of ownership)	거래 목적 자산은 소유기간이 보통 짧지만, 예외도 많다.
유사거래 빈도(frequency of similar transactions)	유사한 거래가 많이 일어난다면, 거래 목적일 가능성이 높다.
수행되는 부수업무 (supplementary work done)	자산 가치를 증가시키고 시장성을 높이기 위해 행해지는 부수업무가 있다면, 거래 목적일 가능성이 높다.
매각 원인이 되는 정황 (circumstances responsible for the realisation)	갑작스러운 비상상황에서 매각되는 자산은 목적물과 관련하여 거래 목적이 없었음을 보여줄 수도 있다.

자료: BPP Learning Media Ltd, *Module D Taxation*, 2013, pp. 96~97.

‘영업(business)’은 세무조례의 정의상 농업, 가금류 사육, 양돈, 부동산 임대 및 전대를 포함하며,⁷⁷⁾ 이에 따라 홍콩에 소재한 부동산으로부터 발생하는 임대소득이 이윤세의 과세대상에 포함된다. ‘영업’은 ‘거래’보다 넓게 해석되며, 상업적 성격의 활동들을 함축한다. 한편 ‘전문직(profession)’이라는 용어는 세무조례에 정의되어 있지 않다.

이윤세가 부과되기 위해서는 거래나 영업이 홍콩에서 수행되어야 한다. 홍콩이 아닌 장소에서 설립된 회사의 경우, 이사회가 홍콩에서 열릴 경우 해당 회사의 영업이 홍콩에서 수행된 것으로 보게 되며, 이사회가 홍콩이 아닌 장소에서 열릴 경우 고정사업장 등을 통해 홍콩에서 수행한 영업에 대하여만 이윤세가 부과된다. 홍콩에서 설립된 회사의 경우, 이사회가 홍콩에

72) IRO §2

73) 예를 들어 상속을 통해 취득한 경우, 거래 목적이 아닐 가능성이 높음

74) 예를 들어 단기자금으로 조달되었다면 단기 내에 처분 의도가 있었다고 추정됨

75) 예를 들어 매각자금이 유사한 거래 반복을 위해 계속 보유될 수 있을 것임

76) BPP Learning Media Ltd, *Module D Taxation*, 2013, pp. 96~99.

77) IRO §2

서 열릴 경우 해당 회사의 영업이 홍콩에서 수행된 것으로 보게 되지만, 이사회가 홍콩이 아닌 장소에서 열릴 경우 해당 회사의 영업은 홍콩에서 수행되지 않는다는 주장이 있을 수 있다.⁷⁸⁾ 세무국은 이와 같은 해석의 여지를 줄이기 위해 1998년 3월, 소득의 원천지 구분에 관한 DIPN(Departmental Interpretation and Practice Notes) No.21(Locality of profits)의 내용을 개정하였으며, 1998년 4월부터는 수익자 부담의 원칙하에 소득의 원천지에 관해 사전답변제도(advance ruling)를 제공하고 있다.

이윤세 과세대상 납세자는 매년 3월 31일까지 소득신고서를 제출하고, 직전 회계연도의 이익을 근거로 한 추계소득세(provisional profits tax)를 납부하여야 한다. 세무당국에 의한 최종평가액 결정으로 초과 납부금액이 발생하면 동 금액은 이월되어 다음해 추계 이윤세 납부 시 충당된다.

이윤세를 살펴보는 이 장의 구성은 제1절 개관을 비롯하여 제2절 납세의무자, 제3절 과세대상 소득, 제4절 공제 항목, 제5절 기타 주제, 제6절 납부세액의 산출, 제7절 신고와 납부, 제8절 원천징수제도로 구성되어 있으며, 해당 주제와 관련하여 각 절에서 자세히 살펴본다.

78) BPP Learning Media Ltd, *Module D Taxation*, 2013, p. 100.

II 납세의무자⁷⁹⁾

세무조례에서는 이윤세 납세의무자를 법인(corporation), 파트너십(partnership), 수탁자(trustee), 법인체(bodies of person)로 정의하고 있다. 이러한 과세대상자는 각각의 설립 형태가 다르고, 소득에 대한 과세나 신고 등의 형태가 각각 상이하다. 자선 관련 단체나 회원에 의해 운영되는 클럽 등은 과세대상에서 제외된다. 또한 홍콩은 속지주의 원칙에 근거하므로 거주자와 비거주자 모두 납세의 의무를 진다.

납세의무자를 살펴보면 먼저 법인(corporation)은 홍콩 국내에 등록되거나 주식(유한)회사로 신고된 모든 회사를 의미하지만, 사회단체나 무역협회 등은 포함되지 않는다.⁸⁰⁾

둘째, 파트너십(partnership)은 이윤을 목적으로 2인 이상의 개인이나 단체가 법인화하지 않고 자산이나 노동력을 제공하는 사업체이다. 또한 파트너십의 경우는 소득을 신고하는 개체로서 소유주를 위한 도관업체의 역할만을 하므로 신고된 파트너십은 직접 세금을 납부하지 않고 각각의 파트너에게 전가된다. 그래서 파트너십의 소득, 경비, 손실, 공제는 파트너가 개인 차원에서 소득에 대한 신고를 하게 된다.

셋째, 수탁자(trustee)는 위탁자로부터 특정의 재산권을 이전받아 수익자의 이익을 위하여 그 재산권을 관리, 처분하는 자로서 정의된다. 그러므로 수탁자에 대한 과세는 수탁자 자신 소유 이윤에 대해서만 과세되는 것으로, 그러한 활동을 수행하는 법인이나 단체에 과세되는 것은 아니다. 그러므로 수탁자가 과세대상 거래를 수반한 경우는 그 이윤이 수탁자에게 속하는 것인지 아니면 다른 사람에게 속하는 것인지를 명확히 하는 것이 중요하다.

넷째, 법인체(bodies of person)⁸¹⁾는 그것이 법인이든지 법인이 아니든지 관계가 없으며, 정치단체, 단체조직, 공제조합, 조합, 사회단체를 모두 포괄하는 의미이다. 자선 관련 법인체나 후원금 등으로 운영되는 협회나 클럽의 경우는 과세대상에서 제외된다. 과세대상에서 제외되는 단체로는 오로지 자선을 목적으로 이윤을 획득하는 자선기관이나 공공 목적의 신탁회사가 홍콩 역내에 존재하는 경우 과세대상에서 제외되고, 총 경상수입의 적어도 절반 이상을 회원의 후원금·기부금 및 입장료 등으로 수취하는 무역협회나 클럽 및 이와 유사한 기관의 경우에도 과세대상에서 제외된다.

홍콩은 속지주의에 기초하여 과세하므로 과세의 의무가 거주자 여부에 의해 결정되는 것

79) 한국조세재정연구원(2011), p. 87~89.

80) IRO §2(1)

81) IRO §2(1)

이 아니라 소득의 원천에 의해 결정된다. 그러므로 홍콩의 거래·영업 또는 전문직에서 발생한 이익이거나 이익으로 간주되는 경우에는 거주자와 비거주자 모두 납세의 의무를 가진다.

비거주자가 비록 대리인을 통하여 거래를 행하는 경우에도, 홍콩에서 거래·영업 또는 전문직으로부터 발생된 모든 소득에 대하여 직접 또는 대리인의 명의로 세금을 납부할 의무가 있다. 비거주자의 자산이나 대리인의 명의로 세금이 과세되는 경우, 그들이 점유하고 있는 본인의 자산에서 세금납부를 위해 필요한 충분한 자금을 유보해야 한다. 또한 비거주자와 거주자가 공동으로 사업을 수행하는 경우 거주자에게 독립된 관점에서 발생할 것으로 기대되는 이익이 발생하지 않거나 적게 발생되었다면 그 사업은 거주자를 대리인으로 하여 비거주자가 홍콩에서 사업을 수행하는 것으로 간주한다. 홍콩에서 수행된 사업으로부터 발생한 비거주자의 이익이 자발적으로 확인되지 않는다면 거래총액에서 일정한 비율을 적용하여 산정한다. 또한 주 사무실이 홍콩 외부에 있는 비거주자가 홍콩사업장의 실제 이익을 과소 계상한 경우, 과세비율을 그 지점의 전체 매출액 대비 홍콩 내에서의 매출액 비율을 계산하여 이 금액을 과세를 위한 기준금액으로 산정하여 과세하기도 한다.

III 과세대상 소득

1. 과세소득

가. 과세소득 일반

세무조례에 따라 홍콩에 원천을 둔 과세가능이윤이 거래·영업 또는 전문직(trade, business or profession)에서 발생한 것이라면 모두 납세의무를 가지며 이윤세(profits tax) 과세대상이 된다. 즉 홍콩에서 거래·영업 또는 전문직을 영위하는 자가 그러한 거래·영업 또는 전문직으로부터 홍콩을 원천으로 얻은 모든 소득(자본성 자산의 양도차익 제외)에 대하여 과세된다. 홍콩에서 거래·영업 또는 전문직을 영위하는 개인, 법인, 파트너십, 수탁자, 법인체 등은 그 소득에 대해 이윤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세무조례에 근거하여 과세기준을 살펴보면 이윤세를 부과하기 전에 다음과 같은 3가지의 기본적인 조건을 만족해야 함을 명시하고 있다.⁸²⁾

- ① 거래·영업 또는 전문직에 종사하고 있는 자가,
- ② 거래·영업 또는 전문직 업무를 수행해야 하고,
- ③ 거래·영업 또는 전문직의 이윤은 반드시 홍콩 내에서 발생되어야 함.

첫째, 세무조례는 ‘거래(trade)’를 ‘① 모든 거래 및 제조, ② 거래의 본질을 포함하고 있는 모든 계획’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정의는 포괄적 의미만을 나타낼 뿐 ‘거래(trade)’를 판별하거나 거래의 본질을 파악하는 유일한 요소가 되지 못한다. 그러므로 과세당국은 거래를 판별하기 위해서 ‘그 거래가 어떠한 특성을 갖추고 있는가’를 검토하여 거래를 판정하는 기준으로 사용하고 있다. 과세당국은 납세자의 거래가 어떠한 특성을 갖추고 있는가를 판별하기 위해 ‘납세자가 거래에 종사하였는가’를 결정하기 위한 여섯 가지의 판정기준⁸³⁾을 제공한다.

- ① 거래의 내용
- ② 회사를 소유한 기간
- ③ 유사한 거래의 빈도나 지속성의 정도
- ④ 자산의 획득, 시장가능성, 구매를 유인하기 위해 수행한 부수적인 활동
- ⑤ 사업내용의 실현가능성이나 처분의 근거

82) IRO §14(1); 한국조세재정연구원(2011), p. 90~91.

83) CIR v. Sincere Insurance & Investment Co. Ltd. HKTC 602, 625.

⑥ 납세자의 동기

그 외에도 법정은 두 가지의 유의미한 특성을 비중 있게 고려하는데 그 기준은 ⑦ 납세자의 거래 목적과 ⑧ 납세자 거래에 상업적 목적이 존재하는가의 여부이다.

둘째, 세무조례는 ‘거래(trade)’와 마찬가지로 ‘영업(business)’에 대해서도 정의⁸⁴⁾하고 있는데, 영업에 대해서는 어떤 범주를 지정하거나 제한하는 것이 아니라 다음과 같이 실제적인 사례를 예시하여 정의하고 있다.

- ① 농업관련 기업
- ② 가금류나 돼지의 사육업
- ③ 특정기업의 토지·가옥의 임대 등
- ④ 정부를 제외한 특정인의 토지·가옥의 임대나 임차

위의 ③, ④의 범주는 자산을 소유하지 않은 회사나 개인에게 해당되는 것이므로 재산세 과세대상이 되지 못하고 이윤세 과세대상에 포함된다. 결과적으로 이러한 정의는 어떤 활동에 제한을 두는 것이 아니라 부가적인 사례를 제시하는 것이므로 납세자의 활동이 위의 열거된 특정 범주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세무조례의 범위를 넘어서 다양한 법적 사례를 토대로 포괄적인 의미로 영업활동을 판단하고 있다. 그러므로 영업(business)은 거래(trade)나 전문직(profession)보다 더 포괄적인 의미를 갖는다. 거래(trade)는 능동적 업무를 포함하고 있어야 하지만, 영업(business)은 수동적인 것도 포함한다. 즉 영업에는 이윤의 분배소득도 포함되고, 때로는 고정적 연금의 수령도 이 범주에 속하게 된다. 또한 지주회사에 의한 소득의 수령이나 단순한 예금 활동 등이 여기에 속하기도 한다. 그래서 영업의 판정기준은 ‘거래’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다음의 기준에 근거하여 포괄적으로 판단하게 된다.

- ① 이윤창출의 동기를 가지고 있는가?
- ② 영업을 영위하는 방식을 취하고, 회계장부에 기장하며, 사업수행의 구조가 영업의 형태를 갖추고 있는가?
- ③ 영업활동에 대한 평판과 규칙성을 가지고 있는가?
- ④ 영업활동의 자본 가치와 규모는 얼마인가?

세 번째로 ‘전문직(profession)’은 세무조례에 정의되어 있지 않다. 다만 전문직은 지식적인 기술이나 숙련도를 이용하여 업무에 종사하거나 독립적인 업무를 수행하는 경우를 일컫는다. 또한 실질적으로 전문적인 업무에 종사하지만 종업원으로 고용된 경우는 이윤을 목적으

84) IRO §2(1)

로 전문적인 일을 수행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윤세 과세대상이 되지 않고 급여세 과세대상이 된다. 그러므로 이윤세 과세대상 전문직을 구분하는 것은 직업이 전문적인 숙련이나 기술을 요하는 것이냐의 구분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거래나 영업의 계약관계에서 주종의 관계가 어디에 있느냐가 전문직을 결정하는 중요한 요소가 된다.

소득의 원천은 크게 능동소득(active income)과 수동소득(passive income)으로 구분할 수 있다.⁸⁵⁾ 능동소득은 일반적으로 (i) 거래 이윤, (ii) 상장 및 비상장 주식 매매이익, (iii) 제조 이윤, (iv) 수수료 또는 용역료를 포함하며, 수동소득은 일반적으로 (i) 이자 소득, (ii) 동산 및 부동산 임대 소득, (iii) 무형자산과 관련한 사용료 및 실시허가 수수료를 포함한다. 홍콩은 속지주의 원칙에 기반하여 과세하므로 소득원천지 규정을 이해하는 것이 중요하다.

나. 소득원천지

소득원천지를 판정하기 위한 원칙은 판례를 통해 정립되어 왔으며, 주로 다음의 다섯 가지 기준이 사용된다.⁸⁶⁾

- ① 운영 기준 - 실질상 소득을 발생시킨 운영장소에 소득을 귀속시킴.
- ② 계약체결 기준 - 판매계약이 이루어진 곳에 소득을 귀속시킴.
- ③ 신용제공 기준 - 차주(借主)에게 제공된 신용이 발생된 장소에 소득을 귀속시킴.
- ④ 장소 기준 - 소득이 발생하는 자산의 위치에 소득을 귀속시킴.
- ⑤ 활동 기준 - 소득을 발생시키는 활동이 수행된 장소에 소득을 귀속시킴.

소득원천지 귀속규정에 대한 해석을 돕기 위해 DIPN No.21(Locality of profits)에서 구체적인 소득원천지 사례별로 과세 여부를 제시한다.

85) BPP Learning Media Ltd, *Module D Taxation*, 2013, p. 101.

86) BPP Learning Media Ltd, *Module D Taxation*, 2013, p. 102.

〈표 2-1-2〉 소득 종류별 소득원천지 기준

소득 종류	소득원천지 기준	세무상 취급
거래 이익	계약체결 기준	구매계약과 판매계약 <ul style="list-style-type: none"> 모두 홍콩내 체결 시 → 과세 모두 홍콩외 체결 시 → 비과세 둘 중 하나만 홍콩내 체결 시 → 소득원천지를 홍콩으로 추정하되 추가 검토를 통해 확정
상장주식 처분이익	장소 기준 및 계약체결 기준	<ul style="list-style-type: none"> 홍콩외 거래소에서의 장내거래 → 비과세 홍콩외에서 체결된 매입/매각 장외거래 → 비과세
비상장주식 처분이익	계약체결 기준	<ul style="list-style-type: none"> 매입계약과 매각계약 모두 홍콩외 체결 시 → 비과세
제조 이익	활동 기준	<ul style="list-style-type: none"> 재화가 홍콩에서 제조된 경우 → 과세 재화가 부분적으로만 홍콩에서 제조된 경우 → 일반적으로 50% 과세
용역료	운영 기준	<ul style="list-style-type: none"> 용역이 홍콩외에서 이루어진 경우 → 비과세
수수료 (commission)	운영 기준	<ul style="list-style-type: none"> 수수료를 발생시킨 활동이 홍콩외에서 이루어진 경우 → 비과세
비금융기관 수취 이자소득	신용제공 기준 및 운영 기준	<ul style="list-style-type: none"> 홍콩내 대여 관련 → 과세 자금의 대여와 차입이 홍콩외에서 이루어지는 자금 대여 사업 → 비과세
대여소득	장소 기준	<ul style="list-style-type: none"> 홍콩외에 위치한 자산 대여 → 비과세
부동산 판매소득	장소 기준	<ul style="list-style-type: none"> 홍콩외에 위치한 부동산 판매 → 비과세
사용료	사용권을 허용하는 장소에 소득귀속	<ul style="list-style-type: none"> 사용권 허가계약이 홍콩에서 체결 시 → 과세
국가 간 육상운송소득	상차(上車) 기준 (안분 허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홍콩에서 승차한 승객 또는 상차된 재화 → 과세

자료: BPP Learning Media Ltd, *Module D Taxation*, 2013, pp. 103~105; DIPN No.21

다. 간주 소득

자본성 자산의 매각이익 등 특정 이익에 대해서는 이윤세가 면제되지만, 대손상각비의 환입, 과거 공제가 허용되었던 기계류 및 공장설비의 매각 등 특정한 경우는 이윤세가 발생한다. 세무조례 제15조에는 거래·영업 또는 전문직 관련하여 홍콩에서 발생한 것으로 간주하는 소득을 규정하고 있으며, 주요 내용은 〈표 2-1-3〉과 같다.⁸⁷⁾

87) BPP Learning Media Ltd, *Module D Taxation*, 2013, p. 119.

〈표 2-1-3〉 간주 소득

조례 규정	이윤세 부과 대상 간주 소득
15(1)(a)	• 영화 및 TV 필름, 테이프, 음향녹음, 또는 이와 관련한 광고물 등의 홍콩에서의 전시 및 사용과 관련하여 수취하거나 발생한 금액
15(1)(b)	• 특허권, 설계, 상표권, 저작권, 비밀공정이나 공식, 및 유사한 자산의 또는 이와 관련한 지식의 홍콩에서의 사용 또는 사용 권리와 관련하여 수취하거나 발생한 금액
15(1)(ba)	• 과세소득의 산정과정에서 공제되는 특허권, 설계, 상표권, 저작권, 비밀공정이나 공식, 및 유사한 자산의 또는 이와 관련한 지식의 홍콩 밖에서의 사용 또는 사용권과 관련하여 수취하거나 발생한 금액
15(1)(bb)	• 공연자(performer)가 홍콩에서 수행한 공연과 관련한 공연자 권리의 양도에 대한 대가로 수취하거나 발생한 금액(2018년 이후)
15(1)(bc)	• 과세소득 산정과정에서 공제되는 연구개발 활동에서 발생한 지적재산권 또는 노하우의 홍콩 밖에서의 사용 또는 사용 권리, 또는 그러한 자산이나 노하우의 홍콩 밖 사용과 직·간접적으로 관련된 지식의 전달과 관련하여 수취하거나 발생한 금액
15(1)(c)	• 홍콩에서 영위하는 거래·영업 또는 전문직과 관련해 보조금, 장려금, 이와 유사한 형태의 재정적 지원을 통해 수취하는 모든 금액. 단 자본적 지출과 관계된 금액은 제외함
15(1)(d)	• 홍콩 내의 동산의 사용 또는 사용권에 대한 대가로서 사용료, 임대료, 이와 유사한 수수료를 통해 수취하는 모든 금액
15(1)(f)	• 홍콩에서 거래·영업 또는 전문직을 영위하는 법인이 홍콩에서 얻은 이자
15(1)(g)	• 홍콩에서 거래·영업 또는 전문직을 영위하는 자(법인 제외)가 홍콩에서 얻은 이자로 거래·영업 또는 전문직의 자금과 관계된 것
15(1)(h)	• 공인받은 자발적 퇴직연금제도에 사용자가 납입한 불입금이나 강제적 퇴직연금 제도에 사용자가 납입한 자발적 불입금의 환급으로 수취하게 되는 모든 금액으로 이윤세 과세소득에서 공제가 허용되는 금액
15(1)(i),(ia),(ib)	• 다음의 소득은 발생 또는 수취 장소가 홍콩 이외 지역인 경우를 포함하여 과세소득으로 간주된다. - 금융기관이 홍콩에서 사업을 수행하는 과정에서의 수취 이자 - 비금융기관이 홍콩에서 그룹 내 자금조달 과정에서의 수취 이자 - 규제자본 담보와 관련하여 손실흡수능력(LAC) 은행의 수취 이자
15(1)(j)	• 홍콩에서 거래·영업 또는 전문직을 영위하는 법인이 예금증서 또는 환어음의 만기 상환이나 제시, 매각으로부터 홍콩에서 얻은 자본이득이나 이윤
15(1)(k)	• 홍콩에서 거래·영업 또는 전문직을 영위하는 법인 이외의 자가 예금증서 또는 환어음의 만기상환이나 제시, 매각으로부터 홍콩에서 얻은 자본이득이나 이윤으로 거래·영업 또는 전문직의 자금과 관계된 것
15(1)(l),(la),(lb)	• 다음의 소득은 자금거래 또는 계약체결 장소가 홍콩 이외 지역인 경우를 포함하여 과세소득으로 간주된다. - 금융기관이 홍콩에서 사업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수취하거나 발생한 예금증서 또는 환어음의 만기상환이나 제시, 매각으로부터 얻은 자본이득이나 이윤 - 비금융기관이 홍콩에서 그룹 내 자금조달 과정에서 수취하거나 발생한 예금증서 또는 환어음의 만기상환이나 제시, 매각으로부터 얻은 자본이득이나 이윤 - 손실흡수능력(LAC) 은행이 홍콩에서 사업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규제자본 증권의 만기 상환이나 제시, 매각으로부터 얻은 자본이득이나 이윤

〈표 2-1-3〉의 계속

조례 규정	이윤세 부과 대상 간주 소득
15(1)(m) 및 15A	• 이윤세의 과세대상인 임대료, 수입이자, 사용료 등을 수취할 권리의 이전에 대한 대가로 수령한 금액 ¹⁾
15(1)(n),(o)	• 다음의 회사가 홍콩에서 얻은 자본이득이나 이윤은 항공기나 선박이 홍콩 이외 지역에서 사용되더라도 과세소득으로 간주된다. - 항공기 사용권을 허가하거나 항공기 사업을 관리하는 회사 - 선박 사용권을 허가하거나 선박 사업을 관리하는 회사
15(2)	• 영업부채와 관련하여 공제가 허용되었으나 이후 관련 부채가 면제된 경우, 면제된 부분은 면제된 회기에 소득으로 간주됨.
15BA	• 주식 보유의도가 거래목적에서 비거래목적으로 변경될 경우, 해당 주식의 재분류일의 시장가격으로 처분되었다고 가정했을 때의 이윤
15C	• 사업중단 시 거래목적으로 보유하고 있는 주식을 사업중단일에 시장에서 매각하였다고 가정했을 때의 이윤
15D	• 사업중단 후의 수취금액 중, 사업중단 이전에 수취하였다면 과세소득을 구성하였을 금액
15F	• 홍콩비거주 계열사가 소유한 지적재산권의 개발, 강화, 유지, 보호, 사용과 관련하여, 홍콩에서의 기능수행, 위험감수, 자산제공 등의 가치창출 기여에 귀속가능한(attributable) 금액
15G	• 선박임대인이 선박 사용권리를 제공한 대가로 수취하거나 발생한 금융수수료 또는 이자

주: 1) 동 규정은 기초자산과 분리되어 거래되는 수익권에 자본성 자산 거래 시 적용되는 이윤세 면제규정이 적용되지 않도록 1987년 도입된 규정으로서, 부동산 양도 없는 임대수익권의 양도, 대출채권 양도 없는 이자수익권의 양도 등에 적용됨

자료: BPP Learning Media Ltd, *Module D Taxation*, 2013, pp. 119~121 및 세무조례 관련 조문

다음 예제를 통해 소득원천지와 관련한 특정 상황에서 세무상 취급에 대해 알아본다.

<p>예제(소득원천지 1)</p> <p>·프랑스인 과학자가 프랑스에서 건강관련 상품 제조비법을 발명하였다. 이후 홍콩에 본인을 단독주주로 하는 H사를 설립하고, H사에 상품 제조비법 사용권을 연간 HKD200,000에 허가하였다. H사는 중국 본토의 제조사인 C사와 상품 제조계약을 체결하였고, M사는 C사에 원재료, 상품 제조비법, 제조인력에 대한 교육 등을 제공하기로 하였다. C사는 공장 및 노동력을 제공하고, 제조비용을 청구하며, 완제품은 H사로 수출된다. 모든 제품은 H사가 홍콩에서 판매한다.</p> <p>(a) 연간 HKD200,000의 제조비법 사용료는 세무상 어떻게 취급되는가? (b) H사가 제조와 판매를 모두 홍콩에서 실시할 경우 HKD200,000의 제조비법 사용료는 세무상 어떻게 취급되는가? (c) 프랑스인 과학자가 상품 제조비법을 발명한 것이 아닌 홍콩의 다른 회사로부터 취득한 것이라면, HKD200,000의 제조비법 사용료는 세무상 어떻게 취급되는가?</p>
<p>해설</p> <p>·항목별 풀이는 아래와 같다.</p> <p>(a) 프랑스인 과학자는 홍콩에서 영업을 하는 것이 아니므로, 세무조례 14조에 따른 세금을 부담하지 않는다. 상품 제조비법이 중국 본토에서 사용되며, 홍콩에서 사용되는 것도 아니므로 15조(1)(b)에 따른 세금도 부담하지 않는다. 하지만 16(1)조 및 15(1)(ba)조(간주소득)에 따라 50%의 사용료에 과세가능하며, 21A조에 따라 30%가 이윤으로 간주된다. 따라서 간주소득은 HKD30,000(=HKD200,000*50%*30%)이 된다.</p> <p>(b) 제조비법이 홍콩에서 사용되므로 세무조례 15(1)(b)조에 따른 과세대상이 되며, 21A(1)(b)에 따라 30%가 이윤으로 간주되어 간주이윤은 HKD60,000(=HKD200,000*30%)이 된다.</p> <p>(c) 세무조례 21A(1)(a)조에 따라 간주이윤은 HKD200,000 전액이 된다.</p>

자료: BPP Learning Media Ltd, *Module D Taxation*, 2013, p. 121.

<p>예제(소득원천지 2)</p> <p>·의류제조사업을 영위하는 홍콩의 한 회사가 발생시킨 다음의 소득에 대한 세무처리는 어떻게 되는가?</p> <p>(a) 홍콩소재 은행에 예금한 홍콩달러에 대한 이자소득 HKD20,000 (b) 무역협회로부터 보조금 수령 HKD50,000 (c) 싱가포르 소재 은행에 양도성 예금증서(CD) 매각에 따른 이윤 HKD80,000</p>
<p>해설</p> <p>·항목별 풀이는 아래와 같다.</p> <p>(a) 회사의 주된 영업에 이자수취가 포함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HKD20,000의 이자소득은 세무조례 15(1)(f)에 따라 거래성 수취금액으로 간주된다. 이는 신용의 제공이 홍콩에서 발생하였을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하지만 이자소득 이윤세 면제조항(Exemption from Profits Tax (Interes Income) Order 1998)에 따라 해당 이자소득에는 이윤세가 부과되지 않는다.</p> <p>(b) 보조금 수령액이 자본적 지출 목적으로 사용되지 않는다면, 해당 보조금 수령액은 세무조례 15(1)(c)에 따라 거래성 수취금액으로 간주되어 이윤세가 부과된다.</p> <p>(c) 해당 금융상품의 취득 또한 홍콩외에서 이루어졌다고 가정했을 때, 매각계약이 홍콩외에서 체결되었으므로 세무조례 15(1)(j)에 따라 비과세 처리된다.</p>

자료: BPP Learning Media Ltd, *Module D Taxation*, 2013, p. 122.

2. 비과세소득

가. 비과세소득 일반

세무조례에 의거하여 이윤세가 면제되는 비과세소득에는 일반적인 원칙에 의거하여 비과세되는 소득도 있고, 특정한 목적과 거래의 활성화 등을 위하여 비과세대상이 되는 수취금액도 있다. 우선 일반적인 원칙에 따른 비과세대상 소득을 살펴보면 홍콩으로부터 발생되지 않는 이윤이 있으며, 이 외에도 배당금, 기과세된 이윤, 자본자산의 양도차익, 기타 이하에 열거하는 비과세 수취금액들이 있다. 다음으로 홍콩이 국제금융센터로서의 위상을 높이고 금융부문 활성화를 위해 특혜(경감우대)세율 및 비과세 혜택을 부여하고 있는 항목들이 있는데, 이는 '제VI.2.나. 특혜 세율' 관련 단락에서 기술한다. 세무조례상 비과세소득과 관련한 규정은 <표 2-1-4>와 같다.

〈표 2-1-4〉 비과세소득

조례 규정	비과세소득
14(1)	• 홍콩에서 발생하지 않았거나 자본성 자산 처분에서 발생한 이윤(조례에 별도의 규정이 없는 경우)
15E	• 주식차입과 대출거래(Repo ¹⁾ 포함)에서 발생한 이윤 ²⁾
20AC	• 역외펀드(offshore funds)가 주식, 선물, 외환계약, 자금대여사업 이외의 예금(deposit) 조성, 외화거래, 거래소거래 상품(commodities), 비거주자 펀드에 의해(또는 해당 펀드를 위해) 수행된 피투자회사의 주식 거래에서 얻은 이윤 ³⁾
26(a)	• 이윤세 과세대상 법인으로부터 받은 배당금
26(b)	• 타인 명의로 이미 과세가 이루어진 사업소득
26A(1)(a)	• 납세유보증서(tax reserve certificate)의 이자소득
26A(1)(b),(c)	• 채무조례(Loans Ordinance) 및 국제채무조례에 따라 발행된 채권에 대한 이자 및 매각, 처분, 상환 이윤
26A(1)(d),(e)	• 외환기금 채무증권에 대한 이자 및 매각, 처분, 상환 이윤
26A(1)(f),(g)	• 다국적기관의 홍콩달러표시 채무증권에 대한 이자 및 매각, 처분, 상환 이윤
26A(1)(h),(i)	• 장기채무증서(long term debt instrument)에 대한 이자 및 매각, 처분, 상환 이윤 ⁴⁾
26A(1A)(a)	• 증권선물조례(Securities and Futures Ordinance)에 따라 설립된 뮤추얼펀드(mutual fund), 단위신탁(unit trust) 및 기타 투자기구의 이윤

〈표 2-1-4〉의 계속

조례 규정	비과세소득
Schedule 16D	• 적격 투자펀드에서 2020년 4월 이후 발생한 펀드운용 성과보수(carried interest)
14T	• 홍콩에서 수행된 적격 선박 리스 활동 중 계열사에 제공된 서비스에 대한 이윤

주: 1) 경제적 관점에서 환매조건부약정(Repo) 거래도 주식 차입 및 대출 거래와 유사함. 환매조건부약정 거래는 증권을 보유하고 있으나 현금이 필요한 매도자에 의해 개시됨. 추후 매수자는 이후 등가의 증권을 정해진 가격에 매도자에게 되팔게 되며, 이때의 거래가격은 공시된 은행 간 거래 금리를 고려하여 사전에 결정된 가산율(premium)을 포함하게 됨. 역(逆)환매조건부약정(reverse Repo) 거래는 현금을 보유하고 증권 취득을 희망하는 매수자가 거래를 개시한다는 점을 제외하고는 환매조건부약정 거래와 본질적으로 동일함. (역)환매조건부약정 거래도 해당 증권의 법적 소유권과 수익 지분이 매도자에게서 매수자에게로 이전되므로 주식 차입 및 대출 거래의 일종으로 볼 수 있고, 이윤세가 부과될 수 있음. 다만 상기 세무조례 15E(1)의 비과세 요건이 충족되면 이윤세가 부과되지 않음

- 2) 홍콩증권거래소(Stock Exchange of Hong Kong) 주식거래 정착을 위해 1994년 도입함
- 3) IRO Schedule 16, Part 1
- 4) '제VI.2.나. 특혜 세율' 관련 단락 참조

자료: BPP Learning Media Ltd, *Module D Taxation*, 2013, pp. 125~128 및 세무조례 해당 조문

나. 자본 이득

세무조례 제14조에 따라 자본성 자산의 매각에서 발생하는 이윤에는 이윤세가 부과되지 않는다.⁸⁸⁾ 일부 예외는 있지만 일반적으로 자본성 자산과 관련된 손익도 세무상 익금 또는 손금에 산입되지 않으며, 자본적 성격의 지출, 자본의 환급, 개량(improvement) 비용 등은 손금에 산입되지 않는다. 하지만 세무조례에는 '자본(capital)'에 대한 용어정의가 없고, 이에 자본성 수취금액을 거래성 수취금액과 구분하고, 자본적 지출을 수익적 지출과 구분하기 위해, 상업적인 일반 원칙과 판례 등이 중요한 역할을 한다.⁸⁹⁾

1) 수취금액의 자본성 여부

특정한 수취금액이 자본성 수취금액인지 거래성 수취금액인지 구분할 때, 우선 고정자본(fixed capital)과 순환자본(circulating capital)에 대한 구분이 필요하다. 고정자본(고정자산)과 관련된 수취금액은 자본성 수취금액, 순환자본(유동자산)과 관련된 수취금액은 거래성 수취금액으로 구분할 수 있다. 일반적으로 거래성 수취금액은 다음을 포함한다.

- (a) 거래목적 주식의 매각 또는 영업과정에서 발생하는 용역과 관련한 수취금액
- (b) 사업과 관련하여 부수적으로 발생하는 수취금액

88) IRO §14

89) BPP Learning Media Ltd, *Module D Taxation*, 2013, p. 134.

자본성 수취금액은 예를 들어 사무실건물 매각대금과 같이 사업의 구조적인 부분과 관련된다. 어떠한 수취금액이 사업의 통상적인 부분에서 발생하였는지, 구조적인 부분에서 발생하였는지 구분하는 것은 쉽지 않을 수 있어, 판례에서 형성된 다음의 원칙들이 이를 이해하는데에 도움을 준다.⁹⁰⁾

- (a) 고정자산의 영구적 파손과 관련하여 수취한 금액은 자본성 수취금액이다.
- (b) 고정자산의 일시적 사용불능과 관련하여 수취한 금액은 거래성 수취금액이다.
- (c) 고정자산의 수리가 가능한 손상과 관련하여 수취한 금액은 자본성 수취금액이다.
- (d) 거래목적 주식의 손실과 관련한 수취금액은 거래성 수취이며, 자본성 자산의 손실과 관련한 수취금액은 자본성 수취금액이다.
- (e) 거래계약 취소와 관련한 수취금액은 거래성 수취금액이다.
- (f) 다수의 대리점 계약취소와 관련하여 수취한 금액은 거래성 수취금액이다.
- (g) 회사 사업의 전부 또는 중요한 일부의 중단을 야기한 주요하거나 유일한 계약의 취소와 관련하여 수취한 금액은 자본성 수취금액이다.

2) 자산 처분금액의 자본성 여부

납세자가 자산을 처분했을 때 납세당국은 처분자산이 자본이득으로 과세 불가능한 자산의 처분인지 경상거래의 이윤이므로 과세 가능한 자산의 처분인지를 판단해야만 한다. 이러한 납세자의 자산 처분 시 과세 가능 여부의 결정에는 거래의 성격이 중요한 요소로 작용한다. 즉 거래의 특징을 식별하고 납세자의 이윤발생활동의 본질을 찾아내는 것이다. 이러한 특징을 찾기 위해서 몇 가지의 기준이 적용되고 있는데, 가장 중요한 것은 납세자의 자산 취득 및 처분 목적이다.

3) 부동산 및 주식 처분금액⁹¹⁾

부동산 및 주식 매매는 오랜 기간 동안 홍콩 내 경제활동에서 중요한 부분을 차지해 왔다. 부동산이나 주식은 거래목적으로 취득될 수도 있고, 투자목적으로 취득될 수도 있다. 부동산이나 주식 매각의 성격을 어떻게 볼지와 관련한 다툼은 오랜 기간 이어져 왔고, 전술한 거래 지표(badges of trade)가 주로 참조된다. 매각의 성격을 구분함에 있어서 해당 자산을 보유하게 된 원래 의도(original intention)가 매우 중요하며, 해당 자산의 보유기간 동안 보유의도

90) BPP Learning Media Ltd, *Module D Taxation*, 2013, pp. 134~135.

91) BPP Learning Media Ltd, *Module D Taxation*, 2013, p. 136.

가 바뀌는 경우는 흔치 않다. 보유의도를 판단함에 있어서 주관적 요소와 객관적 요소가 함께 고려된다. 장기보유 능력이 없지만 장기보유하고자 하는 막연한 희망을 가지고 자산을 취득한 경우 장기 투자의도가 없는 것으로 간주된다. 보유의도를 입증하기 위해서는 정황적 사실(circumstantial facts)에 의해 뒷받침되는 객관적이고(objective) 현실적이면서도(realistic) 실현가능한(realisable) 의도가 필요하다.

납세자가 자연인이 아닐 경우, 보유의도는 지배기구(controlling minds)의 행위와 의도를 통해 추정된다. 특정 거래에 대한 회계상의 처리는 결코 결정적(conclusive)이지 않지만, 회계처리상의 관점을 다른 사내문서에도 일관성 있게 적용하는 것이 중요하다. 그렇지 않다면 납세자는 입증책임 부담에서 벗어나기 어렵게 된다. 보유의도가 바뀔 경우에는 보유의도 변경의 명확한 증거가 필요하며, 보유의도 변경일자를 확실하게 해 두어야 한다.

예제(부동산 거래)

· C사는 1985년 홍콩에서 설립되었고, 사업목적은 '부동산 투자'로 규정하였다. C사는 설립 직후 K건물을 인수하였고, K건물의 모든 상가(shops)는 임대(rented out)되었다. 상가에서 발생하는 임대소득은 C사의 주요한 소득원이다. 2012년 C사는 K건물 인근의 빈 상가 한 칸을 취득하였고, HKD2,000,000을 들여 내부수리를 한 후, 부동산 중개인을 통해 매물로 내놓았다. 부동산 중개인에게는 조건이 맞다면 임대 형태도 고려하겠다고 언급하였다. 잠재적 임대 세입자의 조건이 좋지 않아서 임대 계약을 하지 않았고, 해당 상가가 2013년 팔리면서 큰 이익이 발생하였다. C사의 대주주인 J는 팔린 상가를 최초로 임대 목적으로 취득하였으나 기대보다 수익률이 떨어져서 매각결정을 한 것이라고 주장하였다. 상가 처분이익은 과세 대상인가?

해설

· 거래용 자산의 매각이익은 과세되고, 자본성 자산의 처분이익은 비과세된다. 만약 해당 상가가 C사의 거래용 재고였다면, 매각이익은 과세되고, 장기투자자산이었다면 과세되지 않는다. 이러한 자산 간 구분을 위해, 취득시점의 취득의도가 반드시 확인되어야 하며, 이는 사실관계의 문제이다. 취득의도는 객관적인 요소에 의해 뒷받침되어야 하며, 결론을 도출하기 위해 증거들을 전반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 해당 상가가 거래용 재고였음을 뒷받침하는 증거들은 아래와 같다.

- (a) C사는 해당 상가를 약 1년 보유했기 때문에 장기보유의도가 없었다고도 추정할 수 있다.
- (b) 광범위한 내부수리가 상가의 판매 매력을 높였다.
- (c) C사는 내부수리 직후 부동산중개인을 지정하였고, 이러한 판매준비 상태는 C사가 상가를 장기간 보유하려는 확고한 의도가 없었음을 보여준다.
- (d) 매각 이유가 설득적이지 않다. C사는 인근에서 상가를 임대하고 있기 때문에 임대시세를 잘 알고 있었을 것이기 때문이다.

한편 해당 상가가 장기투자자산이었다는 증거들은 아래와 같으며, 언급된 다수의 정황을 종합하여 최종결론이 도출된다.

- (a) C사의 주요 소득원은 임대소득이다.
- (b) C사는 이전에 부동산을 매각해 본 적이 없다.
- (c) 취득 시 매각의도가 있었다면, 취득 후 내부수리 절차 전 매각하고자 하였을 것이다.
- (d) C사는 부동산중개인에게 임대의도를 언급하였다.

자료: BPP Learning Media Ltd, *Module D Taxation*, 2013, p. 137.

4) 보상금 수령액⁹²⁾

자본성이나 수익성이냐의 구분과 관련한 쟁점은 보상금 지급액과 관련하여 자주 발생한다. 관습법의 일반원칙상, 보상금 지급액은 그것이 대체(보상)하는 항목의 특성을 물려받는다.

(a) 거래성 수취금액을 대신하여 받게 되는 보상금은 거래성 이윤으로서 과세대상이 된다.

이는 통상적인 사업활동 중 불법행위 또는 계약위반과 관련한 피해보상금을 포함한다.

(b) 영업권과 같은 사업의 이익창출구조 훼손 또는 사업의 구조적인 부분과 관련된 계약의 취소나 변경 등으로 인한 보상금은 자본성으로 볼 수 있다.

(c) 사업의 청산, 종료, 제한 등과 관련한 보상금은 자본성으로 볼 수 있다.

대체(보상)하는 자산이 자본성인지 거래성인지 명확하지 않은 보상금은 모든 금액을 자본성 수취금액으로 본다. 외화환산과 관련하여서도 복잡한 쟁점이 야기될 수 있으며, 일반적으로 기초거래의 성격을 기준으로 환전 관련 손익을 구분한다.

예제

· 의복소매상인 S사에 화재가 발생하여 아래와 같이 보험금을 수령하였을 때, 세무상 취급은 어떻게 되는가?

- (a) 사무실 가구와 시설과 관련하여 HKD88,000을 수령하고, '기타 이익'으로 회계처리하였다.
 (b) 거래목적 주식과 관련하여 HKD120,000을 수령하고, '매입'계정으로 회계처리하였다.

해설

· 항목별 풀이는 아래와 같다.

- (a) 관련 보험금 수령액은 자본성 수취금액이며, 비과세된다.
 (b) 관련 보험금 수령액은 거래성 수취금액이며, 과세된다.

자료: BPP Learning Media Ltd, *Module D Taxation*, 2013, p. 135.

5) 제한계약(restrictive covenants) 지급금액

납세자가 영업이나 전문적인 활동이 아닌 계약을 하고 보수를 지급받은 경우, 이러한 지급은 보편적으로 자본성 수취금액으로 취급한다. 일례로 납세자는 18개월 동안 다른 영화사와는 계약을 맺지 않고 한 영화사와 계약을 맺고 일정액의 보수를 받았다. 이 지급에 대해 법원은 자본성 수취금액으로 판정하였다.

92) BPP Learning Media Ltd, *Module D Taxation*, 2013, pp. 135~136.

6) 특허권이나 기술력의 판매이득에 대한 판단

일반적으로 특허권의 판매는 자본성 수취금액으로 취급하는데 그 이유는 특허권을 고정자산으로 취급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특허권의 배타적 권리를 포기하지 않고 특허권 사용을 기준으로 보수를 계산하는 지급방식은 거래성 수취금액으로 판단하여 과세대상으로 분류하고 있다.

기술력에 대해서는 기술력을 자산으로 인식하지 않기 때문에 사실 여부를 판단하는 데 어려움이 존재한다. 기술력이나 지식은 선천적으로 타고나거나 자본으로 누적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특성상 이에 대한 보수는 거래성 수취금액으로 취급한다.

7) 리스 프리미엄 및 비반환예금(non-returnable deposit) 등의 판단

리스 프리미엄이나 비반환예금, 권리금, 건설수수료(construction fee) 등은 자본성 수취금액으로 취급하지 않는다. 세무국은 DIPN No.4(Lease premiums/Non-returnable deposits/Key or tea money/Construction fees etc.)의 영업(business)의 정의에서 자산을 임대하거나 자산을 취급하는 것을 영업을 수행하는 것으로 명시하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업무와 활동에 종사하는 경우는 거의 대부분 자본성 수취금액으로 보지 않고 거래성 수취금액으로 판단하여 과세대상에 포함시킨다. 그러므로 세무국은 자산 임대나 자산 취급 시 리스 프리미엄에 대해 자산의 사용으로 판단하고 거래성 수취금액으로 취급한다.

IV 공제 항목

1. 각종 공제

각종 공제는 납세자의 최종 과세소득을 확정하기 위하여 과세가능이윤에서 차감하는 항목이다. 이 절에서는 일반 비용공제, 특별 공제, 공제되지 않는 항목의 일반 원칙을 알아보고, 비용항목별 공제가능 여부에 대해 살펴본다.

가. 일반 비용공제

일반적인 비용공제는 납세자가 이윤을 창출해 내는 생산과정에서 발생하는 지출이나 비용을 의미한다. 이와 관련하여 이윤창출 과정에서 발생한 비용에는 어떤 것이 포함되며, 비용을 발생시키는 기준이 무엇인가를 살펴본다. 더불어 과세가능이윤 창출은 무엇을 의미하는가를 검토한 후 실제 적용되는 공제의 배분적용기준을 알아보고 사례를 제시한다. 또 비용을 공제하기 위해서는 생산을 위해 발생된 비용이 기본적으로 해당 과세연도에 속하느냐 하는 것과 배제항목에 포함되는지의 여부를 판단하는 것도 필요하다.

1) 비용과 지출의 의미

이윤 창출 과정의 일반적인 비용(outgoing)은 실제 지불된 금액이고, 지출(expenses)은 지불해야 할 채무도 포함된 범위를 말한다. 따라서 세무조례에서는 명시적으로 공제금액을 납세자가 실제 지불한 금액으로 제한하지는 않는다.⁹³⁾ 또한 조례에서 비용을 지불해야 할 총액(sums payable), 지급된 사용료(rent paid), 발생한 악성채무(bad debt) 등으로 구분하는 것은 공제의 범위를 기준기간 내로 한정하지 않는다는 것을 나타낸다. 예를 들어 대형고객의 제조계약해지로 인해 종업원을 해고하고 퇴직금을 지급하는 경우, 해당 퇴직금은 공제가능하며 그 이유는 아래와 같다.⁹⁴⁾

- 해당 지급의무가 비록 생산라인 중단시점에 발생하였지만, 생산라인을 중단하기 위해 발생한 것이 아니다.
- 해당 지급의무는 관련 종업원들의 용역을 제공받기 위해 필수적으로 발생하였다.

93) IRO §16(1)

94) BPP Learning Media Ltd, *Module D Taxation*, 2013, pp. 144~145.

2) 비용 발생

지출이나 비용은 지불되었거나 지불해야 할 채무가 존재할 때 발생된다. 즉 비용의 발생이라는 의미는 범위를 한정지을 수는 없으나 지불하였건, 발생되었건 혹은 분쟁으로 야기되었건 관계없이 모두 비용의 발생으로 취급한다. 예를 들어 아직 미지불되었지만 납세자가 지불해야 할 의무가 있는 지급해야 할 이자비용은 발생된 비용으로 취급하여 공제가 가능하다. 홍콩의 지점에서 해외 본사로 송금하는 이자비용의 경우 다음의 조건을 모두 충족하여야 공제가 가능하며, 선급비용의 경우 회계기준상 인정되는 시점에 공제가 가능하다.⁹⁵⁾

- 해당 청구금액이 상업적으로 정당할 것
- 산정내역이 합리적으로 입증될 것
- 본사가 지점에 청구하는 금액은 본사 행정비용의 일부에 합리적인 수준의 원가가산율을 반영할 것

3) 과세가능이윤 창출

지출이나 비용은 공제가능한 과세가능이윤의 창출과정에서 발생되어야 한다. 이러한 요건의 충족 여부는 사실관계를 기초로 판단된다. 이윤 창출을 위해 지출된 비용이라면 그 결과 이윤이 발생되지 않았거나 적자가 발생하였더라도 공제가 가능하다. 따라서 과세가능이윤의 창출을 예상하여 이루어진 지출은 비록 실제로 이윤이 발생되지 않았더라도 공제가 가능하다. 예를 들어 파업의 종결을 위해 노동자에게 규정에 없는 '파업철회 보조금'을 지불한 경우 이러한 비용은 회사가 사업을 지속하기 위한 지출로 인정하여 공제된다. 또한 회사의 합병으로 인해 사업이 중단되어 아무런 이윤을 얻지 못하였을 경우 비록 짧은 기간이라도 사업행위가 재개되었다면 그러한 비용은 공제가 가능하며, 이는 이윤 창출을 위해 불가피하게 지출된 것으로 인정된다.

비용이 이윤 창출에 직접 관련되어 발생할 필요는 없다. 예를 들어 임원 차량의 경우, 차량 자체가 이윤을 창출할 것은 아니지만, 해당 차량유지비는 이윤 창출과정에서 발생하는 비용으로 볼 수 있다.⁹⁶⁾

95) BPP Learning Media Ltd, *Module D Taxation*, 2013, p. 142.

96) BPP Learning Media Ltd, *Module D Taxation*, 2013, p. 144.

4) 비용의 배분

비용의 일부는 과세가능이윤의 창출을 목적으로 지출하고 나머지 일부는 기타의 다른 목적으로 지출하였을 시에는 과세대상소득 창출을 위한 비용만이 공제가 가능하다. 또한 창출된 이윤들 중에 일부 이윤이 홍콩 외부에서 발생되어 과세를 할 수 없을 시에는 과세가능이윤과 관련하여 발생한 비용만이 공제가능하다. 따라서 공제가능한 배분의 범위는 과세가능이윤의 창출에서 발생한 비용과 지출의 범위 내에서 허용된다. 만약 개인적인 용도로 발생한 비용들과 사업적 용도로 발생한 비용을 명확하게 구분할 수 없다면, 공제는 허용되지 않는다. 또한 가사나 개인적인 용도로 발생한 의료비용들도 사업적 용도로 구분할 수 없다면 역시 공제할 수 없다. 비용과 지출을 배분하기 위한 방법으로는 다음의 방법들을 선택할 수 있다.

- 매출총액 기준 배분
- 판매 기준 배분
- 이윤 기준 배분
- 소득 기준 배분
- 평균자산 기준 배분

모든 경우에 있어 대부분의 배분에 대한 고유한 기준은 납세자와 관련된 특정 사실과 상황 및 활동에 의해 결정된다. 배분에 대한 특정방법이 특정 시기에 적용되었다 하더라도 과거의 관례를 살펴볼 때 정황상 필요한 경우나 적용된 방법이 부적절할 경우에는 다른 방법들을 적용할 수 있다. 비용배분 적용의 기본적인 원칙은 발생한 문제의 상황에 대하여 가장 합리적이고 타당한 기준에 의해 배분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이다.

예제(공통 비용의 배분)

·홍콩과 싱가포르에서 전자장비를 판매하는 회사의 실적이 아래와 같고, 공통 간접비용이 HKD200,000 발생하였을 때, 홍콩에서 공제가능한 금액은 얼마인가?

(단위: 홍콩달러)

	홍콩	싱가포르	합계
매출액	450,000	150,000	600,000
매출총이익	1,800,000	900,000	2,700,000

해설

·매출액을 기준으로 산정 시 $HKD150,000 = (HKD200,000 * HKD450,000 / HKD600,000)$ 을, 매출총이익을 기준으로 산정 시 $HKD133,333 = (HKD200,000 * HKD1,800,000 / HKD2,700,000)$ 을 공제가능하다.

자료: BPP Learning Media Ltd, *Module D Taxation*, 2013, p. 142.

5) 수취인 불분명 지급액

수취인이 불분명한 지급액은 공제 불가능하다. 세무국은 세무신고 시 판매수수료(commissions), 리베이트, 할인 등과 관련하여 수취인의 성명, 주소, 주민(또는 사업자)등록번호, 납세자와 수취인의 관계, 지급금액, 제공된 용역의 상세내용, 지급증빙을 제출할 것을 요구한다. 보고가 누락되거나 왜곡된 정보가 보고될 경우, 관련 회계사나 회계담당자도 처벌받을 수 있다.⁹⁷⁾

나. 특별 공제⁹⁸⁾

일반적인 비용공제 이외에 특별한 비용의 경우 법에서 열거한 공제항목에 해당되면 특별 공제를 허용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특별공제도 앞에서 열거한 일반적인 조건을 만족하고 공제에서 배제되는 항목에 포함되지 않은 경우에만 공제가 허용된다. 이하 항목별로 공제내용을 살펴보기로 한다.

1) 차입금 관련 비용

과세가능이윤을 생산하기 위한 목적으로 자금을 차입하여 발생한 이자에 대해서는 특정한 조건에 부합될 경우 공제를 허용해 준다. 차입금 관련 비용 중에서 공제 가능한 비용은 법정수수료, 위임수수료, 인지세 및 차입과 관련된 기타비용이 대표적이다. 그러나 차입의 과정에서 발생한 외환차손은 비용으로서 간주되지 않는다. 차입금 관련 비용에 관하여 <표 2-1-5>의 열거하는 조건 중 하나에 해당하면 공제조건을 충족하며,⁹⁹⁾ 이에 대한 상세내용을 살펴본다.

<표 2-1-5> 관련비용 공제가 허용되는 차입금 요건

구분(OR 조건)	공제 가능한 경우	조례 조문
(조건 1) 차주 조건	• 금융기관이 차입한 차입금 및 손실흡수능력 은행그룹이 규제자본증권 발행과정에서 차입한 차입금	§16(2)(a)
(조건 2) 차주 조건	• 공익기업이 차입한 차입금	§16(2)(b)
(조건 3) 대주 조건	• 대주가 이자소득 관련 세금 납부	§16(2)(c)
(조건 4) 대주 조건	• 국내/해외 금융기관으로부터의 차입금	§16(2)(d)

97) BPP Learning Media Ltd, *Module D Taxation*, 2013, p. 145.

98) 한국조세재정연구원(2011), p. 121~128을 기초로 변경내용을 반영함

99) DIPN No.13A(Profits tax - Deductibility of interest expense)

〈표 2-1-5〉의 계속

구분(OR 조건)	공제 가능한 경우	조례 조문
(조건 5) 용도 조건	• 기계, 설비, 채고 등의 취득을 위한 차입금(계열사로부터의 차입 제외)	§16(2)(e)
(조건 6) 조달방법 조건	• 상장 채무증서 발행 등을 통한 차입	§16(2)(f)
(조건 7) 거래 조건	• 차주가 홍콩에서 그룹 내 자금조달 영업을 수행하면서 별도 조건을 충족하는 차입	§16(2)(g)

자료: BPP Learning Media Ltd, *Module D Taxation*, 2013, p.148 수정

조건 1- 금융기관 차주

; ‘금융기관’은 은행 조례(Banking Ordinance) 제2조에 속하는 승인된 기관을 의미한다. 그러므로 적격한 금융기관에서 차입한 모든 자금은 조건 1을 만족하게 된다. 홍콩의 은행은 예금수취 인가 여부에 따라 인가은행(licenced bank), 제한인가은행(restricted licenced bank), 예금수취은행(deposit-taking bank)의 형태로 모두 조건 1에 해당된다. 인가은행은 당좌예금을 포함한 모든 종류의 예금업무를 취급하고 제한인가은행은 당좌예금, 요구불 예금 및 소액예금(50만홍콩달러 미만)은 수취할 수 없는 제한을 두고 있으며, 예금수취은행은 요구불 예금, 소액예금(10만홍콩달러 미만) 및 단기예금(3개월 미만)은 수취할 수 없는 제한을 두고 있다. 한편 2019년에는 손실흡수능력 은행그룹(LAC banking entity)이 규제자본증권(regulatory capital security) 발행과정에서 차입한 차입금에 대한 이자도 공제가능하도록 추가되었다.

조건 2- 공익기업 차주

; 세무조례 Schedule 3에서는 지급이자 공제가능한 세 개의 공익기업을 명시하고 있으며, Financial Secretary에서 제시하는 이자율을 한도로 규정하고 있다. 이 조건은 2002년 발효되어 시행되고 있으며 해당 공익기업은 다음과 같다.

- Hong Kong Electric Company, Limited
- China Light and Power Company, Limited
- The Hong Kong and China Gas Company, Limited

조건 3- 비금융기관으로부터의 차입금

; 금융기관 이외의 기관은 세무국에서 별도로 구체적인 사례¹⁰⁰⁾를 제시하고 있으며, 조건 3을 만족하기 위해서는 대주가 이자소득 관련 세금을 납부하여야 한다.

100) DIPN No.13A(Profits tax - Deductibility of interest expense)

조건 4- 금융기관으로부터의 차입금

; 국내 및 해외 금융기관으로부터의 차입금에 대한 이자비용은 공제가 가능하다. 해외금융 기관은 국외의 예금수취은행으로 영업을 수행하는 기관을 의미한다.

조건 5- 특정 용도 차입금

; 다음에 해당되는 자산이나 구매의 경우 생산을 위한 자금조달을 위해 차입한 것으로 인정하며, 이 경우 대출자는 차입자와 어떠한 관련도 없어야 한다.

- 감가상각이 허용되는 기계류나 공장설비에서 발생하는 자본적 지출
- 공제가 허용되는 특정 고정자산(컴퓨터 하드·소프트웨어 외) 관련 자본적 지출
- 공제가 허용되는 환경보호기계 및 친환경차량 관련 자본적 지출
- 공제가 허용되는 환경보호설비 관련 자본적 지출
- 과세가능이윤 창출과정에서 차입자가 사용한 재고의 구입

조건 6- 상장 채무증서 발행 등을 통한 차입금

; 차입자가 법인이고 다음의 조건에 부합되는 채무증서나 자금이 지불되는 이자에 대해서 공제가 허용된다.

- 홍콩 증권거래소나 세무국장이 승인한 기타 거래소에 상장된 채무증서
- 세무국장이 인정한 홍콩이나 국외 주요 금융센터에서 정상적 영업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발행된 채무증서
- 증권선물조례(Securities and Futures Ordinance, Cap. 571) 제105조에 따라 증권선물 위원회에 의해 승인된 발행 약정 중 대중(public)으로부터 청약을 받은 채무증서
- 동 조건 6 단락에서 전술한 방식으로 조달된 자금의 계열사 차입

조건 7- 그룹 내 자금조달 영업을 수행하는 경우의 차입

; 그룹 내 자금조달 영업을 수행하는 경우 다음의 조건을 모두 충족할 경우 관련 차입금 이자비용에 대한 공제가 가능하다.

- 비홍콩 계열사로부터 통상의 영업활동에서 발생한 차입금일 것
- 대주가 관련 이자소득에 대해 해외에서 16.5% 이상의 세금을 부담할 것
- 이자소득에 대한 대주의 권리가 독립기업원칙에 근거하지 않은 방식으로 제3자에 이전 되지 않을 것

2) 임차료¹⁰¹⁾

토지나 건물의 소유자가 과세가능이윤을 창출할 목적으로 지급한 임차료는 공제가 가능하다. 이 임차료가 소유주의 배우자나 한 명 이상의 파트너십에 의해 지급되었다 하더라도 공제가 가능하지만 공제가 가능 금액은 토지와 건물의 과세대상 가치를 초과할 수 없다. 차용계약을 위해서 지급한 일시불 보험료는 자본적 성격으로 간주하여 공제가 가능 금액에서 제외한다. 이러한 지급은 임차료로 볼 수 없으며, 경우에 따라서 일시불지급인지 분할지급인지가 지급된 임차료의 특성을 결정하기도 한다.

3) 외국납부세액(소득공제)

세금은 과세가능이윤을 창출하기 위한 직접 비용이 아니므로 원칙적으로 공제가 불가능하며,¹⁰²⁾ 외국납부세액의 소득공제가 가능한 원천 소득 항목은 다음과 같다.¹⁰³⁾ 다만 이 경우에도 외국납부세액공제(후술)가 적용되는 경우, 외국납부세액공제가 적용되며 동 소득공제 규정은 적용이 되지 않는다.

- 홍콩에서 거래·영업 또는 전문직을 영위하는 법인이 홍콩에서 얻은 이자
- 홍콩에서 거래·영업 또는 전문직을 영위하는 자(법인 제외)가 홍콩에서 얻은 이자로 거래·영업 또는 전문직의 자금과 관계된 것
- 소득 발생 또는 수취 장소가 홍콩 이외 지역인 경우를 포함한 다음의 이자
 - 금융기관이 홍콩에서 사업을 수행하는 과정에서의 수취 이자
 - 비금융기관이 홍콩에서 그룹 내 자금조달 과정에서의 수취 이자
 - 규제자본 담보와 관련하여 손실흡수능력(LAC) 은행의 수취 이자
- 홍콩에서 거래·영업 또는 전문직을 영위하는 법인이 예금증서 또는 환어음의 만기 상환이나 제시, 매각으로부터 홍콩에서 얻은 자본이득이나 이윤
- 홍콩에서 거래·영업 또는 전문직을 영위하는 법인 이외의 자가 예금증서 또는 환어음의 만기상환이나 제시, 매각으로부터 홍콩에서 얻은 자본이득이나 이윤으로 거래·영업 또는 전문직의 자금과 관계된 것
- 자금거래 또는 계약체결 장소가 홍콩 이외 지역인 경우를 포함한 다음의 이윤

101) IRO §16(1)(b)

102) DIPN No.28(Profits tax : Deduction of foreign taxes)

103) IRO §16(1)(c)

- 금융기관이 홍콩에서 사업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수취하거나 발생한 예금증서 또는 환어음의 만기상환이나 제시, 매각으로부터 얻은 자본이익이나 이윤
- 비금융기관이 홍콩에서 그룹 내 자금조달 과정에서 수취하거나 발생한 예금증서 또는 환어음의 만기상환이나 제시, 매각으로부터 얻은 자본이익이나 이윤
- 손실흡수능력(LAC) 은행이 홍콩에서 사업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규제자본 증권의 만기상환이나 제시, 매각으로부터 얻은 자본이익이나 이윤

4) 부실채권(악성채무)¹⁰⁴⁾

부실채권(또는 악성채무)이 거래·영업 또는 전문직에서 발생한 것이라면 공제가 가능하며, 이를 입증하기 위해서는 해당 과세연도에 부실이 발생해야 하고, 과세평가 사정관의 평가를 득해야 한다. 모호한 채무의 경우도 공제가 가능한데, 사정관의 평가를 통과한다면 그 채무의 추정할 수 있는 범위를 결정하여 공제해 준다. 부실채권의 공제는 무엇을 부실하다고 볼 것이냐 하는 것이 중요하다. 먼저 무엇을 ‘부실(bad)’이라고 볼 것이냐는 해당 사례의 상황에 따라 사실에 근거하여 결정되는데, 가장 우선적으로는 사정관의 평가가 중요하다. 일반적으로 파산으로부터 기인한 채무나 추적 불가능된 채무는 부실하다고 인정되고 있으며, 다음은 부실채권에서 제외된다.

- 납세자의 과세가능이윤으로 확인된 거래영수증(증빙)이 포함된 채무
- 홍콩 내의 대부업 운영과정에서 빌려준 자금과 관련된 채무

5) 수리비용¹⁰⁵⁾

과세가능이윤을 창출하는 데 사용된 토지, 공장, 기계류 및 도구, 기구, 물품 등의 수리에 발생하는 지출은 공제가 가능하다. 그러나 이 지출은 반드시 해당 납세자가 지급하여야 하며, 만약 다른 사람이 이 수리비용을 지급하였다면 공제되지 않는다. 그렇다면 여기에서 ‘수리(repair)’는 무엇을 의미하는가를 알아볼 필요가 있다. 수리의 정의를 조례에서 규정하고 있지는 않지만, 해당 경우에 대한 법적 해석을 제공하고 있다. 또한 수리(repair)와 개량(improvement), 그리고 재건축(reconstruction)을 모두 구별해서 사용하고 있는데, 후자인 개량과 재건축의 경우는 자본재의 특성을 가지므로 공제가 불가능하고 전자인 수리의 경우는

104) IRO §16(1)(d)

105) IRO §16(1)(e)

감가상각 공제를 허용하고 있다. 수리를 정의하는 데는 원인에 근거한 두 가지 기준이 있으며 그 기준은 다음과 같다.

- 복구 전 정상상태와의 동일성: 개량이나 확장은 '수리'가 아니며, 기존과 동일한 조건으로 복구되어야 함
- 복구의 불가피성: 관련 작업은 반드시 복구가 필요한 상태에서 이루어져야 함(즉 튼튼한 건물이나 장비에 행해진 복구성 작업은 '수리'가 아님)

그 외 추상적인 수리비용은 공제되지 않는다. 왜냐하면 이 공제조항은 납세자의 실제 업무 수행 시의 수리에 대한 비용만을 공제해 주는 것으로서 공제되지 않는 자본재 자산의 개선 시 추상적인 수리비용을 요구한다면 이는 허용되지 않기 때문이다. 또한 초기 수리비용에 대한 공제도 허용하지 않는다. 초기 수리란 자산취득 시 발생한 결함 및 소득 창출을 위한 납세자의 자산 활용을 심각하게 억제하는 결함을 해소하기 위한 작업을 말한다. 그러므로 이러한 초기 수리비용을 공제하지 않는 이유는 이를 소득 창출의 과정에서 발생한 감가상각이나 손상의 개념으로 볼 수 없기 때문이다. 비록 이러한 수리가 과세가능소득 창출을 위한 자산사용을 위해 이루어졌다고 하더라도 초기 수리비용은 자산취득에서 발생한 자본비용에 해당되며, 또한 납세자의 자산관리에 통상적으로 손상을 주지 않기 때문이다.

6) 교체비용¹⁰⁶⁾

과세가능이윤을 창출하는 데 사용된 장비, 기구, 물품 등의 교체비용은 공제가 가능하다. 그러나 이 비용의 감가상각 공제는 적용되지 않으며, 단지 교체비용만을 공제하는 것이므로 자본적 성격을 지닌 기구 등의 초기 구매비용은 공제되지 않는다. 장비, 기구, 물품 등의 교체비용은 다양한 항목에 적용될 수 있는데, 대표적으로 호텔의 침대커버, 카펫, 커튼 등이 해당되며, 교체비용 공제가 허용되는 구체적인 항목은 별도 문서로 제공하고 있다. 이 비용공제가 허용되는 항목은 다음과 같다.

- 벨트장치
- 부엌용구
- 느슨해진 기계공구, 연장 등
- 외과 및 치과 기구
- 도자기와 칼붙이(나이프, 포크 등)

106) IRO §16(1)(f)

- 직물 제품
- 취약가구 및 비품
- X-ray 튜브 및 적외선 장비

7) 상표등록·디자인·특허등록 비용¹⁰⁷⁾

거래·영업 또는 전문직을 수행하며 과세가능이윤을 창출하는 데 사용된 상표등록, 디자인, 특허등록 등의 비용은 공제가 가능하다. 특히 이 비용은 자본재의 특성을 가진 지출에 대해서도 공제를 허용하고 있으며, 상표등록, 디자인, 특허등록 등이 홍콩 외부에서 발생한 경우에도 생산적 이윤을 창출하는 데 사용되었다면 공제가 허용된다.

8) 기타 공제항목

세무조례에서 기술하고 있는 기타 공제항목은 <표 2-1-6>과 같이 요약된다.

<표 2-1-6> 기타 공제항목

조례 항목	공제 허용액	반환·매각시 세무취급
(16A) 인정된 퇴직기금 특별 납입액	• 매년 20%씩 5년간 공제	• 공제된 만큼 과세소득 산입
(16AA) 자영업자의 의무적립기금 납입액	• 의무 납입액 전액 공제	• 해당 사항 없음
(16B 및 Schedule 45) 연구개발 지출	• Type A(일반): 100% • Type B(지정연구기관에 대한 지출) - 0~200만홍콩달러: 지출액*300% - 200만홍콩달러~: 지출액*200%	• 공제된 금액을 한도로 매각액 중 공제된 금액 비율 해당액을 과세소득 산입
(16C) 기술교육 지출	• 전액 공제	• 해당 사항 없음
(16D) 승인된 자선기부금	• 감가상각 및 균형부과 조정 후 소득의 35% 이내에서 전액 공제	• 해당 사항 없음
(16E) 특허권 취득 및 기술도입 비용	• 지출연도에 전액 공제(특수관계자 거래 제외)	• 공제된 금액을 한도로 매각액 중 공제된 금액 비율 해당액을 과세소득 산입
(16EA-EC) 특정 지식재산권 취득	• 매년 20%씩 5년간 공제(특수관계자 거래 제외)	• (상동)
(16F) 건물 개조비용	• 매년 20%씩 5년간 공제	• 해당 사항 없음

107) IRO §16(1)(g)

〈표 2-1-6〉의 계속

조례 항목	공제 허용액	반환·매각시 세무취급
(16G) 특정 고정자산 관련 자본적 지출(컴퓨터 하드웨어 및 소프트웨어 외)	• 지출연도에 전액 공제	• 공제된 금액을 한도로 매각액 중 공제된 금액 비율 해당액을 과세소득 산입
(16H-K) 환경보호기계 및 친환경차량 관련 자본적 지출	• (상동)	• (상동)
(16H-K) 환경보호설비 관련 자본적 지출	• (2017/18 회기까지) 매년 20%씩 5년간 공제 • (2018/19 회기 및 이후) 지출연도에 전액 공제	• (상동)

자료: BPP Learning Media Ltd, *Module D Taxation*, 2013, pp. 155~156 및 세무조례 관련 조문

다. 공제되지 않는 항목¹⁰⁸⁾

특정비용은 납세자의 과세가능이윤에서 공제되지 않으며 대표적으로 가사 또는 개인지출 및 과세소득창출 이외의 목적에 사용된 비용, 자본적 지출, 계량비, 보험보상액 등이 공제 불가능하다. 세무조례는 공제가능 요건¹⁰⁹⁾을 두고 있으며 항목별로 아래에서 구체적으로 살펴본다.

1) 가사 및 개인 지출비용¹¹⁰⁾

개인적 지출비용은 과세가능이윤을 창출하는 데 기여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하여 공제하지 않는다. 이때 어떤 것을 개인적 지출비용으로 규정할 것인가를 판단하는 것이 관건이 된다. 가사비용 및 개인비용에 포함되는 공제 불가능한 지출로는 일반적인 생활비, 여행경비, 오락비용, 가계보험 등이 포함되고, 개인의 의료비용의 경우도 공제대상에서 제외된다. 또한 세무국은 의료비용 발생이 영업수행을 원활히 하기 위한 납세자의 건강 유지 목적이라 할지라도 이는 공제의 목적에서 매우 벗어난 것이므로 공제할 수 없다는 입장을 견지하고 있다. 이와는 반대로 고등법원에서 의료비용을 공제로 인정¹¹¹⁾하기도 하였는데, 이는 매우 드문 경우에 해당된다. 특히 법인납세자의 경우는 영업과 분리되어 발생하는 가사비용이 발생할 수 없으므로, 공제 불가능한 가사비용은 이윤세 과세대상인 개인에게만 적용되는 조항이다.

108) 한국조세재정연구원(2011), p. 128~134를 기초로 변경내용을 반영함

109) IRO §17

110) IRO §17(a)

111) Fahy v Commissioner of Inland Revenue (1992) 1 HKRC pp. 80~100.

2) 과세소득 창출 이외의 목적에 사용된 비용¹¹²⁾

과세소득 창출 목적 이외의 비용이 공제되지 않는 것은 공제의 원칙에 의거하면 지극히 당연한 것이다. 그러나 여러 가지 비용이 결합되어 있을 때에는 과세소득 창출 목적 여부에 대한 판단이 필요하다. 이 경우 소득창출에 필요한 비용의 비중을 배분하여 공제하도록 하고 있다.

3) 자본적 지출 및 자본에 의한 손실¹¹³⁾

경상지출만을 이윤세 과세대상에 포함시키는 홍콩의 과세체계에서는 자본적 지출이나 자본성 손실은 과세하지 않으므로 공제하지 않는 것은 원칙에 해당되는 항목이다. 그러나 자본적 특성의 지출이 발생했을 때 이러한 지출에 자본적 성격과 경상적 성격이 혼합되어 있을 때는 그 둘을 분리하는 데 어려움이 존재한다. 더욱이 과세당국이 이에 대한 엄격한 기준을 제시하고 있지 않아서 다양한 사례에 의존하게 되지만, 어떤 상황에서 납세자에게 공제를 허용할 수 있는가에 대한 몇 가지의 기준¹¹⁴⁾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 비정기적 지출 기준

보편적으로 자본적 특성을 가진 지출은 한꺼번에 일시불로 지출하는 특성을 지닌다. 그러나 이러한 일시불 지출이 반드시 자본적 지출을 결정짓는 특성은 아니다. 그래서 일시불 지출 기준은 자본적 지출 여부를 판단하는 결정적 요인이 되지 못하고, 보조적 고려의 대상으로 삼고 있다. 일시불이 아닌 할부 지출의 정기적 지급임에도 자본적 본질을 가졌다고 판단하여 공제되지 않은 사례도 존재¹¹⁵⁾한다.

- 지속적 수익을 얻는 자산의 존재 여부 기준

납세자에 의해 발생한 지불이 일시불인가 이 외에도 거래의 지속적 수익을 보장하는 자산이 존재하느냐가 중요한 기준으로 작용한다. 여기에서 지속적이라는 것은 반드시 영구적일 필요는 없으며, 일정 시간 지속되었느냐가 하나의 판단 기준으로 고려되는 것을 의미한다. 그 외 수익은 매우 광범위하게 판단되며 반드시 명시적으로 회계계정에 존재함을 의미하지는 않

112) IRO §17(b)

113) IRO §17(c)

114) Megarry J in Pitt (Inspector of Taxes) v Castle Hill Warehousing Co Ltd (1974) 49 TC 638에서는 자산 취득 시 지불된 형태, 지불 후 어떠한 수익을 얻었는가, 이처럼 수익을 얻는 방식은 어떠한가에 대한 세 가지 기준을 제시하고 있음

115) Colonial Mutual Life Assurance Society Ltd v FC of T (1953) 89 CLR 428

으며, 영업의 과정에서 흔히 발생하는 계약에서 파생되는 이득도 이러한 범주에 속하게 된다. 이것은 자본에서 기인된 지출인가를 다루는 데 가장 좋은 기준으로 많은 사례들이 이 기준을 적용하였고 이 기준이 공제대상을 판단하는 결정적 기준은 아니지만 이 과정에서 반드시 고려되어야 하는 기준이다.

- 이윤 창출구조 기준

지출이나 손실이 자본적 성격인가를 판단하는 다른 기준으로는 이윤 창출구조를 판단하기도 한다. 이 기준에 의하면 납세자의 지출이 돈을 버는 과정인 경상계정과 관련이 되어 있는지 아니면 이윤을 창출하는 자본계정과 관련이 되어 있는지를 판단하는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기준은 결정적 기준이 되지 않으며 다른 요소들과 함께 고려되는 기준으로 작용하고 있다.

- 고정 자본 vs 순환 자본 기준

자본성 지출인지 여부를 구분할 때, 고정자본(fixed capital)과 순환자본(circulating capital)에 대한 구분이 필요하다. 일반적으로 고정자산과 관련된 지출금액은 자본성으로, 유동자산(순환자본)과 관련된 지출금액은 거래성으로 구분한다.¹¹⁶⁾

4) 수리나 교체가 아닌 계량비¹¹⁷⁾

부동산(설비)의 개량을 위한 비용은 공제되지 않는다. 이는 수리(repair)나 교체(replacement)와 구별되며, 수리와 교체비용은 공제가능하지만 리모델링이나 계량을 위한 경비는 공제되지 않는다.

5) 보험 또는 보상계약에 의한 보상금액¹¹⁸⁾

보험계약이나 보상계약에 의거하여 납세자가 받은 어떠한 보상금액도 공제되지 않는다. 이는 손실에 대한 금지조항으로서 납세자의 손실 발생을 보험에서 이미 보상해 주었으므로 이중으로 공제가 불필요한 것이다.

116) BPP Learning Media Ltd, *Module D Taxation*, 2013, pp. 134.

117) IRO §17(d)

118) IRO §17(e)

6) 과세소득 창출 목적으로 사용하지 않은 토지나 시설 관련 비용¹¹⁹⁾

과세소득 창출을 목적으로 사용되지 않은 토지에서 발생한 비용과 임대료 등은 모두 공제 대상이 되지 못한다. 만약 이 납세자가 개인적 목적으로 임대료를 지불하였다면 이는 공제 대상이 되지 못하고, 사용한 임대료가 생산창출의 목적과 개별적 목적 두 가지가 혼합되어 있다면 이는 비례적으로 공제를 허용하고 있다.

7) 급여소득세를 제외한 법령에 따른 기타 세금 및 퇴직금제도 초과납입액

법령에 의해 지급한 어떤 세금도 공제자격을 가지지 못한다. 다만 근로로 인한 종업원의 급여세의 경우는 근로로 지급된 추가적인 급여이며 이는 과세가능이윤 창출에서 발생한 비용으로 취급하여 공제해 준다. 그 외 기타 세금은 모두 공제되지 않는다.¹²⁰⁾ 한편 퇴직금제도 일반 납입액은 직원 총급여의 15%까지, 인정되는 퇴직금제도에 해당 연도에 납입 시에만 비용 공제가 인정된다.¹²¹⁾

8) 파트너십이나 배우자에게 지급한 급여나 기타 수익적 지급¹²²⁾

거래·영업 또는 전문직을 수행할 때 발생하는 이윤과 손실을 계산할 때 납세자가 그의 배우자나 파트너십에게 지급한 급여나 그의 배우자나 파트너십이 제공한 대출의 이자 등은 공제대상에서 제외된다.

라. 비용항목별 세무상 취급

비용의 공제 여부와 관련한 세무상의 취급은 <표 2-1-7>과 같이 요약된다.

<표 2-1-7> 비용 항목별 공제가능 여부

비용 항목	상세 내역	세무상 취급
대손비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매출채권 관련 • 자금대여 사업 • 일반 대여금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공제가능 • 공제가능 • 공제불가

119) IRO §17(f)
 120) IRO §17(g)
 121) IRO §17(h)~(l)
 122) IRO §17(2)

〈표 2-1-7〉의 계속

비용 항목	상세 내역	세무상 취급
횡령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임원 • 직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공제불가 • 공제가능
외환차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매입채무 관련 • 차입금/대여금 관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공제가능 • 공제불가
해고위로금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과거 고용에 대한 대가 • 원치 않는 직원 해고 • 미래 경쟁 예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공제가능 • 공제가능 • 공제불가
보험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고정자산 관련 • 재화나 직원 관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공제가능 • 공제가능
퇴직기금 최초 및 특별 납입액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인정된 제도에의 납입액 • 비인정 제도에의 납입액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매년 20%씩 5년간 공제 • 공제불가
퇴직기금 일반 납입액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인정된 제도에의 납입액 • 비인정 제도에의 납입액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직원총급여의 15%까지 공제가능 • 공제불가
법률비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고정자산 취득 관련 • 정관 수정 관련 • 담보대출 관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공제불가 • 공제불가 • 담보자산이 과세소득창출 관련 시에만 공제가능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채권 회수 관련 • 회사 설립 관련 • 형사절차 관련 • 증자 관련 • 신규 임대차 관련 • 기존 임대차 갱신 관련 • 영업재산 보호 관련 • 항소 관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공제가능 • 공제불가 • 공제불가 • 공제불가 • 공제불가 • 공제불가 • 공제불가 • 공제가능 • 공제불가 • 공제불가
벌금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법률 위반 관련 • 채무 연체 관련 • 상품 배달 지연 관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공제불가 • 공제가능 • 공제가능
사업개시 전 비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급여, 임차료 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초년에 공제가능
해고비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업 구조조정 관련 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공제가능

자료: BPP Learning Media Ltd, *Module D Taxation*, 2013, pp. 175~177.

2. 감가상각 공제

감가상각 공제의 적용방법은 자산 종류별로 상이하며, 다음 세 가지 자산 종류별로 자본적 지출에 대한 감가상각 공제가 인정된다.¹²³⁾

- 산업용 건물 및 구축물

- 상업용 건물 및 구축물(산업용 건물 및 구축물 이외의 건물 및 구축물)
- 기계류 및 공장설비

산업용 건물 및 상업용 건물에 대한 감가상각은 DIPN No.2(Profits tax-Part A : Industrial building allowances, Part B : Commercial buildings allowances)에, 기계류 및 공장에 대한 감가상각은 DIPN No.7(Machinery and plant - Depreciation allowances)에 규정되어 있으며, 허용되는 감가상각 공제액의 주요 내용은 <표 2-1-8>과 같다.

<표 2-1-8> 감가상각 자산별 공제대상 및 공제한도

구 분	산업용 건물	상업용 건물	기계류 및 공장설비
최초 공제	• 20%	• N.A.	• 60%
연간 공제	• 취득원가의 4%	• 취득원가의 4%	• 장부가액의 10%, 20%, 30%
균형 조정	• 부과 및 공제 적용	• 부과 및 공제 적용	• 부과 및 공제 적용

자료: BPP Learning Media Ltd, *Module D Taxation*, 2013, p. 181.

가. 산업용(industrial) 건물 공제

1) 산업용 건물-적격 거래(qualifying trade)

감가상각 공제 규정상 ‘산업용 건물 및 구축물’은 적격 거래(qualifying trade)에 사용되는 건물 및 구축물 또는 그 일부를 의미한다. ‘구축물’은 일반적으로 건물로 보지 않는 인공적 건축물을 의미하며, 예를 들면 벽, 교각, 댐, 도로, 연못, 시추공 및 우물, 하수시설 등이 포함된다. 감가상각 공제가 적용되는 ‘적격 거래’는 다음을 의미한다.¹²⁴⁾

- 공장, 제분소 및 이와 유사한 건물에서 수행되는 거래
- 운송, 터널, 부두, 상수도, 전기가스 설비, 전화 및 전신 서비스
- 재화를 생산하는 과정이나 제조업을 구성하는 거래 등에 사용
- 홍콩에 도착한 재화나 물품을 보관하거나, 거래과정에서 보관이 필요한 재화나 물품, 제조의 과정에서 보관이 필요한 재화나 물품
- 농업 사업 관련
- 연구개발 목적 관련

123) BPP Learning Media Ltd, *Module D Taxation*, 2013, pp. 181~203.

124) IRO §40(1)

2) 산업용 건물-적격 건물 및 건축물

다음과 관련된 건물과 건축물은 공제가 허용되는 적격 건물 및 건축물이 아니다.¹²⁵⁾

- 숙소사(육체노동자용 제외)
- 소매점
- 전시실
- 호텔
- 사무실(디자인 사무실 제외)

건물 및 건축물의 일부가 쇼룸 등과 같이 적격 목적을 충족하지 않는 경우, 만약 전체 지출 금액 중 비충족 지출금액 비중이 10%를 초과하지 않는다면 전체 금액이 적격 목적을 충족한 것으로 본다. 만약 10%를 초과한다면, 해당 건물 및 건축물과 관련하여 자본적 지출금액을 적격 및 비적격으로 배분하게 된다.

3) 산업용 건물-적격 지출

적격 지출은 건물 및 건축물의 건설과정에서 발생한 자본적 지출로서 아래 사항을 포함하며, 사업의 개시 이전에 지출된 자본적 지출금액은 사업의 개시일에 지출된 것처럼 취급한다.¹²⁶⁾

- 산업용 건물 및 건축물만을 위한 자금조달 목적의 차입금에 대한 지급이자 및 확약료 (commitment fees)
- 현지조사, 기반공사 준비를 위한 통상 작업, 상하수도 배관 등과 관련한 지출

한편 아래의 지출은 적격 지출에서 제외 또는 차감된다.

- 보조금, 지원금 등의 명목으로 환급받은 금액
- 토지 또는 토지에 대한 권리의 취득 관련 지출
- 토지 위 기존건물의 철거관련 지출
- 토지 수준측량(levelling) 및 준비 관련 지출

125) IRO §40(1)

126) IRO §40(2)

4) 산업용 건물-최초 공제

건설비용이 발생한 인(人) 또는 사용 건물을 취득하여 사용을 개시한 구매자에게는 적격 지출 금액의 20%에 해당하는 최초 공제가 허용된다. 최초 공제는 건물이 아직 준공 전이라도, 지출이 이루어진 해에 허용된다. 만약 해당 건물이 준공 후 적격 건물이 되지 못한다면, 기존에 제공된 최초 공제액이 취소된다.¹²⁷⁾

5) 산업용 건물-연간 공제

연간 공제 적용을 위해서는 회기 말에 해당 산업용 건물이 사용되고 있어야 한다.¹²⁸⁾ 1965/66 회기 이전에 연간 공제는 적격 지출금액의 2%(정액법)를 적용하였으나, 이후 4%(정액법)를 적용하여 오고 있다.

6) 산업용 건물-균형 조정(balancing charge)

건물 및 구축물에 대한 균형 조정은 다음 중 하나의 경우에 발생한다.¹²⁹⁾

- 건물 및 구축물에 대한 관련 지분이 팔렸을 때
- 리스 계약이 종료되었을 때(임차인이 인수, 점유지속하거나 계약이 연장 또는 신규 리스 계약이 체결된 경우를 제외)
- 건물 및 구축물의 철거, 파괴, 완전 사용 중단

균형금액(balance)은 균형 조정 직전의 지출금액의 세무상 장부금액(residue of expenditure)과 매각, 보험, 보상금액 및 잔존가치의 합계금액(이하 '총매각금액')의 차액이다. 세무상 장부금액이 총매각금액보다 클 경우, 해당 차액은 균형 공제(balancing allowance)가 허용된다. 하지만 다음의 경우에는 균형 공제가 허용되지 않는다.

- 통상적인 사업과 관련없는 목적으로 건물을 철거¹³⁰⁾
- 균형 조정 직전 해당 건물이 산업용 또는 상업용의 적격 용도를 충족하지 않았을 때¹³¹⁾

127) IRO §34

128) IRO §34(2)(a)

129) IRO §35(1)

130) IRO §35(2)(b)(ii), 예를 들어 공장을 좀 더 좋게 신설하기 위해 철거하는 경우에는 균형공제가 허용되지만, 매각 목적으로 재건축하는 경우에는 허용되지 않음

131) IRO §35(2)(b)(i)

총매각금액이 세무상 장부금액보다 작을 경우, 해당 차액은 균형 부과(balancing charge) 명목으로 과세소득에 산입된다.¹³²⁾ 균형 부과는 세무조례 제33A 및 제34조에 따라 제공된 공제액 합계를 초과할 수 없다.¹³³⁾ ‘매각 후 세무상 장부금액(residue of expenditure after sale)’은 건물 및 구축물의 건설과 관련하여 발생한 자본적 지출금액에서 최초 공제, 연간 공제, 균형 공제 금액을 차감하고, 균형 부과금액을 가산한 금액이다.¹³⁴⁾ 건물이 회기 말에 산업용 또는 상업용으로 사용되지 않을 경우, 손금처리 가능금액에서 연간 공제액을 차감하며, 이를 개념적 공제(notional allowance)라고 한다.¹³⁵⁾

7) 산업용 건물-사용된 건물 및 구축물의 취득

산업용 건물 및 구축물 지분에 대한 소유권 변동이 있는 경우, 사용된 건물 및 구축물에 대한 연간 공제액은 다음과 같이 산정한다.

$$\text{사용된 건물 취득자의 연간 공제 금액} = \text{매각 후 세무상 장부가액} * \frac{136)}{(25\text{년}^{137}) - \text{최초 사용 개시 후 상각 연수}}$$

예제(사용된 산업용 건물 취득 시 공제)

·A사 및 B사는 3월말 결산법인이다. A사는 M건물을 HKD2,000,000을 들여 건설하였고, 동 대금은 2007년 6월에 HKD500,000, 2008년 6월에 HKD1,500,000이 지급되었다. A사는 M건물을 2011년 7월에 B사에 매각하였고, 부지를 제외한 건물의 매각대금은 HKD2,500,000이었다. M건물과 관련한 B사의 연간 공제액은 얼마인가?

해설

·A사의 세무상 처리

① M건물의 매각전 장부가액은 HKD1,360,000이다.

(단위: 홍콩달러)

연도	연간 건설지출	최초공제(20%)	연간공제(4%)	누적장부금액
2007	500,000	(100,000)	-	400,000
2008	1,500,000	(300,000)	(80,000)	1,520,000
2009			(80,000)	1,440,000
2010			(80,000)	1,360,000

132) IRO §35(3)(a)

133) IRO §35(3)(b)

134) IRO §40

135) IRO §40(1)

136) 1965/66 회기 이전 최초 사용 건물 및 구축물은 ‘2’를 적용함

137) 1965/66 회기 이전 최초 사용 건물 및 구축물은 50년을 적용함

- ② 균형부과액은 640,000이다. 매각차액은 HKD1,140,000(=2,500,000-1,360,000)이지만, 매각 전까지 인식한 최초 및 연간 공제액의 누적 공제액을 한도로 한다.
- B사의 세무상 처리
- ③ B사는 A사의 세무상 장부가액을 넘겨받으며, 균형부과액을 가산한다. 즉 B사가 인식하게 되는 M건물의 매각 후 세무상 장부가액은 HKD2,000,000(=1,360,000+640,000)이다.
- ④ M건물이 최초 사용된 2008년부터 25년이 되는 해는 2033년이다. B사가 M 건물을 취득한 2011년부터 2033년까지는 22년이 되고, 22년이 잔여내용연수가 된다.
- ⑤ B사의 연간공제액은 HKD90,911(=HKD2,000,000/22년)이 된다.

자료: BPP Learning Media Ltd, *Module D Taxation*, 2013, pp. 185~186.

8) 산업용 건물-미사용 건물 및 구축물의 취득

미사용 건물 및 구축물이 거래될 경우, 매도자(vendor)에게는 최초 공제가 허용되지 않는다.¹³⁸⁾ 취득자는 자본적 지출을 발생시킨 것으로 간주되고, 최초 공제와 연간 공제가 허용된다.

만약 건물이 부동산 개발업자로부터 취득될 경우, 간주 자본적 지출금액은 토지 가격을 제외한 순취득가격(net price paid by purchaser)이다.¹³⁹⁾ 간주 자본적 지출금액은 상황에 따라 인정금액이 달라지며, 주요 사항은 <표 2-1-9>와 같다.

<표 2-1-9> 미사용 건물 및 구축물의 취득 시 간주 자본적 지출금액

매도자	미사용 건물의 최초 매각 시	미사용 건물의 후속 매각 시
부동산 개발업자일 때	• 순취득가격	• 최초매각 순취득가격과 최종매각 순취득가격 중 작은 금액
부동산 개발업자가 아닐 때	• 건설비용과 순취득가격 중 작은 금액	• 건설비용과 최종매각 순취득가격 중 작은 금액

자료: BPP Learning Media Ltd, *Module D Taxation*, 2013, p. 187.

예제(미사용 산업용 건물 취득 시 공제)

·E사가 HKD5,000,000을 지출하여 건설한 건물을 아래의 거래 후 H사가 취득하였을 때, H사의 세무상 간주 자본적 지출 금액은 얼마인가?

(단위: 홍콩달러)

	매도자	매수자	거래금액
1차 매각	E	F	8,000,000
2차 매각	F	G	10,000,000
3차 매각	G	H	9,000,000

138) IRO §35B(a)

139) IRO §35B(a)(i)

해설

- E사가 부동산 개발업자일 때, 간주 자본적 지출금액은 HKD8,000,000과 HKD9,000,000 중 작은 값인 HKD8,000,000이 된다.
- E사가 부동산 개발업자가 아닐 때, 간주 자본적 지출금액은 HKD5,000,000과 HKD9,000,000 중 작은 값인 HKD5,000,000이 된다.

자료: BPP Learning Media Ltd, *Module D Taxation*, 2013, p. 188.

나. 상업용(commercial) 건물 공제

1) 상업용 건물-적격 지출

상업용 건물 및 구축물은 거래·영업 또는 전문직을 영위하는 인(人)에 의해 사용되는 산업용 이외의 건물 및 구축물을 의미한다.¹⁴⁰⁾ 적격 지출금액은 건물 및 구축물의 건설과 관련하여 발생한 자본적 지출금액이다. 이를 포함하여 이하에서 별도로 언급되지 않는 항목들은 산업용 건물 및 구축물과 동일한 방식으로 산정된다.

2) 상업용 건물-연간 공제

연간 공제 허용액은 적격 지출금액의 4%(정액법)이며, 회기 말에 해당 건물 및 구축물이 상업용으로 사용되고 있고 지분이 보유하고 있어야 적용된다. 1997/98 회기까지 동 공제는 재건축 공제(rebuilding allowance)로 불렸고, 1989/90 회기 및 그 이전에는 연 0.75%, 1990/91~1997/98 회기에는 연 2%의 공제가 허용되었다.

상업용 건물이 1998/99 회기 이전에 사용 개시된 경우, 해당 건물은 1998/99 회기에 사용개시한 것으로 간주되며, 간주 적격 지출(deemed qualifying expenditure)은 건설 비용에서 기존에 적용된 재건축 공제금액을 차감한 금액이다. 간주 적격 지출금액을 기준으로 이후 연간 공제금액이 산정된다.¹⁴¹⁾

3) 상업용 건물-균형 조정

1997/98 회기까지 상업용 건물에 대한 균형 조정 규정이 없었다. 1998/99 회기부터 상업용 건물에 대한 균형 조정이 이루어졌고, 2004/05 회기에는 상업용 건물과 산업용 건물에 대한 균형 조정 규정이 통합되었다.¹⁴²⁾

140) IRO §40(1)

141) IRO §33A(4)

4) 상업용 건물-미사용 건물 및 구축물의 취득

미사용 건물 및 구축물의 취득 시 허용되는 연간 공제 금액은 아래와 같이 상업용 건물과 유사한 공식을 통해 산정된다. 다만 최초 사용 개시 연도가 1998/99 회기 이전인 경우, 최초 사용 개시 연도를 1998/99 회기로 간주한다.¹⁴³⁾

$$\text{사용된 건물 취득자의 연간 공제 금액} = \text{매각 후 세무상 장부가액} * \frac{1}{(25\text{년} - \text{최초 사용 개시 후 상각 연수})}$$

예제(사용된 상업용 건물 취득 시 공제)

·부동산 개발업자는 N상가 건설비로 HKD2,000,000을 지출하였다. P사는 부동산 개발업자로부터 1988년 11월에 N상가를 HKD6,000,000에 구매하였다. 2013년 3월에 P사는 Q사에 N상가를 매각하였다. 이때 매각가격이 (a)HKD4,000,000일 때와 (b)HKD720,000일 때 각각 Q사의 N상가와 관련한 연간 공제액은 얼마인가? P, Q사 모두 3월 말 결산법인이다.

해설

·P사의 세무상 처리

① M건물의 매각 전 장부가액은 HKD726,000이다. (단위: 홍콩달러)

	공제율	적용 연수	기간	금액
건설지출				2,000,000
연간공제1	0.75%	2	88/89~89/90	(30,000)
연간공제2	2.00%	8	90/91~97/98	(320,000)
간주 적격지출				1,650,000
연간공제3	4.00%	14	98/99~11/12	(924,000)
매각 전 장부금액				726,000

② N상가를 HKD4,000,000에 매각 시, 매각차익은 HKD3,274,000이 발생하지만, 간주 적격지출 설정 후 기인식 공제액인 HKD924,000을 한도로 하므로, 균형부과액은 HKD924,000이 된다.

③ N상가를 HKD720,000에 매각 시, 매각차손이 HKD6,000 발생하게 되고, 동 금액이 균형공제액이 된다.

·Q사의 세무상 처리

④ N상가를 HKD4,000,000에 매수 시, Q사가 인식하게 되는 N상가의 세무상 장부가액은 HKD1,650,000 (=726,000+924,000)이 된다. 1998년부터 25년이 되는 해는 2023년이며, 2012년부터는 12년이 남았다. Q사의 연간공제액은 HKD137,500(=1,650,000/12년)이 된다.

⑤ N상가를 HKD720,000에 매수 시, Q사가 인식하게 되는 N상가의 세무상 장부가액은 HKD720,000 (=726,000-6,000)이 되며, 연간공제액은 HKD60,000(=720,000/12년)이 된다.

자료: BPP Learning Media Ltd, *Module D Taxation*, 2013, pp. 189~190.

142) IRO §35

143) IRO §33A(2)

다. 기계류 및 공장설비에 대한 감가상각 공제

1) 기계·설비-‘기계류 및 공장설비’의 의미

공장설비는 일반적으로 영업수행을 위해 사용되는 기계장치라고 표현된다. 그러나 실제적으로는 영업수행을 목적으로 하는 내구성을 가진 장치로서의 가재도구를 의미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내구성을 가졌다는 것이 계속 지속되어야 함을 의미하지는 않으며, 일반적으로 2년 이상 사용하는 경우에는 설비장치로 취급할 수 있다. 공장설비·기계장치의 의미는 조례에서 정의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일반적 의미로 해석된다. 어떤 것이 기계장치에 속하는지 또 어떤 것을 공장설비라고 말할 수 있는가를 결정하는 데는 많은 어려움이 존재하며, 다음의 판단 기준이 적용된다.¹⁴⁴⁾

- 기능 기준(functional test): 도구나 장치를 가지고(with) 영업활동을 수행하면 공장설비이다.
- 설정 기준(setting test): 영업활동이 그 안에서(in) 수행되면 건물이다.

판단기준을 풀어서 설명하면 다음과 같이 이해해 볼 수 있다. 공장설비에 대한 공제를 허용하기 위해서는 공장설비가 건물·건축물과 어떻게 구별되는가가 중요한 지점인데, 일반적으로 이 둘을 구별하는 것은 기계장치가 위치한 장소에 부착되어 있느냐 아니냐로 구별한다. 즉 건물로서 기능하거나 건물의 일부분으로 부착되어 있지 않고, 거래의 과정에서 기능적 요소로 사용된 경우에 공장설비로 간주한다.

반면 일반적인 조명장치는 건물에 부착되어 있는 것으로 간주하는데, 예를 들어 식당이나 호텔의 분위기나 디자인 변경을 위해 조명장치를 바꾼 경우에는 공장설비 비용으로 간주한다. 그 외에 공장설비로 분류하는 건축물도 존재하는데, 예를 들어 건식독¹⁴⁵⁾이나 수영장의 경우는 특별히 공장설비로 분류된다. 그 이유는 건식독의 경우는 선박을 수리하거나 청소·건조하는 공간이므로 설비의 기능을 수행하는 것이며, 수영장의 경우는 단지 건물로서가 아니라 수영을 수행하는 공간으로 사용되기 때문이다.

홍콩에서는 공장설비나 기계장치로서 자격이 주어지는 항목과 세무국에서 공장과 기계장치로서 지정한 항목, 그리고 공장설비나 기계장치의 특성을 지닌 항목으로 분류할 수 있다. 일반적으로 적절한 공장설비로는 에어컨 장비, 방송국 송신기, 거리 신호등이 해당되며, 세무

144) BPP Learning Media Ltd, *Module D Taxation*, 2013, p. 193.

145) 선박을 건조, 수리하기 위해 조선소나 항만 등에 건설된 설비를 말함

국에서 지정한 항목에는 안내표지판, 건식독 그리고 신형자동차에 부과된 세금도 포함된다. 그 외 기계장비의 특성을 가지고 있는 항목으로는 콘크리트 사일로, 전화설비인 Trunking¹⁴⁶⁾ 등이 포함된다. 각 분류별로 <표 2-1-10>에 구체적 항목을 나열하였다.

<표 2-1-10> 공장설비 및 기계장치로서 적격 품목

일반적 기계장치	세무국 지정장치	기계장비 특성을 지닌 장치
<ul style="list-style-type: none"> 에어컨 장비(각 방에 부착된 에어컨은 제외) 은행 안전금고, 문 등 방송국 송신기 전기선 등 가로등(Gas-electric) 기중기 및 에스컬레이터 본선(가스·수도) Oil tank Shipping 스프링클러 사무용품 사무용 가구 사무실 에어컨 택시 미터기 비행기(엔진 포함) 자전거 콘크리트 파이프 전기솔과 주전자 자료입출력 장치 전기관련 제조장비 자동차 장비 플라스틱제조 기계장비 Shipping-외부모터장착장치 건직물제조 기계장비 황산, 질산 공장설비 화물 자동차 섬유제조 기계장비 트렉터 방적·편물 등 제조장비 	<ul style="list-style-type: none"> 기계설계 및 공정도면 (납세자판매제품 제조에 사용될 기계제조 관련) 디스플레이 플랫폼 새 자동차류 취득 시 최초 등록세 철문(건물 및 건축물의 일부가 아닌 경우) 사무실 파티션 장비 포스터표지판(광고 관련) 안내표지판 건식독 조명이나 실내장식 장비 법정변호사의 책 	<ul style="list-style-type: none"> 콘크리트 사일로(곡물을 저장·운반하는 기계장비) 칼종류(평균 3년의 수명을 가진 신발제조 기계로 사용되는 칼) 수영장(건물이라기보다 특정 기능을 수행하는 장비로 취급) Trunking(전화설비의 일종-알람, 현금출납기, 경보기, 연기검출기 등 스위치 관련 변환기) 간판(건물지붕에 붙어 있는 것)

자료: CCH, *Master Tax Guide*, 2009/10; DIPN No.7, Appendix B

다음은 세무국에서 예외조항으로 분류하는 항목으로 세무국에서 지정한 항목과 비품, 용구, 물품으로 분류되는 것, 그 외 특별히 기계장치에서 배제하는 항목으로 나눌 수 있다. 구체

146) 전선을 감싸는 플라스틱으로 만든 외피를 말함.

적으로 공장설비 및 기계장치에서 배제되는 항목을 <표 2-1-11>에 기재하였다.

<표 2-1-11> 기계·설비에서 배제되는 부적격 품목

세무국에서 지정한 배제장치	비품·용구·물품으로 분류	기계장치에서 배제된 것
<ul style="list-style-type: none"> • Acoustic tile ceilings • Ceiling lighting point • Cocklofts • Fish ponds • Shop front • 전화선 등 • 전기배선관련 • 자동차 주차장비·주차대 • 주유 덮개 • 차 세차장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벨트장치 • 도자기와 칼붙이(나이프, 포크 등) • 부엌용구 • 린넨(천류) • 날개(loose) 공구 및 연장 • 직물 제품(커튼, 카펫 포함) • 외과 및 치과 기구 • 엑스레이 튜브 및 적외선 장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축구클럽의 New concrete stand • 지붕이나 방공호 • False ceiling • Electric lamps • Acoustic ceiling • 지붕의 건물 • 유리건물 • 차 세차장 또는 건물 • 건물의 장비 공동사용

자료: CCH, *Master Tax Guide*, 2009/10; DIPN No.7, Appendix A 및 C

2) 기계·설비-적격 지출

적격 지출 금액은 취득가격, 운송비, 보험료, 해당 자산 취득 목적의 특정 차입금에 대한 지급이자 및 확약료, 배송 및 설치비, 기계설치에 부수적인 건물 개조를 위한 자본적 지출을 포함하며, 보조금, 지원금 등 환급액, 식기류 및 아래 항목을 제외한다.

- 해당 그룹에 속하는 공장설비의 기공제된 초기상각과 연간 상각액의 합계액
- 해당 그룹에 속하는 공장설비에서 받은 매각, 보험금, 보험보상금의 합계액
- 풀링제도 밖에 존재하거나 과세가능이윤 창출 과정에서 사용되지 않은 기계장치에 대한 추정 시장가치의 총액

3) 기계·설비-최초 공제

적격한 납세자가 이용가능한 최초 공제금액은 1989/90 과세연도에 60%로 결정된 이후 지금까지 이 공제율이 적용되고 있다.

4) 기계·설비-풀링 시스템

일반적으로 기계류 및 공장설비에 대한 감가상각 공제는 풀링 시스템(pooling system)을 통해 산정한다. 풀링 시스템은 1980/81 회기에 도입되었고, 연간 공제율이 동일한 자산에 대

한 자본적 지출의 집합(pool)을 구성하여 균형 부과 및 공제의 잦은(frequent) 산정을 회피할 수 있도록 고안되었다. 이러한 풀링 시스템은 여러 가지 자산에 대해서 공제를 조정하는 것으로서 공제항목을 10%, 20%, 30%의 해당 그룹으로 분류하여 적용하며, 이의 적용은 해당 과세연도에 감소된 가치에 대해 적용하게 된다.

풀링 시스템하에서 균형공제는 납세자가 사업을 중지하였을 때에만 발생할 수 있다. 즉 사업 종료 시 처분한 기계장비 및 공장설비의 총액이 상각자산의 가치보다 더 적을 때 발생한다. 이때 균형공제금액은 총자산과 상각자산의 차이만큼 발생하며 상각자산의 가치를 초과할 수 없다.

반면 균형부과는 두 가지 경우에서 발생하는데, 하나는 해당 과세연도에 상각자산의 평가액이 음수(-)가 되었을 경우이고 또 다른 하나는 납세자가 사업을 종료할 경우 발생할 수 있다. 먼저 해당 과세연도에 상각자산이 음수(-)라는 것은 풀링을 통한 공제액이 상각자산의 가치를 초과했을 때 발생한다. 이때는 초과된 금액만큼 균형부과를 하게 된다. 또 다른 하나는 납세자가 사업을 종료한 경우인데, 위의 균형공제와 반대로 사업종료 처분으로 인한 공장설비 등의 총액이 상각자산의 가치보다 더 크게 책정되었을 때 발생하며, 두 자산가치의 차이만큼 균형부과하게 된다.

5) 기계·설비-연간 공제

기계류 및 공장설비의 연간 공제금액은 감가상각률별 풀링 단위에 대해 정률법을 통해 산정한다. 10%의 공제율이 적용되는 항목에는 에어컨 장치, 은행 보안설비(금고, 문 등), 방송국 송신기 등이 포함되며, 20%의 공제율이 적용되는 항목에는 가정용구, 가구, 방 단위의 에어컨이 포함되고, 그 외에 비행기, 자전거 등은 30%의 연간공제를 적용하고 있다. 10%, 20%, 30%가 적용되는 항목을 <표 2-1-12>에 적시하였다. 표에 명시된 품목의 기계장비류는 해당 그룹에 속하는 공제율을 적용받고 그 이외에 항목은 일반적으로 20%의 공제율을 적용받는다. 그 외, 예를 들어 매우 수명이 짧은 기계장비류 등의 특수 상황을 가진 기계장비의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세무국장의 재량에 의해 10%, 20%, 30% 외의 높은 감가상각률을 적용하기도 하며, 지정된 고정자산의 자본지출에 대해서는 100% 공제율을 적용하기도 한다.

〈표 2-1-12〉 기계·설비 연간공제 적용 감가상각률

10% 적용항목	20% 적용항목	30% 적용항목
<ul style="list-style-type: none"> 에어컨 장비(각 방에 부착된 에어컨은 제외) 은행 안전금고, 문 등 방송국 송신기 전기선 등 가로등(Gas-electric) 기중기 및 에스컬레이터 본선(가스·수도) Oil tank Shipping-배 외 스프링클러 정의된 항목에 포함되지 않는 항목 중 운송, 터널, 부두, 수도, 가스, 전기, 전화 서비스와 관련된 모든 항목 	<ul style="list-style-type: none"> 사무용품 가구(Soft 가구는 제외) 사무실 에어컨 택시 미터기 정의된 항목에 포함되지 않는 모든 항목 	<ul style="list-style-type: none"> 비행기(엔진 포함) Bar syphon apparatus 자전거 Bleaching and finishing machinery 콘크리트 파이프 전기술, 주전자 데이터 입출력 장치 전기제조 기계장비 자동차장비 플라스틱제조 기계장비 Shipping-외부모터 장착장치 건축물제조 기계장비 황산, 질산 공장설비 화물자동차 섬유제조 기계장비 트랙터 방직, 편물 등 제조장비

자료: DIPN No.7, Appendix A

기계류 및 공장설비에 대한 공제액 산정을 다음 예제를 통해 살펴본다.

예제(기계류 및 공장설비에 대한 공제액 산정)

A회사의 과세연도는 1월 1일(기초)부터 12월 31일(기말)까지이며, 특정 연도에 일어난 기계류 및 공장설비와 관련한 거래가 다음과 같을 때, 세무상 공제액은 얼마인가? 별도의 언급이 없는 경우 취득·처분자산은 회사 사용목적 자산이다.

① 기초 기계류 및 공장설비 세율 풀(pool)별 장부가액

(단위: 홍콩달러)

세율 풀(pool)	10%풀	20%풀	30%풀
기초 장부가액	25,000	50,000	150,000

② 2월: 기계장치(20%풀) 하나를 HKD27,500에 매각함

③ 3월: 복사기를 HKD10,000에 구매함

④ 4월: 컴퓨터A를 HKD9,000에 구매함

⑤ 5월: 낱개(loose) 연장을 HKD4,000 들여 교체함

⑥ 6월: 2년 전 HKD14,000에 개인용으로 취득한 컴퓨터B를 영업용으로 전환함

⑦ 7월: 자동차를 HKD200,000에 취득후, 영업용과 개인용으로 50:50 사용하기로 함

⑧ 8월: 직물기계를 리스로 취득(현금가 HKD150,000, 계약금 납부 HKD30,000.

월할부금 8월부터 매월 HKD13,500을 10회 납부)하고, 설치비 HKD17,500 부담

⑨ 9월: 절단기를 HKD130,000에 구매하였고, 내년부터 사용하기로 함

해설

·아래와 같이 기계류 및 공장설비에 대한 올해 공제액 합계는 HKD315,258이다. (단위: 홍콩달러)

	10%풀	20%풀	30%풀	공제액
기초 장부가액	25,000	50,000	150,000	
가산1				
복사기(3월) 최초공제		10,000 (6,000)		6,000
컴퓨터(6월)(a) 최초공제(b)			6,860 N.A.	
자동차(7월)(c) 최초공제			100,000 (60,000)	60,000
직물기계(8월)(d) 최초공제(e)			167,500 (64,500)	64,500
차감				
기계 처분(2월)(f)		(27,500)		
소계(장부가액)	25,000	26,500	299,860	
연간공제율	10%	20%	30%	
연간공제액	(2,500)	(5,300)	(89,958)	97,758
가산2				
절단기(9월)(g) 최초공제			130,000 (78,000)	78,000
기말 장부가액	22,500	21,200	261,902	
공제액 요약				
최초공제				208,000
연간공제				97,758
특별공제(컴퓨터A)(h)				9,000
공제액 합계				315,258

(a) 컴퓨터(6월) 간주취득액: 2년 전 취득하였으므로, 공제를 2번 받았고, 용도전환 시 장부가액인 HKD6,860 (=14,000*(1-30%)*(1-30%))을 취득가액으로 본다.

(b) 컴퓨터(6월) 최초공제액: 최초취득이 아니므로 해당 사항이 없다.

(c) 자동차(7월): 영업용(50%) 해당액만 포함된다.

(d) 직물기계(8월) 취득액: 현금가와 설치비용을 취득금액으로 본다.

(e) 직물기계(8월) 최초공제액: 할부금 중 원금해당액은 {현금가(-)계약금}/(할부개월 수)로 계산한다. 동 사례에서 월 할부금 중 원금해당액은 HKD12,000(=(150,000-30,000)/10회)이 되고 5회 납입하였으므로, 월할부금 올해 납부액 중 원금해당액은 HKD60,000(=12,000*5회)이 된다. 최초공제율은 60%이므로, 최초공제금액은 HKD64,500(=(30,000계약금+60,000할부원금+17,500설치비)*60%)이 된다.

(f) 기계처분(2월): 처분액을 해당 풀(pool)의 장부가액에서 차감한다.

(g) 절단기(9월) 취득액: 올해 사용개시하지 않았으므로 연간공제 대상이 아니다.

(h) 특별공제(컴퓨터A): 세무조례 16G에 따라 최초공제 100% 적용하는 자산이다.

(i) 날개연장 교체(5월): 기계·설비공제 부적격 품목이다.

자료: BPP Learning Media Ltd, *Module D Taxation*, 2013, pp. 199~200.

V 기타 주제

홍콩에서 특정 산업이나 영업활동에 대한 조세 혜택은 주로 특혜 세율(concessionary tax rates)의 형태로 제공되며 이는 '제VI.2.나. 특혜 세율' 단락에서 후술한다. 홍콩에는 특정한 상황에서 역외(offshore)펀드의 이윤세가 면제될 수 있다는 점을 제외하고 외국인투자자에 대한 특별한 조세혜택은 없다.¹⁴⁷⁾ 이하에서는 특정 주제와 관련한 세무상의 취급, 그리고 특정 산업이나 영업활동의 과세가능이윤을 산정하는 특별 조항에 대해 살펴본다.

1. 특정 주제별 세무취급

홍콩은 아시아 금융허브 중 하나로서 기능하고 있으며, 투자, 거래, 위험완화(risk hedging) 목적으로 금융 상품이 널리 사용된다. 금융상품의 구조는 점차 복잡해져 가고 있으며, 이에 대응하여 금융상품에 대한 인식과 측정 요건을 기술한 HKFRS(Hong Kong Financial Reporting Standard) 9(Financial Instruments)와 같은 국제 회계기준이 도입되었다. 한편 홍콩에서 영업은 외화를 이용하여 결제되는 경우가 많고 그러한 경우 환율에 따라 손익이 발생하기 마련이며, 국내 회계기준인 Hong Kong Accounting Standard 21에서 관련 처리 지침을 제공한다.

가. 금융상품(financial instruments)

2013년 홍콩 중심법원(Court of Final Appeal) 판례¹⁴⁸⁾에서 과세가능한 이윤(taxable profits)은 실제로 발생하거나(actual) 실현된(realized) 것을 의미하며, 잠재적이거나(potential) 예상에 기반한(anticipated) 것이 아니라는 원칙이 확인되었다. 그러나 그 이후 금융기관 및 주식 중개회사들은 실현주의 방식으로 손익을 재산정하는 데에 상당한 비용이 소요되므로, 자신들이 적용하고 있는 공정가치회계(fair value accounting)를 세무상 기초로 삼을 수 있도록 인정해 줄 것을 요청하였고, 2019년 세무조례¹⁴⁹⁾는 동 요청을 수용하였다.

147) PwC, "Hong Kong SAR, Corporate - Tax credits and incentives," 2021. 7. 5., <https://taxsummaries.pwc.com/hong-kong-sar/corporate/tax-credits-and-incentives>, 검색일자: 2021. 9. 10.

148) *Nice Cheer Investment Ltd v CIR* (2013) 16 HKCFAR 813

149) IRO §18H

공정가치에 기반한 과세소득 산정을 위해서는 우선 서면으로 공정가치 적용신청(election)이 필요하며, 회계기준에 부합하는 재무제표를 작성하는 납세자만 신청 가능하다. IFRS 9(금융상품)에 따라 재무제표를 작성하는 외국법인도 신청가능하며, IFRS 9과 차이가 있는 기준을 적용하는 경우 해당 항목에 대한 조정이 필요하다.

예제(실현주의→공정가치 적용신청)

·A사는 B사 주식을 HKD10,000에 취득하였고, 이를 당기손익 공정가치측정 금융자산(Fair Value through Profit or Loss, FVPL)으로 인식하였다. 이후 해당 주식의 공정가치의 변화 및 A사가 인식한 손익금액이 아래와 같고, A사는 2019년 기중에 공정가치 적용신청을 하였을 때, 연도별 세무상 처리는 어떻게 되는가?

(단위: 홍콩달러)

과세연도	2018년 초	2018년 말	2019년 말
주식 공정가치	10,000	13,000	11,000
주식 장부가치	10,000	13,000	11,000
평가손익 인식액	-	(+)3,000	(-)2,000

해설

·2018년: A사는 공정가치 적용신청을 하지 않았으므로, 실현주의에 따라 과세소득이 결정되고, 관련 평가손익은 과세소득에 산입되지 않는다.

·2019년: A사가 공정가치 적용신청을 하였으므로, 해당 금융자산은 공정가치로 인식하게 되고, 2019년 말 공정가치와 기존 세무상 장부가액의 차액인 HKD1,000(=HKD11,000-HKD10,000)이 과세소득에 산입된다.

자료: DIPN No.21(Locality of profits) §54, pp. 23~25.

신청은 소급 적용되지 않으며(no retrospective effect), 조세회피에 악용을 차단하기 위해 원칙적으로 취소할 수 없다(irrevocable). 다만 상업적 이유가 충분하고, 조세회피 의도가 없다고 판단될 경우, 세무국장의 승인을 받아 공정가치 적용신청을 철회(revocation)할 수 있다. 공정가치 적용이 중단된 경우, 중단연도(cessation year) 기초에 금융자산을 처분 후 재취득한 것으로 간주한다. 그리고 이 과정에서 발생하는 손익은 과세소득에 산입된다.¹⁵⁰⁾

예제(공정가치 적용신청 철회)

·A사는 액면 HKD10,000(표면금리 연4%)인 채권을 액면가로 취득하였고, 이를 기타포괄손익 공정가치측정 금융자산(Fair Value through Other Comprehensive Income, FVOCI)으로 인식하였다. A사는 2018년 공정가치 적용신청을 하였고, 2019년 이를 철회하였다. 주식의 공정가치의 변화 및 A사가 인식한 기타포괄손익 금액이 아래와 같을 때, 연도별 세무상 처리는 어떻게 되는가?

150) IRO §18H(7)

(단위: 홍콩달러)			
과세연도	2018년 초	2018년 말	2019년 초
채권 공정가치	10,000	12,000	12,000
채권 장부가치	10,000	12,000	12,000
이자 수령액	-	400	-
기타포괄손익 인식액	-	(+)2,000	-

해설

·2018년: 공정가치 적용신청을 하였지만, 평가차액 HKD2,000을 손익으로 인식하지 않았으므로, 평가차액은 과세소득으로 산입되지 않는다. 이자소득 HKD400은 과세소득으로 산입된다.

·2019년: 공정가치 적용신청이 철회되었으므로, 채권이 2019년초에 처분된 것으로 본다. 채권의 세무상 장부가액은 HKD12,000이 되며, 채권처분이익 HKD2,000(=HKD12,000-HKD10,000)이 2019년 과세소득에 산입된다.

자료: DIPN No.21(Locality of profits) §54, pp. 26~27.

나. 외환차이(foreign exchange differences)

세무국은 외국법인이 장부를 모국 통화로 관리하는 것을 허용하지만, 과세소득은 반드시 홍콩달러로 표시되어야 한다.¹⁵¹⁾ 거래에서 발생하는 외환차손익이 과세되는지 여부는 관련 거래가 자본성 거래냐, 수익성 거래냐에 따라 달라지며, 전자와 관련된 경우 비과세, 후자와 관련된 경우 과세된다. 기말 평가 과정에서 발생하는 외화환산차손익은 원칙적으로 과세소득에 반영되지 않는다. 하지만 외화환산차손익이 HKFRS 9(금융상품)와 관련하여 발생하고 공정가치 적용신청이 이루어진 경우에 한해, 동 외화환산차손익은 과세소득에 반영된다.¹⁵²⁾

다. 디지털 경제¹⁵³⁾

세무조례에는 디지털 경제를 위한 별도의 규정이 존재하지 않고, 일반 원칙을 준용하여 과세 여부를 판정하게 된다. 즉 세무조례 제14조에 따라, 홍콩에서 거래·영업 또는 전문직을 수행하고 발생한 이윤은 과세대상이 된다. 홍콩 비거주자가 홍콩에서 영업을 수행하였는지의 여부는 고정사업장보다는 사실관계에 기초하여 판단된다. 디지털 경제와 관련하여 소득원천지를 확인할 때에도 일반적인 원칙이 적용되며, 따라서 이윤을 발생시킨 운영활동(operations)이 무엇인지와 동 운영활동이 어디에서 발생하였는지를 확인하는 일이 중요하다. 세무국은

151) *CIR v Malaysian Airline System Berhad* 3 HKTC 775

152) DIPN No.42(Profits tax - Part A : Taxation on financial instruments, Part B : Taxation of foreign exchange differences)

153) DIPN No.39(Profits tax - Digital Economy, Electronic Commerce and Digital Assets)

이커머스와 관련하여, 서버의 위치보다는 이윤을 발생시킨 이커머스 계약체결에 기여한 핵심 운영활동을 기준으로 소득원천지를 결정한다.

이커머스의 고정사업장에 귀속가능한 과세소득 산출 시에는 OECD 접근방식을 적용하며, 기능(funcional) 분석과 사실관계(factual) 분석이라는 두 단계 방식으로 접근한다. 이러한 분석과정에서 무형자산이 중요한 역할을 하므로, 기업 내 어떤 부문이 이윤을 창출한 고정사업장에 의해 사용된 무형자산을 창출하였는지 확인하는 것이 필수적이다.

디지털 자산은 가치에 대한 디지털 표식(representations)이며, 전자적으로 전송, 보관, 거래될 수 있다. 동 자산은 일반적으로 물리적 자산에 의해 보강되거나 정부에 의해 지급보증되지 않으며, 내재가치(intrinsic value)가 없다. 동 자산의 가격은 거래시장의 수요와 공급에 의해 결정되며, 유동적(volatil)이다. 디지털 자산에 대한 이윤세의 취급은 동 자산의 성격과 사용에 따라 달라진다. 가상화폐 상장(Initial Coin Offering, ICO)의 조세상의 취급을 결정하는 것은 가상화폐의 형태(form)가 아닌 가상화폐가 가지는 권리와 의무의 본질적 성격(nature)이다. 어떤 가상화폐가 자본이나 소유권 지분의 성격을 가진다면, 동 ICO 유입자금은 본질적으로 자본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고 과세대상이 아니다. 반면 어떤 가상화폐의 ICO 유입자금이 미래 혜택에 대한 가상화폐 보유자의 권리에 대한 대가의 성격을 가진다면, 동 ICO 유입자금은 미래 재화나 용역에 대한 선급금의 성격으로 간주되며 매출인식 시점에 과세될 것이다.

자본성 자산의 매각에서 발생하는 소득에는 이윤세가 부과되지 않으므로, 디지털 자산이 장기투자 목적으로 취득된다면 매각 시 이윤세가 부과되지 않을 것이다. 디지털 자산이 거래목적으로 취득되었는지, 아니면 자본투자 목적으로 취득되었는지는 사실관계와 정황(circumstances)을 고려하여, 일반적인 거래지표(badges of trade)에 따라 판단된다.

가상화폐와 관련한 일반적인 영업에는 가상화폐의 거래, 교환, 채굴(mining)이 포함되며, 홍콩 원천의 이윤에는 이윤세가 부과될 수 있다. 이윤세 부과 여부 판단 시에 고려되는 요소들에는 거래의 주기와 정도, 시스템의 수준, 해당 활동이 이윤추구 목적으로 이루어졌는지 등이 포함된다. 재화의 판매에 대한 대가로서 가상화폐를 수령한 경우, 판매금액은 거래일의 가상화폐의 시장가치가 될 것이다. 근로에 대한 대가로서 가상화폐를 수령한 경우 임직원이 수령한 보수금액은 수령시점의 가상화폐의 시장가치가 될 것이다.

2. 특정 산업별 세무취급

세무조례는 금융업과 선박·항공기 보유회사에 대한 과세대상 이익 산정 방식을 별도로 규정하고 있다. 이하에서는 금융업 및 선박·항공기 보유회사에 대한 세무조례상의 규정을 알아보고, 더불어 클럽, 협회, 비거주자, 파트너십과 관련한 규정도 함께 살펴본다.

가. 금융기관(financial institution)

금융기관은 은행업조례에 따라 인가된 회사 및 이와 관련된 회사를 말하며,¹⁵⁴⁾ 등록된 대부업체는 동 단락에서 언급하는 금융기관으로 보지 않는다.¹⁵⁵⁾ 금융기관이 수취하게 되는 이자소득에 대한 과세소득 산입비율은 <표 2-1-13>과 같다.¹⁵⁶⁾

<표 2-1-13> 금융기관 수취이자의 과세소득 산입비율

수취이자의 종류	과세소득 산입비율
1. 역외(offshore) 대출 이자 (a) 역외에서 조달되고, 역외 계열사가 실행 (b) 홍콩에서 조달되고, 홍콩 금융기관이 실행 (c) 홍콩 금융기관에서 조달되고, 역외 계열사가 실행 (d) 역외 계열사에서 조달되고, 홍콩 금융기관이 실행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00% 비과세 • 100% 과세 • 50% 과세 • 50% 과세
2. 양도성예금증서(CD) 이자	• 100% 과세
3. 양도성예금증서 이외 유가증권(securities) 이자	• 1번과 동일
4. 확약료(commitment fees) 외	• (상동)
5. 인수 수수료(underwriting fees) 외	• 사안별로 판단

자료: DIPN No.21(Locality of profits) §54

나. 생명보험회사

일반적인 보험상품의 경우 화재 등과 같이 잘 발생하지 않는 사건에 대한 위험을 상쇄시키는 역할을 하는 반면, 생명보험 상품의 경우 죽음 등과 같이 언젠가는 한 번 즈음 발생할 만한 사건에 대한 위험을 상쇄시킨다는 점에서 일반적인 보험상품과 차별성을 가진다. 생명보험회사는 관련 법령인 ‘보험회사조례(Insurance Companies Ordinance)’에 근거하여 ‘생명

154) IRO §2(1)

155) BPP Learning Media Ltd, *Module D Taxation*, 2013, p. 224.

156) DIPN No.21(Locality of profits) §54

보험영업'을 수행하는 회사로 정의되고 있으며, 이 때 생명보험영업은 생명과 연금 관련, 결혼과 출생관련, 장기간의 재정설계 등의 내용을 포함한다. 생명보험회사의 과세가능이윤 확정에는 두 가지 방법이 사용되고 있다. 하나는 해당 기간 동안 수령된 보험료의 일정 비율을 자동적으로 산정하는 방식이 있고 또 다른 하나는 납세자의 선택에 의해 법인의 조정된 잉여를 참조하여 결정하는 방식이 있다.

첫 번째 방법은 해당 기간 동안 홍콩 내에서 사업을 영위하는 보험회사가 수령한 보험료의 5%를 과세가능이윤으로 부과하는 방식(5%방식(method))이며, 적용사례는 아래와 같다.

<p>예제(생명보험회사의 과세가능이윤 산정-5%방식)</p> <p>·생명보험회사인 A사에서 연간 발생한 거래가 아래와 같고, 과세소득 산정 목적으로 회사는 5%방식을 선택하였을 때 과세가능이윤은 얼마인가?</p> <p>① 홍콩거주자로부터 홍콩에서 보험료 HKD10,000,000을 수취하였다.</p> <p>② 캐나다에서 발생할 수 있는 사건과 관련하여, 홍콩거주자로부터 캐나다에서 보험료 HKD5,000,000을 수취하였다.</p> <p>③ ①번 항목과 관련하여 산정오류로 인한 초과납입 보험료 HKD50,000을 환급하였다.</p> <p>④ ①번 항목과 관련하여 재보험료로 HKD400,000을 납부하였다.</p>
<p>해설</p> <p>·국외에서 발생한 ②번 항목을 제외하고 과세소득을 산정하며, HKD477,500 (= (HKD10,000,000 - 50,000 - 400,000) * 5%)이 과세가능이윤이 된다.</p>

자료: BPP Learning Media Ltd, *Module D Taxation*, 2013, p. 228.

두 번째 방식은 납세자인 보험회사가 조정된 잉여금액(adjusted surplus)¹⁵⁷⁾을 기초로 과세가능이윤을 산정하는 방식으로, 우선 조정된 잉여금액을 계산한 후, 납입보험료에 비례하여 과세연도에 이익을 배분하는 과정을 거쳐 과세대상 이익을 확정하는 다소 복잡한 방식이다.

다. 기타 보험회사(생명보험 제외) 및 재보험회사

홍콩 보험회사(생명보험회사 제외)의 과세가능이윤은 보험회사가 받은 총보험료를 기준으로 산정한다. 또한 홍콩에서 발생한 기타소득과 이자 및 균형부과가 과세가능이윤에 추가될 수 있다. 그러나 보험회사에서 발생한 이자소득이 홍콩을 원천으로 하지 않았다면 과세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 한편 과세가능이윤에서 공제되는 항목은 다음을 포함한다.

157) IRO §23(4)

- 보증을 위해 반환된 보험료
- 재보험을 위한 보험료
- 재보험을 통한 보장금액을 초과하는 손실금
- 홍콩의 에이전시 비용
- 본사의 공정할당 비용
- 감가상각 및 기타 자본공제

일반적으로 홍콩보험회사의 보험료란 생명보험회사를 제외한 보험회사의 과세산정을 위하여 계산하는 좁은 의미로서 다음과 같이 정의된다.

- 홍콩에서 보험계약을 체결한 모든 보험료(생명보험회사 제외)
- 홍콩에서 법인이 계획한 보험계약의 보험료(생명보험회사 제외)

한편 2021년 3월부터는 허가된 종속보험(captive insurance)과 재보험사의 재보험(reinsurance) 영업에 적용되는 특혜(8.25%)세율(일반 이윤세율의 50%)의 적용범위를 직접 보험사의 재보험 영업 등으로 확대하였다.¹⁵⁸⁾

라. 선박 보유회사(ship owners)

선박의 소유자로서 영업을 수행하는 선박 보유회사가 홍콩 내에서 일반적인 영업을 수행하거나 홍콩의 법인에 소속되어 있다면 영업수행으로 간주한다. 선박 보유회사의 선주영업이란 선박의 소유와 이용을 포함하는 선박운항사업과 선박의 임대 등을 포함하는 용선업¹⁵⁹⁾을 의미하며, 선박을 매매하거나 해운업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¹⁶⁰⁾

선박영업의 과세가능이윤은 몇 가지 방법으로 계산할 수 있는데, 첫 번째 방식은 납세자의 전체 선박영업소득에 대한 홍콩 선박영업소득의 비중에 납세자의 전체 선박영업이윤을 곱하여 계산하는 방식이다. 두 번째 방식은 위의 기본적인 방식을 사정관이 신뢰할 수 없을 때 선택하는 방식으로서 홍콩의 총선박영업소득에 공정비율을 계산해서 산정하는 방식¹⁶¹⁾을 취

158) KPMG, "Hong Kong extends profits tax concession for certain insurance," 2021.4., <https://home.kpmg/cn/en/home/insights/2021/04/tax-alert-4-hk-hong-kong-extends-profits-tax-concession-for-certain-insurance-businesses.html>, 검색일자: 2021. 9. 8.

159) 용선(chartering)은 선주가 용선자(charterer)에게 선박을 이용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그에 대한 대가로 합의된 용선료(hire, freight)를 수취하는 계약이며, 용선비용은 인건비, 수선유지비, 연료 등에 관련된 관리비용뿐만 아니라 선박에 대한 자본비용을 포함함

160) 한국조세재정연구원(2011), p. 138.

161) IRO §23(B)4

한다. 첫 번째 방식의 계산과정에서 유관금액(relevant sums)이라는 개념이 도입되며, 이는 홍콩 내 선박운영, 예선, 용선 등 관련 수입의 합계금액이다. 단 홍콩과 Pearl River 사이를 운항하는 경우 50%의 금액만 적용한다. 이하 구체적인 예제를 통해 알아본다.

예제(선박 보유회사 과세가능이윤)	
·선박 보유회사인 C사는 홍콩에서 설립되었고, 홍콩에서 영업활동을 수행중이며, 선박을 홍콩에 등록하였다. 특정 연도의 주요 거래내역이 아래와 같을 때, 해당 연도의 과세가능이윤은 얼마인가?	
① 순이윤(net profits, 간접비 반영 전)	HKD 21,000,000
② 매출 및 수취금액	
(i) 재화운반(홍콩→홍콩)	8,300,000
(ii) 재화운반(홍콩→외국)	26,000,000
(iii) 재화운반(외국→홍콩)	1,000,000
(iv) 예선료(towage) 수입	3,000,000
(v) 용선수입(홍콩 수역)	5,000,000
(vi) 용선수입(홍콩 수역 및 Pearl River)	11,500,000
(vii) 선박 에이전시 수입	2,900,000
(viii) 선박 매각액(원가 HKD27,000,000)	35,000,000
(ix) 홍콩 내국은행에 예치한 예금이자 수입	60,000
③ 기타: 세무국과 합의된 간접경비 인정비율은 다음과 같다.	
(a) 에이전시 수입: 수입의 40%	
(b) 선박 매매: 매각액의 10%	
해설	
·과세가능이윤은 다음과 같은 순서로 계산한다.	
(a) 총 해상운송 이윤을 계산한다.	
순이윤(net profits, 간접비 반영 전)	HKD 21,000,000
(-) 순 에이전시 소득(=HKD2.9m*60%)	(1,740,000)
순 선박매각 소득(=HKD35m*90%-HKD27m)	(4,500,000)
이자소득	(60,000)
총 해상운송 이윤	14,700,000
(b) 유관금액을 계산한다.(→재화운반은 홍콩-역외 운항은 제외됨)	
(i) 재화운반(홍콩→홍콩)	8,300,000
(iv) 예선료(towage) 수입	3,000,000
(v) 용선수입(홍콩 수역)	5,000,000
(vi) 용선수입(홍콩 수역 및 Pearl River→50% 적용)	5,750,000
유관금액	22,050,000
(c) 해상운송 소득을 계산한다.(=a+b)	54,800,000
(d) 선주로서의 과세대상 해상운송 이윤을 계산한다.(=a*b/c)	5,914,872
(e) 총 과세가능이윤을 계산한다.	

과세대상 해상운송 이윤(=d)	5,914,872
(+) 순 에이전시 소득(=HKD2.9m*60%)	1,740,000
____ 순 선박매각 소득(=HKD35m*90%-HKD27m)	4,500,000
총 과세가능이윤	12,154,872

자료: BPP Learning Media Ltd, *Module D Taxation*, 2013, pp. 236~237.

마. 항공기 보유회사(aircraft owners)

항공기 보유회사에 대한 과세가능이윤 산정구조는 선박 보유회사에 대한 구조와 유사하며, 유관금액 산정방식에는 다소 차이가 있다. 항공기 영업의 유관금액은 홍콩에서 선적 또는 탑승한 운임(환적/환승 제외), 외국의 고정사업장에 귀속되지 않는 대여(charter hire) 소득의 합계금액이며, 홍콩-마카오 노선 대여소득의 경우 50%를 차감한다. 대여의 경우, 항공기 선체만 대여하는 방식(by demise)의 경우 외국의 고정사업장에 귀속 여부가 유관금액 포함 여부를 결정하며, 승무원 등을 함께 대여하는 방식(without demise)의 경우, 홍콩에서 선적 또는 탑승한 비율을 산정하여 귀속시킨다. 이하 선박 보유회사의 계산방식과 차이를 보이는 유관금액 계산방식을 예제를 통해 알아본다.

예제(항공기 보유회사 과세가능이윤)	
·항공기 보유회사인 D사는 홍콩에서 설립되었고, 홍콩에서 영업활동을 수행중이며, 항공기를 홍콩에 등록하였다. 특정 연도의 주요 거래내역이 아래와 같을 때, 해당 연도의 유관금액은 얼마인가?	
① (i) 승객운송(홍콩→외국, 이 중 HKD1,000,000은 환승 관련 소득임)	HKD6,000,000
(ii) 승객운송(외국→홍콩)	3,000,000
② (i) 화물운송(홍콩→외국, 단, 이 중 HKD500,000은 중국 본토에서 외국으로의 수출물량에 대한 환적료이며, 환적료의 50%가 홍콩에서 청구됨)	2,000,000
(ii) 화물운송(외국→홍콩)	1,500,000
③ 대여소득(홍콩 밖에서 운항하며, 선체만 대여(by demise))	1,200,000
④ ③번과 동일한 대여소득을 발생시키는 계약을 대만지점에서 체결	800,000
⑤ 대여소득(홍콩-마카오 노선, 선체만 대여(by demise))	1,000,000
⑥ 대여소득(승무원 포함 일괄 대여(without demise), 총 운항시간 1,500시간 중 홍콩에서 출발하는 노선에 500시간 투입)	900,000
해설	
·유관금액은 다음과 같이 계산된다.	
유관금액=HKD8,750,000=5,000,000(①(i))+2,000,000-500,000*50%(②(i))+1,200,000(③)+1,000,000*50%(⑤)+900,000*500시간/1500시간(⑥)	

자료: BPP Learning Media Ltd, *Module D Taxation*, 2013, pp. 241~242.

3. 특정 형태별 세무취급

가. 비거주자

홍콩은 과세목적상 속지주의를 채택하고 있기 때문에 거주지의 개념은 일반적으로는 중요하지 않지만, 비거주자에게 일부 차별화된 규정이 적용되는 경우가 있다. 비거주자가 홍콩에 고정사업장이 없다고 해서, 홍콩 내의 소득에 대한 이윤세가 면제되는 것은 아니며, 홍콩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해 이윤세, 재산세, 급여세를 납부해야 한다. 거주자에게 적용되는 세율과 동일한 세율이 비거주자에게도 적용된다.¹⁶²⁾

비거주자는 홍콩에서 영위하는 거래·영업 또는 전문직으로부터 홍콩에서 얻은 모든 소득에 대하여 직접적으로 또는 대리인의 명의로 세금을 납부할 의무가 있다. 대리인의 명의로 세금이 과세되는 경우, 대리인은 그가 점유하고 있는 본인의 자산에서 세금납부를 위해 필요한 충분한 자금을 유보해야 한다. 한편 특정 사용료나 공연료를 비거주자에게 지급하는 경우에는 지급인이 납세의무자가 되는데, 이러한 금액을 지급하는 자는 그 금액을 지급할 때 세금을 원천징수하여 과세당국에 납부하여야 한다. 원천징수와 관련한 상세규정과 예제는 동 법인소득세 마지막 단락에 후술한다.

홍콩 거주자인 수탁자는 비거주자인 위탁자에 대한 위탁판매총액을 분기별로 세무국에 신고해야 하며, 위탁판매총액의 1%와 세무국장과 합의한 금액 중 적은 금액을 납부해야 한다.

홍콩에서 수행하는 거래·영업 또는 전문직으로부터 비거주자가 얻은 과세소득을 쉽게 계산할 수 없는 경우에는 홍콩 내 매출액에 공정한 비율을 곱해 과세소득을 계산할 수 있다. 홍콩 밖에 본점이 있는 비거주자의 회계상 이익이 홍콩 내 고정사업장의 진실한 이익을 나타내지 못하는 경우, 이윤세 과세목적상 지점의 이익은 다음의 산식을 이용하여 계산한다.

지점의 이익=해당 납세자의 전 세계 이익×홍콩 내 매출액/전 세계 매출액

나. 파트너십¹⁶³⁾

파트너십은 둘 이상의 개인이나 법인이 공동으로 영리목적의 사업을 수행하는 단체를 의미한다. 그러나 파트너십이 별개의 과세주체임에도 불구하고 파트너십의 과세가능이윤은 합산하여 계산되지만 과세는 개별 파트너에게 부과된다. 파트너십은 법적 문서나 협약이 존재

162) BPP Learning Media Ltd, *Module D Taxation*, 2013, p. 329.

163) 한국조세재정연구원(2011), p. 135~136.

하더라도 실제로 존재하는가가 문제가 되곤 한다. 이에 Partnership Ordinance에서는 '파트너십이란 이윤의 관점에서 공동의 영업을 수행하는 사람들 사이의 실질적 관계'라고 규정하고 있다. 그러므로 이러한 실질적 관계를 판단하기 위해서는 파트너십의 판별기준이 중요한데 이에 대해 세무조례¹⁶⁴⁾는 다음과 같은 실질적 판별기준을 적용하고 있다.

- 둘 이상의 개인 간에 영업관계가 존재하는가?
- 공동의 결합된 영업을 수행하고 있는가?
- 이윤을 창출하기 위한 영업을 수행하는가?

이와 같이 파트너십의 존재를 실질적으로 판별한 후에는 파트너십의 과세의무를 결정하는 방식도 중요하다. 보편적으로 파트너십의 과세는 총과세가능이윤에 대해, 파트너십이 개인인 경우에는 표준세율을 적용하고, 파트너십이 법인들로 구성된 경우에는 법인에 해당하는 이윤세율을 적용한다. 그러나 파트너십이 개인과 법인의 결합으로 이루어진 경우나 전년도 손실공제가 이월된 경우에는 각 파트너 개별적으로 과세가 결정되는데 그 방식은 각각의 배분비율을 결정하여 과세를 구분하고 또 각자에 대해 공제한 후에 개인과 법인에 해당하는 세율을 적용하여 부과하게 된다.

먼저 해당 기간에 파트너십의 이윤과 손실을 각자의 분배비율로 나눠서 과세가능이윤을 계산한다.

둘째, 손실이 이월된 개별 파트너의 경우는 전년도의 이월손실을 공제한다.

셋째, 관련 납세자가 개인인지 법인인지를 구분하여 각자에게 해당되는 세율을 적용한다. 파트너십의 이윤에서 공제되지 않는 항목은 다음과 같다.

- 파트너의 배우자나 다른 파트너에게 지급한 급여나 급료
- 파트너의 배우자나 다른 파트너에게 지급한 자본이나 대부금의 이자지급
- 파트너의 배우자나 다른 파트너가 의무공제기금(mandatory provident fund)에 낸 기부금

다. 클럽 및 거래협회(trade associations)¹⁶⁵⁾

세무조례에는 '클럽'이 정의되어 있지 않으며, 보통 클럽은 금전 이외의 상호 이익을 위해 모인 사람들의 집단을 일컫는다. 클럽 수입(회비 포함)의 절반 이상이 의결권 보유 회원

164) IRO §22(1)

165) BPP Learning Media Ltd, *Module D Taxation*, 2013, p. 246.

(voting member)으로부터 발생한 경우, 클럽은 영업을 수행하지 않는 것으로 간주된다. 그렇지 않은 경우 클럽은 사업을 수행하는 것으로 간주되고, 클럽의 모든 수입(회비 포함)에는 이윤세가 부과된다.¹⁶⁶⁾ 영업을 수행하지 않는 것으로 간주되는 경우에도 다른 세금이 부과될 수 있다. 예를 들어 홍콩에서 부동산을 임대하여 임대 소득이 있는 경우 재산세가 적용될 수 있다.

일반적으로 거래협회는 회원의 거래 관련 이익을 증진할 목적으로 형성된 사람들의 단체를 말한다. 회비의 절반 이상이 자신의 이윤세 계산 시 공제할 수 있는 의결권이 있는 회원사에서 나온 경우, 협회는 사업을 수행하는 것으로 간주되며, 협회의 모든 수입(회비 포함)에 이윤세가 부과된다.¹⁶⁷⁾ 실제로 거래 또는 영업을 수행하는 경우 관련 이윤에는 이윤세가 부과될 수 있다. 회비는 반복되는 지불을 의미하며, 설립자의 기부금 및 입회비는 포함하지 않는다. 거래협회에 이윤세가 부과되지 않는 경우에도 홍콩에서 부동산 임대로 인한 임대 소득이 있는 경우 여전히 재산세가 부과될 수 있다.

166) IRO §24(1)

167) IRO §24(2)

VI 납부세액의 산출

1. 손실 공제¹⁶⁸⁾

납세자가 홍콩에서 거래·영업 또는 전문직을 수행하면서 발생한 손실은 기간 제한 없이 이월공제가 가능하다. 또한 법인이 운영하는 여러 사업에서 각각 손실과 이익이 발생했을 경우 상계할 수 있으며, 법인이 참여한 파트너십에서 결손이 발생하면 그 지분비율만큼 공제할 수 있다. 이러한 손실은 납세자의 과세가능이윤에 대해서 공제가 가능하고 연속되는 과세연도에 이월되어 공제도 가능하며, 납세자가 종합과세를 신청하면 다른 소득에 대해서도 공제가 가능하다. 그러나 과거 과세연도에 발생한 손실을 소급 적용하여 공제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

가. 법인

법인에 의해서 발생한 손실도 개인 및 파트너십과 마찬가지로 해당 과세연도에 손실이 발생하면 과세가능이윤에 대해서 공제가 가능하며, 결손금공제가 한도를 넘어서면 연속되는 다음해로 이월하여 공제가 가능하다. 또 법인이 파트너십의 구성원일 때도 개인과 마찬가지로 발생한 이윤에 대한 법인의 지분만큼 비율로 계산하여 결손금공제를 허용해주고 있다.

나. 파트너십

거래·영업 또는 전문직을 수행하면서 파트너십에 의해 발생한 손실은 파트너십의 분배비율에 따라 공제비율이 결정된다. 파트너십이 개인인 경우에는 위의 경우와 같이 결손금공제가 허용된다.

원칙적으로 파트너십의 손실에 대한 공제는 20인 이하의 파트너십에 대해서만 공제가 허용되고 Companies Ordinance에 따라 20인을 초과한 파트너십의 손실공제는 불법이다. 그러나 특별하게 변호사나 회계사 및 기타 전문직에 대해서는 2007년 12월 14일부터 20인 이상에 대해서도 손실공제가 허용되도록 법이 개정되었다.

또한 파트너의 손실배분은 파트너의 이윤배분 시에만 상쇄될 수 있다. 만약 한 명의 파트

168) 한국조세재정연구원(2011), p. 144~145.

너가 파트너십에서 탈퇴(또는 은퇴)하였을 때 그의 손실공제액은 단지 그 자신이 종합소득신고를 선택했을 경우에만 공제가능할 뿐, 공제가능금액을 사용하지 않았을 경우라도 다른 파트너가 그 공제금액을 사용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2. 세율

가. 기본 세율

법인에 대한 이윤세율의 최고세율은 16.5%¹⁶⁹⁾이며, 비법인에 대해서는 15%가 적용된다. 2018년 4월부터 기존 단일세율이 2단계로 계층화되었고, 동 2단계 세제에 따라 법인의 첫 200만홍콩달러의 이윤에는 8.25%의 우대세율이 적용되며, 초과액에 대해 16.5%가 적용된다. 비법인회사에 대해서는 첫 200만홍콩달러의 이윤에 7.5%의 우대세율이 적용되며, 초과액에 대해 15%가 적용된다. 그룹기업이 해당 제도를 남용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특수관계 기업 간에는 1개의 기업에만 전술한 우대세율을 적용할 수 있다. 파트너십이 법인파트너와 비법인파트너로 구성된 경우, 우대세율을 적용하는 200만홍콩달러의 이윤은 이익분배 비율에 따라 법인파트너와 비법인파트너 간에 배분되어야 한다.¹⁷⁰⁾

나. 특혜(concessionary) 세율

채권시장 활성화 목적으로 특정 적격채무증서(Qualifying Debt Instruments)¹⁷¹⁾의 소득은 면세되거나 특혜세율이 적용된다. 2018년 4월 및 그 이후 발행된 QDI에서 발생한 이자 및 거래이윤은 목적과 관계없이 면제된다. 2018년 4월 이전에 발행된 QDI에서 발생한 이자 및 거래이윤은 일반적으로 만기 3년 이상 7년 미만인 경우 50%, 만기 7년 이상 시 100% 면제되며, 발행시기별로 면제조건 및 정도에 편차가 있다.¹⁷²⁾

글로벌 자산관리 허브로서의 홍콩의 위치를 강화하기 위한 취지로 다양한 세율 감면제도가 도입되었다. 2016년 4월에는 그룹 금융활동을 주로 수행하는 기업자금집중센터(corporate

169) 법인이윤 최고세율은 2002회기 16%, 2003~2007회기 17.5%, 2008회기 이후 16.5%가 적용됨(출처: Trading Economics, "Hong Kong Corporate Tax Rate," <https://tradingeconomics.com/hong-kong/corporate-tax-rate>, 검색일자: 2021. 9. 8.)

170) Deloitte, 「홍콩세무가이드2020」, 2020. 8., p. 6, <https://www2.deloitte.com/content/dam/Deloitte/cn/Documents/tax/ta-2020/deloitte-cn-tax-tap0382020-kr-200806.pdf>, 검색일자: 2021. 9. 7.

171) 홍콩 거래소 상장 등의 요건이 IRO Schedule 6에 기술됨

172) 홍콩 세무국, "Qualifying Debt Instruments," <https://www.ird.gov.hk/eng/faq/qdi.htm>, 검색일자: 2021. 9. 8.

treasury center)¹⁷³⁾에 대해 50% 감면된 세율을 적용하기 시작했고, 그룹 내 자금거래에 대한 이자비용 공제를 허용하였다. 2019년 4월에는 적격 투자펀드에 대해 통합 펀드 면세 제도(unified fund exemption regime)¹⁷⁴⁾가 도입되면서, 기존 역외펀드(offshore funds)에 적용하던 면세 제도의 적용범위를 확대하였다. 또한 후속조치로서 적격 투자펀드에서 2020년 4월 이후 발생한 펀드운용 성과보수(carried interest)에 대한 면세 제도를 도입하였고,¹⁷⁵⁾ 이외에도 2021년 3월부터는 허가된 종속보험(captive insurance)과 재보험사의 재보험(reinsurance) 영업에 적용되는 8.25% 세율(일반 이윤세율의 50%)의 적용범위를 직접 보험사의 재보험 영업 등으로 확대하였다.¹⁷⁶⁾

홍콩에서 수행된 적격 항공기 리스에서 발생한 이윤은 8.25%(즉 일반 이윤세율의 50%)의 특혜세율이 적용된다. 또한 적격 항공기 임대인이 항공기 운영자에게 항공기를 임대함으로써 발생한 과세대상 순리스료는 총리스료에서 공제금액(감가상각비 제외)을 차감한 금액의 20%로 간주된다.¹⁷⁷⁾ 홍콩에서 수행된 적격 선박 리스 활동에서 발생한 과세대상 순리스료는 총리스료에서 공제금액(감가상각비 제외)을 차감한 금액의 20%¹⁷⁸⁾로 간주되며, 계열사에 제공된 서비스에 대한 이윤에는 0%, 계열사가 아닌 회사에 제공된 서비스에 대한 이윤에는 8.25%(즉 일반 이윤세율의 50%)의 특혜세율이 적용된다.¹⁷⁹⁾

3. 세액 공제

홍콩의 조세 인센티브는 주로 특혜세율 또는 면세 형태로 제공되며, 세액 공제에 대한 규정은 외국납부세액공제(foreign tax credits)¹⁸⁰⁾가 유일하다. 세금은 이윤 창출과정의 지출이 아닌 확정된 이윤에 부과되는 금액이므로, 세금은 공제의 대상이 아니며, 외국납부세액도 원칙적으로 공제 대상이 아니다. 외국납부세액에 대한 취급은 해당 세액을 납부한 관할국과 홍

173) IRO §14D

174) DIPN No.61(Profits Tax Exemption for Funds)

175) IRO Schedule 16D

176) KPMG, "Hong Kong extends profits tax concession for certain insurance," 2021. 4., <https://home.kpmg/cn/en/home/insights/2021/04/tax-alert-4-hk-hong-kong-extends-profits-tax-concession-for-certain-insurance-businesses.html>, 검색일자: 2021. 9. 8.

177) 홍콩 세무국, "Aircraft Leasing Tax Regime," https://www.ird.gov.hk/eng/tax/bus_ala.htm, 검색일자: 2021. 9. 8.

178) DIPN No.62(Taxation of Ship Leasing Activities) §28

179) IRO §14T

180) IRO §50

공 간 이중과세방지협약(double taxation agreements, DTA) 체결 여부에 따라 다르다. DTA가 체결된 경우, 세무조례 제50조에 따라 세액 공제가 가능하다. DTA가 체결되지 않은 경우, 세무조례 제16조(1)(c)에 따라 주로 이자소득과 관련한 항목에 한해 소득 공제가 가능하다. 한편 홍콩 세무국은 홍콩에서 발생한 이윤에만 과세하기 때문에 홍콩 거주자는 일반적으로 이중과세 문제가 크지 않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으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DTA 체결에 따른 효익이 크기 때문에 다른 관할국들과 DTA를 체결하였음을 언급하고 있다.¹⁸¹⁾

4. 납부세액 산출 흐름

지금까지 살펴본 항목들을 기초로한 납부세액의 산출 흐름은 <표 2-1-14>와 같이 정리할 수 있다.

<표 2-1-14> 이윤세 납부세액 산출 흐름

구분	항목	금액	합계
기초	재무제표상 당기순이익		x
(+)	익금산입 및 손금불산입(예: 이윤세, 기부금, 감가상각비, 역외발생 이윤 관련 비용, 벌금, 비영업채권의 상각 외)	x	
(-)	익금불산입 및 손금산입(예: 배당수취액, 역외발생 이윤, 역외 이자소득, 이자소득 면제, 손금불산입되었던 부실채권의 회수, 손금처리가능한 자본적 지출 외)	x	
(-)	감가상각비	x	
(=)	소계		x
(-)	인가된 자선 기부금 (approved charitable donations, Y의 35%까지 허용 ¹⁾)	x	
(=)	과세가능이윤(assessable profits)		x
(-)	손실 이월공제	x	
(=)	순 과세가능이윤(net assessable profits)		x
(*)	세율(최고세율 16.5% 또는 15%)	x	
(=)	산출세액(profits tax payable)		x
(-)	기납부세액	x	
(-)	외국납부세액공제	x	
(=)	납부세액(profits tax liability)		x

주: 1) IRO §16D(2)(d)

자료: BPP Learning Media Ltd, *Module D Taxation*, 2013, pp. 205~206 수정 반영

181) 홍콩 세무국, "Double Taxation Relief," <https://www.ird.gov.hk/eng/pol/dta.htm>, 검색일자: 2021. 9. 8.

VII 신고와 납부

1. 소득신고서 제출¹⁸²⁾

과세연도는 매년 4월 1일에 시작하여 다음해 3월 31일에 종료된다. 과세당국은 이윤세 신고서를 4월 초 발행하여 공지된 기간(일반적으로 최초 공지일로부터 1개월 정도)까지 완벽한 소득신고서를 제출할 것을 요구하지만, 회계연도가 11월 30일 이후에 종료되고 세무대리인이 선임된 경우 신고서 제출기간이 연장된다.

법인 납세자는 세무국에서 정의한 소기업(매출 200만홍콩달러 이하)이 아닌 경우, 소득신고서 제출 시 감사받은 재무제표를 증빙으로 첨부해야 한다. 소기업은 증빙을 첨부할 필요는 없지만, 여전히 해당 서류를 보관하고 세무국의 요청 시 제출해야 한다. 외국기업의 지점은 매년 이윤세 신고를 해야 하며, 세무국은 지점의 이윤세 신고를 지원하기 위해 외국기업의 감사받은 재무제표를 요구할 수 있다.

세무국에서 소득신고서를 검토한 후 과세통지서(notice of assessment)가 발행된다. 납세자는 추후 세무국의 전산화된 무작위 선택절차에 따라 사후평가나 현장감사의 대상이 될 수 있다.

2. 세금 납부¹⁸³⁾

이윤세는 일반적으로 두 번으로 나누어서 납부한다. 공지된 과세예납 만기일에 이윤세의 75%를 납부하고, 대략 3개월 후에 나머지 25%를 납부하게 된다. 보편적으로 예납세액의 부과방식은 이윤세 과세부담보다 낮게 책정하게 된다. 그럼에도 실제 과세부담액보다 초과된 예납세액은 다음해에 예납세액으로 처리하거나 환급된다. 이윤세의 추정과세는 전부 또는 일부가 다음과 같은 상황에서 연기될 수 있다. 예납세액의 전부 또는 일부 연기가 적용되는 상황은 다음과 같다.¹⁸⁴⁾

- 이월손실을 고려하지 않았거나 잘못 계산되었을 때

182) PwC, "Hong Kong SAR, Corporate - Tax administration," 업데이트: 2021. 7. 5., <https://taxsummaries.pwc.com/hong-kong-sar/corporate/tax-administration>, 검색일자: 2021. 9. 7.

183) 한국조세재정연구원(2011), p. 167 수정 반영

184) IRO §63J(2)

- 납세자가 종합과세를 선택하고, 종합과세 선택으로 세부담 감소가 예상될 때
- 전년도의 최종 과세액에 대해 이의를 신청했을 때

3. 사전답변제도(advance ruling)

납세자는 세무상의 취급과 관련하여 세무국에서 운영하는 사전답변제도를 이용할 수 있다. 사전 답변 범위는 넓으며, 소득원천지, 일반적인 조세회피 방지규정 등의 주제가 포함될 수 있다. 세무조례에서 규정하는 사전답변제도의 범위는 다음과 같다.¹⁸⁵⁾

- 이윤의 소득원천지
- 고용소득으로서 간주되는 보수의 소득원천지
- 세무조례의 일관성 있는 적용
- 기타 과세 쟁점들

사전답변제도(advance rulings)는 아래와 같이 범주화할 수 있다.¹⁸⁶⁾

- 개별 답변제도(specific rulings): 동 답변제도는 개별 납세자에 적용되며, 특정 거래 전 또는 후에 활용가능하다. 후술하는 세법해석 사전답변제도 및 정상가격산출방법 사전승인제도 모두 개별 답변제도의 일종으로 볼 수 있다.
- 세법해석 사전답변제도(advance tax rulings): 동 답변제도는 개별 납세자에게 개별적으로 적용되며, 특정 거래에 대한 조세상 처리 결정을 제공한다. 동 제도는 답변의 형태 뿐 아니라, 법적 또는 행정 절차 상의 허가(clearance) 혹은 비공식 답변 등의 다양한 형태를 취할 수 있다. 이러한 답변은 사실관계를 고려하여 맞춤형으로 제공되기 때문에 다른 납세자에게 바로 적용할 수는 없다.
- 정상가격산출방법 사전승인제도(Advance Pricing Arrangement): 동 제도는 OECD 이 전가격 가이드라인에 규정된 제도이며, 이전가격 규정을 향후 거래에 적용하는 방식에 대한 확실성(certainty)를 제공한다. 동 제도는 이전가격 결정을 위한 방법, 비교지표 및 조정방식 등과 관련하여 적절한 참조기준을 설정한다.
- 일반 답변제도(general rulings): 동 제도는 납세자 그룹을 대상으로 하고, 사전에 정의된 정황 또는 활동과 관련하여 주어진다. 보통 법에 대한 해석 및 실무 행정절차에 대한

185) IRO Schedule 10

186) DIPN No.31(Advance rulings), pp. 1~2.

세무국 입장과 관련한 안내 혹은 지침을 제공한다.

사전 답변은 충분히 숙고된 약정(seriously contemplated arrangement)에 대해서만 주어지게 되며, 가상적(hypothetical)이거나 추측에 근거한(speculative) 상황은 답변 대상이 아니다. 세무조례상 아래 사항과 관련한 항목은 답변이 금지 혹은 거절될 수 있다.¹⁸⁷⁾

- 사실관계 확인 혹은 미래사건에 대한 추정을 요하는 사항
- 기초사건 자체가 이의신청, 불복의 대상이 되는 경우
- 신고기한이 도래한 사건과 관련된 경우
- 신청인이 충분히 숙고하지(seriously contemplated) 않았다고 판단된 경우
- 신청이 경솔하거나(frivolous) 자잘할(vexatious) 경우
- 세무조사(audit) 중인 사건과 관련된 경우
- 벌칙의 부과 혹은 감면, 신고서류 혹은 정보의 정정, 납세자에 대한 고발(prosecution)과 관련된 경우 외

세무조례에 규정되어 있지는 않지만, 다음의 경우에도 일반적으로 답변이 거절된다.¹⁸⁸⁾

- 답변 신청이 신청인 측의 대체적인 제안이나 행동을 포함할 경우
- 회계기준이나 상업적 관행과 관련한 의견을 요하는 경우
- 조세 행정과 관련된 경우
- 외국 법규의 해석과 관련된 경우 외

사전 답변의 효과는 최종적(final)이며, 그 자체는 이의신청이나 불복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 납세자는 자신에게 불리한 답변의 경우, 세무국에서 제안된 약정을 따르지 않을 수 있는 선택권이 있다. 사전 답변을 기초로 한 세금 부과에 대해 납세자는 불복할 권리가 있다. 사전 답변에 대한 효력은 특정 기간에 한정되기 때문에, 동 사전 답변을 그 이전 또는 이후 기간에 확대 적용할 수 없다.

세무국은 조세 관련한 세무국의 해석을 담은 DIPN(Departmental Interpretation and Practice Notes) 등의 가이드라인을 발행할 수 있다. 이러한 가이드라인은 사전 답변의 일종으로 볼 수 없다. 다만 납세자의 상황이 가이드라인에서 제시된 사실관계에 분명(clear)하고 제한 없이(unqualified) 부합한다면, 납세자는 DIPN에 근거하여 처리할 수 있다.

187) IRO Schedule 10

188) DIPN No.31(Advance rulings), p. 7.

VIII 원천징수제도

홍콩에서 원천징수제도는 비거주자에 한해 제한적으로 적용된다. 비거주자는 직접 혹은 대리인(agent)을 통해 과세되며, 아래와 관련한 대금을 지급하는 거주자는 비거주자가 납세 의무를 준수하기에 충분한 금액을 원천징수하여야 한다.¹⁸⁹⁾¹⁹⁰⁾

- (A유형) 필름, 특허 등의 사용과 관련한 금액
- (B유형) 연예인이나 운동선수의 공연 등과 관련한 금액

A유형에 대해서는 홍콩에서 영업을 수행하는 회사에 의해 소유된 적이 있었던 무형자산과 관련한 계열사에 대한 지급액은 100% 과세소득으로 포함되며, 기타의 경우 30%만 과세소득으로 포함된다.

B유형에 대해서는 지급금액의 1/3은 비용으로 간주되며, 잔여금액인 2/3가 과세소득으로 포함된다.¹⁹¹⁾ 비거주자인 법인에게 지급 시 적어도 지급액의 11%를 원천징수하여야 한다.¹⁹²⁾

<p>예제(비거주자 연예인에 대한 원천징수)</p> <p>·홍콩 거주자인 A사는 음악 콘서트 주최사로 홍콩 거주자인 B사를 지정하였다. B사는 영국가수를 섭외하기 위해 영국 거주자인 U사와 계약을 체결하였다. 콘서트 후 B사는 U사에 HKD4,500,000을, U사는 영국가수에게 HKD3,000,000을 주기로 되어 있다. 이와 관련한 세무상 취급은 어떻게 되는가?</p>
<p>해설</p> <p>·동 사안에서 세무상 관련 금액은 HKD3,000,000이 아닌, HKD4,500,000이다.</p> <p>·B사는 U사에 대금을 지급할 때 원천징수 의무를 부담한다.</p> <p>·U사에 지급될 금액 중 1/3은 비용으로 공제가 되고, 2/3은 과세대상이 된다. 만약 U사의 비용이 1/3을 초과하고 충분한 증거를 제출 시, 실제 발생비용을 공제할 수 있다.</p> <p>·B사가 원천징수하여야 할 금액은 HKD495,000(=①과 ② 중 큰 금액)이다.</p> <p>① 예상납부세액: HKD330,000(=HKD4,500,000*2/3-2,000,000)*16.5%+2,000,000*8.25%)</p> <p>② 원천징수하한: HKD495,000(=HKD4,500,000*11%)</p>

자료: BPP Learning Media Ltd, *Module D Taxation*, 2013, p. 335.

189) BPP Learning Media Ltd, *Module D Taxation*, 2013, pp. 333~335.

190) IRO §20B

191) DIPN No.17(The taxation of persons chargeable to profits tax on behalf of non-residents) §14

192) 홍콩 세무국, "Tax Rates of Profits Tax," <https://www.gov.hk/en/residents/taxes/taxfiling/taxrates/profitrates.htm>, 검색일자: 2021. 9. 8.

[별첨] 법인이윤세 주요 신고서식 - BIR51

INLAND REVENUE DEPARTMENT PROFITS TAX RETURN - CORPORATIONS FINAL ASSESSMENT AND PROVISIONAL PAYMENT													
Quote the file no. below in any communication													
FILE NO.													
TO	Revenue Tower, 5 Gloucester Road, Wan Chai, Hong Kong.												
Assistant Commissioner													
Please refer to the corresponding parts and items in Section G of the Notes. Exclude cents when stating amounts.													
PART 1 STATEMENT OF ASSESSABLE PROFITS OR ADJUSTED LOSS													
1.1	Assessable Profits (before loss brought forward) If NIL, enter "0" HK\$										1		
1.2	Adjusted Loss (before loss brought forward) If NIL, enter "0" HK\$											2	
1.3	Loss brought forward from prior year If NIL, enter "0" HK\$											3	
PART 2 TAX LIABILITY OR REPAYMENT													
2.1	Tax Payable If NIL, enter "0" HK\$												
2.2	Tax Repayable If NIL, enter "0" HK\$												
✓ " the appropriate boxes										Yes	No		
2.3	Are you chargeable at two-tiered rates for this year of assessment? (For a corporation with connected entities, no other connected entity elects to be chargeable at two-tiered rates.)										<input type="checkbox"/>	4	<input type="checkbox"/>
PART 3 GROSS INCOME, SPECIFIED TRANSACTIONS AND MATTERS											Yes	No	
3.1	Does your gross income for the basis period exceed HK\$2,000,000?										<input type="checkbox"/>	5	<input type="checkbox"/>
3.1.1	If no, state your gross income for the basis period. HK\$												6
3.2	During the basis period, did you pay or accrue to a non-resident person any sum for the use/assignment of intellectual property specified in section 15(1)(a), (b), (ba) or (bb) of the Inland Revenue Ordinance? If yes, submit details of the sum as stated in the Notes and include the sum in Item 12.13.										<input type="checkbox"/>	7	<input type="checkbox"/>
3.3	Did you have any deemed assessable profits under section 20AE, 20AF, 20AX and/or 20AY of the Inland Revenue Ordinance for this year of assessment? If yes, submit the information as required in the Notes.										<input type="checkbox"/>	8	<input type="checkbox"/>
3.4	Does the amount of the Assessable Profits/Adjusted Loss entered in Part 1 include any profits/loss subject to tax at concessionary tax rate for this year of assessment from:												
3.4.1	short/medium term debt instruments (issued before 1 April 2018)? If yes, submit the information as required in the Notes.										<input type="checkbox"/>	9	<input type="checkbox"/>
3.4.2	carrying on a business as a professional reinsurer, an authorized captive insurer, a specified insurer, a licensed insurance broker company, a qualifying corporate treasury centre, a qualifying aircraft lessor, a qualifying aircraft leasing manager, a qualifying ship lessor or a qualifying ship leasing manager? If yes, submit the information as requested in the Notes and complete Item 9.7.										<input type="checkbox"/>	10	<input type="checkbox"/>
3.5	Do you claim tax relief for this year of assessment pursuant to an arrangement for avoidance of double taxation specified under section 49(1) or 49(1A) of the Inland Revenue Ordinance? If yes, submit the information as required in the Notes.										<input type="checkbox"/>	11	<input type="checkbox"/>
3.6	Have you obtained an advance ruling relating to this year of assessment? If yes, submit the information as required in the Notes.										<input type="checkbox"/>	12	<input type="checkbox"/>
3.7	Do you claim debt treatment for an arrangement for this year of assessment as "an originator" or "a bond-issuer" of a specified alternative bond scheme under section 40AB of and Schedule 17A to the Inland Revenue Ordinance?										<input type="checkbox"/>	13	<input type="checkbox"/>
3.8	Do you claim deduction for distribution arising from a regulatory capital security for this year of assessment?										<input type="checkbox"/>	14	<input type="checkbox"/>
3.9	Were you a permanent establishment in Hong Kong of a non-Hong Kong resident person for this year of assessment? If yes, submit the information as required under Item (3)(i) in Part 1 of Note G.										<input type="checkbox"/>	15	<input type="checkbox"/>
3.9.1	If yes, did you have transactions with other parts of the non-Hong Kong resident person for this year of assessment?										<input type="checkbox"/>	16	<input type="checkbox"/>
FOR OFFICIAL USE ONLY													
<input type="checkbox"/> A/C <input type="checkbox"/> C/A <input type="checkbox"/> T/R <input type="checkbox"/> PF Lang. Ind. <input type="checkbox"/> Not for A.A. Ind. <input type="checkbox"/> IR10C/670/1264 issued on _____ <input type="checkbox"/> IR849 / on-line update for: <input type="checkbox"/> B. Name <input type="checkbox"/> B. Add. <input type="checkbox"/> Cess.													
BIR51 (4/2020) 本表的中文原樣本可經表格傳真服務 (電話號碼 2598 6001) 索取或在稅務局網頁 (網址 www.ird.gov.hk) 下載。 A specimen of the Chinese version of this return may be obtained through the Fax-A-Form service (Telephone No. 2598 6001) or downloaded from the Department's web site (www.ird.gov.hk).											P.T.O.		

		Page 2
PART 4 DETAILS OF THE CORPORATION		
4.1	Postal address if different from that printed on this return:	
4.2	If the postal address stated in Item 4.1 is the same as your current main business address, "✓" the box. <input type="checkbox"/>	
4.3	Telephone Number:	
4.4	Principal business activity:	
	Hong Kong Standard Industrial Classification Code	<input type="text"/> <input type="text"/> <input type="text"/> <input type="text"/> <input type="text"/> <input type="text"/> <input type="text"/> <input type="text"/> <input type="text"/> <input type="text"/> <input type="text"/> 17
	Principal product or service:	
	If different from that previously reported, "✓" the box. <input type="checkbox"/>	
PART 5 RETURN FORM LANGUAGE		
	If you wish to receive future Profits Tax Returns in CHINESE, "✓" the box. <input type="checkbox"/>	
PART 6 AUTHORIZED REPRESENTATIVE		
(Complete only if you have appointed a representative. Such an appointment is NOT compulsory.)		
I hereby authorize		
of (Address)		
to handle the tax affairs on behalf of the Corporation.		
The representative's Business Registration No. and Branch No., if any		<input type="text"/> <input type="text"/> <input type="text"/> <input type="text"/> <input type="text"/> <input type="text"/> <input type="text"/> <input type="text"/> <input type="text"/> <input type="text"/> <input type="text"/> <input type="text"/>
The representative's Reference No.		<input type="text"/> <input type="text"/> <input type="text"/> <input type="text"/> <input type="text"/> <input type="text"/> <input type="text"/> <input type="text"/>
"✓" the appropriate boxes		
PART 7 GENERAL MATTERS		
7.1	Are your accounts required to be audited by law? If yes, complete Item 7.1.1 and if you are a SMALL corporation, complete also Items 7.1.2 and 7.1.3.	<input type="checkbox"/> 18 <input type="checkbox"/>
7.1.1	Did the Auditor(s) in his/their Report express an adverse opinion or a disclaimer of opinion?	<input type="checkbox"/> 19 <input type="checkbox"/>
7.1.2	State the name of the Auditor(s) who prepared your Auditor's/Auditors' Report for the basis period:	
7.1.3	State the date of the Auditor's/Auditors' Report:	
7.2	State your basis period: From to Is the accounting date for this year different from that of last year?	<input type="checkbox"/> 20 <input type="checkbox"/>
7.3	Did you commence business within the basis period? If yes, state the date of commencement:	<input type="checkbox"/> 21 <input type="checkbox"/>
7.4	Did you cease business within the basis period? If yes, complete Items 7.4.1, 7.4.2 and 7.4.3.	<input type="checkbox"/> 22 <input type="checkbox"/>
7.4.1	State the date of cessation:	
7.4.2	On cessation, was your business or any part thereof transferred to and carried on by another person? If yes, state the name of this person:	<input type="checkbox"/> 23 <input type="checkbox"/>
7.4.3	On cessation, were any of the assets of your business sold or transferred to an associated person?	<input type="checkbox"/> 24 <input type="checkbox"/>
7.5	Do you elect to align the tax treatment of financial instruments with their accounting treatment and have the related profits assessed in accordance with sections 18I to 18L of the Inland Revenue Ordinance?	<input type="checkbox"/> 25 <input type="checkbox"/>
7.6	Are your financial statements prepared in a foreign currency? If yes, state the currency and the conversion rate used to convert to HK dollars. Currency Conversion rate	<input type="checkbox"/> 26 <input type="checkbox"/>
7.7	Are you a private company? If yes, complete Item 7.7.1.	<input type="checkbox"/> 27 <input type="checkbox"/>
7.7.1	Has there been any change in your shareholders during the basis period?	<input type="checkbox"/> 28 <input type="checkbox"/>
7.8	During the basis period, were you a party to an amalgamation under section 680 or 681 of the Companies Ordinance (Cap. 622)?	<input type="checkbox"/> 29 <input type="checkbox"/>
7.9	During the basis period, were you involved in any processing arrangement in the Mainland of China? If yes, complete Item 10.2.2.	<input type="checkbox"/> 30 <input type="checkbox"/>
PART 8 TRANSACTIONS FOR / WITH NON-RESIDENTS		
8.1	During the basis period did you:	<input type="checkbox"/> Yes <input type="checkbox"/> No
8.1.1	sell any goods or provide any services in Hong Kong on behalf of a non-resident person?	<input type="checkbox"/> 31 <input type="checkbox"/>
8.1.2	receive, as agent, on behalf of a non-resident person any other trade or business income arising in or derived from Hong Kong?	<input type="checkbox"/> 32 <input type="checkbox"/>
8.1.3	make any value creation contributions in Hong Kong in relation to the intellectual property of a non-Hong Kong resident associate?	<input type="checkbox"/> 33 <input type="checkbox"/>
8.2	Hire charges paid or accrued to non-resident persons for the use of or right to use movable property in Hong Kong	HK\$ <input type="text"/> <input type="text"/> <input type="text"/> <input type="text"/> <input type="text"/> <input type="text"/> <input type="text"/> <input type="text"/> <input type="text"/> <input type="text"/> <input type="text"/> <input type="text"/> 34
8.3	Fees paid or accrued to non-resident persons in respect of professional services rendered in Hong Kong	HK\$ <input type="text"/> <input type="text"/> <input type="text"/> <input type="text"/> <input type="text"/> <input type="text"/> <input type="text"/> <input type="text"/> <input type="text"/> <input type="text"/> <input type="text"/> <input type="text"/> 35
P.T.O.		

PART 9 SUPPLEMENTARY FORMS		Page 3	
If you fall within any of the following descriptions, please download the relevant supplementary form from Department's web site www.ird.gov.hk/e_pfr for completion and "✓" the appropriate boxes.		Form attached	
9.1	You elect to be chargeable at two-tiered rates for this year of assessment. You had connected entities carrying on a trade, profession or business in Hong Kong and you were not a member of a group of companies, one of which was listed on the Stock Exchange of Hong Kong.	Form S1	<input type="checkbox"/> 26
9.2	You had transactions with non-resident associated persons / other parts of the non-Hong Kong resident person during the basis period.	Form S2 - Section 1	<input type="checkbox"/> 27
9.3	An advance pricing arrangement has been made for the basis period.	Form S2 - Section 2	<input type="checkbox"/> 28
9.4	You belonged to a multinational enterprise group which has the obligation to file country-by-country report in Hong Kong or elsewhere in the basis period.	Form S2 - Section 3	<input type="checkbox"/> 29
9.5	You wish to claim deduction for R&D expenditure under section 16B of the Inland Revenue Ordinance and/ or you had trading receipts or sale proceeds from intellectual property rights generated from R&D activities during the basis period.	Form S3	<input type="checkbox"/> 40
9.6	You wish to claim deduction for expenditure on energy efficient building installation under section 16I of the Inland Revenue Ordinance.	Form S4	<input type="checkbox"/> 41
9.7	During the basis period, you were carrying on the business as:		
9.7.1	a ship-owner	Form S5	<input type="checkbox"/> 42
9.7.2	a professional reinsurer	Form S6	<input type="checkbox"/> 43
9.7.3	an authorized captive insurer	Form S7	<input type="checkbox"/> 44
9.7.4	a qualifying corporate treasury centre	Form S8	<input type="checkbox"/> 45
9.7.5	a qualifying aircraft lessor	Form S9	<input type="checkbox"/> 46
9.7.6	a qualifying aircraft leasing manager	Form S10	<input type="checkbox"/> 47
9.7.7	a qualifying ship lessor	Form S11	<input type="checkbox"/> 48
9.7.8	a qualifying ship leasing manager	Form S12	<input type="checkbox"/> 49
9.7.9	a specified insurer	Form S13	<input type="checkbox"/> 50
9.7.10	a licensed insurance broker company	Form S14	<input type="checkbox"/> 51
PART 10 TAX DATA (Complete all items. If NIL, enter "0".)		HK\$	
10.1	Offshore profits excluded from the Assessable Profits or Adjusted Loss stated in Part 1		<input type="text"/> 52
10.2	Offshore profits from business (already included in Item 10.1) attributable to:		
10.2.1	the use of the Internet to accept orders, sell goods, provide services or accept payment		<input type="text"/> 53
10.2.2	contract processing or import processing arrangement in the Mainland of China		<input type="text"/> 54
10.3	Profits from sale of landed properties in Hong Kong excluded from the Assessable Profits or Adjusted Loss stated in Part 1		<input type="text"/> 55
10.4	Profits from sale of capital assets (other than landed properties in Hong Kong) excluded from the Assessable Profits or Adjusted Loss stated in Part 1		<input type="text"/> 56
10.5	Net interest income exempted from payment of Profits Tax		<input type="text"/> 57
10.6	Interest, profits or gains from qualifying debt instruments (issued on or after 1 April 2018) exempted from payment of Profits Tax		<input type="text"/> 58
10.7	Profits from transactions in assets of a class specified in Schedule 16C to the Inland Revenue Ordinance and incidental transactions exempted from payment of Profits Tax		<input type="text"/> 59
10.8	Profits from transactions in relation to specified securities exempted from payment of Profits Tax		<input type="text"/> 60
10.9	Deduction claimed for approved charitable donations		<input type="text"/> 61
10.10	Deduction claimed for expenditure on building refurbishment		<input type="text"/> 62
10.11	Deduction claimed for expenditure on computer hardware and software		<input type="text"/> 63
10.12	Deduction claimed for expenditure on prescribed manufacturing machinery or plant		<input type="text"/> 64
10.13	Deduction claimed for expenditure on environmental protection machinery		<input type="text"/> 65
10.14	Deduction claimed for expenditure on environmental protection installation		<input type="text"/> 66
10.15	Deduction claimed for expenditure on environment-friendly vehicles		<input type="text"/> 67
10.16	Deduction claimed for expenditure on:		
	10.16.1 patent rights		<input type="text"/> 68
	10.16.2 rights to know-how		<input type="text"/> 69
10.17	Deduction claimed for specified expenditure on:		
	10.17.1 copyrights		<input type="text"/> 70
	10.17.2 performer's economic rights		<input type="text"/> 71
	10.17.3 protected layout-design (topography) rights		<input type="text"/> 72
	10.17.4 protected plant variety rights		<input type="text"/> 73
	10.17.5 registered designs		<input type="text"/> 74
	10.17.6 registered trade marks		<input type="text"/> 75
10.18	Tax relief claimed pursuant to an arrangement stated in Item 3.5:		
	10.18.1 foreign tax paid claimed as a tax credit		<input type="text"/> 76
	10.18.2 income or profits excluded from the Assessable Profits or Adjusted Loss stated in Part 1		<input type="text"/> 77
10.19	Deduction claimed for interest to non-Hong Kong associated corporations in the ordinary course of an intra-group financing business		<input type="text"/> 78

Page 4

PART 11 DEPRECIATION ALLOWANCES CLAIMED (Complete all items. If NIL, enter "0")

Industrial Building		HK\$			
11.1	Initial Allowance			79	
11.2	Annual Allowance			80	
11.3	Balancing Allowance			81	
11.4	Balancing Charge			82	
Commercial Building		HK\$		Machinery or Plant	
11.5	Annual Allowance			83	86
11.6	Balancing Allowance			84	87
11.7	Balancing Charge			85	88
					89

PART 12 FINANCIAL DATA (Complete all items. If NIL, enter "0")

		HK\$		HK\$	
12.1	Turnover			90	101
12.2	Opening inventories			91	102
12.3	Purchases			92	103
12.4	Closing inventories			93	104
12.5	Gross profit			94	105
12.6	Gross loss			95	106
12.7	Dividend income			96	107
12.8	Interest income			97	108
12.9	Interest expense			98	109
12.10	Employee and director remuneration			99	110
12.11	Share-based payments			100	
12.12	Commission payments				
12.13	Intellectual property payments				
12.14	Management and consultancy fee payments				
12.15	Contractor and subcontractor charges				
12.16	Bad debts				
12.17	Net profit per account				
12.18	Net loss per account				
12.19	Accounts receivable (trade)				
12.20	Accounts payable (trade)				
12.21	Issued share capital				

PART 13 DECLARATION

I, (full name),
 being SECRETARY / MANAGER / DIRECTOR / INVESTMENT MANAGER / PROVISIONAL LIQUIDATOR / LIQUIDATOR *
 of (State full name of the Corporation),
 declare that:-

- the whole of the Assessable Profits (or Adjusted Loss) of the Corporation arising during the basis period for the year of assessment as stated in the notice on Page 1 has been disclosed;
- the Supporting Documents referred to in the notice on Page 1 have been prepared;
- this return and any required supplementary forms have been completed in accordance with the Supporting Documents; and
- to the best of my knowledge and belief all the particulars contained in this return, any required supplementary forms and the Supporting Documents are true, correct and complete.

Date Signature

(Heavy penalties may be incurred for failing to keep sufficient business records, making an incorrect return or committing other offences — See Sections D and E of the Notes.)

*Delete whichever is inapplicable. INVESTMENT MANAGER only applicable to a corporation that is an open-ended fund company.

PART 14 PERSONAL INFORMATION COLLECTION STATEMENT

It is obligatory for you to supply the personal data as required by this return and any required supplementary forms. Breach of the statutory requirement may render you liable to penalty or other actions as provided under the Ordinances administered by the Department. Moreover, if you fail to supply the required information, your application/request/notification will not be accepted for processing. The Department will use the information provided by you for the purposes of the Ordinances administered by it and may disclose/transfer any or all of such information to any other parties provided that the disclosure/transfer is authorized or permitted by law. Except where there is an exemption provided under the Personal Data (Privacy) Ordinance, you have the right to request access to and correction of your personal data. You should send such request in writing to the Assessor at GPO Box 132, Hong Kong and quote your file number in this Department.

DO NOT TEAR OFF THIS PART

File No. _____ Ass't Yr _____

자료: 홍콩 세무국, "Profits Tax Return and Supplementary Form to Profits Tax Return," <https://www.gov.hk/en/residents/taxes/taxfiling/filing/types/profitstax.htm>, 검색일자: 2021. 9. 7.

제2장 | 급여소득세

I 개관

홍콩의 개인소득세는 급여소득세(Salary tax)라 불리며, 납세자가 홍콩에 원천을 둔(arising in or derived from Hong Kong) 사업장에서 고용 및 연금(office, employment or pension) 소득을 취득하였을 때 납세의무가 발생한다. 세무조례에 '소득(income)'에 대해 정의하고 있지는 않지만, 급여소득세 과세소득에 대해서 열거하고 있는데, 그 구분은 ① 고용주나 타인에게서 획득한 임금 ② 급여 ③ 휴가급여 ④ 비용 ⑤ 수수료 ⑥ 보상 ⑦ 상여금 ⑧ 급여 외 보조금 등이 있다.¹⁹⁴⁾ 이러한 항목들을 어떠한 직위나 고용된 업무로 인해 획득한 경우라면 과세대상이 된다. 그리고 고용된 업무에 의해 획득한 일반적인 소득과는 구별되지만 소득의 범주에 포함되는 소득을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있다.

과세대상소득 외에도 세무조례에는 급여소득세가 면제되는 비과세소득을 규정하고 있는데, 원천적으로 과세되지 않는 소득과 과세가능소득이지만 비과세해 주는 특정 소득을 열거하고 있다. 즉 발생되지 않았거나 수취되지 않은 소득은 과세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그 외 특정 소득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열거하여 법적으로 비과세 혜택을 주고 있다.

홍콩의 소득세 과세방식은 일반적으로 각 개별 소득의 순과세가능소득에 각각의 표준세율을 적용하여 분류과세하거나 각 개별 소득을 합산한 전체 순과세가능소득에 인적공제 등의 항목을 차감하고 누진세율을 적용하여 종합과세한다. 납세자는 분류과세 또는 종합과세 중에 선택할 수 있으며, 이것과 구별하여 기혼부부의 경우 부부합산과세를 인정하고 있는데, 이는 부부의 개별소득에 대해 과세할 때보다 부부소득을 합산하여 과세하는 방식이 더 유리할 때 적용하는 제도이다.

급여소득세 납세의무자는 보편적으로 매년 5월 초에 급여소득세 신고서를 세무국으로부터 받고, 요구형식에 맞게 발생한 소득, 공제 등의 구체적인 내역을 기재하여 신고서 발급일 1개월 이내에 서면 또는 전자적 방법 등으로 신고서를 제출해야 하며 동시에 납부도 이뤄져야 한다.

194) IRO §8(1), §9(1)

급여소득세를 설명하고 있는 제2장의 구성은 제1절 개관에서 시작하여, 제2절 납세의무자를 간략히 살펴보고, 제3절에서는 과세대상 소득에 대해서 살펴본다. 과세대상 소득은 과세 소득에 대한 법령의 정의를 살펴본 후 과세소득의 종류를 알아보고, 일반적인 소득과는 구별되지만 소득의 범주에 포함되는 소득을 살펴본다. 또한 원천적으로 과세할 수 없는 소득과 법령에 근거하여 비과세혜택을 부여하는 특정 소득 등 비과세소득에 대해서도 살펴본다. 제4절에서는 공제항목에 대해서 살펴보는데, 일반적인 소득공제와 특별한 조건이 허용하면 공제해주는 특별공제, 그리고 종합과세방식 등을 선택하면 혜택이 부여되는 다양한 인적공제를 차례대로 살펴본다. 제5절에서는 분류과세, 종합과세, 부부합산과세 등의 과세방식에 대해서 살펴보고, 제6절에서는 급여소득세 납부세액의 산출과정을, 제7절에서는 신고와 납부 등 급여소득세 세무행정에 대해서 살펴본다.

II 납세의무자¹⁹⁵⁾

홍콩의 납세의무자는 홍콩 내에 거주하는 영구거주자(permanent resident)와 일정 요건을 충족하는 임시거주자(temporary resident)이다. 임시거주자란 홍콩에 거주하지는 않지만 해당 과세연도에 180일 이상 홍콩에 체류하거나 해당 과세연도와 전년도에 걸쳐 총 300일 이상 체류한 사람을 말한다.

홍콩은 원천지국 과세방식을 적용하기 때문에 납세의무는 거주 상태에 따라서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소득의 원천에 의해서 결정된다. 그러므로 영구거주자나 임시거주자라는 용어를 특별히 구분하여 사용하지는 않지만, 종합과세(personal assessment)를 선택한 개인의 자격 유무를 결정할 때와 부양가족 공제를 요구할 때 및 이중과세를 피하고자 할 때에는 거주자 구분을 한다.

195) IBFD, "Hong Kong - Individual Taxation sec. 1.1.4.1. Definition of residence/domicile," https://research.ibfd.org/#/doc?url=/linkresolver/static/ita_hk_s_1.1.4.&refresh=1647305334280%23ita_hk_s_1.1.4., 검색일자: 2021. 9. 16.

III 과세대상소득

1. 과세대상 소득기준¹⁹⁶⁾

급여소득세의 과세대상 소득 기준은 홍콩에 원천을 둔 사업장(office), 고용(employment) 및 연금(pension)에서 발생된 것으로 세무조례에 규정하고 있다.²⁰¹⁾

먼저 ‘사업장’이란 회사운동을 수행하는 곳이라는 의미를 가지는데, 여기에서 사업장은 이사 또는 임원(director or officer)의 사업장을 말한다. 그러므로 이 사업장에서 발생된 이사의 보수는 급여소득과세의 과세대상이다.²⁰²⁾ 즉 기업이나 단체를 경영함에 있어서 이사에게 지급되는 보수는 그들의 용역에 대한 대가로 취급하므로 급여소득세 과세대상으로 삼는다. 예를 들어 이사의 사무실이 홍콩 내에서 운영되고 있다면, 비록 이사의 실질적인 거주지가 외국에 있다고 하더라도 이사의 모든 보수가 이 사무실로부터 발생된 것으로 보아 급여소득으로 과세하게 된다.

둘째, 납세자와 고용주 사이에 주종(master and servant)의 관계가 존재한다면 즉, 용역의 계약(contract of service)²⁰³⁾을 체결하는 경우라면, 이를 ‘고용’로부터 유인된 소득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고용으로부터 유인된 소득을 판정함에 있어서 몇 가지 기준이 적용되고 있는데, 주종의 관계를 규정하는 ‘근본적 기준’과 계약의 독립 유무를 판단하는 ‘경제적 실체 기준’ 등이 존재한다. 그래서 자영업자에 의해 발생된 소득이나 독립계약자의 소득은 급여소득세로 과세하지 않고 일반적으로 이윤세 과세대상으로 취급한다.

‘근본적 기준(original test)’은 주종의 관계가 존재하는가의 여부를 판정하는 것으로서 ‘종업원이란 그가 하는 일의 방법을 사용주에게 지시받는 사람’으로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규정을 적용하기 위해서는 지시나 통제의 정도를 판단하는 것이 중요 척도가 되지만, 지시의 한도를 정하는 것이 거의 불가능하며 무의미하므로 이 기준을 적용하기 힘든 지점이 존재한다.

‘경제적 실체 기준(economic reality test)’은 납세자가 종업원인지 독립적 계약자인지를 구별하는 기준으로 적용된다. 납세자가 계약을 체결함에 있어서 다음의 요소를 만족한다면

196) 한국조세재정연구원(2011), p. 47~48.

201) IRO §8(1A), §9(1)

202) IRO §8(1)

203) 용역의 계약(contract of service)은 용역을 위한 계약(contract for services)과는 반대되는 개념으로 용역을 제공하고 보수를 받는 계약을 의미함

독립적인 계약자로 보아 급여소득세를 과세할 수 없으며, 다음의 요소를 만족하지 않는다면 급여소득세 과세대상으로 취급하게 된다.

- 용역을 수행하는 자가 자신의 장비를 제공하는 경우
- 납세자가 자신의 토지(or 재산)에서 일하는 경우
- 납세자가 자신의 보조자를 고용하는 경우
- 납세자가 금융위험의 정도를 취하는 경우
- 납세자가 투자와 경영의 책임이 있는 경우
- 납세자가 진정한 경영의 이윤을 분배받는 경우

셋째, 홍콩에서 발생하는 ‘연금’은 일반적으로 급여소득세 과세대상이다.²⁰⁴⁾ 그러나 인가 직업퇴직계획(recognized occupational retirement scheme)으로부터 수취한 연금, 장애연금(disability pensions), 전쟁연금(war memorial pensions) 등과 관련된 소득에 대해서는 비과세하고 있다. 연금을 조례 등의 근거하여 전환(commutation) 방식으로 지급받은 총 연금 합계에 대해서도 비과세하고 있다.²⁰⁵⁾ 과세대상에서 ‘연금’이란 항목은 자발적 또는 철회 가능한 모든 연금을 포함한다.²⁰⁶⁾

2. 세무조례에 근거한 과세대상 소득

세무조례 제8조 1항에는 별도의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어떠한 자가 어떠한 과세연도에 ① 수익을 발생시키는 직위나 고용된 업무 ② 퇴직금 등의 원천으로부터 획득한 홍콩에서 발생하였거나 홍콩에서 얻은 소득은 급여소득세 과세대상소득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홍콩에서 서비스의 제공으로 획득한 것을 포함한 일체의 소득을 말하며, 당해 서비스로 인하여 향유하게 된 휴가급여도 포함한다.²⁰⁹⁾ 반면에 홍콩 이외의 지역에서 고용된 업무와 유관한 일체의 서비스 제공으로 획득한 소득은 비과세대상이다. 단 관련 과세연도의 과세기준기간 내에 홍콩을 방문한 기간이 총 60일을 초과하지 않고, 그 기간 내에 서비스를 제공해야 한다.²¹⁰⁾

204) IRO §8(1)

205) IRO §8(2)(c)

206) IBFD, “Hong Kong - Individual Taxation sec. 1.2.3. Exempt income,” https://research.ibfd.org/#/doc?url=/linkresolver/static/ita_hk_s_1.1.4.&refresh=1647305334280%23ita_hk_s_1.2.3., 검색일자: 2021. 11. 11.

209) IRO §8(1A)(a)

동법 제9조에서는 어떠한 직위나 고용된 업무로 인해 획득한 소득을 구체적으로 열거하고 있는데, ① 고용주나 타인에게서 획득한 임금 ② 급여 ③ 휴가급여 ④ 비용 ⑤ 수수료 ⑥ 보상 ⑦ 상여금 ⑧ 급여 외 보조금 등이 있다. 이 외에도 세무조례에 열거되어 있지 않지만 ① 특전(Perquisite) ② 현물이득(Benefits in kind) 등도 과세대상소득에 포함된다.

특전은 모든 부수적인 보수(incidental emoluments)를 포함하는 포괄적인 의미로 해석된다.²¹¹⁾ 고용으로부터 발생하는 부가혜택(fringe benefits)인 사적 혜택이나 휴대폰 비용 등을 고용주가 지급하였다면 이러한 이득은 특전에 해당된다. 따라서 고용주가 피고용인에게 제공하는 사적인 비용 등의 보상은 일반적으로 특전으로 간주되어 과세된다. 특전에는 ① 생활비 보조 ② 출·퇴근 시 통근비용 ③ 호텔숙박비 제공 ④ 학자금 ⑤ 사회단체나 스포츠클럽 멤버십 ⑥ 자동차 혜택 ⑦ 무이자 대출 또는 이자보조 대출의 제공 등이 포함된다. 또한 특전과 유사한 형태이지만 수취하여 돈으로 전환될 수 있는 현물이득도 과세소득에 포함되는데, 고용주가 제공하는 화폐로 전환할 수 있는 것, 자녀교육비용, 휴가비용 등이 과세대상에 포함된다.²¹²⁾ 세무조례에 열거되어 있는 휴가급여(leave pay)는 휴가기간 동안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급여를 의미하며, 휴가비용은 휴가 기간의 여정에 관해 고용주가 제공하는 부가혜택을 말한다.

3. 기타소득

일반적인 소득의 정의에는 포함되지 않지만 소득의 범주에 속하는 종류의 소득을 열거하고 있다.²²⁶⁾ 이러한 범주에 속하는 소득으로는 ① 인가직업퇴직계획하에서 발생된 과세소득 ② 주택과 관련하여 고용주 내지 관련 법인에게 받은 이득 ③ 주식이나 스톡옵션의 양도 시 실현이득 ④ 기타 이득 등이 있는데, 이러한 이득은 과세대상에 해당된다.

① 인가직업퇴직계획하에서 발생된 과세소득은 비과세대상이 되는 항목의 범위를 제외한 나머지 소득을 모두 과세대상 소득에 포함시키고 있으며, 다음의 항목이 과세대상 소득에 포함된다.

- 인가직업퇴직계획, 강제적공적기금계획(mandatory provident fund) 이외의 공제기금,

210) IRO §8(1B)

211) 한국조세재정연구원(2011), p. 49~50.

212) IRO §9(2A)

226) IRO §9

- 기타 사회제도를 통해 수령한 금액으로 고용주가 납부한 기여금 한도까지로 규정²²⁷⁾
- 퇴직, 사망, 능력상실 및 서비스 중지²²⁸⁾를 제외하고 인가직업퇴직계획을 통해 수령한 금액으로 고용주가 납부한 기여금 한도까지로 규정²²⁹⁾
 - 서비스 중지 시 인가직업퇴직계획을 통해 근로자가 수령한 금액으로, 고용주가 낸 기여금 중 일정 한도²³⁰⁾를 초과하는 금액²³¹⁾
 - 퇴직, 사망, 능력상실 및 서비스의 중지를 제외하고 강제적공적기금계획이나 강제적공적기금을 통해 이미 수령한 것으로 간주되는 금액 중에서 고용주가 납부한 의무기여금 (mandatory contribution) 한도까지로 규정²³²⁾
 - 강제적공적기금계획이나 강제적공적기금을 통해 이미 수령한 것으로 간주되는 금액 중에서 고용주가 불입한 자발적 기여금(voluntary contribution)의 일정 한도를 초과하는 금액²³³⁾
- ② 거소 등 주택과 관련하여 고용주 내지 관련 법인에게 받은 이득은 고용주가 근로자에게 주거를 위한 공간을 제공하는 데 따른 이득으로서 다음의 항목이 과세대상 소득에 포함된다.
- 고용주 내지 관련 법인이 무료(rent-free)로 거소를 제공한 경우 그 임대료 가액²³⁴⁾
 - 고용주 내지 관련 법인이 실제 임대료보다 낮은 금액으로 어떠한 주거지를 제공한 경우 당해 임대료 가액과 실제 임대료 간의 차액²³⁵⁾
- ③ 주식이나 스톡옵션의 양도 시 실현이득은 납세자가 양도나 행사를 통해 실현하였을 때 과세대상 소득으로 포함된다.
- 회사에서 주식이나 스톡옵션을 획득한 납세자가 그 주식이나 스톡옵션을 양도나 행사할 경우 실현된 이득²³⁶⁾
- ④ 기타 이득으로는 주로 현물이득에 해당되는 항목들로 구성되며, 다음과 같은 종류의 이득이 포함된다.

227) IRO §9(1)(aa)

228) 서비스 중지란 45세 이하의 나이에 퇴직하는 경우나 불입해가 10년 미만일 때 퇴직하는 경우 등을 말함

229) IRO §9(1)(ab)(i)

230) 일정 한도=(서비스가 완료된 해당 개월 수/120개월)×발생이득(IRO §8(5))

231) IRO §9(1)(ab)(ii)

232) IRO §9(1)(ad)

233) IRO §9(1)(ae)

234) IRO §9(1)(b)

235) IRO §9(1)(c)

236) IRO §9(1)(d)

- 고용주가 제공한 화폐 등 금전으로 전환 가능한 이득²³⁷⁾
- 고용주가 피고용인의 자녀 교육을 위해 지급한 금액 또는 금액으로 환산할 수 있는 혜택 등의 이득²³⁸⁾
- 고용주가 휴가 기간의 여정을 위해 피고용인에게 지급한 금액 등의 이득²³⁹⁾

4. 비과세소득

세무조례에서는 발생되지 않았거나 수취되지 않은 소득은 과세할 수 없다고 규정²⁴³⁾하고 있으며, 그 외 특정소득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열거하여 법적으로 비과세 혜택을 주고 있다.²⁴⁴⁾

우선 과세소득을 책정하는 기준은 해당 과세연도에 소득이 발생되었느냐 아니냐를 기준으로 하며, 소득의 발생과 수취(accrual and receipt of income)가 모두 해당 과세연도에 실행되었을 때에만 과세할 수 있다. 즉 소득이 과세연도에 발생되었지만, 아직 수취되지 않았다면 급여소득세를 과세할 수 없고 과세소득에 포함되지 않는다. 반대로 수취되었으나 발생되지 않은 소득은 과세소득으로 간주할 수 없으므로 역시 과세소득에 포함되지 않는다.

〈표 2-2-1〉 소득의 발생과 수취 사례

<p>〈상황〉</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A씨는 매달 HKD 20,000의 월급을 받음 - 그러나 회사의 재무상 사정으로 2019년 4월부터 6월까지 3달치 월급 HKD 60,000을 수령하지 못함 - 이후 회사의 재무상 사정이 좋아져서 2020년 하반기에 월급을 모두 받음 <p>〈해석〉</p> <ol style="list-style-type: none"> ① 이 경우 A씨는 2019년에 소득이 발생했음에도 불구하고, YA 2019/2020에 소득이 수취되지 않았으므로 YA 2019/2020 과세소득에 포함되지 않음 ② 이후 2020년에 HKD 60,000의 소득을 받았으므로 YA 2020/2021에 소득을 수취하였으나 실제로 소득이 발생한 과세연도는 YA 2019/2020이므로 YA 2019/2020에 HKD 60,000을 추가하여 급여소득세를 재계산하여 세액을 산출하게 됨
--

자료: 한국조세재정연구원, 『주요국의 조세제도-홍콩편』, 2011, p. 52의 자료를 저자 정리함

237) IRO §9(2A)(a)
 238) IRO §9(2A)(b)
 239) IRO §9(2A)(c)
 243) IRO §11(a)
 244) IRO §8(2)

이 외 소득으로 간주할 수 있는 특정 소득 중 비과세 항목을 법적으로 열거하고 있는데, 다음의 항목은 법령에 의해 과세대상 소득에서 제외된다.

- 영사, 부영사 등 영사관에 고용된 직원들의 보수²⁴⁵⁾
- ① 서비스의 중지, 사망, 행위능력이 없음, 인가직업퇴직계획에 근거한 퇴직 ② 퇴직금 조례(Pension Ordinance) ③ 퇴직금 이익조례(Pension Benefits Ordinance) ④ 퇴직금 이익(사법인원) 조례(Pension Benefits(Judicial Officers) Ordinance) 등의 연금제도에 서 받은 연금액의 합계²⁴⁶⁾
- 어떠한 직위나 고용된 업무(정부에 고용된 업무는 제외)로 인해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획득한 퇴직금(단 홍콩에서 제공하여 획득한 것이 아닌 부분에 제한됨)²⁴⁷⁾
- 근로자가 퇴직, 사망, 행위능력 없음 내지 서비스의 중지가 발생한 때에 인가직업퇴직계획에서 수취한 금액(퇴직금이 아닌)으로 근로자의 불입금은 모두 면제되지만, 고용주가 불입한 금액은 일정 한도까지만 면제가 허용됨²⁴⁸⁾
- 퇴직, 사망, 행위능력이 없음, 서비스의 중지가 발생한 때에 강제적공적기금계획의 자발적 기여금에서 수취했거나 수취한 것으로 간주되는 금액(단 서비스의 종료 시에는 근로자의 불입금은 모두 면제되지만, 고용주가 불입한 금액은 일정 한도까지만 면제가 허용됨)²⁴⁹⁾
- 퇴직, 사망, 행위능력 없음 내지 영구적으로 홍콩을 떠날 때 강제적공적기금계획의 의무 기여금에서 수취하는 금액 의무기여금에 기인하는 것으로 볼 수 있는 부분²⁵⁰⁾
- 중앙인민정부가 중국인민해방군인에 지급한 급여 및 홍콩에서 중앙인민정부에 영구적인 서비스를 제공하는 자가 중앙인민정부의 직위와 관련하여 획득한 급여²⁵¹⁾
- 중국인민해방군인에 지급되는 상이군인에 대한 보조금 및 전시복무수당²⁵²⁾
- 홍콩태평양전쟁기념보조금조례에 의거하여 지급한 홍콩태평양전쟁기념보조금 및 부가 이익²⁵³⁾
- 대학, 학원, 학교 및 기타 유사한 교육기관에서 전일제로 공부하는 자가 장학금, 보조금

245) IRO §8(2)(b)

246) IRO §8(2)(c)

247) IRO §8(2)(ca)

248) IRO §8(2)(cc)(i)

249) IRO §8(2)(cc)(ii)

250) IRO §8(2)(cb)

251) IRO §8(2)(d)

252) IRO §8(2)(e), 8(2)(f)

253) IRO §8(fa)

및 기타 유사한 교육기금을 통해 얻은 금액²⁵⁴⁾

- 중앙인민정부가 정한 조항에 의거하여 통상적으로는 중국 대륙에서 일하지만 홍콩에서 일하도록 특별히 채용되어 홍콩에서 근무한 자에게 지급한 임금²⁵⁵⁾
- 배우자나 전 배우자로부터 정기적으로 받는 생활비 또는 부양금에 해당하는 금액²⁵⁶⁾
- 선박의 선장 내지 선원, 항공기의 기장 내지 승무원으로서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획득한 소득으로 그가 홍콩에 체류한 시간이 유관한 과세연도의 과세기준기간 내에 총 60일을 초과하지 않거나, 연속 2개 과세연도의 과세기준기간에 분산되어 있고, 도합 120일을 초과하지 않는 경우²⁵⁷⁾
- 고용주가 근로자의 이득을 위해서 지불한 의무금 등의 일정 한도 금액(휴일수당, 자녀교육수당, 현금화 가능이득 등은 제외)

위에서 열거한 인가직업퇴직계획과 강제적공적기금계획의 면제내역을 표로 정리하면 <표 2-2-2>, <표 2-2-3>과 같다.

〈표 2-2-2〉 인가직업퇴직계획의 비과세 내역

구분	근로자 기여금	고용주 기여금
퇴직	비과세	비과세
사망	비과세	비과세
행위능력 없음	비과세	비과세
서비스 중지	비과세	일정 한도까지 비과세
홍콩에서 영구이주	비과세	일정 한도까지 비과세
기타 상황	비과세	전액 과세

자료: 한국조세재정연구원, 『주요국의 조세제도-홍콩편』, 2011, p. 54의 자료를 저자 정리함

〈표 2-2-3〉 강제적공적기금계획의 비과세 내역

구분	근로자 의무/자발적 기여금	고용주 의무/자발적 기여금
퇴직	비과세	비과세
사망	비과세	비과세

254) IRO §8(g)
 255) IRO §8(h)
 256) IRO §8(i)
 257) IRO §8(j)

〈표 2-2-3〉의 계속

구분	근로자 의무/자발적 기여금	고용주 의무/자발적 기여금
행위능력 없음	비과세	비과세
서비스 중지	비과세	· 의무 기여금: 비과세 · 자발적 기여금: 일정 한도까지 비과세
홍콩에서 영구이주	비과세	· 의무 기여금: 비과세 · 자발적 기여금: 일정 한도까지 비과세
기타 상황	비과세	전액 과세

자료: 한국조세재정연구원, 『주요국의 조세제도-홍콩편』, 2011, p. 54의 자료를 저자 정리함

IV 각종 공제제도

홍콩의 급여소득세는 총소득에서 비과세소득을 제외하여 과세가능소득(assessable income)을 산출하고 이후 과세가능소득에 각종 공제를 적용하는 과세대상소득의 조정 후 과세된다.²⁵⁸⁾

각종 공제는 우선 일반적인 소득공제(allowable deductions)가 적용되어 순과세가능소득(net assessable income)이 산출되고, 그 다음 몇 개의 특별한 제도에 대해 특별공제를 적용하여 특별공제 후 순과세가능소득(net assessable income after concessionary deductions)을 산출한다.

이렇게 산출된 소득은 종합과세를 선택하지 않은 납세자의 경우 표준세율이 적용되어 과세되며, 납세자가 종합과세를 선택한 경우 특별공제 후 순과세가능소득에서 각종 인적공제를 적용하며, 각종 인적공제를 적용하고 난 후 산출된 최종과세가능소득(net chargeable income)은 구간별로 누진소득세율이 적용되어 최종적으로 납부세액이 산출된다.

1. 소득공제

납세자는 총소득에서 비과세소득을 제외하고 산출된 과세가능소득에 다음과 같은 각종 소득공제항목을 차감하여 순과세가능소득을 얻는다.

가. 지출 및 비용 공제²⁶⁹⁾

소득공제 대상이 되는 지출 및 비용은 가사비용, 개인비용 및 자본비용(domestic, private or capital expenditure)을 제외하고 소득 창출과정에서 전반적(Wholly)이고 배타적(Exclusively)이며 필수적(Necessarily)으로 발생한 비용이어야만 지출 및 비용(expense and outgoing)의 소득공제가 적용된다.

구체적으로 가사비용 및 개인비용에는 일반적인 생활비, 여행경비, 오락비용, 가계보험 등이며, 개인의 의료비용의 경우도 공제대상에서 제외된다. 이자비용은 1997년까지는 공제대상이 아니었으나 과세연도 1998/99 이후 주택대출 이자에 대해서 연간 일정비용까지 공제를 허용하고 있다. 이는 다음 절의 특별공제 주택대출이자 항목에서 구체적으로 살펴본다. 자본

258) IRO §12

269) IRO §12(1)(a)

지출은 본질적으로 공제대상이 아니다. 그러므로 비용 및 지출이 자본계정에 속해 있다면 공제되지 않고, 수익성 계정(revenue account)에 속한 비용은 공제 가능하다. 그러나 이러한 비용을 구분해 내는 일은 매우 어려워서 각각의 해당 경우마다 법적 사례 및 판례에 의존한다.

전반적이고 배타적이라는 의미는 비용공제 시 매우 좁게 해석되지 않는다. 즉 비용이 여러 가지 목적을 위해 발생하였을 경우에도 그 비용 중 일부가 소득창출에 기여하였다면 그 정도를 비율로 산정하여 포함한다. 예를 들어 납세자가 차량을 개인용과 사업용의 두 가지 목적으로 사용하였을 경우, 사업용과 관련되어 발생한 비용에 대해서는 공제가 가능하다. 그러나 이 경우 납세자가 사업용 목적으로 사용되었음을 입증할 자료를 제공해야 할 의무를 가진다. 전반적이고 배타적인 의미가 매우 좁게 해석되지 않는 반면에 필수적이라는 의미는 소득의 창출과정에서 본질적으로 발생한 비용이라는 의미로서 매우 엄격하게 해석하기 때문에 해당 지출이 실질적으로 발생된 경우를 의미한다.²⁷⁰⁾

나. 본인 교육비공제

본인 교육비공제(self-education expenses)는 과세연도 내에 발생한 적격 본인 교육비용을 한도까지 과세가능소득에서 소득공제하는 것이다.²⁷¹⁾ 과세연도 1996/97에 최초로 도입된 후 매년 공제한도가 증가했으며, 과세연도 2018/19 기준 최고 공제한도는 10만홍콩달러이다. 현재까지 과세연도 2018/19의 공제한도를 유지하고 있으며, 당해연도에 대하여 지정한 공제한도를 초과할 수는 없다.

〈표 2-2-4〉 본인 교육비공제 한도

(단위: 홍콩달러)

구분	공제한도
1996/97 과세연도	12,000
1997/98 과세연도	20,000
1998/99~2000/01 과세연도	30,000
2001/02~2006/07 과세연도	40,000
2007/08~2012/13 과세연도	60,000
2013/14~2017/18 과세연도	80,000
2018/19~현재 과세연도	100,000

자료: IRO 별첨 3A의 자료를 저자 정리함

270) 한국조세재정연구원(2011), p. 57.

271) IRO §12(1)(e)

적격 본인 교육비용은 일반적으로 납세자가 참여한 지정된 교육과정(prescribe course of education)과 유관한 비용으로서 등록금, 수업료, 시험응시료 등을 포함하며, 교육과 관련된 적격비용은 모두 공제가 허용된다.²⁷²⁾ 구체적으로 지정된 교육과정은 다음과 같다.²⁷³⁾

- 업무 수행상 필요한 자격을 취득하거나 유지하기 위해 참여한 교육제공자²⁷⁴⁾가 제공하는 교육과정
- 산업협회, 전업협회, 업무협회 등에서 제공한 교육훈련 및 연구과정
- 세무조례에 의해 승인된 기관에서의 훈련 및 교육과정

다. 결손금 이월공제

총 소득공제금액이 납세자의 과세가능소득을 초과하는 경우, 납세자의 과세가능소득에 대해 공제를 모두 적용한 후 그 초과분은 과세연도 다음해에 이월하여 공제되며, 이를 결손금 이월공제라 한다.²⁷⁵⁾

초과된 결손금은 초과가 발생한 그 다음 과세연도에 즉시 공제해야 하며 이렇게 결손금 이월공제를 적용했음에도 결손금이 남아 있다면 그 다음 과세연도로 이월된다. 이러한 이월 공제는 결손금이 완전히 소진될 때까지 계속²⁷⁶⁾되며 시간의 제한을 두지 않는다.

납세자가 부부합산과세를 선택한 경우 초과결손금은 배우자의 과세가능소득에서도 공제가 허용된다. 이 경우 부부의 소득에 대한 결손금 공제는 다음과 같이 처리된다.²⁷⁷⁾

- 우선 초과 결손금은 배우자의 과세가능소득을 한도로 공제한다.
- 이후에도 결손금이 남아 있을 경우 완전히 상계될 때까지 다음 과세연도로 이월한다.

2. 특별공제

특별공제는 납세자의 순과세가능소득에서 다음과 같은 여러 가지 공제를 적용하는 단계에서 허용되며, 이렇게 산출된 과세소득은 특별공제 후 순과세가능소득(net assessable income

272) IRO §12(6)

273) IRO §12(6)(c)

274) 교육제공자는 ① 대학교, 전문학교, 기술학교 ② 「교육조례(Education Ordinance)」 §13(a)에 등록된 기관 ③ 「교육조례」 §9(1)에 의해 등록이 면제된 교육기관 ④ 세무조례 §16의 목적에 부합하고 홍콩 세무국장이 승인한 기관 ⑤ 홍콩 세무국장이 서면으로 승인한 기관 등과 같음(세무조례 §12(6)(d))

275) IRO §12A(1)

276) IRO §12A(3)

277) IRO §12(3)

after concessionary deduction)이 된다.

납세자가 종합과세를 선택하지 않으면 이렇게 산출된 특별공제 후 순과세가능소득에 표준세율(15%)을 적용하여 과세한다. 이 단계에서 허용되는 특별공제는 법령에 근거하여 적용되며 다음과 같은 항목이 존재한다.

가. 승인된 자선기부금

승인된 자선기부금(approved charitable donations)에 대한 정의를 법령에 명확하게 규정하고 있지는 않다.²⁷⁸⁾ 다만 정부와 공공적 특성을 가진 기관이나 기금 등에 자선한 경우에 대해 특별공제혜택을 부여하고 있으며, 화폐 형태의 기부만을 허용한다. 예를 들어 컴퓨터 장비 등을 기부한 경우는 공제되지 않는다. 또한 세무국은 '기부(donation)'와 '선물(gift)'의 의미를 구별하고 있는데, 선물은 자발적으로 주는 것이며 어떤 실질적인 이득도 수반되지 않는 이전을 말한다. 그러므로 자선단체 사회행사 티켓비용은 기부에 해당되지 않는다. 보편적으로 기부금으로 인정되는 사항은 다음과 같다.²⁷⁹⁾

- 기근구제금
- 교육발전기금
- 지역발전기금
- 그 외 공공이득을 위한 자선목적의 기금

승인된 자선기부금 공제가능금액은 최소한 100홍콩달러 이상의 기부금 총액에 지정된 백분율을 곱하여 얻은 금액이다. 최대 적용 공제한도는 과세연도 2002/2003 이전에 10%에서 과세연도 2003/2004부터 과세연도 2007/2008까지는 25%, 과세연도 2008/09부터 현재까지는 35%를 적용하고 있다.²⁸⁰⁾ 종합과세, 부부합산과세 등의 경우도 동일하게 적용된다. 하지만 부부합산과세에 있어 배우자 한 사람이 승인된 자선기부금 한도액까지 공제받았다면 다른 배우자는 공제받을 수 없다.²⁸¹⁾

278) IRO §26C(1)

279) 한국조세재정연구원(2011), pp. 63~64.

280) IRO §26C(2A)

281) IRO §26C(2)(b)

나. 노인주거지원비용

노인주거지원비용(elderly residential care expenses) 특별공제는 과세연도에 만 60세 이상의 부모나 조부모, 만 60세는 되지 않았으나 정부의 장애보조금계획에 대한 보조금을 수취할 수 있는 자격을 갖춘 부모나 조부모 등에게 지원한 주거비용을 공제해 주는 것으로 납세자와 배우자의 부모와 조부모에 대해 적용된다.²⁸²⁾

법령에는 주거지원비용은 어떤 주택에서 주거를 위해 지불하는, 그 주택이나 그 주택을 대표하는 자에게 지불하는 비용으로, 여기서 말하는 주택은 다음의 조건을 만족해야 한다.²⁸³⁾

- 「양로원조례」에 의해 허용된 주택
- 「양로원조례」에 신청 및 제외가 면제된 주택
- 「병원, 요양시설 및 출산원등록조례」 제3조에 의해 등록된 자의 간호주택
- 「장애인시설조례」에 의해 허용된 주택
- 「장애인시설조례」에 신청 및 제외가 면제된 주택

노인주거지원비용의 특별공제는 같은 부모나 조부모에 대해 2명 이상의 납세자가 이중의 공제를 받을 수 없으며, 노인주거보호비용 공제를 받은 납세자는 같은 부모와 조부모에 대해서 부양가족(부모 및 조부모)공제가 허용되지 않는다.²⁸⁴⁾

노인주거지원비용 특별공제는 과세연도 1998/99에 도입되어 적용되고 있으며, 부양가족 공제와 달리 노인주거지원비용 공제는 납세자의 과세소득 등과 무관하게 모든 납세자가 이용 가능하며 공제한도는 <표 2-2-5>와 같다.

<표 2-2-5> 노인주거지원비용 특별공제 한도

(단위: 홍콩달러)

구분	공제한도
1998/99~2010/11 과세연도	60,000
2011/12 과세연도	72,000
2012/13 과세연도	76,000
2013/14~2017/18 과세연도	92,000
2018/19~현재 과세연도	100,000

자료: IRO 별첨 3C의 자료를 저자 정리함

282) IRO §26D(1), §26D(2)

283) IRO §26D(5)

284) IRO §26D(4)

다. 주택대출이자

주택대출이자(home loan interest) 공제는 해당 과세연도의 임의의 시점에 어떤 주택의 전체 또는 일부를 주거지로 사용하였고, 그러한 자가 그 과세연도에 당해 주택을 취득하기 위한 대출이자를 납부한 경우 그 과세연도에 당해 주택대출이자에 대한 공제를 해주는 것이다. 즉 주택의 단독 또는 부분적으로 납세자가 실제로 소유하고 거주 목적을 가진 주택의 화폐대출(loan of money)에서 발생한 이자비용에 대해 공제를 해주는 것이다.²⁸⁵⁾

납세자가 공동주택을 소유한 경우에는 공동주택의 인원 수 대비 비율이나 공동주택의 소유지분 비율에 따라 공제적용 범위가 달라진다.²⁸⁶⁾ 주택대출이자비용 공제는 다음과 같은 기관에 주택대출을 목적으로 지급된 합리적인 이자에 대해서 공제가 허용된다.²⁸⁷⁾

- 정부
- 금융기관 등 재무기구
- 「저축협동조합조례」에 의해 등록된 저축협동조합
- 「대출자조례」에 의거하여 등록된 대출자
- 홍콩주택협회(Hong Kong housing society)
- 납세자의 고용인
- 인가된 조직이나 협회²⁸⁸⁾

주택대출이자 공제는 과세연도 1998/99부터 적용되어 현재에 이르고 있는데, 현재 해당 과세연도 동안에 주거의 목적으로 납세자가 살고 있던 주거공간에서 발생한 이자비용이나 주거라고 간주할 수 있는 조건을 갖춘 경우에 발생한 이자비용이라면 최대 10만홍콩달러까지 20년 동안 공제가 허용된다.

만약 납세자가 2개 이상 주택의 대출이자를 납부하고 있는 경우, 주택 전체 또는 일부를 주거지로 사용하는 주택 외에 다른 주택을 그 해에 취득한 후 납부한 주택대출이자는 주거지로 사용하는 주택의 이자비용과 합산해서 한도 내에 공제가 가능하다.²⁸⁹⁾

285) IRO §26E(1)

286) IRO §26E(b)(i)

287) IRO §26E(9)

288) 인가된 조직이나 협회란 세무국장이 인가된 조직이나 협회로 승인한 조직이나 협회를 말함(IRO §26E(7))

289) IRO §26E(3)

〈표 2-2-6〉 주택대출이자

(단위: 홍콩달러)

구분	공제한도	공제기간
1998/99~2000/01 과세연도	100,000	10년
2001/02~2002/03 과세연도	150,000	10년
2003/04~2016/17 과세연도	100,000	15년
2017/18~현재 과세연도	100,000	20년

자료: IRO 별첨 3D의 자료를 저자 정리함

라. 적격 기여금 공제

적격 기여금공제는 납세자가 부담한 적격 기여금에 대해 과세연도당 한도까지 공제를 허용해 주는 제도로써 해당 기여금은 인가직업퇴직계획, 강제적공적기금계획, 건강보험료 (health insurance scheme)의 납부금을 의미한다.²⁹⁰⁾ 공제가능 적격 기여금은 다음의 경우에 공제가 허용된다.²⁹¹⁾

- 인가직업퇴직계획에 해당한다면,
 - 피고용자의 신분으로 당해 계획에 지급한 금액이나
 - 관련 과세연도에 피고용자의 신분으로 고용된 모든 시간 동안 강제적공적기금계획 참여인의 신분으로 기금을 지급하였다면, 피고용자의 신분으로 지급한 강제적공적기금 (양자 중에서 금액이 적은 것을 기준으로 한다.)
- 강제적공적기금계획에 해당하는 경우 피고용자의 신분으로 지급한 강제적 기금
- 2019년 4월 1일 이후에 납세자와 납세자의 가족(배우자, 자녀, 부모, 조부모, 형제, 자매 등)을 위해 납부한 건강보험료

인가직업퇴직계획, 강제적공적기금계획의 기여금에 대해 과세연도당 1만 5천홍콩달러까지 공제를 허용해 주고 있으며, 건강보험료의 기여금에 대해서는 피보험자 1인당 8천홍콩달러까지 허용해 주고 있다. 위에 언급한 적격 기여금 외에는 급여소득세가 부과되고 있다.²⁹²⁾

290) IRO §26G

291) IRO §26G(3)

292) IBFD, "Hong Kong - Individual Taxation sec. 1.8.1.3. Insurance premiums," https://research.ibfd.org/#/doc?url=/linkresolver/static/ita_hk_s_1.1.4.&refresh=1647305334280%23ita_hk_s_1.8.3., 검색일자: 2021. 11. 19.

3. 인적공제

인적공제(personal allowances)는 과세소득의 최종 세액을 산출하기 위해 순과세가능소득(또는 특별공제 후 순과세가능소득)에서 다양한 공제를 적용하는 것으로 기본공제(basic allowance), 기혼자공제(married person's allowance), 자녀공제(child allowance), 한 부모공제(single parent allowance), 부양형제자매공제(dependent brother/sister allowance), 부양부모(조부모)공제(dependent parent/grandparent allowance), 장애부양공제(disabled dependent allowance), 개인장애수당공제(personal disability allowance) 등이 있다.

여덟 가지 인적공제를 정리하면 <표 2-2-7>과 같으며, 각 인적공제는 동일한 부양대상자에 대해 적용될 수 없다.³⁰⁶⁾

<표 2-2-7> 인적공제의 분류별 공제금액 한도

(단위: 홍콩달러)

분류			금액	
기본공제	기본공제		132,000	
	개인장애수당(2018/19 과세연도부터 신설)		75,000	
기혼자공제			264,000	
자녀공제(1인당 최대 9명까지)			120,000	
한 부모공제			132,000	
부양가족공제	형제/자매 1인당		37,500	
	부모/조부모	60세 이상 1인당	비동거 시	50,000
			동거 시	100,000
		55~59세 1인당	비동거 시	25,000
			동거 시	50,000
장애인 1인당		75,000		

자료: IBFD, "Hong Kong - Individual Taxation sec. 1.8.2. Allowances," https://research.ibfd.org/#/doc?url=/linkresolver/static/ita_hk_s_1.1.4.&refresh=1647305334280%23ita_hk_s_1.8.2., 검색일자: 2021. 11. 17.

306) IRO §33(1A)

가. 기본공제

기본공제는 기혼자공제가 적용되지 않거나 배우자의 기혼자공제를 신청하지 않은 경우, 납세자의 순과세가능소득(또는 특별공제 후 순과세가능소득)에서 공제한다.³⁰⁷⁾

과세연도 2018/19부터는 개인장애수당이 신설되어 기본공제에 해당되는 납세자가 장애인 보조금계획상의 보조금을 수령하는 등 일정 요건을 충족할 경우 공제가 가능하다.³⁰⁸⁾

나. 기혼자공제

기혼자공제는 배우자의 소득이 없거나 부부합산과세를 신청했거나 종합과세를 신청한 경우에 납세자의 순과세가능소득(또는 특별공제 후 순과세가능소득)에서 공제된다.³⁰⁹⁾ 기혼자공제는 혼인 신고서를 제출한 부부에 한해서 가능하며, 관습결혼이나 동성 간의 결혼은 공제 자격이 주어지지 않는다.

배우자와 동거하지 않는 경우는 다른 가족을 부양하는 배우자에 한해서만 공제자격이 부여³¹⁰⁾되며, 배우자에게 부여된 공제자격은 그 과세연도 내에 또는 그 과세연도가 만료된 지 6년 내에 당사자에 의해서 철회가 가능³¹¹⁾하다.

다. 자녀공제

자녀공제는 해당 과세연도 동안 납세자와 배우자의 자녀가 결혼하지 않고 다음의 3가지 조건 중 하나를 반드시 충족할 경우 공제자격이 주어진다.³¹²⁾

- 만 18세 미만의 자녀
- 만 18세 이상 만 25세 미만으로 대학·단과대학 및 이와 유사한 교육기관에 전임교육(full time education)을 받는 경우
- 만 18세 이상이나 신체적 또는 정신적 장애로 인하여 일을 할 수 없는 경우

307) IRO §28

308) IBFD, "Hong Kong - Individual Taxation sec. 1.8.2.1. Single and married allowances," https://research.ibfd.org/#/doc?url=/linkresolver/static/ita_hk_s_1.1.4.&refresh=1647305334280%23ita_hk_s_1.8.2.1.. 검색일자: 2021. 11. 19.

309) IRO §29(1)

310) IRO §29(4)

311) IRO §29(6)

312) IRO §31(1)

‘자녀(child)’는 납세자(혹은 배우자)의 혼인 여부와 관계없이 납세자의 아이에게 부여되는 자격이므로 입양, 의붓 등의 경우를 모두 포함한다.³¹³⁾ 또한 자녀는 반드시 부양의 조건이 필수적이지 않으며, 아들이 태어나서 만 18세 또는 만 25세가 될 때까지, 또는 결혼할 때까지 공제자격이 주어진다. 그 외 자녀공제도 역시 공제조건 변경에 대한 비율조항은 존재하지 않는다. 그러나 같은 아이에 대해 같은 과세연도에 적격한 공제자격이 두 명 이상의 납세자에게 주어지는 경우³¹⁴⁾에는 그들 사이의 부양 및 교육에 대한 기여 정도에 따라 공제비율을 세무국장이 결정한다.³¹⁵⁾

라. 한 부모공제

한 부모공제는 해당 과세연도에 혼자의 힘으로 자녀 1인을 부양하였고 자녀공제의 자격이 주어진 부모 중 한 부모(single parent)에게 주어지는 공제제도로서, 납세자의 첫째 아이에게만 공제자격이 주어질 뿐 둘째 이하의 아이에게는 공제자격이 부여되지 않는다.³¹⁶⁾

또한 납세자가 결혼한 상태이거나 배우자와 함께 사는 경우는 한 부모공제가 적용되지 않는다.³¹⁷⁾ 한 부모공제 역시 자녀공제와 같이 같은 아이에 대해 같은 과세연도에 공제자격이 두 명 이상의 납세자에게 부여될 경우 각자의 기여비율에 따라 공제비율을 세무국장이 결정한다.³¹⁸⁾

마. 부양형제자매공제

부양형제자매공제는 납세자와 별거 중이지 않은 배우자가 그들의 형제자매를 부양할 때 자격이 주어지는 공제로서, 부양형제자매공제는 그 형제자매가 결혼하지 않은 경우에만 공제 자격이 주어지며 다음의 3가지 조건 중 하나를 반드시 충족해야 한다.³¹⁹⁾

- 18세 미만의 형제자매
- 만 18세 이상 만 25세 미만으로 대학·단과대학 및 이와 유사한 교육기관에 전임교육을 받는 경우

313) IRO §9(6)

314) 같이 살고 있는 부부의 경우는 제외되며, 이혼 후 납세자가 아이에 대해 양육비와 교육비를 제공하였고 그것이 주도적인 제공이었다면, 그 부부의 총양육비 중 각각의 비율을 결정하여 자녀공제액을 분배함

315) IRO §31(2)

316) IRO §32(1)

317) IRO §32(2)(a)

318) IRO §32(3)

319) IRO §30B(1)

- 만 18세 이상이나 신체적 또는 정신적 장애로 인하여 일을 할 수 없는 경우

이 외 형제자매의 조건은 납세자와 배우자의 친형제자매뿐만 아니라 입양된 형제자매, 의붓형제자매를 모두 포함하며, 배우자가 사망한 경우에도 배우자의 형제자매가 생존한다면 동일한 공제자격이 주어진다.³²⁰⁾

부양형제자매 공제는 부양대상인 형제자매 각각에 대해 공제가 허용되고 있으나, 부양형제자매가 18세가 되었거나 전입교육을 증지 또는 완료한 경우 등 부양형제자매의 조건을 충족하지 않은 경우 비율에 의거하여 공제를 적용하지는 않는다.³²¹⁾

바. 부양부모(조부모)공제

부양부모(조부모)공제는 납세자가 통상적으로 홍콩에 거주하는 그의 부모, 조부모(또는 배우자의 부모, 조부모)를 부양할 경우나 납세자의 별거 중이지 않은 배우자가 납세자의 부모, 조부모를 부양할 경우에 허용되는 공제로³²²⁾ 몇 가지 조건을 충족해야 공제를 받을 수 있다.

우선 부양부모(조부모)공제가 허용되는 부모(조부모)의 조건은 다음과 같다.

- 납세자와 배우자의 결혼으로 인한 양가 부모(조부모)
- 납세자와 배우자를 입양한 부모(입양한 부모의 조부모)
- 납세자와 배우자의 의붓부모(의붓부모의 조부모)
- 납세자와 배우자의 친부모(낳아 준 부모)

또한 배우자가 사망한 경우에도 사망한 배우자의 부모(조부모)가 살아 있고 납세자가 부양을 하는 경우 공제를 받을 수 있다.

그리고 부모(조부모)의 조건 다음으로 나이 조건이 있는데, 부양부모(조부모)가 과세연도에 55세 이상이면 부양부모(조부모)공제가 허용된다. 단 60세 이상인 부모(조부모)를 부양할 경우에는 55세 이상 60세 미만의 부모(조부모)를 부양할 때보다 공제액이 크다.³²³⁾

부양부모(조부모)공제는 부모(조부모) 부양을 증진할 목적으로 공제를 허용하는 제도로 해당 과세연도에 6개월 이상 '동거'하는 경우에 대해서 추가적인 공제를 허용한다. 세무국은 '동거'에 대한 포괄적 접근의 해석을 배제하여, 얼마나 많은 비율로 부양했느냐 또는 어느 정

320) IRO §30B(3)(b)

321) IRO §30B(2)

322) IRO §30(1)(a)

323) IRO §30(1), §30(1A)

도로 부모에게 지원했느냐 등은 고려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³²⁴⁾ 즉 동거에 따른 추가공제는 ‘함께 거주(resided with)’ 했느냐 아니냐의 여부만을 고려하여 공제자격 여부를 부여하고 있다. 다음의 두 가지 조건을 만족한 경우 부양부모(조부모) 추가공제를 허용한다.³²⁵⁾

- 해당 과세연도에 어떤 보상급부 없이 6개월 이상 지속적으로 납세자나 그의 배우자가 부모와 함께 동거한 경우
- 납세자가 해당 과세연도에 부모 부양을 위해 최소 1만 2천홍콩달러를 기여한 경우³²⁶⁾

부양부모(조부모)에 대한 공제액은 부양 받는 부(조부) 또는 모(조모) 각각에 대해 적용되는데,³²⁷⁾ 예를 들어 납세자가 그의 엄마와 아버지의 법적 아내를 모두 부양할 경우 둘 다 공제 혜택이 주어진다.

그리고 앞서 언급했듯이 만약 노인주거보호비용 공제를 받는 납세자의 경우는 같은 부모와 조부모에 대해 부양부모(조부모)공제를 받을 수 없다.³²⁸⁾

사. 장애부양공제

장애부양공제는 장애인보조금계획의 일정 요건을 충족하는 자를 부양하는 납세자에게 공제를 허용한다.³²⁹⁾ 장애부양공제에서 부양자는 다음의 경우로 간주한다.³³⁰⁾

- 기혼자공제의 자격이 있는 납세자의 배우자
- 부양부모공제나 노인주거보호비용공제의 자격을 가진 납세자의 부모나 조부모
- 자녀공제의 자격을 가진 납세자의 자녀
- 부양형제자매공제의 자격을 가진 납세자의 형제자매

장애부양공제도 같은 장애부양자에 대해 같은 과세연도에 두 명 이상의 납세자가 공제자격 조건이 주어진다면 자녀공제와 같은 내용으로 각자의 기여비율에 따라 공제비율을 결정한다. 즉 한 부모, 자녀, 장애공제 등에서 해당 납세자가 부양한 정도를 판단하여 납세자가 기여한 정도에 따라 비율적으로 배분하여 공제하는 비율공제를 적용하기도 한다.³³¹⁾

324) IRO §30(3A)

325) IRO §30(4)

326) IRO §30(4)(a)(ii)

327) IRO §30(2)

328) IRO §26D(4)

329) IRO §31A(1)

330) IRO §31A(4)

331) IRO §31A(2)

4. 세액공제

홍콩의 급여소득세에서 소득공제, 특별공제, 인적공제 외에 특별한 세액공제는 없으며, 외국납부세액공제(foreign tax credits)가 유일하다.³³²⁾

332) IRO §50

V 과세방식

홍콩의 급여소득세 납세의무자는 분류과세 또는 종합과세 중에 선택할 수 있다. 각 개별 소득의 순과세가능소득(또는 특별공제 후 순과세가능소득)에 표준세율을 적용하는 것이 분류과세이고, 순과세가능소득(또는 특별공제 후 순과세가능소득)에 인적공제 등의 항목을 차감하고 누진세율을 적용하는 것이 종합과세이다.

분류과세 및 종합과세와 구별하여 부부의 경우 부부합산과세(Joint Assessment of Spouses)를 인정하고 있는데, 이는 부부의 개별소득에 대해 과세할 때보다 부부의 소득을 합산하여 과세하는 방식이 더 유리할 때 적용하는 제도이다.

종합과세와 부부합산과세가 서로 다른 두 개의 과세방식은 아니지만 홍콩에서 이러한 과세방식을 택하고 있으므로 종합과세 및 부부합산과세에 대해 소개한다.

1. 부부합산과세

부부합산과세(Joint Assessment of Spouses)는 법적부부가 각각의 개별소득을 합산하여 총 합산한 소득에 대하여 과세하는 방식을 의미한다.³³⁴⁾

부부합산과세는 부부가 모두 순과세가능소득이 있고 ① 부부 중 한 명의 공제가능액이 순과세가능소득을 초과하거나 ② 각자의 순과세가능소득에 대해 따로 납부세액을 산출하는 것보다 합산한 순과세가능소득으로 납부세액을 산출하는 것이 과세부담이 줄어들 때 등의 일정 조건을 충족할 경우 선택하는 제도이다. 부부는 부부합산과세를 선택하지 않는 한 개별과세 대상이다.³³⁵⁾

부부가 해당 과세연도에 법적부부가 된 경우에도 부부합산과세를 선택할 수 있으며, 배우자의 사망 시에는 유언집행자가 배우자와 같은 자격으로 합산과세를 신청할 수 있다. 또 신청한 부부합산과세를 철회할 수도 있는데, 철회를 신청했을 때는 모든 사항이 부부합산과세를 선택하기 이전으로 간주되며 해당 과세연도에 한번 철회하면 합산과세를 재신청할 수는 없다. 합산과세 신청과 철회는 해당 과세연도 또는 그 다음해 내에 처리해야 하며, 과세평가가

334) IBFD, "Hong Kong - Individual Taxation sec. 1.1.4.2. Family unit," https://research.ibfd.org/#/doc?url=/linkresolver/static/ita_hk_s_1.1.4.&refresh=1647305334280%23ita_hk_s_1.1.4.2., 검색일자: 2021. 9. 17.

335) IRO §10

완료된 시점으로부터 한 달 이내에 처리해야 하는 시간의 제약이 존재한다.³³⁶⁾

1) 공제가능액이 순과세가능소득을 초과할 때

〈표 2-2-8〉 부부합산과세 세액계산 방법 예시 ①

(단위: 홍콩달러)

2021년도에 A, B씨 부부는 둘 다 급여소득세 과세대상이다. A씨의 순과세가능소득은 HKD 1,000,000이고 B씨의 순과세가능소득은 HKD 60,000이다. 그리고 그들은 만 18세 미만의 자녀가 두 명 있고, 60세 이상인 적격 부모 1인을 비동거 부양하고 있다.

분류과세			부부합산과세	
구분	A	B	구분	합산
순과세가능소득	1,000,000	60,000	순과세가능소득	1,060,000
(-) 인적공제			(-) 인적공제	
기본공제	132,000	132,000	기본공제	264,000
부양부모공제	50,000	-	부양부모공제	50,000
자녀공제(2명)	240,000	-	자녀공제(2명)	240,000
최종 과세가능소득	578,000	-	최종 과세가능소득	506,000
(×) 세율			(×) 세율	
최종 과세액	82,260 ¹⁾	0 ²⁾	최종 과세액	70,020 ¹⁾
공제되지 않은 공제액		72,000 ³⁾	공제되지 않은 공제액	-

주: 1) (최종 과세가능소득 × 세율) - (누진공제액)
 2) 인적공제 가능금액이 순과세가능소득보다 크므로 납부할 세액이 없음
 3) A, B씨 부부가 부부합산과세를 선택하게 되면 공제되지 않은 공제액인 72,000에 대해 모두 공제혜택을 받을 수 있음
 자료: 한국조세재정연구원, 『주요국의 조세제도-홍콩편』, 2011, p. 76의 자료를 저자 정리함

336) IRO §11

2) 각자의 순과세가능소득에 대해 각각 세율을 적용하는 것보다 합산하여 적용하는 것이 과세부담이 줄어들 때

〈표 2-2-9〉 부부합산과세 세액계산 방법 예시 ②

(단위: 홍콩달러)

2021년도에 A, B씨 부부는 둘 다 급여소득세 과세대상이다. A씨의 순과세가능소득은 HKD 1,000,000이고 B씨의 순과세가능소득은 HKD 100,000이다. 그들은 만 18세 미만의 자녀가 두 명 있고, 60세 이상인 적격 부모 1인을 비동거 부양하고 있다. 추가적으로 B씨는 HKD 50,000의 승인된 자선기부금을 냈다.

분류과세			부부합산과세	
구분	A	B	구분	합산
순과세가능소득	1,000,000	100,000	순과세가능소득	1,100,000
(-) 특별공제			(-) 특별공제	
자선기부금	-	35,000 ¹⁾	자선기부금	50,000 ¹⁾
(-) 인적공제			(-) 인적공제	
기본공제	132,000	132,000	기본공제	264,000
부양부모공제	50,000	-	부양부모공제	50,000
자녀공제(2명)	240,000	-	자녀공제(2명)	240,000
최종 과세가능소득	578,000	-	최종 과세가능소득	496,000
(×) 세율			(×) 세율	
최종 과세액	82,260 ²⁾	0 ³⁾	최종 과세액	68,320 ²⁾
공제되지 않은 공제액		15,000	공제되지 않은 공제액	-

주: 1) 승인된 자선기부금은 납세자의 순과세가능소득의 35%까지만 공제가 허용되므로 분류과세의 경우 한도액(35,000)까지만 공제받을 수 있으나, 부부합산의 경우 한도액(385,000)을 초과하지 않으므로 전액(50,000) 공제 가능함

2) (최종 과세가능소득×세율)-(누진공제액)

3) 특별공제, 인적공제 가능금액이 순과세가능소득보다 크므로 납부할 세액이 없음

자료: 한국조세재정연구원, 『주요국의 조세제도-홍콩편』, 2011, p. 76의 자료를 저자 정리함

2. 종합과세

개인 납세자가 급여소득세, 이윤세, 재산세에 대해 각각의 세금을 분리해서 부과하지 않고, 이러한 소득을 모두 합하여 과세하는 방식을 종합과세라 부른다. 종합과세하에서 납세자의 과세부담은 다음 항목의 소득합계에 의한다.

- 재산소득세에 의한 순과세가능 자산가치
- 이윤세에 의한 과세가능 소득액
- 급여소득세에 의한 과세가능 소득액

납세자가 종합과세를 선택하는 이유는 각 과세에 대해 개별적으로 세금을 부과할 때 적용되지 않는 누진과세와 인적공제 등의 이점을 이용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러한 종합과세의 인적공제 적용의 이점은 급여소득이 있는 자에게만 해당되므로 급여소득이 있는 특정 납세자만이 이러한 혜택을 보게 된다. 납세자가 종합과세를 선택했을 때의 이점을 구체적으로 열거하면 다음과 같다.

- 재산소득세가 부과되는 과세가능 소득을 산출하기 위해 소요된 이자지급액

재산소득세하에서는 이러한 이자지급액을 비용으로 처리하여 감면받을 수 있는 조항이 존재하지 않지만, 종합과세하에서는 이러한 이자지급액을 공제받을 수 있다.

- 공제가능한 손실액

이윤세에서 공제가능한 손실액이 발생하였고, 납세자가 과세가능한 급여소득세나 재산세를 부과할 수 있는 소득이 존재할 때 종합과세하에서는 납세자의 총소득에 대해서 손실을 공제해준다.

- 승인된 자선기부금 공제한도 초과액

납세자가 급여소득세나 이윤세 과세대상자로서 납부한 승인된 자선기부금이 공제한도인 35%를 초과한 경우 종합과세하에서 재산소득 등과 합산된 순과세가능소득의 35% 한도 내에서 초과된 자선기부금을 공제받을 수 있다.

VI 납부세액의 산출

1. 과세표준 및 적용세율

납세자는 소득공제나 승인된 자선기부금 등 특별공제 후의 소득에 대해 표준세율인 15%로 과세된다.

종합과세, 부부합산과세 등을 선택하면 인적공제를 적용한 후 누진세율이 적용된다.

〈표 2-2-10〉 종합과세, 부부합산과세 시 적용 누진세율

(단위: 홍콩달러, %)

최종 과세소득	세율	누진공제액
~50,000 이하	2	0
50,000 초과~100,000 이하	7	1,000
100,000 초과~150,000 이하	10	4,000
150,000 초과~200,000 이하	14	9,000
200,000 초과 ~	17	16,000

자료: IBFD, “2018/19 급여소득세 종합소득세율표,” https://research.ibfd.org/#/doc?url=/linkresolver/static/ita_hk_s_1.10.&refresh=1635728664990%23ita_hk_s_1.10., 검색일자: 2021. 11. 1.

종합과세에서 세부담액은 개인의 순과세가능소득이나 기혼부부의 경우 부부합산순과세가 능소득의 15%(표준세율)를 초과할 수 없다. 즉 이와 같이 누진세율이 적용된 세액은 표준세율이 적용되어 과세된 세액을 초과할 수 없다.³³⁷⁾

2. 세액 산출과정과 계산과정

가. 세액 산출과정

홍콩의 급여소득세 납부의무가 결정되는 과정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 먼저 개인의 총소득에서 비과세소득에 해당되는 부분을 제외한다.
- 이렇게 해서 산출된 과세가능소득에서 비용 및 손실 등을 소득공제하여 순과세가능소득

337) IRO §43(1A)

을 계산한다.

- 순과세가능소득에서 특별공제를 적용하여 특별공제 후 순과세가능소득을 산출하고 여기에 표준세율이 적용된다.
- 납세자가 종합과세, 부부합산과세 등을 선택하면 순과세가능소득에서 특별공제와 인적공제를 모두 차감하여 계산하고, 최종적으로 최종과세소득을 얻게 된다.
- 이와 같이 산출된 최종과세소득은 과세구간별로 나누어져 누진세율이 적용되고 납부세액을 산출하게 된다.

〈표 2-2-11〉 급여소득세액 산출과정

구분	내용
총소득 (total income)	· 홍콩에 원천을 둔 사업장에서 발생한 고용 또는 연금소득과 기타소득의 합계
(-)비과세소득 (non-assessable income)	· 발생되지 않았거나 수취되지 않은 소득 · 장애연금, 군인연금, 교육수당 등의 법적으로 열거하고 있는 항목
(=)과세가능소득 (assessable income)	· 총소득에서 비과세소득을 제외한 소득
(-)소득공제 (allowable deductions)	· 지출비용, 본인교육비용, 이월결손금 등의 항목
(=)순과세가능소득 (net assessable income)	· 과세가능소득에서 소득공제를 제외한 소득
(-)특별공제 (concessionary deductions)	· 승인된 자선기부금, 노인주거지원비용, 주택대출이자, 적격 기여금 등의 항목
(=)특별공제 후 순과세가능소득 (net assessable income after concessionary deductions)	· 순과세가능소득에서 특별공제를 제외한 소득 · 납세자가 종합과세나 부부합산과세를 선택하지 않은 경우 이 금액에 대해 표준세율 적용
(-)인적공제 (personal allowances)	· 기본공제, 적격대상 장애수당, 기혼자공제, 한 부모공제, 부양가족(부모, 조부모, 형제, 자매, 자녀, 장애 등)공제 등의 항목
(=)최종과세가능소득 (net chargeable income)	· 순과세가능소득(또는 특별공제 후 순과세가능소득)에서 각종 인적공제를 제외한 소득
(×)세율 (tax rates)	· 과세표준 구간별로 누진세율 적용
(=)납부세액	

자료: IBFD, "Hong Kong - Individual Taxation sec. 1.10. Rates," https://research.ibfd.org/#/doc?url=/linkresolver/static/ita_hk_s_1.1.4.&refresh=1647305334280%23ita_hk_s_1.10., 검색일자: 2021. 11. 1.

나. 세액 산출과정 예시

〈표 2-2-12〉 급여소득세액 산출과정 예시

A, B씨는 홍콩의 영구거주자이고 법적부부이며, 부부합산과세 적용을 받는다. A, B씨는 YA 2020/21에 다음과 같은 활동을 했다.

- A씨는 HKD 750,000의 급여소득을 받음
- B씨는 HKD 100,000의 급여소득을 받음
- A씨는 ○○파트너십의 4명의 파트너 중 한 명이고, 그해 파트너십 이윤인 HKD 600,000의 1/4의 가격이 주어짐
- A씨와 B씨의 적격 지출 및 비용은 HKD 100,000이 발생함
- A씨는 B씨와 함께 VHKD 100,000의 승인된 자선기부금을 냄
- A씨와 B씨는 두 명의 자녀가 있으며, 만 60세 이상의 A씨 아버지와 동거하고 있음

(단위: 홍콩달러)

구분			금액
총소득	급여소득세	850,000	1,000,000
	재산소득세	0	
	이윤세	150,000	
(-)비과세소득			0
(=)과세가능소득			1,000,000
(-)소득공제	지출 및 비용	100,000	100,000
(=)순과세가능소득			900,000
(-)특별공제	승인된 자선기부금	100,000	100,000
(=)특별공제 후 순과세가능소득			800,000
(-)인적공제	기본공제	264,000	604,000
	자녀공제	240,000	
	부양부모공제	100,000	
(=)최종과세소득			196,000
(×)세율	① 누진세율 적용		
	(196,000×14%)-9,000		③ 18,440
	② 표준세율 적용		
	800,000×15%		④ 120,000
최종 과세액 ¹⁾			18,440

주: 1) Min(③, ④)

자료: 한국조세재정연구원, 『주요국의 조세제도-홍콩편』, 2011, p. 83의 자료를 저자 정리함

VII 신고·납부 및 징수체계

1. 신고·납부

가. 세금 신고

홍콩 세무국은 보편적으로 매년 5월 초에 급여소득세 신고서를 납세자에게 보내고, 신고서를 우편, 전자 등의 방법으로 수령한 납세자는 요구형식에 맞게 발생한 소득, 공제 등의 구체적인 내역을 기재하여, 세무국의 급여소득세 신고서 발급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우편, 전자, 직접제출 등의 방법으로 제출해야 하며 동시에 납부도 이뤄져야 한다.³³⁸⁾

급여소득세 신고서 작성 시 납세자가 이윤세, 재산세 등의 과세가능소득이 있다면 종합과세를 선택할 수 있으며, 또한 기혼부부의 경우 두 사람의 최종 납부세액이 분류과세의 경우보다 부부합산의 경우에 더 낮다면 부부합산과세를 선택할 수 있다.

〈표 2-2-13〉 과세 기간 및 신고 기한

분류	내용
과세 기간	평가연도의 전년도 4월 1일부터 3월 31일까지
신고 기한	보편적으로 매년 5월 초에 세무국으로부터 급여소득세 신고서를 받은 후 1개월 이내

자료: IBFD, "Hong Kong - Individual Taxation sec. 1.11.1. Tax returns," https://research.ibfd.org/#/doc?url=/linkresolver/static/ita_hk_s_1.&refresh=1647303655062%23ita_hk_s_1.10. 검색일자: 2021. 11. 23.

나. 세금 납부

홍콩 급여소득세의 납부는 이윤세와 마찬가지로 두 번으로 나누어 납부하게 되는데, 공지된 과세예납 만기일에 급여세의 75%를 납부하고, 대략 3개월 후에 나머지 25%를 납부하게 된다. 보편적으로 과세연도 중 1월 또는 2월에 75%, 3개월 후 4월 또는 5월에 25% 예납 납부에 관한 통지서를 예납할 법적책임이 있는 납세자에게 발부한다.³³⁹⁾

급여세 예납세액은 직전 과세연도의 과세표준을 고려하여 급여소득세의 세율을 적용하여 결정되며,³⁴⁰⁾ 실제 과세부담액보다 초과된 예납세액은 다음 해에 예납세액으로 처리하거나

338) IRO §51(1)

339) IRO §63D(1)(a)

340) IRO §63C(1)

환급된다. 하지만 예납세액이 실제 과세부담액보다 적은 경우 최종세액 부과통지는 최종 납기일로 지정된다.

급여세 예납세액 납부 연기를 원한다면 적어도 예납세액 납기만료 28일 전이나 예납세액 납부통지서를 받은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세무국에 신청서를 제출해야 한다.³⁴¹⁾

홍콩의 세금 납부 방법은 크게 전자적 방법으로 납부하는 방법과 직접 납부하는 방법으로 나뉜다.³⁴²⁾

전자적 납부방법은 폰뱅킹³⁴³⁾ 또는 인터넷 뱅킹³⁴⁴⁾을 이용하는 것으로, 폰뱅킹 또는 인터넷 뱅킹이 가능한 은행 계좌가 있는 납세자는 개인식별번호, 지불명세서 번호 등을 입력하고 유선 또는 웹상에서 즉시 납부할 수 있다. 대부분의 납세자가 이용하는 방법으로 세무국에서도 전자적 방법으로 납부하기를 권고하고 있다.

직접 납부하는 방법은 은행, 우체국(post offices), 편의점(convenience stores) 등을 이용하는 것으로, 지불명세서(payment voucher)를 지참하여 은행, 우체국, 편의점 등의 카운터에서 신용카드, 현금 등으로 납부가 가능하다.

또한 우체국에서 횡선수표(crossed cheque)를 통한 우편으로 세금 납부도 가능한데, 세무국을 수취인으로 지불명세서와 함께 보내면 된다. 주로 이윤세를 납부하는 법인이 쓰는 방법으로 급여소득세 대상인 개인이 우편으로 세금납부를 하는 경우는 드물다.

〈표 2-2-14〉 홍콩의 세금 납부 및 결제 수단

유형		상세
전자적 납부방법	인터넷 뱅킹 (24시간 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다음의 은행에서 개인 계좌를 보유한 경우 이용 가능함 · Bank of China(Hong Kong) · Bank of Communications(Hong Kong) · Bank of East Asia · China CITIC Bank International · China Construction Bank(Asia) · Chiyu Banking Corporation · Chong Hing Bank · Citibank(Hong Kong)

341) IRO §63D(1)

342) GovHK, "Taxes & Duties - Tax Payment Methods," <https://www.gov.hk/en/residents/taxes/taxfiling/?subcat=payment>, 검색일자: 2021. 11. 23.

343) 홍콩 재무부, "Collections and Payments - Phone Banking," https://www.try.gov.hk/internet/ehcoll_paym_phone.html, 검색일자: 2021. 11. 23.

344) 홍콩 재무부, "Collections and Payments - Internet Banking," https://www.try.gov.hk/internet/ehcoll_paym_ebank.html, 검색일자: 2021. 11. 23.

〈표 2-2-14〉의 계속

유형		상세
전자적 납부방법	인터넷 뱅킹 (24시간 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Dah Sing Bank · DBS Bank(Hong Kong) · Fubon Bank(Hong Kong) · Hang Seng Bank · Hongkong and Shanghai Banking Corporation · Industrial and Commercial Bank of China(Asia) · Nanyang Commercial Bank · OCBC Wing Hang Bank · Public Bank(Hong Kong) · Shanghai Commercial Bank · Standard Chartered Bank - 인터넷 뱅킹 로그인 후 '지불 명세서' 항목을 선택하고, 개인식별번호 등을 입력하여 납부를 진행함 - 납세자의 계좌에서 즉시 인출되며, 은행에서 설정한 일일 인출 한도까지 만 납부가 가능함
	폰뱅킹 (24시간 이용)	- 다음의 은행에서 개인 계좌를 보유한 경우 세금 납부가 가능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Bank of East Asia · China Construction Bank · Chong Hing Bank · CMB Wing Lung Bank · Hang Seng Bank · Hongkong and Shanghai Banking Corporation · Industrial and Commercial Bank of China · Shanghai Commercial Bank Limited - 은행에서 지정한 전화번호로 전화를 걸어 개인식별번호, 지불명세서 번호 등을 입력한 후 세금을 납부할 수 있음 - 납세자의 계좌에서 즉시 인출되며, 은행에서 설정한 일일 인출 한도까지 만 납부가 가능함
직접 납부하는 방법	은행, 우체국, 편의점 등	- 지불명세서를 지참하여 은행, 우체국, 편의점 등의 카운터에서 납부 가능함

자료: GovHK, "Taxes & Duties - Tax Payment Methods," <https://www.gov.hk/en/residents/taxes/taxfiling/?subcat=payment>, 검색일자: 2021. 11. 23.

라. 연체 및 미납 시 불이익

납부는 급여소득세 통지서 또는 부과 고지서 등 발급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신고와 함께 납부가 이뤄져야 한다. 기한 내 납부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체납으로 간주되어 미납된 세금의 5% 이내의 과태료가 부과된다.³⁴⁵⁾ 과태료를 부과받은 납세자가 6개월 후에도 여전히 체

345) IRO §71(5)

납인 경우 미납된 세금과 과태료의 10% 이내의 벌금이 부과된다.³⁴⁶⁾

고의가 아닌 은행 계좌 잔고 부족 등의 이유로 세금 납부를 못했을 시에도 납세자가 체납된 세금 전액을 납부하기 전까지는 과태료 또는 벌금이 부과된다. 하지만 납세자가 불복이나 항소 등이 진행 중일 때 체납된 세금 등의 납부연기를 위해 납세유보증서 또는 은행 확약서를 구입하기도 한다.³⁴⁷⁾


불복이나 항소가 철회 또는 최종결정된 날까지 체납이 된 경우 지역법원조례에 따라 명령을 통해 결정한 이자율에 따라 명령발부일자로부터 가산하여 부과고지가 된다.³⁴⁸⁾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금이 계속 체납 상태로 유지되는 경우 세금 징수를 위해 최고 수준의 벌금, 출국 금지, 계좌제한, 징역 등 체납된 세금 전액을 납부할 때까지 추가적인 조치들이 시행될 수 있다.

346) IRO §71(5A)

347) IRO §71(2)

348) IRO §71(10)

[별첨] 개인소득세 신고양식 - BIR60



INLAND REVENUE DEPARTMENT
TAX RETURN — INDIVIDUALS
YEAR OF ASSESSMENT

IN ANY COMMUNICATION PLEASE QUOTE THE FILE NUMBER BELOW
FILE NO.

Revenue Officer,
5 Gloucester Road,
Wan Chai, Hong Kong.

G.P.O. Box 132,
Hong Kong.

Web site:
www.ird.gov.hk

Tel. No.:

To _____

As required by the Inland Revenue Ordinance, please complete and SIGN this form and submit it to the Department WITHIN 1 MONTH or WITHIN 3 MONTHS if you were the sole proprietor of any unincorporated business(es) during the year. Submission by facsimile is not acceptable. A Guide to Tax Return - Individuals (B.I.R.60) is enclosed. Please read and follow it carefully in completing this return. Where required, the relevant sections of the Appendix should also be completed and submitted together with this form. IF SPACE IS INSUFFICIENT, PROVIDE PARTICULARS ON A SEPARATE SHEET. If the case meets the criteria specified by the Commissioner (see leaflet enclosed), you may choose to submit the return by means of 'teletax' or through the Internet at web site www.ird.gov.hk, for which an EXTENSION OF 2 WEEKS will be given.

Date: _____ Assistant Commissioner

PART 1 PERSONAL PARTICULARS (Please use BLOCK LETTERS)

	Name in English (Surname First) (State Mr / Mrs / Miss / Ms)	Name in Chinese	Hong Kong Identity Card No. #
(1) SELF	<input style="width: 95%;" type="text"/>	<input style="width: 95%;" type="text"/>	<input style="width: 100%;" type="text"/>
SPOUSE	<input style="width: 95%;" type="text"/>	<input style="width: 95%;" type="text"/>	<input style="width: 100%;" type="text"/>

(2) Day-time contact tel. no. # If not a Hong Kong Identity Card holder, state below the nationality and passport number.

SELF: <input style="width: 100%;" type="text"/>	SPOUSE: <input style="width: 100%;" type="text"/>
---	---

PART 2 NOTIFICATION (✓ in box if 'Yes', leave blank if 'No'.)

(1) I wish to amend my postal / residential address and I have not informed you of this previously. (If yes, please also complete items (1) and / or (2) in Section 1 of the Appendix)	Yes	3
(2) I wish to amend my marital status and I have not informed you of this previously. (If yes, please also complete item (3) in Section 1 of the Appendix)	Yes	4
(3) I have appointed an authorized representative. (If yes, please also complete Section 2 of the Appendix)	Yes	5
(4) I have obtained an advance ruling relating to this year of assessment. (If yes, please also complete Section 3 of the Appendix)	Yes	6
(5) I wish to claim a tax credit under the Arrangement for Avoidance of Double Taxation with the Mainland. (If yes, please also complete Section 4 of the Appendix)	Yes	7
(6) I wish to receive CHINESE version of tax return (B.I.R.表格第60號) in future.	Yes	8
(7) (i) I wish to register for TeleTax and receive the Access Code by post, OR	Yes	
(ii) I wish to register for TeleTax and collect the Access Code in person.	Yes	

PART 3 PROPERTY TAX Did you have any solely-owned properties which were let during the year? (✓ in the appropriate box)

No → Go to Part 4 Yes → Complete this part as appropriate and boxes 9, 10 and 11

Details of properties SOLELY OWNED by me and LET during the year :- (Do not include details of partly-owned properties)

	Property 1	Property 2	
(1) Location	<input style="width: 95%;" type="text"/>	<input style="width: 95%;" type="text"/>	Total number of properties LET <input style="width: 20px;" type="text"/> <input style="width: 20px;" type="text"/> <input style="width: 20px;" type="text"/> 9
(2) Period of letting	<input style="width: 95%;" type="text"/>	<input style="width: 95%;" type="text"/>	
(3) Rental income	\$ <input style="width: 100%;" type="text"/>	\$ <input style="width: 100%;" type="text"/>	Total amount of deductions for ALL properties let <input style="width: 100%;" type="text"/> 10
(4) Deductions (Rates paid by me and irrecoverable rent)	\$ <input style="width: 100%;" type="text"/>	\$ <input style="width: 100%;" type="text"/>	Total assessable value of ALL properties let <input style="width: 100%;" type="text"/> 11
(5) Assessable value (i.e. item (3) minus item (4))	\$ <input style="width: 100%;" type="text"/>	\$ <input style="width: 100%;" type="text"/>	

FOR OFFICIAL USE ONLY

	PA DON		MI		
SEE	<input type="checkbox"/>	14	ENCL	<input type="checkbox"/>	17
ST DON	<input type="checkbox"/>	15	ERCE	<input type="checkbox"/>	18
			HLI-N	<input type="checkbox"/>	21
			HLI	<input type="checkbox"/>	20

B.I.R. 60 (4/2003) 如需本表格的中文版，請致電 (187 8088) 或傳真 (2519 9316) 與本局聯絡。
The Chinese version of this form may be obtained by contacting this Department by phone (187 8088) or fax (2519 9316). P.T.O.

- 4 -

IF SPACE IS INSUFFICIENT, PROVIDE PARTICULARS ON A SEPARATE SHEET. EXCLUDE CENTS WHEN STATING AMOUNTS.

PART 8 ALLOWANCES AND ELDERLY RESIDENTIAL CARE EXPENSES (✓ in the appropriate boxes in this part)
Applicable only if you had income chargeable to Salaries Tax during the year or if you elect Personal Assessment.

8.1 MARRIED PERSON'S ALLOWANCE Applicable only if you were married for all or part of the year.

(1) My spouse had income chargeable to Salaries Tax during the year. Yes No 79

(2) I was living apart from my spouse who did not have any income chargeable to Salaries Tax during the year. Yes 80
I have paid maintenance fees of \$ for his / her support during the year.

(3) I wish to claim disabled dependant allowance in respect of my spouse who was eligible to claim an allowance under the Government's Disability Allowance Scheme during the year. Yes 81

8.2 CHILD ALLOWANCE AND DEPENDENT BROTHER / SISTER ALLOWANCE
For married taxpayers, all child allowances are to be claimed by the nominated spouse.

	First	Second	Third
(1) Name	<input type="text"/>	<input type="text"/>	<input type="text"/>
(2) Relationship (Enter '1' for child; or '2' for your brother / sister; or '3' for your spouse's brother / sister)	<input type="checkbox"/> 82	<input type="checkbox"/> 86	<input type="checkbox"/> 90
(3) Date of birth	<input type="text"/> <input type="text"/> <input type="text"/> 83	<input type="text"/> <input type="text"/> <input type="text"/> 87	<input type="text"/> <input type="text"/> <input type="text"/> 91
(4) The dependant was of or over 18 but under 25 years of age and received full-time education at any time during the year.	Yes <input type="checkbox"/> 84	Yes <input type="checkbox"/> 88	Yes <input type="checkbox"/> 92
(5) I wish to claim disabled dependant allowance in respect of the dependant who was eligible to claim an allowance under the Government's Disability Allowance Scheme during the year.	Yes <input type="checkbox"/> 85	Yes <input type="checkbox"/> 89	Yes <input type="checkbox"/> 93
(6) Particulars of the parents of the dependent brother / sister :			
Father : Name	<input type="text"/>		Hong Kong Identity Card Number <input type="text"/> () 94
Mother : Name	<input type="text"/>		Hong Kong Identity Card Number <input type="text"/> () 95

8.3 SINGLE PARENT ALLOWANCE Applicable only if you were single, widowed or married but living apart from your spouse throughout the year.
I had the sole or predominant care of my child / children mentioned in Part 8.2 above during the year. (Enter '1' for full year; or '2' for part of a year) 96

8.4 DEPENDENT PARENT / GRANDPARENT ALLOWANCE AND ELDERLY RESIDENTIAL CARE EXPENSES

	Dependant 1	Dependant 2	Dependant 3
(1) Name	<input type="text"/>	<input type="text"/>	<input type="text"/>
(2) Hong Kong Identity Card Number	<input type="text"/> 97	<input type="text"/> () 104	<input type="text"/> () 111
(3) Date of birth (enter month and year only)	<input type="text"/> <input type="text"/> 98	<input type="text"/> <input type="text"/> 105	<input type="text"/> <input type="text"/> 112
(4) Relationship with me / my spouse (Enter '1' for parent; or '2' for grandparent)	<input type="checkbox"/> 99	<input type="checkbox"/> 106	<input type="checkbox"/> 113
(5) Claim for Dependent Parent / Grandparent Allowance :			
(i) The dependant resided with me continuously during the year without paying full cost. (Enter '1' for full year; or '2' for at least 6 months) OR	<input type="checkbox"/> 100	<input type="checkbox"/> 107	<input type="checkbox"/> 114
(ii) I / my spouse contributed not less than \$12,000 in money during the year (\$1,200 prior to year of assessment 1998/99) towards the dependant's maintenance.	Yes <input type="checkbox"/> 101	Yes <input type="checkbox"/> 108	Yes <input type="checkbox"/> 115
(6) Claim for deduction for Elderly Residential Care Expenses :			
(i) Name of residential care home at which the dependant resided	<input type="text"/>	<input type="text"/>	<input type="text"/>
(ii) Amount of expenses paid by me / my spouse to the above residential care home during the year	\$ <input type="text"/> 102	\$ <input type="text"/> 109	\$ <input type="text"/> 116
(7) I wish to claim disabled dependant allowance in respect of the dependant who was eligible to claim an allowance under the Government's Disability Allowance Scheme during the year.	Yes <input type="checkbox"/> 103	Yes <input type="checkbox"/> 110	Yes <input type="checkbox"/> 117

PART 9 DECLARATION

I declare that the information given in this return, its Appendix (if applicable) and any other documents attached is true, correct and complete.

Date: _____ Signature: _____

IF YOU WERE MARRIED FOR ALL OR PART OF THE YEAR AND

(1) HAVE ELECTED JOINT ASSESSMENT (in Part 4.4)/PERSONAL ASSESSMENT (in Part 4), OR

(2) HAVE BEEN NOMINATED BY YOUR SPOUSE TO CLAIM HOME LOAN INTEREST DEDUCTION (in Part 7.3),

YOUR SPOUSE MUST SIGN HERE TO INDICATE AGREEMENT.

Spouse's Signature: _____

[Heavy penalties may be incurred for making an incorrect return or committing other offences - See Part 9 of the Guide]

자료: 홍콩 세무국, "Sample of Tax Return - Individuals," <https://www.ird.gov.hk/eng/pdf/bir60e.pdf>, 검색일자: 2021. 11. 23.

제3장 | 재산세제

I 부동산세(Government Rent/Rates)

1. 정부 토지 임대료(Government Rent)³⁴⁹⁾

홍콩의 토지 소유는 정부 임대를 통해 이루어지는데, 임대 문서에 명시된 기간 동안 소유주(정부 임차인)는 토지를 보유 및 점유할 수 있으며 해당 권리에 대한 대가를 정부에 지불한다. 정부 토지 임대료의 요율은 부지 평가액의 3%이며, 1984년 6월 30일 이후 일정 마을이나 기타 농촌 지역의 부지를 계속 보유하고 있는 토착 주민의 경우 정부 토지 임대료가 면제된다.

2. 건물 재산세(Rates)³⁵⁰⁾

홍콩의 모든 지역의 건물에는 부동산 평가법 제116조에 근거하여 건물 재산세가 과세된다. 소유주와 점유자(건물 임차인)의 계약에 따라 납부 의무자가 달라지는데, 합의 내용이 존재하지 않을 경우 점유자에게 납부 의무가 존재한다. 해당 부동산이 비어 있다는 가정하에 지정된 평가 기준일에 부동산의 연간 추정 임대 가치에 5%(2021/22 회계연도 기준)의 요율로 부과된다.

349) 홍콩 감정평가국, "Government Rent," https://www.rvd.gov.hk/en/public_services/government_rent.html 검색일자: 2021. 9. 3.

350) 홍콩 감정평가국, "Rates," https://www.rvd.gov.hk/en/public_services/rates.html 검색일자: 2021. 9. 3.

3. 납부³⁵¹⁾

정부 토지 임대료와 건물 재산세의 평가와 징수는 감정평가국(Rating and Valuation)에서 담당하고 있으며, 일반적으로 매 분기 초에 청구서가 발행되고 각 분기 첫 번째 달(1월, 4월, 7월, 10월)의 마지막 날까지 납부를 완료해야 한다. 우편 또는 기타 사유로 청구서 수령이 늦어지거나 받지 못하게 되더라도 정부 토지 임대료는 정해진 기한 내에 납부해야 하며, 미이행 시 기한의 마지막 날 이후 5%의 가산세가 즉시 부과된다.

청구서 미수령 시 Account Inquiry 서비스를 이용하거나 24시간 자동 전화문의 서비스(2152-2152)에 전화하여 납부액을 조회할 수 있다. Account Inquiry 서비스에서는 납부용 모바일 QR코드를 발급하기도 하며, 이를 우체국이나 편의점(세븐일레븐, 씨클K, VanGO)에 제시하면 세금을 납부할 수 있다.

351) 홍콩 감정평가국, "Billing and Payment," https://www.rvd.gov.hk/en/public_services/billing_and_payment.html 검색일자: 2021. 9. 3.

II 재산세(Property tax)

1. 과세대상

가. 납세의무자³⁵²⁾

홍콩의 재산세는 세무국이 홍콩에 소재하는 토지 또는 건물의 소유자에게 부과하며, 이때 부동산의 소유자는 다음의 경우에 해당하는 자를 의미한다.

- ① 홍콩 정부로부터 토지 및 건물의 사용권(소유권)을 부여받은 자
- ② 수익적 소유자(beneficial owner)
- ③ 종신차지인(tenant for life)
- ④ 저당권 설정자
- ⑤ 토지 점유권자(adverse title)로, 해당 토지 내 건물 혹은 다른 건축물로부터 수익을 얻는 자
- ⑥ 등록된 협동조합에 토지나 건물의 대금을 지급하는 자
- ⑦ 지대 혹은 다른 사용료를 받는 토지 혹은 건물을 소유한 자
- ⑧ 재산 소유자의 집행자

또한 거주자와 비거주자 관계없이 부동산을 통해 임대 소득이 발생하는 경우 납세의무가 있다.³⁵³⁾

나. 과세대상 소득³⁵⁴⁾

과세대상이 되는 토지 및 건축물은 부두(pier and wharf) 및 기타 구조물을 포함하며, 건물의 분류는 Rating Ordinance에서 상세하게 규정하고 있다.³⁵⁵⁾

재산세는 상기한 부동산에서 발생하는 다음과 같은 소득에 대해 과세한다.

352) Wolters Kluwer, *Hong Kong Master Tax Guide 2019/20*, pp. 289~290.

353) GovHK, "Residents - Tax & Duties - Property tax - Income from Property Letting," <https://www.gov.hk/en/residents/taxes/property/propertyincome.htm>, 검색일자: 2021. 9. 3.

354) GovHK, "Income from Property Letting," <https://www.gov.hk/en/residents/taxes/property/propertyincome.htm>, 검색일자: 2021. 10. 1.

355) Wolters Kluwer, *Hong Kong Master Tax Guide 2019/20*, ¶5-1600, p. 292.

- ① 임대료
- ② 부동산 사용 권한 라이선스에 대한 대가
- ③ 소유자에게 지불되는 서비스 이용료, 관리비 등
- ④ 임차인이 부담하는 소유자에게 책임이 존재하는 비용(예: 수리 비용 등)
- ⑤ 기존 회수 불가능한 임대료로 공제되었으나 현재 회수된 금액
- ⑥ 프리미엄

이 때 임차인의 동의가 있을 경우 관리비는 과세대상 소득에서 제외할 수 있다. 또한 소유자가 임대 프리미엄을 받았을 경우 임대 개시 연도의 과세 소득에 포함되며, 최대 36개월까지 분할이 가능하다. 다만 임대 기간이 3년 이하일 경우 프리미엄을 임대 기간의 균등 월할부로 분할할 수 있다.

다. 면세 대상³⁵⁶⁾

1) 정부기관

홍콩특별자치구 내 소재한 정부기관이나 재외 공관으로 사용하는 토지 및 건물에 대해서는 재산세가 면제된다.

2) 법인

홍콩에서 무역, 전문업, 상업을 수행하는 법인의 경우 임대 소득에 대해 이윤세의 적용을 선택하는 경우 재산세를 면제받을 수 있다. 이 때 협동조합이나 노동조합은 재산세 면제 범인에 포함되지 않는다.

3) 자선단체 등

홍콩의 모든 자선단체 및 홍콩세법 section 88에 근거한 공공 신탁의 경우 재산세를 포함한 모든 세금이 면제되며, 대상 기관 및 신탁 명단은 매년 정부 관보에 게재된다.

356) Wolters Kluwer, *Hong Kong Master Tax Guide 2019/20.*, ¶5-7000, ¶5-7200, ¶5-7400, ¶5-7600, pp. 301~304.

4) 개인

무역, 전문업, 상업을 수행하는 개인이 이윤을 창출하는 목적으로 소유하거나 사용한 부동산의 경우 재산세 면제가 적용된다.

2. 세액의 계산

가. 공제 비용³⁵⁷⁾

1) 건물 재산세(government rates)

부동산세(Government rent/rates) 중 건물 재산세는 재산세 과세 소득 산출 시 공제할 수 있다.

2) 회수 불능 임대료

해당 과세연도에 회수가 불가능한 것으로 확인된 임대료에 대해 공제 가능하며, 추후 회수가 이루어질 경우 회수연도의 임대 소득으로 신고해야 한다.

3) 대손상각비

과세대상 소득에 포함되었던 대가가 회수되지 못하는 경우, 납세자의 자산 평가 가치에서 대손으로 공제될 수 있다. 대손상각비 또한 회수 불능 임대료와 마찬가지로 추후 회수가 이루어질 경우 회수연도에 소득으로 추가해야 한다.

4) 일괄 공제³⁵⁸⁾

세금 평가를 단순화하기 위해 소유주가 지불한 건물재산세와 회수 불능 임대료, 대손상각비를 공제한 임대 소득 잔액의 20%에 대해 일괄적으로 공제를 적용하고 있다. 일괄 공제되는

357) GovHK, "Deductions against Rental Income," <https://www.gov.hk/en/residents/taxes/property/deduction/index.htm>, 검색일자: 2021. 10. 1.

358) GovHK, "Statutory Allowance for Repairs & Outgoings," <https://www.gov.hk/en/residents/taxes/property/deduction/statutory.htm>, 검색일자: 2021. 9. 3.

20%에는 정부 토지 임대료, 인테리어 비용, 건물 관리 비용, 대출 이자 등이 모두 포함되며, 따라서 해당 비용들에 대해서는 공제를 청구할 수 없다. 다만 종합과세를 선택한 납세자의 경우 부동산 구매 시 발생한 대출 이자에 한해 공제받을 수 있다.

나. 세율³⁵⁹⁾

홍콩은 재산세 세율을 2008/09 평가연도 이후 현재까지 15%의 단일 세율을 유지하고 있다.

〈표 2-3-1〉 홍콩의 재산세 세율

(단위: %)

과세연도	세율
2008/09~현재	15
2004/05~2007/08 ¹⁾	16
2003/04	15.5
2002/03	15

주: 1) 2007/08 과세연도의 경우 건당 2만 5천달러까지 재산세의 75%를 면제하였음

자료: GovHK, "Tax Rates of Property Tax," <https://www.gov.hk/en/residents/taxes/taxfiling/taxrates/propertyrates.htm>, 검색일자: 2021. 9. 3.

3. 신고 및 납부

가. 신고 방법 및 기한

신고는 서면 및 온라인 신고가 모두 가능하다. 다만 서면 신고 시에는 신고서 사본, 팩스본, 인터넷 파일 출력본은 허용되지 않고 반드시 세무국에서 발행한 신고서 원본으로 작성해야 한다.³⁶⁰⁾ GovHK 사이트를 통해 이루어지는 온라인 신고를 이용할 경우, 신고 기한이 자동으로 2주 연장되며 세금 신고에 필요한 일부 과세 자료에 대해 미리채움 서비스가 제공된다.³⁶¹⁾

359) GovHK, "Tax Rates of Property Tax," <https://www.gov.hk/en/residents/taxes/taxfiling/taxrates/propertyrates.htm>, 검색일자: 2021. 9. 3.

360) 홍콩 세무국, "Completion and Filing of Property Tax Returns," https://www.ird.gov.hk/eng/tax/ind_cot.htm, 검색일자: 2021. 10. 1.

361) GovHK, "Filing of Property Tax Return for Jointly Owned Properties (BIR57)," <https://www.gov.hk/>

개인이 단독으로 부동산을 소유하였을 경우 개인소득세 신고서(BIR 60), 소유자가 법인이나 합자회사 형태이거나 비거주자인 경우 이윤세 신고서(BIR 51, 52 또는 54)를 통해 재산세 까지 일괄 신고한다. 개인이나 법인이 부동산을 공동으로 소유하였을 경우 재산세 신고서 (BIR 57 또는 58)를 통해 신고해야 하며, 각각의 신고 기한은 <표 2-3-2>와 같다.

<표 2-3-2> 재산세 신고 유형 및 신고 기한

신고 유형	적용 대상	신고 기한
개인소득세 신고(BIR 60)	개인 단독 소유 시	매년 5월 첫 영업일
이윤세 신고(BIR 51, 52, 54)	법인 단독 소유 시	매년 4월 첫 영업일
재산세 신고(BIR 57, 58)	공동 소유 시	

자료: GovHK, "Types of Tax Returns," <https://www.gov.hk/en/residents/taxes/taxfiling/filing/types/index.htm>, 검색일자: 2021. 9. 3. 저자 수정 작성

나. 납부

은행 계좌 송금이나 환어음, 전신환 등을 이용하여 납부가 가능하다. 홍콩 내에서 오프라인으로 납부할 경우 완차이에 위치한 세무국 건물 내 우체국에서 고지서를 통해 납부하거나, 바코드를 발급받아 편의점(세븐일레븐, 씨클K)에서 세금 납부액을 결제할 수 있다.

[en/residents/taxes/etax/services/filing_of_ptr_bir57.htm](https://www.gov.hk/en/residents/taxes/etax/services/filing_of_ptr_bir57.htm), 검색일자: 2021. 10. 1.

III 인지세(Stamp duty)

1. 과세대상

가. 과세 대상 및 납세의무자

인지세는 인지세법 부동산, 주식 및 무기명 증권과 같이 거래를 증명하는 문서에 고정 혹은 종가로 부과되며, 이러한 증서의 복제 문서 혹은 대체 문서에도 부과할 수 있다.³⁶²⁾ 홍콩의 인지세는 거래 자체가 아닌 거래를 증명하는 문서에만 부과되는 것으로, 문서 없이 이루어진 계약에 대해서는 과세되지 않는다.³⁶³⁾

① 부동산의 임대차 문서, ② 부동산의 매매 또는 양도 문서, ③ 주식의 양도 문서에 부과되며, 매도인과 매수인을 비롯한 해당 계약에 관련된 모든 당사자에게 인지세 납부의 의무가 있다. 주식 양도의 경우 에이전트와 양도인 및 양수인이 그 당사자가 되며, 에이전트가 없을 경우 매매에 영향을 미치는 대리인이 납세의무자가 된다.³⁶⁴⁾

나. 면세 대상

인지세 조례(Stamp duty ordinance) 39조에 근거하여 다음의 경우 인지세를 부과하지 않는다.

- ① 1942년 11월 26일부터 1945년 9월 1일까지 일본이 홍콩에서 시행한 인지세 규정에 따라 정식으로 날인된 모든 증서
- ② 정부 공무원 또는 통합 공무원에게 매각된 모든 양도 증서
- ③ 정부 보조금 및 임대료, 혹은 해당 보조금 및 임대료의 양도에 관한 증서
- ④ 주택청이 주택조례(Housing ordinance)의 목적상 계약한 양도 증서
- ⑤ 인지세가 면제된 자에게 면책된 부지를 판매하는 모든 양도 증서
- ⑥ 파산조례(Bankruptcy ordinance) 제125조 또는 회사조례(Companies (Winding Up

362) IBFD Tax Research Platform, "Hong Kong - Corporate Taxation - Country Tax Guides - 9.3. Stamp duty," https://research.ibfd.org/#/doc?url=/collections/gtha/html/gtha_hk_s_009.html, 검색일자: 2021. 11. 18.

363) Wolters Kluwer, *Hong Kong Master Tax Guide 2019/20*, ¶113-0180, p. 1034.

364) GovHK, "Documents & Persons Liable for Stamping," https://www.gov.hk/en/residents/taxes/stamp/documents_for_stamping.htm, 검색일자: 2021. 11. 18.

2. 세율³⁶⁵⁾

가. 부동산 임대차 문서

부동산 임대차 문서의 경우 임대 기간에 따라 0.25%에서 1%까지 인지세가 차등적으로 부과된다. 또한 공사비용을 비롯하여 부동산 임대와 관련한 기타 주요 비용에 대해서는 4.25%의 요율이 적용되며, 임대차 문서가 사본이거나 대체본일 경우 각 문서당 5홍콩달러를 추가로 납부해야 한다.

〈표 2-3-3〉 홍콩의 부동산 임대차 문서 인지세 세율

임대 기간	세율
확정되지 않았거나 불확실한 경우	연간 임대료 또는 연간 평균 임대료의 0.25%
1년 이하	임대 기간 동안 지불할 총 임대료의 0.25%
1년 초과 3년 이하	연간 임대료 또는 연간 평균 임대료의 0.5%
3년 초과	연간 임대료 또는 연간 평균 임대료의 1%
보증금을 제외한 임대와 관련한 주요 비용, 공사 비용 등	임대료가 리스에 의해 지불될 경우 4.25%, 그렇지 않을 경우 부동산 매각 및 양도와 같은 비율로 청구함
사본 혹은 대체본 문서	문서당 5홍콩달러

주: 임대료는 100홍콩달러 미만 단위에서 반올림함

자료: GovHK, "Stamp Duty Rates," https://www.gov.hk/en/residents/taxes/stamp/stamp_duty_rates.htm, 검색일자: 2021. 11. 18.

나. 부동산의 매매 및 양도 문서

부동산의 매매 및 양도 시에는 종가인지세(Ad valorem stamp duty, AVD)가 부과되며, 첫 매각 및 양도 이후 일정 기간 내 주거용 부동산의 재판매가 이루어질 경우 특별인지세(Special stamp duty, SSD)가 추가로 부과된다.

1) 종가인지세(Ad valorem stamp duty, AVD)

종가인지세는 주거용 및 비주거용 부동산의 판매 및 매각 계약 문서에 부과되며, 세율은 거래일, 부동산의 용도, 영주권자 여부에 따라 Scale 1과 Scale 2로 구분하여 부과된다. Scale 1은 2016년 11월 5일 이후 일반적인 홍콩 거주자가 주거용 부동산을 계약하는 경우에

365) GovHK, 「Stamp Duty Rates」, https://www.gov.hk/en/residents/taxes/stamp/stamp_duty_rates.htm, 검색일자: 2021. 11. 18.

적용되며, Scale 2는 다른 주거용 부동산을 보유하지 않은 홍콩 영주권자가 단일의 주거용 부동산을 직접 계약하는 경우나 2020년 11월 26일 이후부터 비주거용 부동산의 매매 및 양도 시에 적용된다. 다만 미성년자 혹은 금치산자인 경우를 제외하고 홍콩 거주자가 홍콩 영주권자를 대리하여 계약을 수행하는 경우 Scale 1의 요율을 적용받는다.³⁶⁶⁾ 증가인지세의 Scale 1과 Scale 2의 세율 상세 내용은 <표 2-3-4>에 정리하였다.

<표 2-3-4> 홍콩의 부동산 매매 및 양도 문서의 증가인지세 세율

(단위: 홍콩달러)

구분	세율	
	Scale 1 ¹⁾	Scale 2 ²⁾
2,000,000 이하	1.5%	100
2,000,000 초과 2,176,470 이하	30,000 + 2,000,000 초과분의 20%	100 + 2,000,000 초과분의 10%
2,176,470 초과 3,000,000 이하	3%	1.5%
3,000,000 초과 3,290,330 이하	90,000 + 3,000,000 초과분의 20%	45,000 + 3,000,000 초과분의 10%
3,290,330 초과 4,000,000 이하	4.5%	2.25%
4,000,000 초과 4,428,580 이하	180,000 + 4,000,000 초과분의 20%	90,000 + 4,000,000 초과분의 10%
4,428,580 초과 6,000,000 이하	6%	3%
6,000,000 초과 6,720,000 이하	360,000 + 6,000,000 초과분의 20%	180,000 + 6,000,000 초과분의 10%
6,720,000 초과 20,000,000 이하	7.5%	3.75%
20,000,000 초과 21,739,130 이하	1,500,000 + 20,000,000 초과분의 20%	750,000 + 20,000,000 초과분의 10%
21,739,190 초과	8.5%	4.25%

주 1) 2016년 11월 5일 이후 계약된 주거용 부동산의 계약 문서에 적용함

2) ① 영주권자의 주거용 부동산 계약 문서 혹은 ② 2020년 11월 26일 이후 계약된 비주거용 부동산의 계약 문서에 적용함

자료: GovHK, "Stamp Duty Rates," https://www.gov.hk/en/residents/taxes/stamp/stamp_duty_rates.htm, 검색일자: 2021. 11. 18.

2) 특별인지세(Special stamp duty, SSD)

특별인지세는 취득 후 36개월 이내에 주거용 부동산을 재판매하는 경우 증가인지세에 더

366) 홍콩 세무국, "FAQ - Ad valorem stamp duty (AVD) - Scale 1 and Scale 2, Q18," <https://www.ird.gov.hk/eng/faq/avd.htm>, 검색일자: 2021. 12. 9.

하여 부과되며, 보유 기간이 6개월 이하일 경우 20%, 6개월 초과 12개월 이하일 경우 15%, 12개월 초과 36개월 이하일 경우 10%로, 보유 기간이 길수록 세율이 낮아진다. 이때 과세대상 금액은 거래 계약에 명시된 금액 혹은 IRD가 평가한 자산의 시장 가치 중 더 높은 금액을 기준으로 한다.³⁶⁷⁾

〈표 2-3-5〉 홍콩의 부동산 매매 및 양도 문서의 특별인지세 세율

(단위: %)

보유 기간	세율
6개월 이하	20
6개월 초과 12개월 이하	15
12개월 초과 36개월 이하	10

자료: GovHK, "Stamp Duty Rates," https://www.gov.hk/en/residents/taxes/stamp/stamp_duty_rates.htm, 검색일자: 2021. 11. 18.

3) 구매자 인지세(Buyer's stamp duty, BSD)

구매자 인지세는 홍콩 영주권자를 제외한 모든 개인 및 법인이 2012년 10월 27일 이후 취득한 모든 주거용 부동산에 부과된다. 종가인지세 및 특별인지세 세액의 15%의 고정 세율로 부과되며, 구매자 또는 양수인이 납세의 의무를 지닌다.

다. 주식의 매매 및 양도 문서

주식의 매매 및 자발적 처분으로 인한 양도 시에는 대가 및 가치에 정률로 인지세가 부과되며, 그 외의 경우 5홍콩달러의 인지세가 일괄 부과된다.

〈표 2-3-6〉 홍콩의 주식 매매 및 양도 문서의 인지세 세율

종류	세율
홍콩 주식의 매매 계약서	계약서 내 표시된 금액 혹은 평가 가치의 0.13%
자발적 처분으로 인한 양도 문서	5홍콩달러+주식 가치의 0.26%
기타 양도 문서	5홍콩달러

자료: GovHK, "Stamp Duty Rates," https://www.gov.hk/en/residents/taxes/stamp/stamp_duty_rates.htm, 검색일자: 2021. 11. 18.

367) IBFD, "Hong Kong - Corporate Taxation - Country Tax Guides - 9.3.2.2. Special stamp duty," https://research.ibfd.org/#/doc?url=/collections/gtha/html/gtha_hk_s_009.html, 검색일자: 2021. 11. 18.

3. 신고 및 납부

가. 신고 및 납부 방법³⁶⁸⁾

공인된 디지털 인증서나 e-tax계정(개인) 혹은 전자인지계정(법인)을 가진 GovHK 홈페이지의 이용자는 전자인지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으며, 전자인지서비스를 통해 인쇄한 인지증명서(stamp certificates)가 기존의 인지와 동일한 법적 지위를 갖는다. 전자인지서비스는 ① 4인 이하의 구매자와 맺은 계약 혹은 등기의 최초 날인, ② 4인 이하의 임대인과 4인 이하의 임차인이 맺은 임대차 계약, ③ 납부 지연 인지세의 지불, ④ 후속 계약 혹은 등기에 한해 이용이 가능하고 1회에 50건까지 인지를 신청할 수 있다. 전자인지서비스를 이용하는 경우 인지세는 GovHK 웹사이트에서 PPS, Visa card, Master card, JCB 및 유니온 페이로 결제할 수 있으며, 인지증명서는 결제 후 즉시 온라인으로 발급받을 수 있다.

오프라인의 인지세 사무소에 과세대상 원본 문서와 인지세를 직접 제출 및 납부하여 인지를 부착할 수 있으며, 과세대상 원본 문서가 없더라도 신청서의 제출과 세금의 납부는 가능하다. 또한 임대차 계약의 경우 직접 방문하지 않고 우편으로도 과세대상 원본 문서 날인 혹은 인지신청서의 제출이 가능하다. 인지 신청 후 발급 통지서를 받으면 인지세의 납부는 다른 세금들과 동일한 채널로 납부할 수 있으며, 인지세 납부 후 2 영업일 이내에 인지증명서를 온라인으로 확인할 수 있다. 과세 대상 원본 문서에 직접 인지를 부착하지 않는 경우 인지증명서로 그 효력을 대체한다.

나. 납부 기한³⁶⁹⁾

인지세의 납부 기한은 과세 대상 문서의 종류에 따라 상이하게 규정되어 있다. 부동산의 양도 계약과 임대차 계약서의 경우 실행일로부터 30일 이내이며, 주거용 부동산의 매매 계약 시에는 일반적으로 동일한 당사자와 조건에 의해 체결된 가장 빠른 계약일 혹은 계약과 관련한 동의가 하나 이상 체결된 날짜를 합의일로 전제하고 이로부터 30일 이내에 납부가 이루어져야 한다. 다만 2천만홍콩달러 이내의 주거용 부동산의 매매 계약 시에는 납부 연기 신청이

368) GovHK, "Methods of Stamping," https://www.gov.hk/en/residents/taxes/stamp/methods_of_stamping.htm, 검색일자: 2021. 12. 8.

369) GovHK, "Time Limit for Stamping & Deferring Payment of Stamp Duty on Residential Property Transactions," https://www.gov.hk/en/residents/taxes/stamp/time_limit_for_stamping.htm, 검색일자: 2021. 12. 8.

가능한데, 등기가 이루어질 경우 등기일로부터 30일 이내, 등기 전 처분 시에는 처분일로부터 7일 이내에 납부가 완료되어야 하고 이러한 납부 연기는 앞서 설명한 합의일로부터 최대 3년까지만 가능하다.

주식은 홍콩 국내에서 이전이 실행되는 경우 매매계약서는 매매일로부터 2일 이내, 증여 증서는 실행일로부터 7일 이내, 양도 증서는 실행일 이전까지 납부를 완료해야 한다. 또한 국외에서 이전이 실행되는 경우 납부 기한은 매매계약서, 증여증서, 양도 증서 모두 각각 매매일 혹은 실행일로부터 30일 이내이다.

〈표 2-3-7〉 홍콩의 과세 대상 문서에 따른 인지세 납부 기한

종류		세율		
부동산	양도계약서 (기증서 포함)	실행일로부터 30일 이내		
	주거용 부동산의 매매 계약	일반	합의일 ¹⁾ 로부터 30일 이내	
		납부연기 신청 시 ²⁾	등기 시	등기일로부터 30일 이내
			등기 전 처분 시	처분일로부터 7일 이내
			납부 연기는 계약 합의일로부터 최대 3년까지만 가능함	
임대차 계약서	실행일로부터 30일 이내			
주식	매매계약서	국내 실행 시	매매일로부터 2일 이내	
		국외 실행 시	매매일로부터 30일 이내	
	양도 증서	국내 실행 시	실행일 이전	
		국외 실행 시	실행일로부터 30일 이내	
	증여 증서	국내 실행 시	실행일로부터 7일 이내	
		국외 실행 시	실행일로부터 30일 이내	

주: 1) 동일한 당사자와 조건에 의해 체결된 가장 빠른 계약일, 또는 본 계약에 대한 동의가 하나 이상 체결된 날짜

2) 2천만홍콩달러를 초과하는 부동산은 신고 및 납부연기 신청이 불가능함

자료: GovHK, "Stamp Duty Rates," https://www.gov.hk/en/residents/taxes/stamp/stamp_duty_rates.htm, 검색일자: 2021. 11. 18.

다. 패널티

기한 후 인지세 납부 및 납인을 진행하는 경우, 그 기한이 1개월 이내일 경우 결정된 인지세 세액의 2배, 2개월 이내일 경우 4배, 그리고 2개월을 초과하는 경우 10배에 달하는 과태료가 부과된다.

이 때 체납이 고의적이지 않고 이를 자발적으로 공개한 경우 IRD에서 제공하는 양식에 지연 사유를 작성하여 증빙자료를 첨부하여 과태료 경감을 신청할 수 있다. 일반적으로는 최소 500홍콩달러 부과를 전제로, 다음 공식에 의한 금액을 경감받을 수 있다.

$$\text{경감금액} = \text{인지세액} \times \frac{\text{지연일수}}{365\text{일}}$$

다만 자발적 신고가 아닌 인지국이 수행하는 검사에서 뒤늦게 발견한 체납 사례의 경우에는 상기한 감경을 적용받지 못하며, 2차 혹은 그 이후의 지연에 대한 과태료는 가중될 수 있다.

제4장 | 국제조세

I 개요

홍콩은 일반적으로 동일 소득에 대해 역내 및 역외에서 동시에 납세의 의무를 지니는 납세자에게 광범위하고 일괄적인 구제를 제공하고 있지는 않다. 다만 이와 관련하여 홍콩세무조례 제8조 (1A)(c)에 근거하여 국외에서 수행된 서비스에 의한 소득에 대해 홍콩의 급여소득세와 유사한 성격의 역외 세금이 부과될 경우, 해당 세액을 홍콩의 급여소득세 과세대상 소득에서 공제하게 하고 있다. 이자 소득 또한 홍콩세무조례 제16조(1)(c)에 따라 해당 소득에 과세된 국외의 세금을 비용으로 공제할 수 있도록 허용한다.³⁷⁰⁾

그 외에도 이중과세가 발생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국가별로 조세 조약을 맺고 있으며, 이 경우 조약과 국내 세법이 충돌하는 경우 일반적으로 조약의 내용을 우선으로 한다.

370) Wolters Kluwer, *Hong Kong Master Tax Guide 2019/20*, ¶14-0500, p. 1122.

II 포괄적 이중과세 방지 조약

가. 홍콩의 포괄적 이중과세 방지 조약 체결 현황³⁷¹⁾

일반적으로 배당금, 이자 및 로열티와 같은 불로소득(passive income)에 대한 과세 권한은 납세자의 거주국에 독점적으로 부여되거나, 거주국 및 소득의 원천지국 모두에게 부여된다. 후자의 경우 포괄적 이중과세 조약을 통해 소득의 원천지국에서 부과할 수 있는 최대 원천징수세율을 규정하며, 원천징수국의 국내법에 원천징수의 의무가 없거나 납세자의 거주국의 세율보다 낮은 경우 거주국의 세율에 따라 처리한다. 반면 원천지국의 원천징수세율이 이중과세 방지 조약에 규정한 것보다 높을 경우 원천지국의 과세권은 조약에 명시된 범위 내로 제한된다.

홍콩은 2003년 벨기에와 첫 포괄적 이중과세 방지 조약을 맺은 이후, 2018년 6월 현재까지 40개 국가 관련 조약을 맺고 있다. 대한민국은 2014년 7월 8일 홍콩과 해당 조약을 맺으면서 서른 번째로 포괄적 이중과세 방지 조약을 맺은 국가가 되었다. 본 조약을 통해 한국은 홍콩과의 거래에 있어 배당금에 대해서는 수익적 소유자³⁷²⁾일 경우 10%, 그 외의 경우 15%의 세율로 원천징수가 이루어지며, 이자와 로열티에 대해서는 10%의 원천징수가 이루어지고 있다. 다만 이자의 경우 정부 혹은 공인된 재정 기관의 경우 원천징수가 면제된다.

〈표 2-4-1〉 홍콩의 포괄적 이중과세 방지 조약 체결 국가

순번	국가	체결일		적용 시작 과세연도(일)
1	벨기에	2003. 12. 10.		2012/2013
2	태국	2011. 10. 4.		2013/2014
3	중국	2006. 8. 21.		2007/2008
		2차 의정서	2008. 1. 30.	2008. 6. 11.
		3차 의정서	2010. 5. 27.	2010. 12. 20.
		4차 의정서	2015. 4. 1.	2015. 12. 29.
		5차 의정서	2019. 7. 19.	2019. 12. 6.
4	룩셈부르크	2007. 11. 2.		2008/2009
		의정서	2010. 11. 11.	2012/2013
5	베트남	2008. 12. 16.		2010/2011
		의정서	2014. 1. 13.	2016/2017
6	브루나이	2010. 3. 20.		2011/2012

371) Wolters Kluwer, *Hong Kong Master Tax Guide 2019/20*, ¶14-1000, pp. 1123~1140.

372) 회사의 배당 총액의 최소 25% 이상의 지분을 직접적으로 소유하는 자

〈표 2-4-1〉의 계속

순번	국가	체결일		적용 시작 과세연도(일)
7	네덜란드	2010. 3. 22.		2012/2013
8	인도네시아	2010. 3. 23.		2013/2014
9	헝가리	2010. 5. 12.		2012/2013
10	쿠웨이트	2010. 5. 13.		2014/2015
11	오스트리아	2010. 5. 25.		2012/2013
		의정서	2012. 6. 25.	2013/2014
12	영국	2010. 6. 21.		2011/2012
13	아일랜드	2010. 6. 22.		2012/2013
14	리히텐슈타인	2010. 8. 12.		2012/2013
15	프랑스	2010. 10. 21.		2012/2013
16	일본	2010. 9. 11.		2012/2013
		교환 공문	2014. 10. 12.	2016/2017
17	뉴질랜드	2010. 1. 12.		2012/2013
18	스위스	2011. 10. 4.		2013/2014
19	포르투갈	2011. 3. 22.		2013/2014
20	스페인	2011. 1. 4.		2013/2014
21	체코	2011. 6. 6.		2013/2014
22	몰타	2011. 8. 11.		2013/2014
23	저지	2012. 2. 22.		2014/2015
24	말레이시아	2012. 4. 25.		2013/2014
25	멕시코	2012. 6. 18.		2014/2015
26	캐나다	2012. 11. 11.		2014/2015
27	이탈리아	2013. 1. 14.		2016/2017
28	건지	2013. 4. 22.		2014/2015
29	카타르	2013. 5. 13.		2014/2015
30	남아프리카공화국	2014. 10. 16.		2016/2017
31	대한민국	2014. 7. 8.		2017/2018
32	아랍에미리트공화국	2014. 12. 11.		2016/2017
33	루마니아	2015. 11. 18.		2017. 1. 1. 이후 발생 소득
34	러시아	2016. 1. 18.		2017/2018
35	라트비아	2016. 4. 13.		2018/2019
36	벨라루스	2017. 1. 16.		2018/2019
37	파키스탄	2017. 2. 17.		2018/2019
38	사우디아라비아	2017. 8. 24.		보류 중
39	인도	2018. 3. 19.		보류 중
40	핀란드	2018. 5. 24.		보류 중

자료: Wolters Kluwer, *Hong Kong Master Tax Guide 2019/20*, ¶14-1000, pp. 1124~1140 내용 일부 발췌

홍콩의 포괄적 이중과세 조약은 일반적으로 세액 공제를 통해 이중과세 가능성을 배제한다. 국외에서 과세 대상이 되는 동일한 소득에 대해 홍콩에서도 과세 의무가 주어질 경우 세액공제를 허용하여 이중과세 부담을 경감하도록 홍콩 세무조례 Section 50에 규정하고 있다. 소득의 수령인이 해당 연도에 홍콩에 거주한 경우에만 공제 혜택을 적용받을 수 있으며, 공제액만큼 홍콩에서의 납부세액이 감면된다.³⁷³⁾

나. 중국 본토와의 포괄적 이중과세 방지 조약³⁷⁴⁾

홍콩은 중국 본토와 1998년 2월 제한적 약정인 “이중과세 방지 조약(Avoidance of Double Taxation on Income)”을 체결한 바 있으며, 이를 확장하여 2006년 8월 21일 포괄적 약정인 “이중과세 및 재정 회피 방지를 위한 조약(the Arrangement for the Avoidance of Double Taxation on Income and Prevention of Fiscal Evasion)”을 체결하였다. 이렇게 확장된 포괄적 약정을 실행하기 위해 같은 해 10월 DIPN No.44를 발표하였으며, 이후 2019년 5차 의정서까지 서명하면서 현재의 형태를 갖추게 되었다.

첫 번째 체결된 “이중과세 방지 조약”의 경우 중국 본토에서 1998년 7월 1일 이후 발생하였거나, 홍콩에서 1998년 4월 1일 이후 시작된 평가 연도의 소득에 적용되며, “이중과세 및 재정 회피 방지를 위한 조약”은 중국 본토에서 2007년 1월 1일 이후 시작되거나, 홍콩에서 2007년 4월 1일 이후 시작되는 과세연도부터 앞서 체결된 조약을 대체한다.

〈표 2-4-2〉 홍콩과 중국 본토 간 체결한 이중과세 방지 조약

조약	체결일	적용 소득 기간
이중과세 방지 조약	1998년 2월 11일	- 중국 본토에서 1998년 7월 1일 이후 발생한 소득 - 홍콩에서 1998년 4월 1일 이후 시작된 과세연도의 소득
이중과세 및 재정 회피 방지를 위한 조약	2006년 8월 21일	- 중국 본토에서 2007년 1월 1일 이후 시작된 과세연도의 소득 - 홍콩에서 2007년 4월 1일 이후 시작되는 과세연도의 소득

자료: 본문 내용 저자 정리

373) Wolters Kluwer, *Hong Kong Master Tax Guide 2019/20*, ¶14-1050, p. 1142.

374) Wolters Kluwer, *Hong Kong Master Tax Guide 2019/20*, ¶14-1150, pp. 1150~1167.

홍공과 중국 본토 간 체결한 포괄적 조약에 따라 이중과세에 대한 감면은 <표 2-4-3>과 같이 영업 이익, 해운, 항공 및 육로 운송 운영 소득, 관련 기업 소득, 배당금, 이자, 로열티, 자본 소득, 고용 소득, 연예 및 스포츠 활동 관련 소득 등과 관련하여 다양하게 제공된다.

<표 2-4-3> 홍콩과 중국 본토 간 이중과세 방지 조약의 대상 소득 및 내용

대상 소득	내용
영업 이익 (Article 7. Business Profit)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고정사업장을 홍콩과 중국 본토 중 한 곳에만 두고 있을 경우, 고정사업장*이 위치한 곳에서만 과세함 · 이 때 고정사업장이란 과세연도 중 6개월 이상 사무실, 지점, 공장 광산, 유정 또는 가스정, 채석장 또는 기타 천연자원 추출 장소, 건축 현장, 6개월 이상 지속되는 설치 프로젝트나 감독 활동 혹은 서비스 제공하는 경우에 해당함 · 다만 물품의 보관, 전시 또는 배송, 물품 구매, 광고, 정보 수집 또는 기타 준비 혹은 보조 활동만을 위한 시설 사용 또는 사업장의 유지관리는 고정사업장의 범주에 포함되지 않으나, 독립된 대행업체가 아닌 개인이 기업을 대신하여 계약 체결 권한을 습관적으로 행사하는 경우 고정사업장이 있는 것으로 간주함 - 영업 이익은 홍콩세무조례의 조항에 따라 일반적으로 인정되는 회계 원칙에 근거하여 기업이 계산한 이익을 기반으로 함
해운, 항공 및 육로 운송 운영 소득 (Article 8. Shipping, air and land transport)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중국에서 운영되는 홍콩 기업이 선박, 항공기, 또는 육상 운송 차량을 운영하여 발생하는 소득은 중국에서 법인소득세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며, 홍콩에서 운영되는 중국 기업의 경우도 마찬가지로 적용됨 - 이는 파트너십 사업, 공동 사업 또는 국제 업무 대행 등을 통해 소득이 발생하는 경우에도 동일하게 적용됨
관련 기업 소득 (Article 9. Associated Enterprises)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업이 정상가격 기준을 체결하지 않은 거래로 인해 과소평가된 이윤은 다음의 경우에 해당 기업의 이윤에 포함시켜 과세할 수 있음 · 한 쪽 기업이 다른 쪽 기업의 경영, 관리 또는 자본에 직간접적으로 참여함 · 동일인이 한 쪽 기업과 다른 쪽 기업의 경영, 관리 또는 자본에 직간접적으로 참여함 - 또한 정상가격 원칙에 따라 거래된 A기업의 이익이 B기업의 이익에 포함되어 그에 따라 세금을 납부하고 있는 경우, 두 기업이 동일한 조건에서 운영되는 독립 기업이라면 B기업은 해당 이익에 부과되는 세액에 대해 적절한 조정을 해야 함 · 홍콩 세무국이 중국 본토의 과세액에 동의하는 범위(전액 혹은 그 이하의 수준) 내에서만 조정이 이루어짐 · 만약 홍콩 세무국이 조정에 대해 본토와 동의하지 않는 경우 조정은 이루어지지 않는데, 조정이 필요해질 경우 양측의 세무 관할 당국은 서로 협의해야 함
배당금 (Article 10. Dividends)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여기에서 배당은 “채무 청구가 아닌, 주식 또는 기타 권리에서 발생하여 이익을 발생시키는 소득”이나 “배당을 하는 회사의 거주국 법률에 따라 주식 관련 소득과 동일한 과세처분을 받는 기타 기업 관련 권리로부터의 소득”으로 정의함 - 납세자의 거주국에서 배당금에 대해 과세할 권리가 있으며, 소득의 원천국 역시 해당 국가의 법률에 따라 배당 총액의 10% 이하 수준에서 과세할 수 있음 · 단 수익적 소유자가 배당금을 지급하는 회사의 자본금의 25% 이상을 직접 소유하는 회사인 경우, 과세액이 배당 총액의 5%를 초과할 수 없음 · 또한 비거주자는 홍콩 회사가 지급한 배당금의 과세 대상에서 제외되므로, 세율 제한은 실질적으로 적용되지 않음

〈표 2-4-3〉의 계속

대상 소득	내용
이자 (Article 11. Interest)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이자는 담보 대출인지 채무자의 이익에 참여할 권리가 있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모든 종류의 채무 청구로 인한 소득으로 정의됨 - 이자 소득에 대한 과세는 이자를 지급하는 국가에서 이루어지며, 세율 한도는 이자 총액의 최대 7%임 - 상대국 정부 혹은 공인된 기관에게 지급된 이자의 경우 세금이 면제됨
로열티 (Article 12. Royalties)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이자소득과 동일하게 과세는 이자를 지급하는 국가에서 이루어지며, 세율의 한도는 로열티 총액의 7%로 제한됨 · 또한 항공기 및 선박 임대 사업에 지급되는 로열티의 경우에 한해 로열티 총액의 5%를 초과할 수 없음 - 다만 약정에 따른 7%의 세율이 홍콩세무조례 내에서 규정하는 세율보다 높으므로, 홍콩에서 발생하고 본토 거주자에게 지급된 로열티는 2.475%/4.95%(법인) 또는 2.25%/4.5%의 세율이 적용됨
자본소득 (Article 13. Capital gains)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홍콩은 자본소득에 대해 세금을 부과하지 않으나, 본 조약에 따라 홍콩 거주자가 중국 본토에서 다음과 같은 활동을 통해 얻은 자본이익에는 중국 본토에서 세금이 부과됨 <ul style="list-style-type: none"> i) 중국 본토에 위치한 부동산의 양도 ii) 홍콩 기업이 중국 본토에서 보유하고 있는 고정사업장의 사업 재산의 일부를 구성하는 동산의 양도 iii) 직간접적으로 보유한 중국 본토의 부동산이 회사 총 자산의 50% 이상인 회사의 주식 양도 iv) 본토 회사의 전체 지분의 25% 이상을 차지하는 주식 양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단 전체 지분의 25% 미만의 주식 양도일지라도 양도 전 3년의 기간 동안 iii)의 조건을 충족시키는 경우에는 본토에서 세금이 부과됨 - 2015년 12월 29일 발효된 포괄적 약정에 대한 4차 의정서에 따라 공인된 증권거래소에 상장된 중국 본토 회사의 주식을 거래하는 경우 홍콩에서만 과세되며, 이 때 주식의 매수와 매도는 모두 동일한 거래소에서 이루어져야 함
고용소득 (Article 14. Income from employment)	<ul style="list-style-type: none"> - A국의 거주자가 B국에서 고용되지 않는 한, A국의 거주자가 창출한 고용소득에 대해서는 A국에서 과세함 - A국의 거주자가 B국에서 수행한 고용과 관련하여 발생한 소득에 대해서는 다음의 경우 A국에서 개인 소득세가 면제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납세자가 해당 과세연도 12개월 동안 총 183일을 초과하지 않는 기간 동안 상대국에 체류한 경우 · B국의 비거주자인 사용자에 의해, 혹은 그 사용자를 대신하여 보수가 지급된 경우 · 사용자가 B국의 고정사업장에서 보수를 지급하지 않은 경우
연예 및 스포츠 관련 소득 (Article 15 and 16. Artistes and sportspersons)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이종과세 방지와 관련하여 영업이익(Article 7)과 고용소득(Article 14)에서 제시하고 있는 요건과 관계없이, A국의 거주자가 B국 거주 기업으로부터 수령하는 연예 및 스포츠 관련 감독 보수 및 이와 유사한 다른 보수에 대해서는 B국에서 과세함 - A국에 거주 중인 연예인 혹은 운동 선수가 B국에서 수행한 개인 활동을 통해 얻은 소득 역시 B국에서 과세함

자료: DIPN(Departmental Interpretation and Practice Notes) No.44

III 국제 선박 및 항공 운영 소득 관련 조세 조약

홍콩은 이중과세, 정보 교환 및 기타 국제 조세 협력과 관련한 노력으로 선박 및 항공 등 운송 수입과 관련하여서도 다양한 국가와 조약을 체결하고 있다.

가. 선박 운영 소득 관련 조세 조약³⁷⁵⁾

선박 운영 소득과 관련한 조세 조약을 체결한 국가의 경우, 한 국가에 거주하는 개인 혹은 기업이 국제 운송에서 선박을 운항하여 얻은 소득 또는 이윤에 대해서는 거주국에서만 과세된다. 홍콩은 현재 미국, 영국과 북아일랜드, 네덜란드, 노르웨이, 독일, 싱가포르, 스리랑카, 덴마크와 선박 소득과 관련한 조세 조약을 맺고 있다.

면제가 적용되는 소득에 대해서는 각 조약에 명시되어 있으며, 일반적으로는 다음과 같은 선박의 국제 운항에서 발생하는 모든 수입이 포함된다.

- ① 국제 운송에 사용되는 선박을 전일 혹은 전항해 또는 선체 용선(bare-boat basis)기반으로 임대하여 얻은 소득
- ② 선박의 국제 운송 시 부수적으로 발생하는 컨테이너 및 관련 장비의 임대 수입
- ③ 선박의 국제 운송 시 투입되는 해상 운송 물자로 인한 소득
- ④ 주로 선박의 국제 운송 및 임대업에 종사하는 자에 의한 선박의 판매, 처분 또는 기타 양도로 인한 소득

감면은 해당 국가에서 홍콩의 이윤세와 유사한 세제에 대해 적용하는 것이 일반적이거나, 스리랑카, 싱가포르 및 네덜란드는 급여소득세의 범주까지 적용되며, 네덜란드, 독일, 싱가포르, 스리랑카, 덴마크의 경우 해당 사업과 직접적으로 연결된 펀드에 대한 이자 소득까지 확대하여 적용된다.

또한 미국의 경우 홍콩 거주자가 소득세를 면제받기 위해서는 i) 회사의 주식이 홍콩 혹은 동등한 수준의 타국 증권 시장에서 정기적으로 거래되거나, ii) 주식의 50% 이상을 홍콩 또는 미국 거주자, 혹은 미국 기업에 유사한 면제를 적용하는 다른 국가에 거주하는 개인이나 기업이 소유해야 한다는 요건을 별도로 제시하기도 한다.

375) Wolters Kluwer, *Hong Kong Master Tax Guide 2019/20*, ¶14-3000, pp. 1174~1176.

나. 항공 운항 소득 관련 조세 조약³⁷⁶⁾

이중과세 조약에 따라 한 국가의 항공사가 항공기의 국제 운항을 통해 파생된 소득³⁷⁷⁾ 또는 이익에 대해 이윤세, 급여 소득세 등을 포함한 기타 모든 세금이 면제된다. 이 때 이중과세 조약상 '국제 운항(international traffic)'이란 체약국의 항공기가 상대 체약국의 지역에 단독으로 운항하지 않는 경우, 체약국의 항공사에 의한 항공기 운항 또는 운송을 의미한다.

우리나라를 비롯하여, 캐나다, 뉴질랜드, 네덜란드, 독일, 영국과 북아일랜드, 이스라엘, 모리셔스, 러시아, 노르웨이, 덴마크, 스웨덴, 방글라데시, 에스토니아, 크로아티아, 마카오특별행정구, 스리랑카, 요르단, 아이슬란드, 케냐, 쿠웨이트, 스위스, 멕시코, 핀란드, 에티오피아, 몰디브, 라오스, 세이셸, 피지 등의 국가가 홍콩과 국제 항공 운영 소득과 관련하여 이중과세 방지 조약을 맺고 있다.

또한 본 조약은 다음과 같은 상호 면제를 제공하기도 한다.

- ① 체약국 항공사의 자본 및 자산은 상대 체약국에서 상호적으로 부과하는 세금이 면제된다.
- ② 체약국 항공사에 발생하는 국제 운항에 운영되는 항공기 및 그러한 항공기의 운영과 관련된 동산의 양도로 인한 이익에 대해 상대 체결국의 세금이 면제된다.
- ③ 체약국 항공사의 항공기에 국제 운항과 관련하여 부과되는 부가가치세를 비롯한 상대 체결국에서 상호 부과하는 유사한 세금이 면제된다.
- ④ 상대 체결국 지역의 항공기 운항과 관련하여 체결국의 지정 항공사의 재산에 대해 상대 체결국의 모든 세금이 면제된다.

또한 홍콩은 홍콩 거주 항공기 소유자가 조세를 회피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홍콩세무조례 제23C조 (2A)~(2D)에서 조세 조약을 체결하지 않은 국가에서 벌어들인 국제 운항 수입의 과세에 대해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있다.

376) Wolters Kluwer, *Hong Kong Master Tax Guide 2019/20*, ¶14-3500, p. 1176~1179.

377) 항공권 판매 수익을 비롯하여, 사람, 가축, 상품, 우편 또는 상품 운송과 그에 따른 서비스 제공에 따른 수입을 포괄함

제5장 | 기타 조세

I 개별소비세³⁷⁸⁾

홍콩은 일반적으로 부가가치세와 관세가 존재하지 않으나, 세관 및 소비세국(Customs & Excise Department)에서 주류 및 담배, 유류에 한해 개별소비세를 부과하고 있다.

1. 주류

20℃의 온도에서 측정한 알코올 도수가 부피비로 30% 이상인 술에 한해 100%의 개별소비세가 부과되며, 그 외에는 개별소비세를 부과하지 않는다.

또한 가치를 결정할 수 있는 정보가 없거나 불충분한 경우, 12리터 미만의 주류에 대하여 관세청장(혹은 권한을 위임받은 공무원)이 리터당 160홍콩달러의 요율로 해당 주류에 부과되는 개별소비세를 산정할 수 있다.

2. 담배

담배의 경우 <표 2-5-1>과 같은 요율로 개별소비세가 부과되며, 필터나 마우스피스를 제외하고 길이가 90mm를 초과하는 경우 추가되는 매 90mm를 별개의 담배로 간주한다.

<표 2-5-1> 홍콩의 담배 개별소비세 세율

(단위: 홍콩달러, 개피, kg)

종류	세율
일반 담배	1,906홍콩달러/1천개피
시가	2,455홍콩달러/kg

378) Customs & Excise Department, "Types and Duty Rates," https://www.customs.gov.hk/en/trade_facilitation/dutiable/types/index.html, 검색일자: 2021. 9. 3.

〈표 2-5-1〉의 계속

(단위: 홍콩달러, 개피, kg)

종류	세율
중국산 담배	468홍콩달러/kg
담배 제조용 담배를 제외한 기타 모든 제조 담배	2,309홍콩달러/kg

자료: Customs & Excise Department, "Types and Duty Rates," https://www.customs.gov.hk/en/trade_facilitation/dutiable/types/index.html, 검색일자: 2021. 9. 3.

3. 유류

유종에 따라 최대 2.89~6.82홍콩달러의 요율로 개별소비세가 부과되며, Euro V 디젤의 경우 개별소비세가 면제된다.

〈표 2-5-2〉 홍콩의 유류 개별소비세 세율

(단위: 홍콩달러, kg)

유종	세율
항공기용	\$6.51
자동차용(가연 휘발유)	\$6.82
자동차용(무연 휘발유)	\$6.06
경유	\$2.89
초저황 디젤	\$2.89
Euro V 디젤	\$0.00

자료: Customs & Excise Department, "Types and Duty Rates," https://www.customs.gov.hk/en/trade_facilitation/dutiable/types/index.html, 검색일자: 2021. 9. 3.

II 사업등록세

1. 사업자 등록 개요

사업등록조례(Business Registration Ordinance)는 홍콩에서 사업을 영위하는 모든 사업자는 사업 개시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사업등록소(Business Registration Office)에 사업자 등록을 신청하고, 사업장에 유효한 사업자 등록증을 게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등록된 사업체의 세부 사항이 변경된 경우, 사업자는 변경 후 1개월 이내에 서면으로 세무국에 통보해야 한다. 사업자 등록증 발급과 사업자 등록부의 업데이트를 보다 신속하게 처리하기 위해 사업자가 제출한 정보는 요약 정보의 확인만을 거친 후 등록이 이루어진다.³⁷⁹⁾

완차이 세무국 건물 내 위치한 사업등록소를 방문하여 신청할 경우 사업자 등록증 발급까지 30분이 소요되며, 우편 또는 웹사이트(GovHK.com)를 통한 신청의 경우 신청서 접수 후 2 영업일 이내에 발급된다.

사업자 등록을 신청하지 않고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5천홍콩달러의 벌금과 1년의 징역형에 처할 수 있다. 또한 사업 개시 후 12개월 이상 경과한 후에 사업자 등록을 신청하는 사람은 이전 연도와 현재 연도에 대한 사업자 등록비 및 부과금과 함께 사업등록조례 제7조 3항에 따른 영업등록비를 납부해야 한다.

2. 수수료 및 세금³⁸⁰⁾

사업자 등록증은 1년 기한과 3년 기한의 2가지 종류 중 선택하여 발급받을 수 있는데, 등록증 개시일에 따라 증서에 따른 납부 금액이 달라진다. 홍콩 현지 법인의 경우 최초 등록 시 납입액은 사업자 등록 신청서를 제출한 날짜에 따라 결정되며, 등록증의 개시일은 설립 날짜가 된다. 홍콩 현지 법인이 아닐 경우 등록증의 개시일에 따라 수수료 및 세금이 결정되고 등록증의 개시일은 사업자 또는 지점 등록 신청일이 아닌 사업 개시일로 한다.

379) 홍콩 세무국, "Business Registration - General," https://www.ird.gov.hk/eng/tax/bre_gen.htm, 검색일자: 2021. 9. 3.

380) 홍콩 세무국, "Business Registration Fee and Levy Table," https://www.ird.gov.hk/eng/pdf/brfee_table.pdf, 검색일자: 2021. 9. 3.

〈표 2-5-3〉 홍콩의 사업자등록세(본사 등록)

(단위: 홍콩달러)

구분	1년 증서			3년 증서		
	등기비 (Fee)	증서비 (Levy)	합계	등기비 (Fee)	증서비 (Levy)	합계
2021. 1. 4.~2022. 3. 31.	0	250	250	3,200	750	3,950
2019. 4. 1.~2021. 3. 31.	0	250	250	3,200	750	3,950
2017. 4. 1.~2019. 3. 31.	2,000	250	2,250	5,200	750	5,950
2016. 4. 1.~2017. 3. 31.	0	250	250	3,200	750	3,950
2014. 4. 1.~2016. 3. 31.	2,000	250	2,250	5,200	750	5,950
2013. 7. 19.~2014. 3. 31.	0	250	250	3,200	750	3,950
2012. 4. 1.~2013. 7. 18.	0	450	450	3,200	1,350	4,550
2011. 8. 1.~2012. 4. 1.	2,000	450	2,450	5,200	1,350	6,550

자료: 홍콩 세무국, "Business Registration Fee and Levy Table," https://www.ird.gov.hk/eng/pdf/brfee_table.pdf, 검색일자: 2021. 9. 3.

〈표 2-5-4〉 홍콩의 사업자등록세(지점 등록)

(단위: 홍콩달러)

구분	1년 증서			3년 증서		
	등기비 (Fee)	증서비 (Levy)	합계	등기비 (Fee)	증서비 (Levy)	합계
2021. 1. 4.~2022. 3. 31.	0	250	250	116	750	866
2019. 4. 1.~2021. 3. 31.	0	250	250	116	750	189
2017. 4. 1.~2019. 3. 31.	73	250	323	189	750	939
2016. 4. 1.~2017. 3. 31.	0	250	250	116	750	189
2014. 4. 1.~2016. 3. 31.	73	250	323	189	750	939
2013. 7. 19.~2014. 3. 31.	0	250	250	116	750	189
2012. 4. 1.~2013. 7. 18.	0	450	450	116	1,350	1,466
2011. 8. 1.~2012. 4. 1.	73	450	523	189	1,350	1,539

자료: 홍콩 세무국, "Business Registration Fee and Levy Table," https://www.ird.gov.hk/eng/pdf/brfee_table.pdf, 검색일자: 2021. 9. 3.

Ⅲ 도박세

도박세는 도박세 조례(Betting Duty Ordinance)에 근거하여 2006년부터 세무국에서 과세하고 있다. 공인된 경마, 복권, 축구 베팅으로 획득한 순상금과 현금 스윕(cash-sweeps)이 과세 대상이 되며, 럭키 드로우 등을 통해 수령한 상금은 도박세의 과세 대상으로 간주되지 않는다.³⁸¹⁾

〈표 2-5-5〉 홍콩의 도박세 세율

(단위: %)

종류	과세 대상 및 표준	세율
경마	순상금 110억홍콩달러까지	72.5
	이후 10억홍콩달러까지	73
	이후 10억홍콩달러까지	73.5
	이후 10억홍콩달러까지	74
	이후 10억홍콩달러까지	74.5
	150억홍콩달러 초과	75
홍콩 외	순상금	72.5
현금 스윕	지불액	30
복권	수입액	25
축구 베팅	순상금	50

자료: 홍콩 세무국, "Betting Duty," <https://www.ird.gov.hk/eng/tax/bdu.htm>, 검색일자: 2021. 9. 3.

381) 홍콩 세무국, "Betting Duty," <https://www.ird.gov.hk/eng/tax/bdu.htm>, 검색일자: 2021. 9. 3.

IV 항공 여객 출국세

홍콩의 항공 여객 출국세는 항공 여객 출국세 조례(Air Passenger Departure Tax Ordinance)에 근거하여 항공국(Civil Aviation Department)에서 부과 및 징수한다. 홍콩에서 홍콩 국제공항을 통해 항공으로 출발하거나 홍콩-마카오 페리 터미널의 헬리포트에서 헬리콥터로 출발하는 승객당 120홍콩달러를 징수하고 있다. 항공사, 여행사 또는 헬리콥터 회사에서 항공권을 구매할 때 동시에 납부하며, 항공권의 환불 시 항공사, 여행사 또는 헬리콥터 회사에 세금 환급도 함께 신청해야 한다.

12세 미만의 승객과 환승 승객, 홍콩에 도착하여 당일 비행기로 출발하는 승객, 난민 혹은 비상사태로 착륙한 항공기에 탑승하였던 승객, 정부 기관 및 국제 기구 등의 공적 목적을 위해 출발하는 승객의 경우 면제된다.³⁸²⁾

V 자동차 최초 등록세

홍콩특별행정구(HKSAR)의 도로에서 사용할 수 있는 모든 자동차는 자동차 최초 등록세 대상이 되며, 교통부에서 공시한 소매 가격에 기초하여 세관 및 소비세국에서 세액을 평가한다.³⁸³⁾

홍콩으로 차량이 수입되면 수입업자가 수입 14일 이내에 세관 및 소비세국에 수입 및 수출 신고서를 제출하고, 수입 30일 이내에는 세관 및 소비세국 혹은 온라인 세금 시스템을 통해 세금 신고서를 제출해야 한다. 수입업자가 홍콩으로 자동차를 수입한 지 30일 이내에 수입 신고서를 제출하지 못할 경우, 50만홍콩달러의 벌금과 12개월의 징역형을 선고받을 수 있다.³⁸⁴⁾

382) Civil Aviation Department, "Air Passenger Departure Tax," https://www.cad.gov.hk/english/departure_tax.html, 검색일자: 2021. 9. 3.

383) 관세 및 소비세국, "Motor Vehicles," https://www.customs.gov.hk/en/trade_facilitation/vehicles/index.html, 검색일자: 2021. 9. 3.

384) 홍콩 교통국, "Guidelines for Importation and Registration of Motor Vehicle," https://www.td.gov.hk/en/public_services/licences_and_permits/vehicle_first_registration/guidelines_for_importation_and_registration_of_mot, 검색일자: 2021. 9. 3.

〈표 2-5-6〉 홍콩의 최초 자동차 등록세 세율

(단위: %)

종류		세율	
개인용 자동차	처음 15만홍콩달러	46	
	다음 15만홍콩달러	86	
	다음 20만홍콩달러	115	
	50만홍콩달러 초과	132	
전동 이륜차 및 전기 자전거		35	
운송차량	번형 경전제품 차량 외의 차량		15
	1.9톤 이하의 번형 경전제품 차량	처음 15만홍콩달러	35
		다음 15만홍콩달러	65
		30만홍콩달러 초과	85
	1.9톤을 초과하는 번형 경전제품 차량		17
택시, 소형버스, 버스 및 특수 목적 차량		3.7	

자료: 홍콩 세무국, "Betting Duty," <https://www.ird.gov.hk/eng/tax/bdu.htm>, 검색일자: 2021. 9. 3.

제3편 한국인 투자자를 위한 제도

제1장 투자환경

제2장 외국인 투자정책 및 투자이슈

제1장 | 투자환경³⁸⁵⁾

I 입지

1. 입지여건 및 비용

홍콩 투자유치정책을 살펴보면 기본적으로 외국기업을 홍콩 국내기업과 동일하게 대우하여 외국인 전용 산업단지 및 외국기업의 산업입지 관련 인센티브가 별도로 존재하지 않는다.

공업용으로 조성된 산업단지가 3개 있으나 그 규모가 각각 80헥타르(24만 2천평) 내외로 크지 않고, 홍콩으로 유입되는 외국인직접투자 금액 대부분이 제조 이외의 목적으로 공업용 부지에 대한 수요는 많지 않다.

외국기업들이 주로 선택하는 홍콩의 주요 상업지역은 Central와 Admiralty, Sheung Wan 등으로 홍콩섬에 위치한 곳이다. 그러나 동 지역의 임차료는 홍콩 최고 수준으로 아시아 및 전 세계에서 임차료 상위권 지역에 속한다. 이에 최근 상대적으로 임차료가 낮고, 교통이 편리한 인근 Wanchai, Causeway Bay 및 Quarry Bay와 구룡반도의 Tsim Sha Tsui 지역으로 사무실을 이전하는 경우가 많다.

세계적 부동산 서비스회사 CBRE의 발표자료에 따르면³⁸⁷⁾ 2018년 1월 기준 홍콩센트럴 사무실 임차료(306.6달러/평방피트)가 전 세계에서 가장 비싼 것으로 조사되었으며, 런던 West End 지역(235.0달러/평방피트)이 2위, 베이징 Finance Street 지역(200.9달러/평방피트)이 3위에 올랐다.

홍콩은 전체가 무관세 지역이며 내외국기업 동일 대우 원칙이 적용되므로 외국기업을 위한 자유무역지역이나 특별구역은 없다.

385) 이하 본 장의 내용은 KOTRA에서 발간한 『2019 아시아 주요국 투자환경 비교조사』를 바탕으로 작성하였다.

387) KOTRA, 『아시아 주요국 투자환경 비교조사』, 2019, p. 65, CBRE, "Hong Kong Central Remains Most Expensive Office Market In The World, According To CBRE," <https://www.cbre.com/press-releases/hong-kong-central-remains-most-expensive-office-market-in-the-world>, 2018. 6. 25. 재인용

2. 지역별 토지 및 건물 임차료

가. 산업단지 부지 매입비용

홍콩에 소재한 공장의 80% 이상은 New Territories 지역에 있으며, Tai Po, Tseung Kwan O, Yuen Long 3개의 주요 공업단지가 있다. 산업단지 관계자에 따르면 이 3개 지역 산업단지는 2016년부터 토지 매입을 중단하였으며, 현재 Tseung Kwan O 지역에 제조업 센터 및 데이터 기술 센터 건물을 건설하고 있다고 한다(각각 2021년, 2022년 완공 예정). 센터 완공 후 입주자를 받을 예정이며 임차료는 아직 미정이다.

나. 과학기술개발부지 임차료

Sha Tin에 위치한 홍콩과학기술단지, 홍콩섬에 위치한 Cyberport, 카우룽에 위치한 Inno Centre 등의 연구개발시설은 주로 홍콩 정부가 소유·운영하고 있으며 임대 절차와 조건, 입주 시 임차료 인센티브 등은 홍콩 국내기업과 외국기업 모두에 동일하게 적용된다.

또한 첨단 혁신산업 육성을 위해 홍콩과학 기술단지(Hong Kong Science and Technology Park), Inno Centre, Cyberport 등의 클러스터가 구성되어 있어 관련 산업에 종사하는 기업에 시가보다 낮은 수준의 임차료로 사무실을 임대하고 있다.

II 노무

1. 임금수준

가. 개황

‘최저임금조례’는 최저임금을 법적으로 보장하고, 저임금 일자리 유실을 방지하며 경제발전 및 경쟁력을 유지하기 위해 제정되었다. 홍콩은 2011년 5월부터 최저임금제도를 도입하였으며, 평균 2년에 한 번씩 임금인상이 있었던 것으로 나타난다.

나. 최저임금

2021년 최저시급은 37.5홍콩달러(약 5,700원)이며, 최저월급은 1만 6,841홍콩달러(약 255만원)이다.

다. 산업별 평균임금

홍콩 근로자 급여는 직위와 직종, 종사 분야에 따라 편차가 큰 편이다. 여러 업종 중 금융, 보험 분야 월평균 급여가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나며, 금융업 상위권 종사자의 경우 연봉 10만달러 이상이 보편적이다.

라. 산업별 임금인상률

산업별 임금인상률이 상이한데 적게는 2.0% 인하, 많게는 8.4% 인상하는 경우도 있다.³⁸⁸⁾

2. 노동력

가. 노동인구

2020년 기준 홍콩 노동인구는 약 380만명으로 홍콩 총인구 739만명의 51.4%를 차지하고 있다. 2020년 7월 이후 1년 동안 총인구가 9만여 명 감소한 것에 대해 홍콩 정부는 코로나19

388) 홍콩 통계청, Quarterly Report of Wage and Payroll Statistics-Fourth Quarter-2015, 2016, https://www.censtatd.gov.hk/en/data/stat_report/product/B1050009/att/B10500092016QQ04B0100.pdf, 검색일자: 2021. 11. 18.

로 인한 인구 유입 감소를 주요 원인으로 분석하고 있으나, 많은 전문가들은 홍콩 국가보안법 시행에 따른 이탈 현상의 영향으로 분석하고 있다.

나. 교육수준

공립 초·중등학교 9년 교육과정이 무상교육이며, 2008년부터 무상교육을 고등학교 과정까지 확대하였다. 홍콩 교육과정을 통해 2개 문자(영어, 중국어) 및 3개 언어(영어, 표준어, 광둥어)를 배울 수 있다. 2018년 홍콩 수능 응시생 총 5만 9천명 중 2만 1,264명(42.2%)에게 대학 입학 자격이 주어졌다.

다. 외국인 근로자 현황

홍콩은 학술 연구 및 교육, 예술 및 문화, 상업 및 무역, 엔지니어링 및 건설, 금융 서비스, IT, 법률 서비스, 레크리에이션 및 스포츠 등 취업 분야별로 비자를 발급하고 있다. 홍콩 이민국에 따르면 2020년 홍콩에서 합법적으로 비자를 발급받아 근무하는 외국인 근로자는 총 1만 4,617명이다.³⁸⁹⁾

라. 실업률 및 이직문화

2020년 기준 홍콩의 실업률은 5.8%이다. 홍콩 근로자의 이직은 비교적 유연한 편이며, 한 회사에서 짧게는 1년, 길게는 3년간 근무를 하면 이직하는 경우가 보편적이다.

3. 사회보험제도

가. 사회보험제도 종류

홍콩의 사회보험제도는 개인보험 위주로 운영되며, 국가가 지원하는 실업보험이나 국민연금, 건강보험 등은 존재하지 않는다. 고용주가 직원의 산재보험과 연금보험(MPF)에 의무적으로 가입하고, 건강보험까지 제공하는 경우가 많다(고용주의 의료보험 제공은 의무가 아님).

389) 홍콩 이민국, Visas, "Breakdown statistics on applications approved under the General Employment Policy," <https://www.immd.gov.hk/eng/facts/visa-control.html>, 검색일자: 2021. 11. 18.

나. 보험료 부담 및 보상

근로자 업무상 재해보상을 위한 산재보험은 고용인이 전액 부담을, 노후소득보장을 위한 국민연금도 고용인이 50%를, 질병치료를 위한 건강보험은 고용인이 전액 부담(의무 아님)을 한다. 또한 피고용인이 업무 중 사고를 당하거나 다치면 고용인이 보상해야 하며, 손상 정도와 피고용인 연령 등에 따라 보상금액은 달라진다.

4. 직원채용 및 근로조건

가. 고용 관련 법규

홍콩의 노동법은 고용조례(Employment Ordinance)라고 하는데 고용과 해고, 근로조건, 법정 휴일, 병가 등에 대한 전반적인 내용이 포괄적으로 수록되어 있다.

아울러 근로안전에 관한 법률(The Occupational Safety and Health Ordinance)과 공장 및 공업 활동에 관한 법률(The Factories and Industrial Undertakings Ordinance)에 일반 근로자 및 공장·공업 근로자의 안전 관련 기준이 기재되어 있으며, 그 외 직원 보상 법률(Employee's Compensation Ordinance)에는 산업재해 관련 내용을 명시하고 있다.

나. 고용계약

홍콩은 모든 고용이 기간, 연봉 등이 명시된 계약에 의해 이루어지기 때문에 정규직·비정규직 개념은 없다. 매주 최소 18시간 이상, 연속 4주 이상 동일 고용주와의 고용 관계를 지속한 근로자에 대해 연속 계약(continuous contract)하에 고용한 것으로 보아 법적으로 보장되는 휴일, 연차, 병가, 퇴직금 등의 지급의무가 발생한다. 다만 일용직 근로자에 대해서는 이러한 지급의무가 없다. 고용계약은 구두와 서면계약 모두 유효하며, 노동법에서 보장하는 최소한의 근로자 권리를 말소 또는 축소하는 계약은 법적으로 무효이다.

일반적으로 채용 후 첫 3개월은 수습 기간으로 정하며, 추후 퇴직금 산정 시에는 수습 기간까지 포함하여 계산한다.

다. 근로조건

근로조건은 대체로 현지 노동법을 따르나 노동법은 근로자에게 보장해야 하는 최소 수준

을 규정하므로 실제 근로조건은 회사별로 상이하다. 일반적으로 최소 규정보다 높은 근로조건을 제공한다. 예를 들어 휴가 일수 최소 규정은 7일이지만, 외국기업의 경우, 본사 방침에 따라 30일까지 제공하기도 한다. 법정 공휴일에 근무하는 직원에 대해서는 해당 휴일 60일 전후에 보상 휴가를 지급하여야 하며, 연속계약하에 3개월 이상 근무한 직원에게는 공휴일 수당 지급의무도 발생한다. 연차는 연속계약하에서 근무기간 12개월 이상부터 기본 7일이 발생하며 이후 1년 근무마다 1일씩 최대 14일까지 늘어난다. 연속계약으로 고용된 직원은 근무한 첫 12개월간은 매달 2일씩 유급 병가를 적립할 수 있으며, 이후에는 매달 4일의 유급 병가를 적립(연간 최대 120일)할 수 있다. 고용주는 유급 병가 중인 직원을 해고할 수 없다.

또한 연속계약을 맺은 직원에 대해서는 14주 연속의 유급 출산휴가가 법적으로 보장되며 임신 및 출산으로 인한 해고도 금지된다.

5. 노사분규

가. 노사관계

홍콩의 노사관계는 노사 간 자유로운 협상을 통해 도출된 조건에 기반한다. 노동조합의 활동은 법률로 보호되고 있으며, 홍콩의 노조 가입률은 20% 이상이다. 하지만 홍콩 근로자들은 파업이 초래하는 경제적 손실에 대해 부정적 시각을 가지고 있어 장기 파업 또는 과격한 쟁의를 하는 경우는 드물다.

나. 노사분규 현황

2016년 홍콩 노동부에 의해 조정된 크고 작은 노사분쟁은 55건이며, 노사분쟁으로 인해 손실된 근무일은 2016년 한 해 근로자 1천명당 0.05일로 세계에서 가장 낮은 수준이다.

2016년 한 해 동안 1만 4,672건의 클레임이 있었는데, 주요 원인은 계약자 및 하도급업자의 분쟁, 해고, 임금 관련 이슈가 있었다. 그러나 경제에 영향을 미치는 파업 등의 큰 노사분규는 없어 전반적인 노사관계는 안정적이다.

다. 노사분쟁 조정절차

홍콩 노동부는 우호적 조정에서 실패한 소규모 노사분쟁(10명 이하, 인당 분쟁가액 8천홍콩

달러 이하)에 대해 Minor Employment Claims Adjudication Board 절차로 심리한다. 심리 절차는 공개되며, 법률대리인은 허용되지 않는다. 위원회의 결정은 법적 구속력이 있으며, 법리 적용이나 관할권에 문제가 있는 경우에만 재심 신청이 가능하다.

Ⅲ 지적재산권

가. 지적재산권 보호정책

1997년 홍콩은 지적재산권 보호 관련 제도가 미흡한 것으로 평가되어 미국무역대표부(USTR)의 감시대상국으로 분류되었다. 홍콩 정부는 이에 즉각 대처하여 1997~1998년 지적재산권 보호법을 재정비, 관련 법령을 시행하여 1999년 미국 무역대표부의 감시대상국 명단에서 제외되었다.

현재 홍콩은 아시아에서 지적재산권 보호 정책이 가장 철저히 시행되는 곳 중 하나로 특허, 저작권, 상표 및 디자인 등이 관련 법령에 의해 엄격히 보호받고 있다.

나. 국제특허출원

홍콩은 국제특허출원(PCT) 계약국이 아니어서 홍콩을 기반으로 한 국제특허출원 내역은 없다. 하지만 중국을 지정국(International application under PCT designating China)으로 하는 경우, 홍콩에서도 표준특허 및 단기특허를 출원할 수 있다.

IV 물류

1. 해상운송

홍콩 항만은 세계 주요 10대 항만 중 하나이다. 홍콩의 주요 항구로 콰이칭(Kwai Tsing) 컨테이너 항구가 있는데, 2017년 홍콩 전체 항만 물동량의 78%를 차지하였다. 콰이칭 지역에는 총 9개의 항구가 있으며, 총 24개의 선박을 세울 수 있다. 항만 전체 면적은 약 279ha (약 84만평)이다.

홍콩 항만의 컨테이너 물동량 실적은 2019년 1,836만TEU³⁹⁰⁾, 2020년 2,007만TEU³⁹¹⁾로 나타났다. 코로나19의 불확실성은 존재하나, 전 세계 백신 접종률 증가 등으로 인해 경제활동이 증가하고 물동량도 회복세를 보일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홍콩 항만은 단순한 조세 제도와 앞선 물류 인프라 등으로 아시아 물류 허브의 지위를 계속 유지할 것으로 보인다.

2. 항공운송

홍콩의 주요 공항으로 1998년 이전하여 개항한 홍콩국제공항(홍콩 첵랍콕섬에 위치)이 있다. 공항 면적은 약 1,248만m²(약 377만평), 활주로는 3,800m×60m 크기의 2개가 있고, 수용 능력은 시간당 54회 운항할 수 있다. 여객 터미널은 1동으로 연간 3,500만명을 수용할 수 있으며, 화물 터미널은 2동으로 연간 300만톤을 처리할 수 있다.

여객 운송량은 세계 상위권 수준이며, 화물 운송량은 2016년 전 세계 1위를 기록하였다. 여객·화물 운송량 모두 증가 추세이며, 홍콩국제공항은 증가 수요를 수용하기 위해 2023년 완공 목표로 신규 활주로 증설 프로젝트를 추진 중에 있다.

홍콩 기반 주요 항공사로 캐세이 퍼시픽(Cathay Pacific), 홍콩 에어라인(Hong Kong Airline), 홍콩 익스프레스(Hong Kong Express) 등이 있으며, 66개 항공사가 104개 도시로 취항하고 있다.

390) 한국해양수산개발원, 「항만과 산업(통계)」, 21-01호, 2021, p. 49.

391) 한국해양수산개발원, 「항만과 산업(통계)」, 22-01호, 2022, p. 52.

3. 육상운송

홍콩의 철도는 홍콩철도유한공사(MTR)에서 관리하며, 지하철, 공항철도, 신계지역 지상철(Light Rail) 및 광선강(廣深港) 고속철 홍콩 구간을 관리하고 있다.

다만 Tramways의 경우 RATP Dev Transdev Asia가 소유·관리하고 있다. RATP Dev Transdev Asia는 프랑스의 RATP Dev 및 Transdev 두 대중교통 회사의 합자 회사로, 아시아를 기반으로 운영하고 있다.

V 공공서비스

홍콩의 수도(水道)는 수도공급국에서 관리하며, WHO 식수 기준에 부합하는 처리 공정을 통해 안정적으로 공급된다. 수도료는 미터기 측정을 통해 4개월 간격으로 지불한다.

전력의 경우, CLP Power Hong Kong Limited와 Hong Kong Electric Company Limited에 의해 공급되며 안정적인 상태를 유지하고 있다. CLP는 구룡반도, 신계, 섬 지역 시민의 600만명의 전력을 공급하며, HK Electric은 홍콩섬 및 라마섬의 57만명의 전력을 공급하고 있다.

가스의 경우, Hong Kong Towngas에서 2018년 기준 홍콩 주요 가정, 상업, 산업용 시설 190만명 고객에게 공급하고 있다.

VI 법인 설립

1. 회사설립제도

가. 회사의 종류

회사의 종류로 유한회사(Private limited companies), 해외기업의 지사(Branch offices of overseas companies), 연락사무소(Representative offices, Rep Offices), 합자·독자회사 (Partnerships/Sole proprietorships)가 있다.

나. 회사설립 절차

- ① 회사설립 형태(유한/무한 책임, 주주, 이사, 자본금 등) 및 회사명 결정
- ② 회사설립 신청서 제출
 - 회사 설립 신청서(유한회사의 경우 양식 NNC1)
 - 회사 정관
 - 사업자등록증 신청서(양식 IRBR1)

* 회사 형태에 따른 신청서류 등 참고 사이트: <https://www.cr.gov.hk/en/forms/specified.htm>
- ③ 법인설립 증명서 및 사업자 등록증 발급
- ④ 법인 계좌 개설
- ⑤ 사무실 임차 및 직원 채용
- ⑥ 세무신고 및 법인 변경사항(주주, 자본금, 등록 주소 등) 발생 시 통지

2. 외국인의 부동산 취득

홍콩은 외국인의 부동산 거래가 자유로운 곳으로 특별한 규제가 없다. 홍콩에는 별도의 취득세 제도가 없고, 인지세가 취득세의 기능을 담당하고 있다. 홍콩 인지세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과세대상은 홍콩 소재 토지, 건물 및 구축물이다. 과세표준은 매매의 경우, 판매금액과 시장가치 중 높은 금액을, 임차의 경우 총금액 및 임차료를 과세표준으로 하며, 세율은 규모에 따라 1.5~8.5%가 적용된다.

제2장 | 외국인 투자정책 및 투자이슈³⁹²⁾

I 투자정책

1. 외국인투자촉진법

기본적으로 홍콩에는 외국인 투자를 지원하고 외국인투자에 대한 편의를 제공하는 ‘외국인투자촉진법’이 없다. 홍콩 정부는 외국인에 대한 선별적인 투자 혜택 제공을 통한 투자 유치보다 규제를 최소화하고 자유로운 비즈니스 인프라를 조성하는 정책을 운영하고 있다. 예를 들면 홍콩에서 현지법인을 설립할 경우 일부 산업을 제외하고 별도의 허가절차는 없다.

2. 외국인투자 제외 및 제한업종

홍콩은 내·외국기업 차별금지 원칙을 고수하고 있으며, 외국인투자자에 대해 소유권이나 지분 제한 등의 차별은 없다. 기본적으로 회사법(Companies Ordinance)을 내·외국기업에게 동일하게 적용하고 있다.

다만 ① 공익사업 분야(우편, 철도, 수도), ② 위험, 공해, 공중위생 관련 분야에서는 관계부처의 허가 또는 제한사항이 있을 뿐이다.

* 업종별 허가 등 확인 사이트(홍콩 정부): <https://www.success.tid.gov.hk/tid/eng/blics/index.jsp>

3. 홍콩의 투자유치기관

홍콩 상업경제개발부(Commerce and Economic Development) 산하에 ‘Invest Hong Kong’이라는 투자유치기관이 있다. 2012년 설립된 공식 정부 부처로 4개 본부, 17개 팀으로

392) 이하 본 장의 내용은 KOTRA에서 발간한 『2021 권역별 진출전략(중국)』 및 『2021년 외국인투자유치 종합 계획』을 바탕으로 작성하였다.

구성되어 있으며, 구성원은 약 150명 정도이다. 주요 업무로는 홍콩 투자환경 홍보를 통한 우수한 외국기업 투자유치, 홍콩 진출 전 과정에 걸친 밀착 지원, 법인설립, 사업허가, 상표등록, 인력채용, 비자취득, 사무실 임차 등 지원, 투자자와 정부부처, 기관, 경제단체 등과 네트워킹 기회 제공, 스타트업 진출 지원 등의 업무가 있다.

II 투자이슈: 웨강아오대만구 발전계획

중국 정부의 화남권역 발전계획으로 '웨강아오대만구(Greater Bay Area) 발전계획'이 있다. '웨'는 광둥성, '강'은 홍콩, '아오'는 마카오를 뜻하며, 대만구는 대형 연안지역이라는 의미인데, 중국 정부에서 광둥성 9개 도시와 홍콩, 마카오를 하나로 묶어 거대 광역 경제권으로 조성하기 위해 2017년 처음 공개한 국가 단위 개발 프로젝트이다.

중국 국무원이 발표한 계획의 핵심 내용은 글로벌 기술허브 조성, 인프라 연계 가속화, 홍콩과 중국 본토 금융시스템 연계, 광둥성과 홍콩, 마카오 협력 강화 등이 있다. 이를 위해 차세대 정보기술(IT)과 바이오 기술, 첨단 제조 장비와 신소재, 신형 디스플레이, 5세대 이동통신(5G) 등을 중점 산업으로 육성하고 산업단지를 조성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광저우에서는 자동차, 디스플레이 분야 최대 클러스터 구축을 목표로 하고 있으며, 선전에서는 중국 최대 4차 산업 혁신기업(화웨이, ZTE, 텐센트, DJI 등 글로벌 기업) 육성에 초점을 맞춘 신형 클러스터 구축을 목표로 하고 있다. 홍콩·마카오 자유무역특구에서는 글로벌 금융 중심지로서 글로벌 자본 유치 및 제조업과의 융합을 목표로 하고 있으며, 이렇게 각 지역별 특색을 융합하여 시너지 효과를 기대하고 있다.

웨강아오대만구는 2021년 현재 연평균 7% 이상의 빠른 성장세를 유지하고 있으며, 중국 GDP의 13%, 수출량의 25%, 외국인 투자의 20%를 점유하고 있다.

Ⅲ 유관기관

기 관	연 락 처	주 소
주홍콩대한민국총영사관 (https://overseas.mofa.go.kr/hk-ko/index.do)	+825-2529-4141	5/F, Far East Finance Centre, 16 Harcourt Road, Admiralty, Hong Kong
홍콩한인회 (http://krahk.korean.net/)	+852-2543-9387	Unit 1212, 12/F, Cosco Tower, 183 Queen Road Central, Hong Kong
홍콩 한인상공회 (http://kocham.hk/xs/)	+852-2544-1713	16th Floor, Yat Chau Building, 262 Des Voeux Road, Sheung Wan, Hong Kong
KOTRA 홍콩 무역관 (https://www.kotra.or.kr/KBC/hongkong/KTMIUI010M.html)	+852-2545-9500	Rm 3102, 31/F, Central Plaza, 18 Harbour Road, Wanchai, Hong Kong,

자료: 저자 작성

참고문헌

국내문헌

- 조명환·정재호·이정미·정경화, 『주요국의 조세제도-홍콩편』, 한국조세재정연구원, 2011.
 한국해양수산개발원, 「항만과 산업(통계)」, 21-01호, 2021; 22-02호, 2022.
 KOTRA, 『아시아 주요국 투자환경 비교조사』, 2019.
 _____, 『2021 권역별 진출전략(중국)』, 2021.
 _____, 『2021년 외국인 투자유치 종합계획』, 2021.

해외문헌

- Wolters Kluwer, *Hong Kong Master Tax Guide 28th edition 2019/20*, 2019
 BPP Learning Media Ltd, *Module D Taxation*, fourth edition, 2013
 Census and Statistics Department of Hong Kong Special Administrative Region, *Hong Kong in Figures 2021 Edition*, April, 2021
 Michael Littlewood, *Taxation Without Representation: The History of Hong Kong's Troublingly Successful Tax System*, Hong Kong: HKU Press, 2010

법률

- 홍콩 Inland Revenue Ordinance(IRO)
 홍콩 Departmental Interpretation and Practice Notes(DIPN)

웹사이트

- 세계법제정보센터, <https://world.moleg.go.kr>
 수출입은행 해외직접투자통계, <https://stats.koreaexim.go.kr/sub/interstateStatistics.do>
 주 홍콩 대한민국 총영사관 홈페이지, <https://overseas.mofa.go.kr/hk-ko/index.do>
 홍콩 관세 및 소비세국, <https://www.customs.gov.hk/en>
 홍콩 교통국, <https://www.td.gov.hk>
 홍콩 감정평가국, <https://www.rvd.gov.hk/en>
 홍콩 법제정보센터, <https://www.elegislation.gov.hk>
 홍콩 세무국 홈페이지, <https://www.ird.gov.hk/eng/welcome.htm>
 홍콩 세무국 DIPN DB, <https://www.ird.gov.hk/eng/ppr/dip.htm>
 홍콩 이민국, <https://www.immd.gov.hk/eng>

홍콩 재무부, <https://www.try.gov.hk>

홍콩 통계청, <https://www.censtatd.gov.hk>

홍콩 항공국, <https://www.cad.gov.hk/english>

Deloitte, 「홍콩세무가이드 2020」, 2020. 8., <https://www2.deloitte.com/content/dam/Deloitte/cn/Documents/tax/ta-2020/deloitte-cn-tax-tap0382020-kr-200806.pdf>

GovHK, <https://www.gov.hk/en>

IBFD Tax Research Platform, <https://research.ibfd.org>

KPMG, “Hong Kong extends profits tax concession for certain insurance,” 2021. 4., <https://home.kpmg/cn/en/home/insights/2021/04/tax-alert-4-hk-hong-kong-extends-profits-tax-concession-for-certain-insurance-businesses.html>

PwC, “Hong Kong SAR, Corporate - Tax credits and incentives,” 2021. 7. 5., <https://taxsummaries.pwc.com/hong-kong-sar/corporate/tax-credits-and-incentives>

_____, “Hong Kong SAR, Corporate - Tax administration,” 2021. 7. 5., <https://taxsummaries.pwc.com/hong-kong-sar/corporate/tax-administration>

신흥국의 세정연구 홍콩

발행	2021년 12월
발행인	김재진
발행처	한국조세재정연구원
주소	30147 세종특별자치시 시청대로 336
전화	TEL: (044)414-2114(代)
홈페이지	www.kipf.re.kr
등록	1993. 7. 15. 제2014-24호
I S B N	979-11-6655-122-2
조판및인쇄	(주)다원기획 (044)865-8115

© 한국조세재정연구원 2021 * 잘못 만들어진 책은 바꾸어 드립니다.



신흥국의 세정연구 | 홍콩

kipf 한국조세재정연구원

30147 세종특별자치시 시청대로 336
TEL : 044-414-2114 www.kipf.re.kr

